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이혜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김영호(백석대학교·교수)

이용교(광주대학교·교수)

연구보조원 : 박승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 지역사회의 규모와 특성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연구를 통한 연구자료 수집 및 관련개념 정의, 이론 정립,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복지정책 현황 파악, 둘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시, 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보고서 분석 및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셋째, 기초지방 자치단체 사례조사를 통한 현황, 문제점, 개선점 파악, 넷째, 문헌연구와 인터넷 자료조사를 통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지방자치단체 정책사례 선정·분석, 다섯째,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전문가 워킹숍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발전방안 도출 등임.

2. 주요내용

-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에 이어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함으로써 30여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됨. 시·군 통합으로 대표되는 「도농통합형 행정구역조정방식」이 채택되었으며 세계적인 추세(영국, 독일, 일본)와 같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하급행정기관으로 이루어진 중층제를 이루고 있음. 광역자치단체로는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시·군·자치구가 있음.

- 한국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추진체계: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로 아동·청소년 관련 중앙정부부처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복지정책과 아동복지정책 업무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실’로 통합되어 운영됨.
- 미국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연방정부 보건인간서비스 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현안이슈 선정, 예산배분, 지방정부관리·감독을 수행. 실제적인 아동·청소년 업무는 주정부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짐. 지방정부와 다양한 지역사회 아동·가족·청소년단체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특징임.
- 프랑스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파리지 사회활동·아동·건강부서(Direction de l'Action Sociale, de l'Enfance et de la Santé)의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살펴보고, 길거리교육활동, 청소년정보자료센터, 미션로칼 등 대표적인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사례를 소개함.
-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독일의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적 지원은 「아동·청소년지원법」을 기초로 주(州) 아래의 행정단위인 시(市)들과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이루어짐. 각 자치단체 「청소년청」은 실질적 청소년복지정책 수행 중심에 서 있으며 행정체계에 따라 구(區), 시(市), 지방의 작은 단위 기초자치단체마다 「청소년청」(Kreisjugendamt)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음.
- 일본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일본의 청소년 육성종합정책은 내각부가 담당. 2008년 7월 25일 제정된 내각부의 신 「청소년육성시책대강(青少年育成施策大綱)」이 청소년육성시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 청소년 정책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시정촌(市町村)과도 상호 연관. 중앙정부의 종합청소년시책에 따라 「청소년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청소년정책의 기획, 부처간 조정 및 시책 추진.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업무 부서명: 업무추진 부서간에 지나친 다양성으로 유기적 업무추진에 한계 및 혼란이 예상됨. 한 부서에서 아동·청소년 업무를 모두 하는 경우 사회복지과가 32.0%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복지과 18.0%, 주민복지과 9.5%, 주민생활지원과 8.8% 순임. 아동복지업무만을 수행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주민생활지원과 14.3%, 여성가족과 8.3% 순임. 청소년 복지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와 체육청소년과가 15.3%로 동일하게 가장 많았으며 문화체육과 11.8%, 문화관광과 9.4% 순임.

-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재원확보(43.0%),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정책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55.0%), 민간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24.8%), 다양한 아동·청소년복지 관련사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22.3%)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아동·청소년 인구 1인당 연간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전체적으로 평균 9만 4,149원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인구 50만 미만)시가 11만 5,365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산어촌)군 11만 458원, (특별·광역시)자치구 6만 8,095원, (인구 50만 이상)시 5만 1,056원 순임

3. 발전방안

- 문헌조사, 설문조사, 사례연구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역별 정책제언 도출.
- 군단위 농산어촌: 아동업무와 청소년업무를 통합하고 담당자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임,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예산의 분담구조를 바꿈, 민간단체를 키우고 활동가의 역량을 개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 구축 등.
- 중소도시: 아동·청소년과 및 아동·청소년팀의 신설, 아동·청소년업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명확한 사무분장,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개입, 지역 민간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로컬거버넌스 체계확립, 공교육과의 다양한 연계성 강화방안 모색 등.

-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욕구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국비·시도비 지원을 통한 예산 확대, 자치구 아동·청소년복지정책 행정조직 재정비, 아동·청소년복지행정 전담공무원제 도입,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재정비, 특별·광역시의 다양한 지역사회인프라·자원을 활용하여 중·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 대상 진로·취업 정책 같은 아동·청소년복지정책 활성화 등.
- 종합적인 발전방안: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을 다룰 전달체계 혁신,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을 다룰 인력의 전문화와 장기근속 제도화,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개발,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을 다룰 예산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의 내용	4
3. 연구의 방법	5
4. 연구의 제한점	7
II. 이론적 논의	9
1. 지방자치제도	11
2. 아동·청소년복지	23
3. 아동·청소년복지정책 분석틀	27
III.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29
1. 미국	31
2. 프랑스	80
3. 독일	134
4. 일본	175
IV.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현황	221
1. 조사개요	223
2. 아동·청소년복지업무관련 세부현황	225
3.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역할분담	244
4. 지역별 인구·재정규모 및 업무 일반현황	249
5. 요약 및 정책제언	265

V.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사례	271
1. 농산어촌	274
1) 전라남도 해남군	275
2) 전라남도 무안군	278
3) 경상남도 거창군	282
4) 충청북도 음성군	285
5) 농산어촌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289
2. 중소도시	293
1) 경상남도 밀양시	294
2) 전라북도 군산시	298
3) 경기도 안양시	303
4) 경기도 부천시	308
5) 중소도시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313
3. 특별·광역시 자치구	314
1) 서울특별시 강서구	315
2) 인천광역시 서구	324
3) 대전광역시 동구	328
4) 특별·광역시 자치구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334
VI.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발전방안	337
1. 농산어촌	339
2. 중소도시	342
3. 특별·광역시 자치구	347
4. 종합적인 발전방안	354
참고문헌	363
부록	371

표 목차

<표 II-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20
<표 II-2> Banner(1999, 33.)	22
<표 II-3>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청소년 인권과 복지 증진	23
<표 II-4>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실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24
<표 III-1> 뉴 저지(New Jersey)주 타운(town)별 PUP조례 사례	39
<표 III-2> 종합적 지역중심 이니셔티브(CCI) 사례들	57
<표 III-3> 2004년 시민근로단(Civic Works) 단위 특성	61
<표 III-4> 2004년 Civic Works 결과	63
<표 III-5>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의 기초통계	147
<표 III-6>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각 자치구 연령별 주민수	151
<표 III-7>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2003-2004 청소년 예결산 현황	152
<표 III-8>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청소년 예산 지출내역 현황	152
<표 III-9>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아동·청소년지원 현황(2001~2004)	153
<표 III-10>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민간위탁 청소년기관 및 지원 예산	154
<표 III-11>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민간 청소년상담기관 및 지원 예산	155
<표 III-12>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보육시설 종류 및 인건비 현황	156
<표 III-13>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복지 사업 세부현황	160
<표 III-14>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 사법처리 세부현황(2004)	162
<표 III-15>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성인청소년 사법처리 세부현황(2004)	162
<표 IV-1> 지역별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명	224
<표 IV-2>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관련부서	225
<표 IV-3>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관련업무부서	225

<표 IV-4>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관련업무부서 명칭	227
<표 IV-5>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관련부서	229
<표 IV-6> 조사응답자의 성별	230
<표 IV-7> 아동·청소년 업무에 종사한 총기간	230
<표 IV-8> 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자격증	231
<표 IV-9> 지방자치단체장의 아동·청소년복지에 대한 추진의지	232
<표 IV-10>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233
<표 IV-11> 아동·청소년 복지분야 예산증가의 필요성	233
<표 IV-12>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증액의 필요성	234
<표 IV-13> 아동·청소년 복지 특성화 사업의 유무	235
<표 IV-14>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한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236
<표 IV-15>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인프라 구축	237
<표 IV-16>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의 주민참여 기회	237
<표 IV-17> 중앙정부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과의 유사성	238
<표 IV-18>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의 핵심 대상	239
<표 IV-19>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시설과의 협력관계	240
<표 IV-20>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특성(평균)	242
<표 IV-21>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	245
<표 IV-22>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247
<표 IV-23> 민간기관의 역할과 책임(다중응답)	248
<표 IV-24> 지역별 전체인구	251
<표 IV-25> 지역별 아동·청소년 인구	252
<표 IV-26> 지역별 전체예산	254
<표 IV-27>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255
<표 IV-28> 지역별 주민등록상 인구 1인당 예산	256
<표 IV-29> 지역별 아동·청소년인구 1인당 아동·청소년복지예산	256
<표 IV-30> 시도별 주민등록상 인구 1인당 예산	257
<표 IV-31> 시도별 아동·청소년인구 1인당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258
<표 IV-32> 지역별 아동·청소년복지업무 분담현황	259

<표 IV-33> 지역별 아동·청소년복지업무가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담당인력	260
<표 IV-34> 지역별 아동·청소년복지업무가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담당인력(평균)	261
<표 IV-35> 지역별 아동복지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복지업무담당인력	262
<표 IV-36> 지역별 아동복지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복지업무담당인력(평균)	263
<표 IV-37>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청소년복지업무담당인력	264
<표 IV-38>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청소년복지업무 담당인력(평균)	265
<표 V-1> 사례조사 대상 지방자치단체 명단	273
<표 V-2> 전라남도 해남군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276
<표 V-3> 전라남도 무안군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279
<표 V-4> 경상남도 거창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284
<표 V-5> 충청북도 음성군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287
<표 V-6> 경상남도 밀양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296
<표 V-7> 전라북도 군산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300
<표 V-8> 경기도 안양시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305
<표 V-9> 경기도 부천시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311
<표 V-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317
<표 V-11>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325
<표 V-12> 대전 동구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329
<표 V-13> 연령별 및 보호사유	331
<표 V-14> 교육기관 등 이용실태	331
<표 V-15> 건강	332
<표 V-16> 복지·지역사회	333
<표 V-17> 보육·교육	334

그림 목차

[그림 II-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13
[그림 II-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18
[그림 III-1] 파리시의 청소년정책 실행기관 위치	97
[그림 III-2] 일 드 프랑스 지역의 CIDJ 산하 정보센터 분포도	127
[그림 III-3] 파리시 미션 로칼 분포도	128
[그림 III-4] 독일연방국가의 국가행정체제도	135
[그림 III-5] 독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정책 전달체계	144
[그림 III-6]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크 문장(紋章) 독일에서의 위치와 크기	146
[그림 III-7] 독일 Aichach-Friedberg의 기초자치단체들과 주민수	148
[그림 III-8] 독일 Aichach-Friedberg 자치단체의 청소년청의 행정체계(2004)	150
[그림 III-9] Aichach-Friedberg의 자치구별 1인당 청소년 지원 규모	156
[그림 III-10] Aichach-Friedberg의 자치구별 1인당 긴급 청소년 지원 상황	157
[그림 III-11] Aichach-Friedberg의 자치구별 다문화청소년 지원 상황	158
[그림 III-12] Aichach-Friedberg의 청소년 범죄 가담 종류 상황 ...	163
[그림 III-13] Aichach-Friedberg 자치구별 이혼소송 중인 청소년현황(2004)	164
[그림 V-1]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319
[그림 V-2] 지역 우수학생에 대한 차별화 성장 지원	320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제한점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지방의원 선거를 필두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이래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이제 지방분권의 역사도 10년이 넘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정치적, 사회적 조직화를 통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이자 환경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 내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윤찬영, 2003).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원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청소년복지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복지정책¹⁾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청소년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새로운 정책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데 비해, 그 밖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정책수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정책은 해당 지역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기보다는 국가차원의 정책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2008년 2월에 시작된 새 정부는 기존의 여성가족부의 영유아보육정책,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의

1) 이 연구에서 다루는 청소년복지정책은 기존의 아동 복지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가 시작된 후 정부의 부처가 통합되면서 아동과 청소년 업무가 통합됨으로 인해 차후 연구결과와 활용성과 실효성을 감안할 때 두 분야의 정책을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란 용어를 아동·청소년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아동과 청소년 복지정책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청소년정책을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실로 통합하였다.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통합된 후 아동·청소년활동정책과 아동·청소년복지정책으로 조정되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새로이 조정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므로 지역사회가 미래 사회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장여건에 맞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단위보다는 청소년의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 청소년의 욕구와 지역의 환경적, 물질적, 인적 특성이 반영된 특성화된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이 설정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개별 도시 중심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개발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에 250여개 기초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중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거나 특성을 지닌 몇몇 사례를 지역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군단위의 농산어촌, 특별·광역시자치구, 중소도시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선정하고 면접조사를 통해 그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국제사회의 지역사회 중심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동향과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 중심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성공요인을 추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각 지역의 규모와 특성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발전방안을 세 유형별로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첫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시, 도)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자

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보고서를 수집하여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설문지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특히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사업과 예산 현황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정리 수록함으로써 차후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형평성 있는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

셋째, 설문조사 결과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추천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사례를(농산어촌형, 중소도시형, 특별·광역시 자치구형 각각 3~4개씩) 선정한다. 선정된 사례를 ‘아동·청소년복지정책 분석틀’에 근거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넷째, 인터넷 자료조사를 토대로 직접 방문조사 등을 통해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사례를 선정하여 각 국가의 정부조직과 지방자치제의 실제 활용정도,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정책 성공요인,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 민간기관의 참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섯째,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를 파악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지역의 특성(도시, 농산어촌)을 고려하여 농산어촌형, 중소도시형, 특별·광역시 자치구형 등 세 유형의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3.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선행 문헌 및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이론을 정립한

다. 또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경향과 현황을 파악한다.

2) 설문조사

첫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시, 도)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보고서를 수집하여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설문지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3) 사례조사

(1) 국내 사례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타 도시에 비해 비교적 전체사업예산과 자체사업예산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고, 사업수가 많은 등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정과정은 첫째,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30개 정도의 자치단체를 일차적으로 선정하고, 둘째, 인천경기지역,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을 고려하여 군지역 농산어촌, 중소도시, 특별·광역시 자치구 등 도시급별로 각각 3-4개씩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중 담당자의 면담거절로 인해 지역 안배에 배치된 경우도 있다. 사례조사는 도시급별로 3명의 연구자가 3-4개씩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실시하였다.

(2) 외국 사례조사

문헌연구와 인터넷 자료조사를 토대로 직접 방문조사와 전문가 집필의뢰 등을 통해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한다. 국내 사례조사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복지정책 분석틀’에 근거해 분석한다.

4)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방법과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개념, 범주, 조사분석틀 등의 연구내용과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

5) 전문가 워크숍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학자, 관련기관 실무담당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한다.

4. 연구의 제한점

설문조사와 관련한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에 대한 명확한 합의 부재로 인해 응답한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규모에 편차가 존재한다. 2007년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을 조사하고 그 세부사항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강당 설립 등과 같은 교육관련 예산을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에 포함시키거나 아동·청소년 육성 예산을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에 해당사업비를 포함시킨 경우, 다른 지방자

치단체는 포함시키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자가 미리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에 대한 구체적 범주를 제시하였지만, 복잡한 예산에서 이러한 구체적 범주에 근거한 각각의 예산을 분리하여 응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한계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규모가 과대 추정되거나 아동·청소년 1인당 평균 연간 세출 예산 또한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 수와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을 순수하게 응답자의 응답에 기초하여 분석한 관계로 행정자치부의 통계치나 인구통계연보상의 통계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료의 부분적 결측치로 인해 통계치 합산치가 부분의 합과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예컨대, 국비, 시도비, 자체예산을 더한 값과 통계상 전체 예산이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사례별로 일부 값이 결측 되는 경우가 있어 국비평균, 시도비 평균, 자체예산 평균 등의 합이 합계비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전수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추진 실태의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고, 거의 전무한 상태였던 지방자치단체별 아동·청소년 인구별 복지예산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열악한 아동·청소년 복지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Ⅱ. 이론적 논의

1. 지방자치제도
2. 아동·청소년 복지
3. 아동·청소년복지정책 분석틀

II. 이론적 논의

지방자치제도, 아동·청소년복지, 아동·청소년복지정책 분석틀 등 관련 개념과 이론을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정립한다.

1. 지방자치제도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래로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1991년 지방의회 구성에 이어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 투표를 통해 지방자치체가 본격 실시되면서 지역사회복지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실시되고, 공급자 중심의 중앙집권적 복지로부터 지방분권적 복지로의 방향전환을 기대하며, 지역주민의 복지의식도 수동적 입장에서 적극적 입장으로 변화되고 있다.²⁾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 실시초기의 기대와 전망은 지역 복지부분 특히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별 별다른 특색을 보이지 못하며 중앙정부의 하위기관으로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지방정부가 많은 실정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만은 아니다. 일천한 지방자치의 역사와 강력하고 권위적인 중앙정부 등이 지방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전 지방자치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개념 및 필요성, 유형, 사무의 분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은 임의적으로 정의할 수 없겠으나 지방자치제도가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본질적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는 대

2) 이병렬(1996), ‘지방정부의 지역복지대안에 대한 경험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5.

부분의 학자들 견해가 일치한다. 즉 지방자치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상의 표현이며 분권화의 정신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를 포괄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³⁾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는 ① 일정한 지역 내 주민들이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아 ② 주민의 복리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③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④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⑤ 스스로 경제적 부담 하에 집행함으로써 ⑥ 결과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지방자치는 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구축 ② 주민에 대한 민주정치의 교육훈련 ③ 주민의 정치 및 행정에의 참여 보장 ④ 지역별 실정에 맞는 행정을 통한 행정효율증대 ⑤ 주민 스스로의 행정에 의한 책임과 주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의 유형

지방자치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중앙정부)와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이다.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중앙정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 이를 단체자치라 하고,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단체 안의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즉 주민의 자치운영에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 이를 주민자치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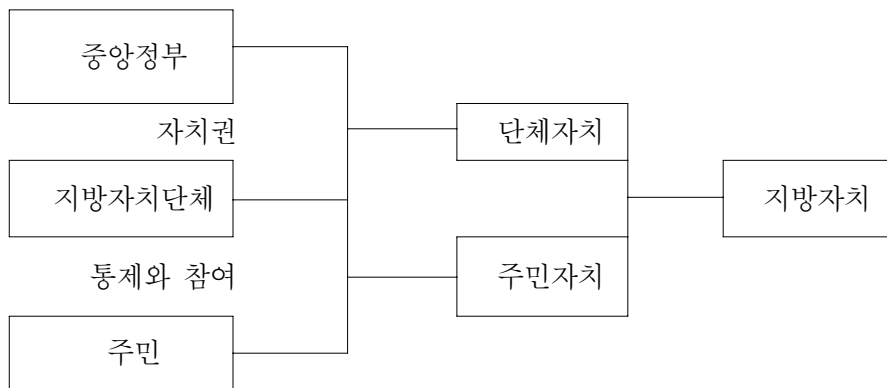
3) 박응격(2003), 지방행정론, 신조사, 서울, pp.24-25.

(1) 단체자치

단체자치는 이를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하는 바, 국가로부터 독립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라는 뜻이다. 즉,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방적 사무는 가능한 한 국가의 관여 없이 단체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에서 독립된 공법인으로서 자치권을 갖고 있어,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형태의 자치를 단체자치라고 하는 것이다.

(2) 주민자치

주민자치는 이를 정치적 자치라고도 하는 바, 지방의 사무를 그 지방의 주민에 의해서 처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때 주민은 대표자를 선출하여 이들에게 행정처리를 맡기거나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스스로의 의사를 실현시키기도 한다.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자치사무를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의의를 찾는 것이 주민자치이다.



[그림 II-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3)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구성요소

지방자치단체란 인간의 사회적·경제적인 생활이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적 공동단체를 일컫는 바, 다른 말로 지방자치체, 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 지방단체로 불리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 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권(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장소로서의 관할 구역, 인적 요소로서의 주민, 법적 요소로서의 자치권을 그 구성의 3대 요소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바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어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공간적인 범위를 말한다. 외국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자치단체를 통합해 감으로써 관할 구역의 면적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비교적 넓은 편이다.

중전 도농분리적 조정방식은 도시개발과 산업화에 기여해 왔다고 하지만, 도시·농촌문제의 누적적 악순환이라는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고, 또한 지역의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군부지역의 행정·재정력의 약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인위적인 분리, 일반행정비의 과다지출과 지역개발투자의 효율성 저하 등의 행정·경제·사회적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지방자치실시를 계기로 시·군 통합으로 대표되는 「도농통합형 행정구역조정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도농통합형 행정구역조정방식은 도농분리적 행정구역개편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과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광역적인 지역개발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2) 주민

종래 주민은 행정의 객체라든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등 단순한 권리주체로 인식했다. 그러나 주민의 행정에의 참여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가운데 1999년 8월 조례 제개폐청구제도, 감사청구제도 등이 도입되고, 최근에는 주민투표제도 등 주민 직접참여 및 주민통제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주민이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라는 발상의 전환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의 권리로는 재산 및 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 등이 있다.

(3) 자치권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그 소관업무를 자기의 창의와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자치권의 유래에 관하여 자치권은 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고유권설,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전래설, 법령의 범위 안의 독자성을 헌법이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인정된다는 제도적 보장설이 있으나 3자 모두 일면적인 타당성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①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능으로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는 기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권과 규칙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② 자치조직권

지방자치단체에는 자기의 행정기구, 정원, 보수, 사무분장 등을 자주적으

로 결정할 권능이 있는 바 이를 자치조직권이라 한다. 영·미국에서는 자치조직권이 넓은 반면, 대륙계 국가에서는 비교적 폭넓은 제한을 하고 있다.

③ 자치재정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 관리하는 권능을 말한다. 자치재정권은 재정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작용과 재산 및 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을 관리하며~”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재산관리권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치재정권의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7장 재무와 지방재정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자치재정권의 내용으로 재정권력작용과 재정관리작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징수하고, 그들의 체납에 대하여 강제집행권(법제140조)과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서 조세 등을 포탈한 자,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등에 대한 벌금, 과료를 징수할 수 있는 재정형벌과 과태료와 같은 재정질서벌을 과할 수 있는 것 등은 자주경쟁권력작용의 예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행하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행할 수 있음은 자주재정관리작용의 예이다. 어느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이든 그 재정력의 한계 때문에 지방자치가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④ 자치행정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사무를 가지고 원천적으로 국가의 관여를 받음이 없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헌

법 제 117조에 의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즉, 같은 광역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특별시와 광역시, 도가 다르고, 자치구와 시, 군이 다르며, 시중에서도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일반시 보다는 폭넓은 자치행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은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권력행정작용과 관리행정작용을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통제작용으로 행하고, 경제, 사회의 질서를 위하여 각종 규제와 부담을 과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사회복지행정을 수행하며, 민간의 활동을 지원, 보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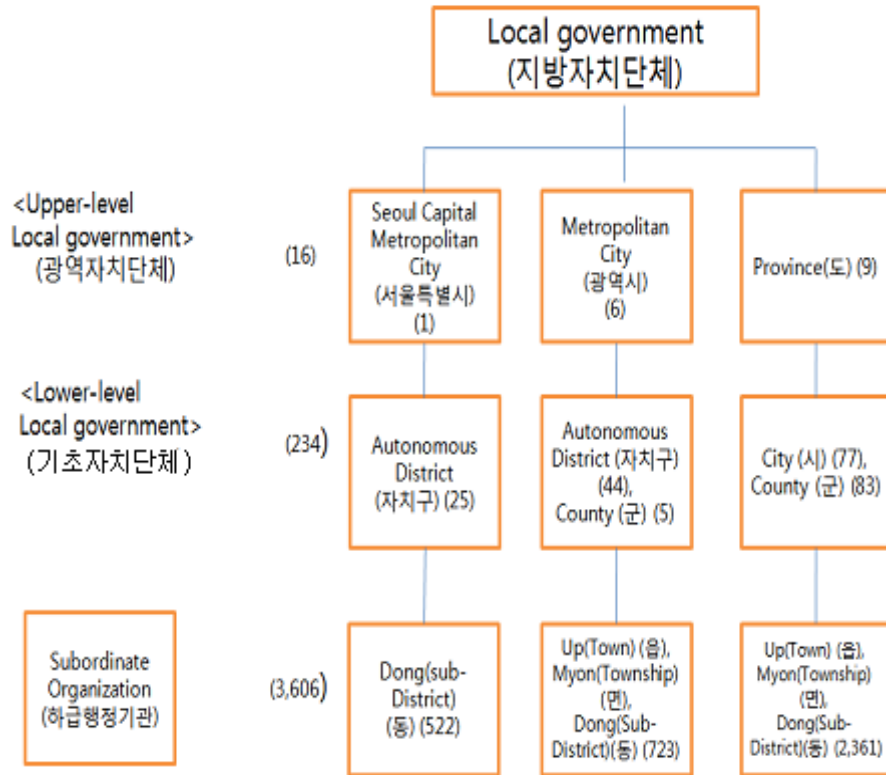
4)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우리나라는 일반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계층은 단층제, 중층제 또는 3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계층은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중층제(영국, 독일, 일본)를 이루고 있는 바,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있으며 이는 상급자치단체 또는 중간자치단체로 불려지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시·군·자치구가 있으며 이를 하급자치단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계층제도 중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의 비대화 및 타 시·도와의 격차, 도의 중간자치단체로서의 기능중복문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에 있어서 자치계층으로서의 자치구제도의 필요성 여부, 광역시제도의 존폐여부 등이다.

(1) 광역자치단체

① 특별시 : 특별시란 수도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위·조직 및 운영상의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서울시를 지칭한다.

② 광역시 : 대도시 가운데 법률에 의하여 도로부터 분리되어 도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광역시제는 인구 100만을 초과하는 대도시를 농촌문제중심의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관할하에 둠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한 것이다.



[그림 II-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③ 도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최광역의 자치단체이다.

④ 특별자치도 :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지위와 행정체계를 부여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도 행정 체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시군이 폐지되고 도지사 가 시장을 임명하는 행정시와 읍, 면, 동이 존재한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

① 시 :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설치하고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처리하게 하고 있다.

■ 통합시 : 1995년부터 새로운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탄생하였으며 행정상 각종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도농복합시는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인구 15만 이상의 군으로서 당해 군 내에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등이 시로 승격한 경우이다.

② 군 : 도 관할구역 내의 농촌지역에 설치된 기초자치단체이다.

③ 자치구 : 대도시 구의 특수성과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조가 단층제임을 고려하여 1988년부터 법인격을 부여받은 기초자치단체이다. 이러한 자치구는 대도시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위적으로 확정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군과는 다른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상호간 대등한 관계를 가지며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즉, 우리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상하감독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기능을 나누어 직무를 분담처리하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환경의 변화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의한 광역적 사무의 공동처리 방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현실에 있어서는 본격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거나 부족한 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 야기되는 문제를 광역행정체제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광역행정체제의 골격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조합 및 사무의 위임, 위탁에 의한 처리방식이 그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우리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긴 외국의 경우 사무의 공동처리방식이 많이 활용되는 등 지방자치간 협력체도가 많이 발전되고 있으나 지방자치 실시 초기인 우리나라의 경우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능배분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고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II-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⁴⁾

구분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내용	자치단체의 책임과 부담하에 당해 구역 주민의 공공 복리를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지방적사무)	법령의 개별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되었거나 소속된 사무(지방적+국가적사무)	법령 등에 의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단체의 기관장에게 위임된 사무(국가적 사무)
재정	자체재원 (국가보조기능)	국가의 사업비 일부보조	전액국비부담
의회	지방의회의 통제 대상	지방의회의 통제 대상	통제대상의 원칙적 배제
감독	최소한의 국가감독	제한된 범위내의 감독	강력한 국가감독
배상	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자치단체 공동책임	국가 책임

4) 안용식·강동식·원구환(2006),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서울 p.41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는 것의 실효성은 국가의 사무, 지방의 사무라는 구분 자체가 의미를 잃고 오히려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라고 생각되어야 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이후 복지의 경우 지방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 국가가 지방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 등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중앙정부의 책무성이 강조된다 할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에도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무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수의사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는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한, 기관은 국가 등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병유하게 되며 국가 등의 기관의 입장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2) 기능의 배분

행정사무 배분의 문제는 최근의 행정수요에 따라 그 배분을 실시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사무기능의 배분에 따른 자원배분과 보조금제도의 적정한 배분 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무배분에는 개별적 지정방식, 포괄적 위임방식 그리고 절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즉 개개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무배분을 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지방자치법에 광역단체가 처리할 사무와 기초단체가 처리할 사무 및 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기관위임사무를 예시하여 일괄 배정하는 이른바 예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7) 지방자치와 로컬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는 재정위기의 심화, 시장경쟁 기제의 활용에 대한 이념적 합의, 세계화, 정부실패, 신공공관리, 사회적 변화와 복잡성 증대, 통치양식의 다원화, 정부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 퇴조 등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논의배경을 보면 위의 표에서와 같이 전통적 합리성에 기초한 지방정부

의 운영방식에 대한 비판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다시 지방정부의 외부환경 변화와 내부환경 변화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외부환경 변화는 포스트포디즘적 사회 등장과 이로 인한 조직환경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이념적 지향성을 변화시키고 전통적 관료제의 정부실패 현상에 대한 치유를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표 II -2> Banner(1999, 33.)⁵⁾

구분 변천	규제자	서비스 공급자	지역발전자
목적	합법성 균등성 공공질서	시민만족 효율성 경쟁	사회적 응집력 참여 소유
매개체	국가, 정부	시장, 계약	네트워크, 참여
논의 유형	법률적 이해	경제적 이해	정치적 이해
	government 계층제+법률 중심 지방정부 : 유일독점제	—————→	governance 여러 사회집단의 수평적 협력 지방정부 : 단지 주요역할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적 요소를 살펴보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보조성과 다극중심성에 대한 개념으로 등장한 특정성, 민간재보다 공공재에 대한 관심, 서비스공급 결정자와 서비스 생산자와의 구별, 시민의식의 함양, 지역공동의 소유의식과 의무감 등이 있는데 이들 요소가 유기적 관계 속에 개방적 참여체계를 모색하고 지방정부 조직 이외에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상호지속

5) 재인용, 앞의 책, p.587.

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의 구축과 이를 지원·조정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는 로컬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한 인식론적 기초라 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복지

아동·청소년복지의 개념은 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되어 왔다. 좁은 의미의 아동·청소년복지는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버려지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전문적 활동을 일컫는다. 넓은 의미에서는 가족이나 사회기관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행복과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사회적·생물학적 잠재력을 계발시켜주기 위한 각종의 활동을 의미한다(윤철경, 2005). 이 연구에서는 좁은 의미의 아동·청소년복지 개념을 선택하여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청소년과 위기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기본틀로 제시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청소년 인권과 복지 증진’ 중 ‘2. 어려운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와 ‘3.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의 두 영역의 정책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표 II-3〉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청소년 인권과 복지 증진

소영역	세부추진과제
2. 어려운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	1. 어려운 청소년 생활 및 자립 지원 1) 저소득층청소년 생활 및 자립 지원 2) 저소득층청소년 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확대 2. 어려운 청소년 교육·문화 지원 1) 저소득층청소년 교육·문화 복지확대 2) 장애청소년 교육·문화 복지지원 3.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소영역	세부추진과제
3. 위기청소년 사회통합 지원	1.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1) 위기청소년 치료·자활·자립 지원체계 확립 2)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운영 3) 학업중단청소년 진로지원 4) 보호관찰, 교정 및 보호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 2.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보강 1)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재정비 및 확대 2) 청소년 복지지원 기능확대 및 운영내실화 3) 위기청소년 상담확대 3.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 1) 비행청소년 회복적 보호·지원 추진 2) 청소년 비행예방 및 연계체계 구축·활용 4.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둘째, 동시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복지정책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중 아동·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 또한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로 정부부처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복지정책과 아동복지정책 업무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실’로 통합되었는데 여기에 포함된 복지정책들이 차후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기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복지과,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아동·청소년보호과,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의 추진정책을 조사내용으로 다루고자 한다.

〈표 II-4〉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실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부서명	추진정책
아동·청소년복지과	1. 아동·청소년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빈곤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문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3. 아동자산형성 지원 등 자립지원을 위한 사항 4.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5. 청소년 우대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및 시민운동의 지원

부서명	추진정책
	6.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등의 운영·지원 7.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및 격려사업 8. 청소년증 발급 및 운영 9. 청소년복지·지원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10. 지역사회 아동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1. 아동의 급식에 관한 사항 12.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아동의 지원 및 관리 13. 아동의 입양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아동입양에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15. 입양주간 및 입양의 날에 관한 사항 16.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
아동·청소년 상담자활과	1. 청소년 상담·자활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청소년전화(1388) 운영 3.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도·감독 4.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 위기관리 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5.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연수 등 6. 민간 청소년상담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7. 비취학·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 8.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9. 청소년쉼터(일시, 단기, 중장기)의 운영·지원 10. 가출청소년의 상담·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1. 아동학대의 예방 및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 12.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및 지원 13.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 및 가해청소년의 상담·치료 및 자립지원 1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5. 청소년 상담·자활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16. 근로·장애·탈북청소년의 자립 및 자활 지원 17. 위기(가능)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연결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운영 18. 위기(가능)청소년의 취업·창업 지원 등 실업해소에 관한 사항 및 진로지도 19. 청소년 인턴취업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서명	추진정책
아동·청소년보호과	1.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아동안전 관련 업무 관계부처간 조정 3.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및 연구 6.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단속의 총괄 7.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보호 관계자 교육 및 단체협력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0. 시민단체 등의 아동·청소년보호활동 및 특성화사업 지원 등 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유해행위 등 생활환경 정화·개선계획의 수립·시행 14. 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 유해환경 규제 15. 청소년 유해약물의 사용 및 유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중독청소년 지원 16. 청소년 유해업소의 자체정화·개선활동 지원 17. 청소년 비행·폭력 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8. 비행·폭력 등을 행한 일탈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 19. 비행·폭력 등을 행한 일탈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 20.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1. 청소년 후견인 제도의 운영 22. 비행·폭력 등을 행한 일탈청소년을 위한 선도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23. 아동안전 관련 업무의 부처간 협의 조정 24.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아동·청소년 매체환경과	1. 아동·청소년 유해매체물 환경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시행 3.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4.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및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부서명	추진정책
	5.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간행물 등의 표시·포장·전시·진열·판매금지에 관한 사항 7. 음반·음악파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유해 외국매체물의 국내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감시 및 대책 수립 11. 청소년 유익매체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12. 청소년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인터넷 등 유해매체물 중독청소년 지원 13. 청소년 참여 창작 미디어 지원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1.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2.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등록정보의 열람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제도·교육 6.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가해아동·청소년의 상담 및 치료에 관한 사항 7.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 8. 아동·청소년 성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3. 아동·청소년복지정책 분석틀

1) 예산분석

중앙정부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예산을 근거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차원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자체 정책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규모와 특성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2) 사업분석

선정된 우수사례를 다음과 같은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파악한다.

- 개발배경 : 사업의 목적, 목표와 관련한 사업개발 배경을 파악한다.
- 사업대상 : 사업의 주수혜대상 혹은 부가적 수혜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파악한다.
- 사업내용 :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 파악한다.
- 사업제공자 : 사업의 목적, 실시의 당위성을 제시한 주체 혹은 사업 운영 주체에 대해 파악한다.
- 재정 : 재정의 중앙, 지방간 배분상황 등 재정관련 세부사항을 파악한다.
- 전달체계 : 사업의 내용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조직적, 체계적 과정을 파악한다.
- 정책효과 : 당 사업이 사업대상의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를 파악하고 이의 장기적 효과를 예상한다.

Ⅲ.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1. 미국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III.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이 장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별로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이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아동·청소년관련 정책과 우수사례를 심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각국의 지방자치제의 특성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국가별로 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동향, ② 다양한 정책 소개 ③ 지자체의 지역사회 기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사례 분석 ④ 한국정책에의 시사점 등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미국⁶⁾

1)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동향

미국의 아동·청소년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중앙정부차원의 중장기적 정책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나 기본 법제 같은 ‘기본법’ 또는 종합현황자료로서의 ‘청소년백서’같은 것은 찾기 어렵다. 즉, 한국과 같은 의미의 ‘국가 청소년정책(National Youth Policy)’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제반 측면을 보건 보호, 교육, 복지, 약물과 폭력예방 및 참여 증진 등을 포함하는 하나의 통합된 접근법으로 엮어내는 종합적 정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가, 기금 지원자, 공무원, 비영리 단체 및 비공식 청소년운동가들이 모두 하나의 종합적이며, 통합된 국가 청소년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정책들이 산재해 있지만, 연방정부는 ‘청소년을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도록 하는 정책의제를 결여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6) 이 부분은 천정웅 연구위원(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 집필하였음.

연방정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은 여러 관련 기관에 산재해 있으며 상호 연계협력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미국청소년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유엔(United Nations)에서도 미국에는 비록 보건인간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여타의 연방부서들이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들을 각 부문에 걸쳐 다루고 있지만,’ ‘전국단위에서의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기관은 없다’고 본다. 실제로 연방정부의 수많은 부서들이 각기 부분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 서비스 및 연구를 지원하거나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연방 프로그램은 교육, 소년사법, 보건서비스 및 보험, 아동복지 및 사회서비스, 인력, 노동 및 인권정책들을 아우르고 있다.

연방정부차원의 단일한 국가청소년정책이 없다고 하지만, 미국의 실제적인 청소년업무는 주정부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단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미국 전역을 통해 수많은 프로그램, 이니셔티브(Initiative) 및 활동들이 각 주와 지역사회별로 실행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이나 개인 이니셔티브에 의하기도 하고 또 전국적인 단체나 지역단체에 의해 실행되는 것도 있다.

다양한 청소년업무들이 국가청소년정책의 틀이 없는 가운데서도 실행되고 있다는 것은 주정부들이 연방정부차원의 통합청소년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각 지역사회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현장’ 활동과 프로그램들에 의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차원의 통합 조정된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어떤 주는 주의 청소년정책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들을 개발한 전국적 단체들의 노력을 통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로는 전국주지사연합(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전국범죄예방위원회(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및 미국 보건인간서비스부 가족청소년서비스국(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of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등이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연구 및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주정부단위에서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아이오와(Iowa)주는 전체 주에 걸친 청소년개발연합단체(Collaboration for Youth Development)를 만들고, 이를 40여 개의 주정부기관, 지역사회단체, 연구기관 및 비정부 단체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 관련 서비스를 위한 공통의 목표와 성과를 정의하고, 주 프로그램 정책과 재정지원을 조정하고, 청소년을 주와 지방의 계획수립에 참여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는 1999년에 청소년개발사무국(Office of Youth Development)을 만들고 주정부와 지방 차원에서 효과적인 청소년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 기관도 역시 청소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적으로 주청소년정책 초안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개의 주정부 사례는 청소년개발 전략을 사용하여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경우이다.

다른 주들은, 예컨대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정부가나 오레곤(Oregon)주 같은 경우는 그들 주차원의 접근법을 청소년범죄예방에 두고 주 청소년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개발모델 보다는 문제나 결함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기에 입각하여 청소년복지정책이 입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범죄와 폭력예방을 위해서 주의 자원들과 효과성을 최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관련기관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30개의 기관과 정부부서들이 연합하여 ‘초점의 전환(Shifting the Focus)’이라는 기관간 공동제휴 기구를 구성하였다. 서로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초점을 전환하여” 공동제휴를 통해 예방적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전달하려는 노력이다.

오레곤(Oregon)주의 경우, 1999년 이른바 SB555라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는 범죄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전체 주차원의 접근법을 입법을 통해 명문화한 것이다. 현재까지, 오레곤주는 하나의 통일된 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도구와 구조를 계획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오레곤 주정부는 공통의 계획수립 원칙, 조기 아동기관간 팀구성, 청소년범

죄예방 사전검사 도구개발 및 보고과정을 합치는 메카니즘의 확립 및 각 기관간에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조정하는 수단을 개발하는 등의 몇 가지 일에서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가 청소년복지정책이란 용어를 통해 미국의 청소년정책을 보게 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 미국 청소년정책의 현실이다. 청소년복지의 개념을 이 연구에서와 같이 협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미국은 전통적 의미의 ‘아동복지’정책과 청소년문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의 한 부분으로서의 정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 위탁양육, 입양문제 등이 대표적이며, 후자의 경우 노숙청소년문제, 청소년약물남용, 폭력, 10대 임신, 소년사범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에 대한 미국의 각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접근은 앞서 말한 두 가지 방향, 즉 청소년개발모델이거나 아니면 청소년문제모델에 입각한 것으로 대별된다. 미국의 각 주들이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또 함께 일하는 것이 증대됨에 따라 주 청소년정책수립을 위한 기회도 증가되고 있다. 각 주들이 연방정부차원의 청소년정책수립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시간이 지나고 또, 보다 많은 주정부들이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을 개발하게 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접근법을 찾아내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한 가지 경향은 전통적인 청소년문제 중심 모델에 입각한 주 대신에 청소년개발모델을 강조하는 주들에서 청소년들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다양한 활동들이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미국 청소년정책에 대한 이러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정책의 동향과 사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정책의 특성을 연방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청소년흡연규제정책과 노숙자청소년정책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지

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정책 사례 중에서도 미국이 중소도시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빈곤아동과 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적 지역 이니셔티브(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 CCI)’에 대해 소개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와 프로그램을 몇 가지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에서는 연방차원의 단일한 청소년정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50개 모든 주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찾기 어렵다. 어떤 하나의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사례를 단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지방청소년정책의 한 사례에 지나지 않으며, 주정부나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를 주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에 말한 몇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대해 가장 접근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정책의 구조와 일반사례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청소년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이 어떤 관계를 갖고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복지정책 중에서도 우선 청소년약물문제와 관련한 정책의 하나로 청소년들의 담배 ‘소유, 사용, 구입(Possession, Use, and Purchase : PUP)’과 관련된 정책이 미국 주정부차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으로 미국의 한 개 주를 선정하여 노숙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보호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소개할 것이다.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례는 미국의 청소년정책이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주정부를 중심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는 특징을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특히, 노숙자 보호정책의 경우에는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점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1) 연방, 주 및 지방정부 간의 복지정책 관계성 : 청소년흡연규제 정책

① 약물규제와 흡연규제 정책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규제는 1960년대 이래로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역정부의 주요 청소년정책 주제로 논의되어 왔다. 미국의 약물정책은 20세기 초 몇 개의 주요한 법률들이 입안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특히 1970년대 말부터 미국내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의 약물오남용과 관련한 청소년흡연규제 정책 또한 연방정부를 비롯하여 주정부와 지역정부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정책의 하나로 꾸준히 시행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청소년정책이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주정부를 중심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특징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청소년들의 담배 소유, 사용, 구입에의 접근(Possession, Use, and Purchase : PUP)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흡연자의 약 80%가 18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며, 매일 미국에서는 약 4,400명의 12세~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첫 흡연을 경험하며, 이 가운데 약 2,000명 정도가 매일 흡연을 하게 된다고 한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흡연 양상이 지속된다면, 약 5백만 명의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흡연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많은 통제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청소년들의 흡연예방과 감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가운데에는 가격 및 세금인상, 공공장소, 직장 및 학교에서의 흡연금지,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 소유, 사용 및 금지를 강제하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물론 담배광고금지, 판촉제한, 언론을 통한 흡연금지 캠페인, 학교중심 예방 프로그램 실시 등 담배 통제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들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예컨대, 현재의 담배광고규제는 지난 몇 10년 사이에 걸친 법제화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971년에 방송광고금지법이 생김으로써 텔레비전을 통한 담배광고가 금지되고, 담배회사들은 광고비용을 잡지나 다른 스포츠 후

원을 통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1998년에는 46개 주와 담배회사간에 합의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와 선전 및 판촉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규제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2005년 1월 현재, 37개 주와 지역정부들이 담배생산 조세를 인상하여 재원을 늘리고 청소년 등의 담배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예컨대, 뉴욕시(New York City)는 담배세를 1팩당 1.42달러 인상하였으며, 버지니아주의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와 버지니아 비치(Virginia Beach) 및 일리노이주의 시카고(Chicago) 같은 도시는 자체 담배세를 인상하였다. 청소년흡연억제와 관련된 정책은 이와 같은 세율인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유, 사용 및 구입을 억제하는 법은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소유하거나 사용 및 구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청소년흡연을 억제하려는 정책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② 청소년 담배 소유, 사용, 구입(PUP) 규제정책

담배 소유, 사용, 구입(PUP : Possession, Use, and Purchase) 관련 정책은 청소년의 담배접근 통제정책이며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담배통제정책을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관련한 PUP법안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 지역단위에서 많이 확산되고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미성년자의 담배 소유, 사용, 구입을 제한하는 주들의 수가 급속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88년 이래 이러한 PUP법안의 수는 급격히 증가되었다. 이러한 법률의 수는 각 주별 평균이 1988년에 0.45였으나 2004년에는 1.85가 되었다. 1988년에는 17개 주만이 소지, 사용, 구입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관련법을 시행했지만, 2004년에는 45개 주가 적어도 한 개의 PUP법을 제정하였다. 주 정부 이하인 지역정부차원에서도 타운, 도시 및 마을 등을 포함하여 최근 PUP조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PUP조례들의 종합적인 전국적 통계는 찾기 쉽지 않다. 그러나 비흡연가 권리재단(ANRF : American Nonsmokers' Rights Foundation)은 전국 44개 주에 걸쳐 약 2,491개 지역에서 조례를 수집한 바 있는데, 2004년의 경우, 395개 지역정부(약 16%)가 적어도 한 개의 PUP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네바다(Nevada), 뉴저지(New Jersey), 뉴욕(New York),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워싱턴디시(District of Columbia) 등의 5개 주는 어떠한 주정부 차원의 PUP법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PUP법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주들은 범칙금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청소년을 위한 범칙들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봉사, 금연프로그램 수강명령, 금연교육수업 또는 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주들은 부모들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는 과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부 주의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이 법정에 나오도록 하고 있거나, 부모 중 한 명과 같이 나오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플로리다, 인디애나, 오레곤 및 유타 등 일부 주에서는 PUP법 위반자를 포함하여, 미성년자의 담배관련 범법을 심리하기 위해 특별한 10대 법정을 설치하고 있기도 하다.

일부 주는 두 번째 또는 계속되는 PUP법 위반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적용하여 범칙금을 올리고, 봉사명령 등과 같은 다른 범칙들과 함께 부과한다. 플로리다는 PUP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범칙 이외에도 운전면허정지를 같이 부과하기도 하는 하나의 사례인데, 이러한 것이 누진 범칙제도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주별로 지역에 따라 실행하는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요약하면, 대체로 PUP위반자에 대한 범칙과 법집행 실체는 주별로, 또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지역수준에서 많이 실행되고 있는 편이다.

③ 뉴저지(New Jersey)주 및 지역타운의 PUP정책

실제로 뉴저지(New Jersey)주의 경우는, 미성년자의 담배 소유, 사용, 구입을 금지하는 주법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주에서도 최근 많은 지역 타운들에서 PUP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저지(New Jersey)주의 지역별 PUP조례에 대한 정보를 보면, 2003년 말 현재, 48개의 지역정부(Municipalities)들이 미성년자의 담배 소유, 사용 및 구입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약 70% 이상의 조례들이 1998년 이후 통과되었다. 이들 지역사회 가운데 약 80% 이상에서는 현지 타운의 경찰부서에서 법집행을 맡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차원의 PUP법제가 없는 몇 안 되는 주의 하나로서 뉴저지(New Jersey)주의 경우는 주정부와 별도로 각 지역 차원의 법집행을 위한 지지와 자원들도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주차원의 PUP법률들의 지역 조례 및 지역 법집행은 결국 지역의 경찰 부서가 해당 지역의 수요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됨으로써 시간과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정부는 더 많은 PUP조례들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집행하는 일이 점차 큰 과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 뉴 저지(New Jersey)주 타운(town)별 PUP조례 사례

지역 명	목적	적용범위	법집행책임	위반자조치
Flemington (Hunterdon 카운티)	소유 사용금지	공공지역	경찰 보건관리 시민	구두경고 부모고지
Gloucester City (Camden 카운티)	구입 사용금지	공공지역 학교	경찰	서면경고 부모고지
Lawrence (Mercer 카운티)	사용 구입금지	공공지역 학교	보건관리	서면경고 지역사회봉사
Evesham (Burlington 카운티)	소유 사용금지	모든 공공지역	경찰	서면경고 부모고지
Ventnor (Atlantic 카운티)	소유 사용금지	공공지역 학교	경찰	서면경고 부모고지
Jefferson (Morris 카운티)	소유 사용금지	공공지역 학교	경찰 보건관리	범칙금
Medford (Brulington 카운티)	소유 사용금지	공공지역 학교	경찰	서면경고 부모고지
Cinnaminson (Burlington 카운티)	소유, 사용 구입금지	공공지역 학교	경찰	서면경고 부모고지
Washington (Mercer 카운티)	사용금지	공공지역	경찰	범칙금, 법정 지역사회봉사
Carlstadt (Bergen 카운티)	소유 사용금지	공공지역 학교	학교 경찰 시민	구두경고
Rutherford (Bergen 카운티)	사용금지	공공지역	경찰	구두경고 부모고지 금연작문
East Rutherford (Bergen 카운티)	소유 사용금지	공공지역	경찰 시민	구두경고 부모고지

각 주정부 차원에서 실행되는 PUP법률들은 지역 타운 수준에서도 같이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청소년복지정책의 하나로서 청소년흡연문제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 PUP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조례제정과 법집행에 대해서도 같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청소년의 흡연을 줄이거나 예방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해주는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PUP정책에 대한 찬반 양론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PUP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흡연에 따른 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개인적 책무성과 책임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주 정부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동시에 법집행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어려움을 말하고, 또한 이 법이 과연 청소년의 흡연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 정책의 찬반론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의 내용에서는 더 다루지 않겠지만, 이는 결국, 미국의 청소년복지정책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수립되고 집행되는지를 알게 해 주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청소년흡연 규제를 위한 PUP법안과 그 집행에 관한 이해는 미국의 청소년정책이 연방정부차원에서보다는 주정부차원을 중심으로 법제화를 비롯한 정책이 수행되고 있으며, 그 실행은 주로 지역정부 차원, 즉 도시, 타운 및 마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청소년정책과 지방청소년정책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는 데 의미를 갖는다.

(2) 연방법안의 주정부 실행 사례 : 댈러스(Dallas)시 청소년노숙자 정책

위에서 간단히 소개한 청소년흡연규제 정책사례가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역정부와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한다면, 이제 소개할 두 번째 사례는 연방

정부에서 입안된 청소년관련 법안이 주정부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집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미국 남부 텍사스(Texas)주의 델러스시에서의 청소년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① 델러스시 청소년노숙자 정책 개요

연방 ‘매킨니-벤토 노숙자 지원 교육증진법 1987(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Education Improvement Act of 1987)’은 미국에서의 노숙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보장해주는 법안이다(Title VII B-McKinney-Vento Act). 미국의 노숙자 문제는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동과 청소년 노숙자들의 경우는 정규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방, 주 및 지역의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노숙 청소년들의 교육적 경험과 그들의 학문적 사회적 정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 중의 한 프로그램이 이 매킨니-벤트 노숙자 지원 교육 증진법(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Education Improvement Act)이며, 노숙자를 위한 연방정부의 중요한 법제화 성과이기도 하다. 원래는 스튜어트 비 매킨니법(Stewart B. McKinney Act of 1987)이 2000년에 매킨니-벤트 노숙자 지원법(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으로 다시 개정된 것이다.

이 법은 학교 등교가 불가능한 노숙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쉼터나 캠프장 등 생활하는 장소와 다른 타운이나 주 등에서의 거주여부와 기간, 부모나 보호자와의 동거여부 등에 상관없이 공립학교를 다닐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원래 1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었으며 쉼터, 직업훈련, 보건, 교육 등과 관련한 조치들이 포함된다.

이 법은 각 주들이 청소년들을 학교에 등록하고 출석문제가 없도록 하며, 학업이 뒤쳐지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정책, 규칙, 절차 및 실천방안들을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이 노숙자라는 이유로 분리되어 교육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노숙아동들도 다른 모든 아동들과 같은 학업적 도전과 성취를 얻도록 하는 교육적 특권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

를 갖고 있음을 보장하는 것도 주정부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실, 매킨니법(McKinney Act)은 연방정부 차원의 요건으로서, 노숙아동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있음을 보장하는 주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매킨니법의 실행과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과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의 의미나 노숙청소년들의 개념 등이 교육전문가, 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특히 교육구(School District)는 이 법 이행의 책임을 갖는데, 댈러스 교육구(Dallas Independent School District)가 이 법을 이행한 사례는 연방정부의 정책이 주정부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그리고 연방정부 정책의 한계와 주정부 정책의 관계 등에 대해 알려준다.

② 댈러스시 학교구의 청소년노숙자 정책 책임

학교구(School Districts)는 노숙아동들이 학교를 다니도록 하고 또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중심역할을 한다. 각 주와 개별 교육구는 노숙자교육프로그램(Homeless Education Program)을 실시해야 하고 그 책임자를 임명하여 노숙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게 하며, 특히 연방과 주정부의 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의회와 주의 정책에 따라 댈러스 학교구(Dallas Independent School District)가 노숙아동에 관하여 반드시 수행할 책임이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보면 다음의 1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노숙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선택을 조언 받고 학교에 즉시 등록하며, 통학편의를 포함하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조정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분리된 학교에 등록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서면통지서를 보내고, 지역학교들이 맡아야 할 노숙아동과 청소년을 분리된 학교에 등록하거나 다니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숙아동·청소년을 위해 받은 재정지원을 분리된 학교를 설치하거나 노숙아동·청소년을 위한 분리된 학교를 위한 새로운 부지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보냈다는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

셋째,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따라서 각 아동에 봉사하는 지역 교육기관들은 만일 가족이 학년이 올라가기 전이나 학기 중에 노숙자가 되는 경우, 또는 해당 아동이 학기 중에 주거를 갖게 되면 그 학기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노숙상태가 발생한 최초의 학교에서 아동교육을 지속한다. 그리고 해당 아동은 재학하는 지역에 있는 비노숙 일반아동들이 다닐 자격이 있는 공립 학교에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노숙학생의 최상의 이익을 결정한다. 지역 교육기관은 부모가 다른 결정을 원하지 않는 한 원래학교에서 학생을 받도록 하고, LEA가 아동을 원래학교가 아닌 또 다른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노숙아동과 부모에게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당사자 없이 중간에 일을 돕는 사람으로 하여금 노숙청소년 당사자들의 등록에 따른 결정을 도와주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학생이 학업성적표, 건강진단서 및 거주증명서 등 필수서류들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즉각 등록시켜야 한다. 등록한 학교는 관련 학교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학생이 최근에 다닌 학교와 접촉해야 한다. 만일 학생이 예방접종이나 예방접종 기록을 필요로 하면, LEA는 부모들이 해당 서류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예방접종, 출생증명서, 보호자 서류 및 특별프로그램 평가서 등과 같이 학교가 관련 노숙아동에 관하여 보유해야 하는 기록들은 해당 아동이 새로운 학교에 등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일곱째, 등록 시에 생기는 문제점들은 해당 학생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등록관련 문제를 제기한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그리고 학교의 결정에 대해 부모들이 진정권이 있음을 설명함과 동시에 서면으로 설명해줌으로써, 해당 학생과 부모를 그 문제해결을 위해 같이 일할 지역 교육기관 관계자에게 이송시켜 해결해야 한다.

여덟째, 학생의 배치는 학생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홉째, 원래학교라는 의미는 해당학생이 주거가 있을 때 다니던 학교 또는 가장 최근에 등록했던 학교를 의미한다.

열번째, 지역 학교는 부모나 노숙아동으로부터 연락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열한번째, 노숙학생 등은 학교의 다른 일반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통학수단이나 장애아 교육프로그램, 영어교육프로그램, 직업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영재 프로그램 및 학교영양 프로그램 등 타이틀 1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서비스들을 동일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열두번째, 지역 교육기관은 노숙아동과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과 공동협력하여야 한다.

열세번째, 담당자(Liaison)를 지정하여 주 업무 담당자, 학교요원 및 지역사회와 함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열네번째, 지역교육기관 담당자(Liaison)는 다음의 일을 하여야 한다. 노숙아동을 확인하고, 노숙아동이 학교교육에 동등한 기회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노숙가족이 헤드 스타트(Head Start) 및 취학전 교육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하고, 보건, 치과, 의료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에 이송시켜야 한다. 노숙아동의 부모들에게는 아동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고 노숙아동의 교육권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③ 교육구의 노숙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이러한 내용에 따른 필수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 델러스시 교육구 노숙 교육프로그램 책임자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재정을 요청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재정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지역 교육기관이 주 교육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노숙인구의 교육적 욕구 및 관련 욕구에 대한 사정, 노숙 아동과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 지역 교육기관의 학생당 전체 회계 관련 노력이 전년도 90%이상임을 증명하는 내용, 신청자가 법에 부응하기 위해 재정을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내용, 정책과 절차가 법을 준수하고 지역 교육기관은 노숙 아동과 청소년을 격리시키거나 오명을 지우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설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정부 교육기관은 신청서의 필요성과 수준 등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지원을 결정한다. 우선 신청서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주교육기관은 취학 전,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노숙학생들의 수를 우선 고려한다. 주교육기관은 또한 해당 재원이 어떻게 노숙아동의 등록, 보유 및 교육적 성공을 도울 것인지, 해당 신청서가 어느 정도 노숙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다른 기관들과 연계 협력하는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법의 필수여건들을 충족할 것인지, 신청자가 모든 노숙 아동 청소년을 교육시키겠다는 공약을 기술하는 정도 및 기타 필요한 경우 부수적인 기준들을 고려한다.

신청서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기관은 신청자의 욕구사정을 조사하고, 프로그램이 노숙아동과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공될 서비스의 유형, 강도, 조정을 고려하고, 노숙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입을 알아본다. 또한 노숙아동 청소년들이 정규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갈 것인지를 조사하고, 신청자들이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보고, 계획이 노숙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다른 기관들과 어떻게 서비스를 조정할 것인지를 고려한다. 또한 노숙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표시로 간주될 수 있는 관련 정보들을 알아본다.

제시된 정보들은 현재 ‘노숙교육프로그램을 위한 텍사스의 지원 프로그램 (Texas Support for Homeless Education Program, 2006)’이라고 불리는 재정과 서류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 사용된 표준신청시스템(Standard Application System : SAS)을 통해 접수된다. 이 정보는 또한 신청서에 기록된 순서로 제시된다. SAS는 텍사스 노숙교육지원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되었다.

④ 노숙청소년프로그램 세부 신청사례

신청서의 내용을 통해 텍사스 주정부에서 시행된 청소년복지 프로그램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신청서에는 학교구가 진술하는 정보들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일정들은 구체적인 숫자와 이름을 가

지고 있다. 아래 내용은 X지역 교육서비스 센터(Region X Education Service Center)가 관리한 신청서들에 포함되어 있는 일정번호와 내용들이다.

① 일반 정보

일반 정보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신청기관, 신청자 연락처 및 신청 목적 등이다. 담당자 이름, 직책, 연락처 및 신청자 및 결제자의 사인 등이 일반정보의 일부로 역시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다.

② 예산 요약

예산은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약 200,000달러를 델러스 교육구(Dallas ISD)기관에서는 신청했다면 지출항목에는 인건비, 전문서비스와 계약서서비스, 물품구입비 기타 운영비용,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이 제시된다.

③ 프로그램 요약

노숙자 교육프로그램(Homeless Education Program)의 목적은 노숙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창안하고 제공하는 것이며, 그들을 대신해서 노숙아동, 청소년 및 그 부모들에 관한 권리와 이슈들에 대해 직원과 지역사회에 그 책무성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델러스 학교구 노숙 교육프로그램(Dallas Independent School District Homeless Education Program)은 약 3,000-5,000명의 아동·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델러스에는 노숙인구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가 4 곳이 있다. 모두 노숙자 쉼터가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이다.

노숙교육프로그램(Homeless Education Program)은 이들 4개 학교에 개인교습, 숙제도우미 및 활동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델러스 학교구 노숙 프로그램은 9개의 쉼터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명의 학생들을 고용했다. 프로그램은 또한 노숙아동을 위해 캠프활동을 연중 제공한다. 이러한 캠프는 학교가 쉬는 겨울방학, 봄방학 및 여름방학 동안 쉼터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제공한다. 델러스 프로그램은 지역 내의 다른 여타 노숙아동 지원 기관들과 함께 공동제휴를 하고 있다.

델러스 프로그램은 또한 지속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보호서

비스는 쉼터에서 학교로 옮겨가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학생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이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는 노숙아동들의 각종 전화요청, 긴급상황 및 관심사와 욕구에 대응하여, 노숙 아동들이 경험하는 복수의 장애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델러스 프로그램에는 서비스의 소통과 조정이 있다. 노숙교육 프로그램(Homeless Education Program)은 매월 개최되는 사례관리자 모임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이 모임은 사례관리자로 일하는 개인들을 쉼터 노숙아동들에게 제공하며 지역사회 기관들에게는 공동관심사를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델러스 학교구에 다니는 아동들에 관한 중요 정보를 얻고 제공한다. 노숙자 교육프로그램 담당자는 지역 노숙자 쉼터를 찾아다니고 학교구에 있는 학교와 쉼터 간의 연결 업무를 수행한다.

델러스 프로그램은 또한 노숙 학생들을 상담하기 위한 주요 모델로서 텍사스 교육기관 학교상담모델(Texas Education Agency Model for School Counseling)을 사용한다. 학교구의 노숙아동과 함께 일하는 상담가는 학업욕구, 관계성 및 사회적 관심사, 아동학대, 슬픔과 상실, 가족 문제 및 스트레스 대처 등과 같은 수많은 관심사에 대해 학생들을 도운다. 학생들은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일에 대한 방법을 배운다. 상담직원은 또한 노숙아동의 적절한 배치를 촉진하고 부모와의 관계성 강화를 돕고,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모임 즉, 학생지지팀(Student Support Team : SST) 및 특별교육자 대상 심사회 등에 참석하여 학생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델러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부모교육 모듈(Module)도 제공한다. 노숙 부모를 위해 검정고시생을 위한 교육과 문맹자를 위한 문해교육을 제공한다. 노숙교육프로그램은 또한 부모들로 하여금 부모교육 수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에게 권리와 자녀교육권 및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동 프로그램의 직원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상담가, 교장, 방문교수 및 노숙자 쉼터와 관련한 일을 하는 학교요원들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한다.

델러스 노숙자 교육 프로그램은 또한 통학교통문제와 원래학교 원칙을 준

수한다. 프로그램 책임자는 노숙 학생은 당해 학년도에 등록했던 원래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원래학교정책(School of Origin Policy)을 권고하고 강조한다. 모든 사례관리자, 노숙 부모, 학교요원들은 원래학교에 관련된 법규정과 최근의 매킨니-벤토법의 개정으로 학생들이 원래학교에 계속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학교구는 학교통학에 따른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알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델러스 카운티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통학편의를 제공하고 노숙 학생들이 원래 등록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또한 모든 노숙 학생들의 안전과 출석을 보장하고 있다.

④ 서비스 대상인구의 특성

서비스 대상인구의 숫자는 노숙상황에 따라 매일 변화하고 있다. 델러스 학교구의 노숙자 통계에 포함된 학생 중에서는 32,000명 정도가 한명 이상의 가족들과 함께 주거지에서 살고 있거나 부모 이외의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구는 이러한 특별한 유형의 주거상태를 경험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주거양식에 대한 선호와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의 주거상황의 차이점을 감안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쉼터거주 370명, 모텔거주 50명, 한 가족 또는 다른 누군가와 함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32,000명, 60명은 길거리에서 살고 있으며, 50명은 기타유형으로 나타난다. 학년별 노숙학생비율을 보면, 취학 전 아동 3%, 유치원 25%, 1-3학년 23%, 4-5학년 22%, 6학년 이상 8학년(중2) 20%, 9학년 이상 7% 등으로 나타났다. 인종별 구성비를 보면, 15% 백인, 50% 흑인, 35%는 남미계이다. 지역사회별로 참가구성원을 보면, 1명은 지역 교육기관에서 나왔으며, 256명은 대학캠퍼스 관련이며, 10명은 교사, 행정책임자 1명, 쉼터관계자 18명, 지역사회단체 관계자 10명 등이다.

⑤ 노숙아동청소년 확인 절차

델러스 노숙자 교육 프로그램이 노숙아동과 청소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학교 요원은 법과 노숙아동의 권리에 대해 훈련되어 있으며, 쉼터에 사는 학생들을 가진 학교에는 직원직무교육이 제공된다. 지역중심 단체와

델러스 프로그램 간에는 강한 제휴노력이 있으며, 델러스 전역을 통해 노숙 아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월례집회가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되어 오는 사례도 있으며, 부모들은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노숙아동청소년교육과(Department for the Education of Homeless Children and Youth)와 워싱턴 디시에 있는 전국노숙자연맹(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델러스 학교구의 교장들, 상담가, 방문교사, 지역 연락담당자(Liaison), 등록담당자와 심리학자들은 매년 노숙아동의 법적 권리, 특권, 욕구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학습한다. 노숙자 교육 프로그램의 지도력 팀(Leadership Team)은 직무교육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학교에 등록하려는 노숙 학생들을 대면할 경우, 프로그램 매니저와 접촉하는 방법에 대해 권고한다.

프로그램 매니저는 시내 노숙 개인들을 돕는 지역중심 단체들에게는 하나의 자원 역할을 한다. 쉼터에 살고 있는 노숙학생들의 구성비가 많은 학교에서는 쉼터의 주소에 친숙한 등록담당자(Registrar)를 두어 학생들을 신속히 등록시키고 있다. 이들 학교에는 출석부가 있어서 이들 학생이 평균출석일수(Average Daily Attendance)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준다. 평균출석일수에 도달하려면 학생은 전체 수업의 90%를 출석하여야 한다. 또한 노숙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노숙자 프로그램에서 이탈하게 되면, 프로그램 매니저는 가족과 접촉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

델러스 프로그램은 매월 사례관리모임을 개최한다. 따라서 외부기관과 서비스제공자들은 델러스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배포하며 학생에게 권고하거나 학생에 관한 정보를 프로그램에 제공한다. 사례관리자란 쉼터 내에 있는 노숙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조정하는 쉼터를 위해 일하는 개인을 말한다. 그들은 학교구를 위해 일하지는 않지만 아동이 학교에 등록했는지, 규칙적으로 잘 다니는지 등을 확인하고 다른 관련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제휴한다.

⑥ 델러스 프로그램 매니저의 책무

델러스 프로그램의 매니저는 몇 가지 주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재정지원

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 개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이다. 사업계획에 따른 재정규모는 최대 200,000 달러이며 이 액수는 학교구 내에서의 노숙아동의 숫자에 입각한 것은 아니지만, 이 계획서가 얼마나 잘 준비되고 기술되었는지에 입각한 것이다. 또한 매니저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매년 갱신하거나 수정하며 재정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매니저는 노숙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해 다른 정부보조금이나 재정지원을 받을 기회에 대해 연구한다.

프로그램 매니저는 프로그램의 연간 예산을 준비하고 관리한다. 평균 프로그램 지출을 결정하는 책임이 있으며, 인건비를 관리하고 고용된 사람들의 근태를 관리한다. 매니저는 현장연구일정을 잡고, 하기여름캠프를 실행하고, 휴가프로그램을 계획한다. 노숙아동에 관한 직무교육의 일정을 잡고 서비스계약에 따라 재정을 집행한다.

프로그램 매니저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텍사스 델러스에 있는 노숙자 쉼터들에 대한 연락담당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부모들에게 아동의 교육권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쉼터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학부모회(Parent Teacher Association : PTA)집회를 쉼터에서 개최하여 부모들에게 다른 정보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매니저는 노숙아동과 그 부모를 위해 등록과정에 따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밖에 교사들이 개최하는 모임에 참석하거나 노숙 학생들에 관한 입법을 숙지하고, 매킨니 관리자 모임에 매년 참석하는 일을 한다.

⑦ 델러스 노숙자 교육 카운셀러의 책임

델러스 학교구 노숙자 교육프로그램은 두 가지 주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이미 알아본 프로그램 매니저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 상담가이다. 상담가 직책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며, 여러 집단에 대한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등 몇 가지를 필수 업무로 수행한다. 상담가의 직무책임은 델러스 학교구에 다니는 노숙학생들에게, 특히 쉼터에 사는 학생들에게 상담을 수행하는 것을 필수업무로 한다. 쉼터에 인접한 학교를 방문하여 재학 중인 노숙학생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상담한다. 부모와

대화를 통해 아동의 심리적·사회적 욕구를 지원하고 노숙아동을 위해 학교 물품을 수집한다.

노숙프로그램과 함께 일하는 상담가는 델러스 학교구의 노숙학생 전체를 대신하여 다수의 모임에 참석한다. 상담직원은 노숙학생 쉼터 사례관리자를 만나 아동과 청소년의 욕구를 논의하고 사정한다. 예컨대, 상담가는 학생지지팀(Student Support Team : SST) 모임에 참석하여 학생의 수업과정에 대한 욕구, 사회적 관심사 및 학습필수요건 등에 대해 학교담당자와 제휴한다. 학생지지팀 모임에서는 개별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고 각 학생들을 위한 실행계획을 입안하고 수행하고 모니터한다. 상담직원은 특별교육서비스(Special Education Services)를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한다.

노숙자교육프로그램 상담가는 또한 직무교육을 실행한다. 학교요원들에게 학생의 진전상태와 성공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을 포함하고, 학생들이 학업적 성취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숙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전문적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부수적으로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연수를 제공한다.

⑤ 노숙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목표와 주요활동

델러스 학교구의 노숙자교육 프로그램은 8 가지의 주요 목표를 정해서 노숙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성공을 보장하고 있다. 다음은 각 주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목표 1. 취학전 아동을 포함하여 노숙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개인교습, 보충지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교습과 다른 직접적인 교육서비스는 정기학교시간이나 학교수업전, 또는 방과후, 주말 또는 여름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목표 2. 노숙아동과 청소년이 특별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목표 3. 교육가와 다른 학교요원들이 가출 청소년들의 구체적 욕구를 포함한 노숙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의 욕구와 매킨니-벤토법과 가출 및 노숙 청소년지원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ssistance Act)에 따른 해당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잘 알고 또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비 노숙학생들이 노숙을 경험한 자기 동료들의 욕구에 민감한 것은 확실하다.

목표 4. 노숙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및 정신보건적 욕구를 규명하고 부응하는 것을 확실히 한다.

목표 5. 노숙학생들이 규칙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학교에 도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목표 6. 노숙아동과 청소년이 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학교구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에 접근하여 등록하는 기회가 제공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목표 7. 노숙학생들이 교육서비스 센터가 결정한 학교 물품 또는 일상적이지 않거나 긴급한 지원에 접근하는 것, 그리고 수수료 지급이나 여타 학교등록에 관련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노숙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지정 사항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 8. 노숙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와 후견인 등에게 ㉠ 아동의 권리와 아동들이 이용가능한 자원 ㉡ 아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옹호하는 것, ㉢ 효과적인 부모 기술 및 ㉣ 아동이 교육에 활발히 참가하는 것 등에 대해 교육과 연수를 제공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숙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법이 주정부의 추가적인 법제를 통해 어떻게 지방정부에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연방정부의 중요한 성공적인 법제화 성과의 하나로 평가되는 매킨니-벤토법이 댈러스 시의 학교구를 통해 시행되는 과정, 절차, 내용 및 요건 등의 제반 내용을 분석하였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어떠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프로

그럼 담당자의 역할과 임무를 정하고 목표를 수립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법 등을 밝혀주는 내용이다.

3) 중소도시 청소년복지정책 사례 : 종합적 지역중심 이니셔티브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 CCI)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에서의 청소년흡연규제 정책사례와 델러스 시에서의 노숙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사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단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정책의 사례를 알아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특히 빈곤아동과 청소년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지역 중심의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빈곤아동과 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사례들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수립·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사한 목적을 가진 지역중심 다국면적 접근법이 ‘종합적 지역중심 이니셔티브(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 CCI)’라는 하나의 용어로 묶어서 논의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사례 중에서 이러한 종합적 지역중심 이니셔티브(CCI)에 속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선정하여 그 특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1) 종합적 지역중심 이니셔티브(CCI)의 의미와 유형

먼저, 종합적 지역중심 이니셔티브(CCI)라고 부르는 자치단체 복지정책 사업들에 대한 기본 이해를 위해 용어의 의미를 알아본다. 우선 첫 번째 C는 ‘종합적(Comprehensive)’이란 의미로 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및 경제적 개발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이니셔티브, 또는 해당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의 목적이 하나의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C는 ‘지역사회(Community)’로서 해당 CCI에 관련된 지역사회가 하나의 근린지역이거나, 도시 또는 카운티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세 번째, 자치단체 차원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우선 그 목적이 아동이나 청소년 및 그 가족 등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직면할 문제를 대처하는데 효과적인 지역역량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다른 이니셔티브들은 각기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제공된 재원을 하나로 모아 프로그램 전반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욕구에 보다 가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CCI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가난한 아동과 청소년 및 그 가족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가운데서, 다국면적 접근법(Multifaceted Approaches)을 사용하는 다양한 자치단체 중심, 소도시 중심, 지역중심의 청소년복지정책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개념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개발을 강조하거나, 빈곤가족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강조하거나, 아동과 청소년을 강조하는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보다 좋은 서비스의 제공 같은 넓은 목적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으며 10대 임신율의 감소 같은 보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 있지만,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과 지역사회 전반을 통해 알 수 있는 종합적 지역사회 이니셔티브들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많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접근을 지역사회구축(Community Building)을 통해 하고자 강조한다. 강한 지역사회가 직업이나 직업에 대한 접근, 좋은 집, 가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민적 참여감을 제공한다는 전제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근린지배, 경제개발, 주거 재할 및 건설, 근린 미화 및 지역사회 단체와 기관의 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발전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둘째, 지역 내의 빈곤 가족을 위해 종합적 서비스(Comprehensive Services)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교육 및 주거 등이 포함된다. 빈곤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전통적인 서비스는 일련의 좁은 초점의 서비스들, 각기 다른 서비스들과 별개로 전달되고 예방지향적이기보다는 문제대응적인 것이 그 전형이다. 두 번째 유형의 이니셔티브들은 한 건물에서 각기 다른 서비스들을 같이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내 가족을 위한 서비스 자원들을 하나로 합쳐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시도한다.

이상에서 말한 두 가지 접근법들은 빈곤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의 욕구는 단 하나의 문제에서 초래되는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그러나 다양한 관련 문제들이 다각적으로 합쳐짐으로써 초래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다국면적인 접근법을 갖는 이니셔티브들의 특성은 그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전반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온 것이다.

(2) 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적 지역 이니셔티브의 현황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지역중심 이니셔티브들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스펙트럼의 한 쪽 끝에는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빈곤에 대해 근린 지역 주민, 협회 및 제도들이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아동과 가족을 위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곳으로 만들려는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의 한 사례는 뉴욕 사우스 브롱크스(South Bronx)지역에서 실시된 ‘종합 지역사회 부흥 프로그램(Comprehensive Community Revitalization Program : CCRP)’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다섯 개의 지역개발법인(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 CDC)을 통해 ‘근린을 완전히 재창조하기 위해 디자인된 전략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되도록 지원했던 것이다. 지역

개발법인들은 많은 다른 프로젝트들을 수행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보건보호센터를 건설하거나 근린주민을 위한 대부기금제도를 마련한 것 등이 포함된다.

스펙트럼의 다른 한 끝에 있는 것은 빈곤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사회적 과제들에 대해 기존의 서비스들을 보다 조정을 잘하고 더 많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 한 지역에서 개인적 문제(주거와 고용 등)를 목표로 하는 서비스들과 연결하고, 구조적으로 다른 상황이나 재정 및 서비스 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뉴욕시(New York City) 근린지역에서의 아동·청소년 및 가족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살기 좋은 곳(havens)을 창출하고자 한 비콘 이니셔티브(Beacons Initiative)는 이러한 접근법의 한 예이다. 그것은 학교를 지역사회센터로 변화시켜서 아동과 가족을 위한 활동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가족 상담 및 약물오남용 예방 등과 같은 기존의 문제들을 이들 학교로 가져오게 하였다.

종합적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다른 노력들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보다 융통성 있는 재정을 창출하기 위해 재정지원구조를 재조직화하였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청소년 파일럿 프로그램(California Youth Pilot Program)은 지역중심 이니셔티브의 창출을 지지하기 위한 주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여섯 개의 캘리포니아 카운티를 기존의 아동 가족 서비스 재정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통합된 아동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창출하도록 구조화했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는 카운티 감독이사회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했으며, 해당 카운티에 있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며 저소득인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 및 그 가족들의 욕구를 결정하고, 어느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재원 출처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였다. 이 재정지원은 합쳐져서 카운티들의 목표서비스들인 정신보건, 아동 복지, 교육, 약물남용 처치 및 다른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일들에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 표는 빈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미국 복지정책의 다양한 사례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일부 제시한 것이다.

〈표 III-2〉 종합적 지역중심 이니셔티브(CCI) 사례들

프로그램	위치	목적	재원
Comprehensive Community Revitalization Program (CCRP)	South Bronx, New York	다섯 개의 지역사회개발기관(CDCs)들이 광의적인 근린재생을 위한 기반이 되도록 함	3백만달러 Surdra Foundation 및 기타 16개기관의 지원
Beacons Initiative	New York City, New York	개인적 발달기회와 지역적 지지를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과를 지지	45만 달러, 시 청소년과, 주, 연방 및 재단지원
California Youth Pilot Program (YPP)	Six California Counties	종합적이고 통합된 서비스를 아동과 가족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혁신적 전략의 실행을 지지	몇 가지 개별적 프로그램의 재정을 합쳐서 융통성있게 집행
Local Investment Commission (LINC)	Kansas City, Missouri	아동과 가족의 삶을 개선	주정부 및 민간 재단, 개인기부
Neighborhood and Family Initiative (NFI)	미국내 Four Commuities	근린차원의 경제개발과 지역사회개발을 통해 지역내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을 강화	한 개 지역당 1백만 달러, Ford 재단이 시작함

사실,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국면적 복지정책 사례는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 기원은 우리가 지역사회 청소년사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복지관(Settlement House) 운동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이미 1900년대 초부터 사회개혁가들은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광범위한 서비스를 지역 거주민에게 제공하였다. 상담에서부터 법률지원까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봉제 수업, 공중위생 개선과 같은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옹호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관 모델은 1920년대에 오면서 빈곤 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초점을 다국면적 지지로부터 특정 개인적 문제에 대한 처치로 옮기게 되는

사회사업분야가 특화되어 대두됨으로써 약화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빈곤에 대한 전쟁과 함께 다시 대두되는데, 이때의 빈곤에 대한 전쟁은 두 개의 주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근린 고용기회를 증대하고, 빈곤 아동, 청소년 및 성인들이 이러한 새 기회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다. 근린 중심 이니셔티브들은 지역사회 행동 기관들이 선두에서 실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연방전략의 주요한 일부분이었다.

이렇게 보면,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타운, 도시, 마을 등의 지역사회별로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종합적 지역중심 이니셔티브들은 오랜 역사적 발전과정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이니셔티브들에 대한 공식적 평가정보가 거의 없지만,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검토 자료들은 보다 최근의 이니셔티브들의 발전에 대한 지식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3) 성공적 이니셔티브-볼티모어시의 청소년복지사업 사례

이런 점에서 가장 최근의 한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지역사회 중심 이니셔티브의 성공사례로서 메릴랜드(Maryland)주, 볼티모어(Baltimore)시의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미국의 주정부 이하 타운, 시 및 마을 단위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중심 청소년 이니셔티브들의 특성과 속성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① 개발 배경

메릴랜드주에 있는 볼티모어시는 인구 약 65만 명 정도의 도시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 병원 및 문화기관들과 메이저리그 야구팀과 미식축구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이면에는 높은 실업률과 교육 부족, 빈곤 및 범죄로 시달리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 도시의 역대 3명의 시장들은 청소년을 위한 기회를 개선하여 볼티모어시를 재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시장을 비롯한 시청의 리더십은 종합적인 시 전역의 청소년개발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했다. 그 중심에는 시장 직속 고용개발실이 있었다. (Mayor's Office of Employment Development : MOED). MOED 속에서 제휴를 맺고 있는 것 중에, 볼티모어 인력투자 이사회의 청소년위원회(Youth Council of the Baltimore Workforce Investment Board : BWIB)와 지역중심 청소년서비스 공급자들은 시의 많은 청소년들을 성공적인 성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② 사업대상과 사업제공자

볼티모어시에는 약 32,000명의 16-19세 청소년이 있는데, 약 30%에 해당하는 9,500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 약 18%인 5,743명은 실업상태에 있다. 2005년의 자료에 의하면, 9-12학년 가운데 학교탈락률은 11.65%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 자료를 보면 약 5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서 시의 시장직속 고용개발실(MOED)을 중심으로 하는 시 전역에 걸친 통합적 리더십이 어떻게 탈락 청소년들과 다시 연결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예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볼티모어 시가 탈락 청소년을 주요 목표로 해서 전개한 지역중심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버시티 고등학교 직업아카데미(Career Academy at Harbor City High School), 웨스트사이드 청소년기회 센터(Westside Youth Opportunity Center), 시민근로단(Civic Works)사업, 그리고 신선한 출발(Fresh Start)사업 등은 그러한 것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시민근로단(Civic Works)의 사례와 신선한 출발(Fresh Start)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③ 전달체계

시장직속 고용개발실(MOED)은 주로 고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교탈락 청소년들에게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가지도록 보장하는 학습기회를 증진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1998년의 연방정부의 인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 WIA)에 의해 증대되었다. 이 법에 기반하여 볼티모어 인력투자 이사회(Baltimore Workforce Investment Board : BWIB), 청소년 위원회(Youth Council)를 만들었다. 2000년 2월 이후,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관해 인력투자이사회에 권고를 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그 상임위원회의 하나로서 역할을 해왔다. 청소년위원회는 또한 시 전역의 청소년 서비스 제공기관을 3개월마다 방문하거나 기술지원, 효과적인 프로그램밍을 위한 지도 등을 통해 모니터한다. 연방정부의 인력투자법과 그에 따라 설립한 볼티모어 시의 인력투자이사회 및 동 청소년위원회는 이러한 볼티모어 시의 지역중심 청소년복지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사업내용

이제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들 중에 시민근로단(Civic Works)의 사업내용과 신선한 출발(Fresh Start)의 프로그램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❶ 시민근로단(Civic Works) 사업내용

시민근로단(Civic Works)은 17-25세 청소년들이 교육, 도시 재활성화, 경력 개발 및 다른 지역사회 서비스 이니셔티브들의 혼합을 통해 그 시에 대한 서비스에 종사하도록 하는 하나의 팀 중심의 도시 서비스단 프로그램이다. 1993년 이래로 시민근로단 아메리콥스(AmeriCorps)회원들은 기술 훈련, 일종의 검정고시인 GED 강습, 직업배치 지원, 전문성 개발, 교육 및 시민권 등과 같은 개발활동에 종사하여 왔다. 프로그램은 단원들이 평균 7개월 정도 참여하며 11개월 동안 지속된다(전일제 AmeriCorps 회원은 11개월 동안 등록하며, 시간제 여름 회원의 경우는 2.5개월간 등록한다).

시민근로단의 충원은 주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며, 청소년기회센터(YO Center)와 권한부여 지역(Empowerment Zone : EZ), 특히 시민근로단 청소년 강화(YouthBuild) 프로그램 등을 통해 특별한 충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지원과 선택과정은 직원들과 몇 차례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진다. 2004년에

는 149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각 시민근로단의 팀은 두 명에서 8명의 단원 당 한 명의 책임자가 있다. 이렇게 단원수를 적게 하면서 책임자를 두는 것은 팀 책임자가 교사이면서 상담가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팀 지도자들은 처음 30일이 지난 후에 단원들을 평가하는데 기본적인 규칙 이행, 예컨대, 시간 지키는 것, 출석, 외모 및 태도 등과 같은 것을 판단한다. 단원들은 책임자들과 연합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역량 이력서를 개발하고 3개월 간격으로 평가를 한다. 팀은 일주일에 4일간 일하며 그 중 하루는 자기계발을 위해 쓴다. 이것은 GED 준비에 할당하는 것이다. 팀은 대개 근로장소에서 만나며 지시를 받는다. 전일제 단원들은 아동보호 및 통학지원을 받는다. 월별로 지역사회 내 전체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모임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소속감을 강화한다.

<표 III-3> 2004년 시민근로단(Civic Works) 단원 특성

구분	특성	비고
단원수	149명	전체
성별	여성 64%	
	남성 36%	
인종	아프리칸 미국인 71%	
	백인 22%	
	아시안 4%	
	남미계 3%	
교육수준	고졸아님 21%	
	고졸로서 상급학교 비진학자 11%	
소득수준	연간 가족소득 15,000달러 이하 23%	
범죄	법정 경험 13%	
위탁양육	경험자 1%	

시민근로단은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아메리콥스(AmeriCorps)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시민근로단은 볼티모어 시 전역

을 통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개인강사를 배치하여 학령아동들의 읽기와 컴퓨터기술을 가르친다. 두 번째, 자유프로젝트(Project Liberty)프로그램은, 미국 국토안보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인데, 지역사회 집단과 학교에 대해 재난시 준비요령들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은 볼티모어 시 보건과 위기관리실 및 존스 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에 있는 국제 위기재난 및 피난민 연구센터가 있다. 세 번째는 청소년강화(YouthBuild)프로그램이다. 이는 볼티모어시의 주택 당국과 파트너가 되어, 학교밖 청소년들로 하여금 집짓는 건축기술을 배우게 하고 자신들의 GED를 위한 공부를 한다.

서비스 프로젝트들은 단원들의 성장과 발달을 증진하는 경우와 지역사회 서비스 파트너들의 욕구와 목적에 부응하는 경우에 채택된다. 각 팀은 각기 다른 자격요건을 갖고 있으며, 시민근로단에 지원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구체화하고, 청소년강화(YouthBuild)팀에 속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권한부여지역(EZ) 거주민이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필수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시민근로단은 볼티모어의 청소년정책구조에서는 하나의 주요한 행위자이다. 그것은 청소년위원회에 두 개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며 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직원들을 갖고 있다. 그것은 시장직속 고용개발실(MOED)과는 강한 관계성을 갖고 있으며, 기회센터 프로그램(YO Program)과는 7년 동안의 계약을 맺고 있다. 고용개발실에서는 정기적으로 시민근로단으로 하여금 특별한 프로젝트를 이끌거나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시민근로단은 또한 청소년강화(YouthBuild)사이트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7개월에서 11개월의 프로그램 사이클 내에서 학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원 중에 GED 강사를 포함하고 있다.

2004년에는 시민근로단이 한 고등학교(Francis Wood High School)에서 3년 짜리 시범 기간을 시작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시민근로단(Civic Works)은 이 고등학교의 학교개선팀에 합류했으며, 큰 규모의 종합 고등학교를 몇 개의 작은 아카데미로 나누려고 했다. 제안된 설계에 따라서

보건보호 아카데미와 기술/건축 아카데미를 창출하면서 9학년을 위한 생활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아카데미들은 시의 사회 서비스 과의 지도를 통해 고등학교 환경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III-4〉 2004년 Civic Works 결과

구분	성과	비고
수료자	78%	전체 149명
수상자	113명이 AmeriCorp 교육상을 받음	
연수수료자	취업 및 진학자 52%	
	취업자 23%	
	다른 서비스종사 14%	
	진학희망자 11%	
취업자 종사분야	청소년분야 27%	
	행정 및 사무 13.5%	
	건축 13.5%	
	보안 11%	
	음식점 8%	
	보건 보호 6%	
	창고업 6%	
	미용 3%	
	운수 3%	
	군 3%	
	기타 6%	

② 신선한 출발(Fresh Start) 프로그램 사례

신선한 출발(Fresh Start) 사업은 1989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사설기관인 주거교실재단(Living Classrooms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40주 프로그램이다. 16세에서 19세까지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소년범죄자들에게 취업준비, 학업교정 및 사회적 기술훈련을 받도록 한다. 모든 참가자들은 최소한 3회

체포된 경험이 있으며 현재 보호관찰 중에 있다. 이들은 대부분 메릴랜드 청소년교화과(Maryland Department of Juvenile Services)로부터 위탁된다. 처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산함양 접근법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체험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신선한 출발(Fresh Start)은 주거교실의 동 하버 캠퍼스(Living Classroom's East Harbor Campus)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요일에는 9시부터 12시까지 연다. 이 시간 중에 일하지 않지만, 검정고시나 취업을 원하고, 가능하면 대학을 다니기 원하는 참가자들이 등록한다. 두 번의 인터뷰와 직원들의 판단을 통해, 시간을 잘 지키고 열심히 배우겠다는 결심이 굳건하고, 동기가 분명한 사람들을 선정한다. 일단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면,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버스승차권이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메릴랜드(Maryland)주의 어디에서나 참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볼티모어 시로부터 오며, 매 8주마다 약 5명에서 8명만 등록을 허용한다. 동 프로그램의 연간 등록 가능인원은 35명에서 40명 정도이다. 앞으로 주거교실재단이 캠퍼스를 확장하게 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참가자들은 검정고시 실습문제를 푼다. 이 프로그램은 입학시험과 같은 목적으로 학생들의 잠재적인 학점이나 학업수준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선한 출발(Fresh Start)은 이들이 검정고시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년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처음 참가하는 경우의 평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읽기, 쓰기 및 수학 수준보다 다소 낮은 정도이다.

신선한 출발(Fresh Start)은 8주 썩을 한 모듈(Module)로 5번 실시하는 형태로 총 40주간 실시된다. 각 모듈마다 학생들은 평가과정을 갖게 된다. 처음의 3번째까지의 모듈에서 이들은 목수 일을 배우고, 남은 16주 동안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직장에서 전일제로 일을 하게 된다. 신선한 출발(Fresh Start) 교과과정은 수학, 과학, 역사, 읽기, 쓰기 및 검정고시에 관련된 학업과목과 목수 일을 같이 해나가는 것으로 구성된다. 출석규율이 엄격하여, 처음 10일

간의 모듈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이다. 법정에 나가야 하는 날과 개인적 용무로 쉴 수 있는 3일간의 휴무에 대해서는 직원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마지막, 두 개의 모듈에서는 학생들은 신선한 출발(Fresh Start)의 코디네이터(Coordinator)와 인력사례관리자(Workforce Development Case Manager)로부터, 그들이 영리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보낸 150시간에 대한 경험을 확인 받게 된다. 이들 인력평가팀들은 학생들이 실제 취업을 할 때까지 후속지원을 하고, 직업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신선한 출발(Fresh Start)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성공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명한 금융기관들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파트너들과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신선한 출발(Fresh Start)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은 훈련기간 중에도 의자나 다른 목재용품 등 처음의 3번째 모듈 동안 자신들이 배우고 실습한 것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은행구좌를 갖게 되며, 그 수익수준은 각자가 받은 일일평가 및 자기평가 결과에 의한 점수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전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학생들은 자신의 전체 몫을 받게 되는 것이다.

프로그램 참가학생들은 매주 정한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성과를 얻은 경우, 특별활동에 참가하거나 인센티브 등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 각 모듈(Module)은 또한 비학업적 요소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나 도서관 카드를 만들거나, 이메일 계정을 만들거나 모의 취업인터뷰를 녹화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취업준비를 위한 요소로는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추천서를 얻는 일 등이 있다. 학업 및 취업준비를 위한 교과과정 이외에도 이들은 분노관리나 대처기술 등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많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자아존중감(Self-esteem)이 낮은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신선한 출발(Fresh Start)은 성취감을 심어주는 활동을 하고 성취를 나타내 보이는 프로젝트들을 같이 실시한다. 장기목표와 단기 목표는 주별로 설정되며, 참가자들은 매일 일과가 끝날 때 자신들의 하루 성과를 5

점(일반적 항목) 또는 3점(부정적 항목)척도에 표시한다. 이러한 자기평가가 끝난 후에 이들은 직원을 만나 그 평가내용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직원들은 그 평가결과를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가 꼭 수량적으로 측정하려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참가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정직하고 사려 깊은 자기 평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신선한 출발(Fresh Start) 프로그램은 매일 직원들과 참가자들이 성취한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인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한다. 이러한 긍정적 활동은 공동체적 일체감과 팀워크를 만들어낸다. 학생들은 또한 학생들 스스로에 의해 자신들을 위한 신선한 출발 소식지(Fresh Start Times)를 만드는 기회를 갖는다. 이 소식지는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자신의 경험과 성취한 것을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신선한 출발(Fresh Start)의 개별화된 학습 환경은 직원과 학생 비율을 1:5로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은 동일한 직원과 전체 프로그램 기간 동안 함께 일한다. 각 목수 일을 배우는 모듈 동안에는 학생들은 한 명의 강사 또는 주 사례관리자와 함께 일하게 되며, 하지만 두 모듈 동안에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와 함께 일하게 된다. 신선한 출발(Fresh Start)의 총 책임자는 학생들의 진전에 대해 전체 프로그램 기간 동안 함께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서 일하게 됨은 물론이다. 학생들은 전체 프로그램 기간을 통해 직원들과 밀접하면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거의 매일 멘토나 직원들과의 일대일 튜토링(Tutoring)이 가능하다. 각 청소년들은 학생 자신과 직원 및 부모 등이 함께 작성하고 조정한 개별서비스계획(Individual Service Plan)을 갖는다. 90일 마다 이 계획을 통해 학생들의 욕구와 사회적 목표, 학업적 목표 및 장래 취업 목적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각 기수가 시작할 때마다 8주간의 차이가 있게 되고 5명에서 8명이 한 기수가 되며, 현재 신선한 출발에는 6명의 전담직원이 있다.

⑤ 재정과 프로그램의 성과

우선, 시민근로단은 연간 약 2500만달러의 예산을 갖고 있다. 그 중에 약 80%는 미국 주택성, 노동성 및 지역과 주정부로부터 온다. 시민근로단은 또한 약 10% 정도의 예산을 재단이나 기업 등의 민간으로부터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그 기간이 8주에서 1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단원당 비용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2002년에는 시민근로단에서 연구자들을 고용하여 개별연구를 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1달러 투자당 2달러 이상의 혜택을 단원들과 사회에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근로단에 대한 추가적인 긍정적 평가는 1999년과 2003년에 각각 몇 가지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50개 우수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선택된 바도 있다.

한편, 신선한 출발(Fresh Start)은 전체 재정의 반 이상인 약 185,000달러를 청소년교화과(Department of Juvenile Services)로부터 계약에 의해 받고 있다. 이는 연간 10명에서 12명의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나머지 재정은 기업과 개인 지원자, 사립 자선단체 및 기타 재정보조 노력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학생 일인당 연간 비용은 약 17,500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개별교육계획(Individual Education Plan)을 가지고 있지만, 신선한 출발(Fresh Start)은 특별 교육 재정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신선한 출발(Fresh Start)프로그램은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에서 2004년까지의 핵심적 결과를 보면, 쓰기능력은 연 평균 1.6학년이 향상되었고, 읽기와 독해는 1.8학년이 증가되었으며, 수학은 2.0학년, 공식 검정고시 실습시험 점수는 250점이 증가되었다. 평균적인 신선한 출발(Fresh Start)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40주의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 평균 1.5학년 이상 수학, 읽기 및 쓰기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한 출발(Fresh Start) 프로그램의 가장 인상적인 성과는 모든 참가자들이 모두 취업을 한다는 점이다. 과반수 이상은 목수일이나 건축업에 취업을 한다. 검정고시(GED)를 통과한 학생들은 지역단과대학(Community College)

이나 기술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3년 이후에는 약 74%가 취업을 유지하고 있거나 학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약 14%만이 재범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선한 출발(Fresh Start)은 또한 졸업생들에게는 주당 4시간씩의 GED 수업을 무료로 개설해 준다. 전국청소년고용동맹(National Youth Employment Coalition)은 신선한 출발(Fresh Start) 프로그램에 대해 페프네트 상(PEPNet Award)을 1996년에 수여했으며, 2001년에 다시 한번 더 수여함으로써 그 성과를 인정한 바 있다.

많은 사례 중에 시민근로단(Civic Works)와 신선한 출발(Fresh Start)의 두 가지 경우를 소개했지만, 볼티모어 시의 다국면적인 학교탈락 청소년에 대한 프로젝트들에서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어려움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시장실로부터의 많은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매일의 작업 생활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는다. 도시의 일부는 이미 침식되어 들어온 약물문화가 수반하는 모든 문제들에 직면해 있고, 심각한 범죄들이 청소년회복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근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티모어는 시청이 연방과 지역의 재정지원을 받아 성취할 수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학교 탈락자들과 다른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을 이끌어내어 이들을 위해 일하는 성인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인 이니셔티브로 평가되고 있다.

볼티모어시의 시장 직속 고용개발실의 설치,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시민근로단 프로그램 사례 등은 하나의 자치단체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이니셔티브들의 성격과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4) 지역중심 이니셔티브의 특성

지금까지 지역중심 다국면적 접근 이니셔티브들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시에서 전개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중심 이니셔티브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많은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의 경우에도, 오하이오(Ohio)주 몽고메리 카운티(Montgomery County), 텍사스(Texas)주의 오스틴시(Austin) 유타(Utah)주의 솔트레이크시티(Salt Lake City)시, 뉴저지(New Jersey)주, 트랜톤(Trenton)시 등에서도 많은 유사한 성공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비록 종합적 지역중심 이니셔티브(CCI)라는 개념은 위와 같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이니셔티브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는 최근의 이러한 여러 사례들에서 공통적인 몇 가지 특성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최근의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종합적이고 다국면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한꺼번에 많은 이슈를 다루려고 한다. 둘째, 조정, 통합 및 제휴적 속성을 갖는다. 즉, 단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 작용을 하지 않는다. 셋째, 아동과 청소년 및 그들의 가족의 성과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다. 넷째는 융통성이 있다. 재정을 지역적으로 결정된 빈곤 가족의 욕구에 사용하는데 탄력적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예방적이다. 위기를 처리하는 욕구를 줄이고 예방과 초기 개입에 초점을 맞춘다. 여섯째, 아동과 청소년 뿐 아니라, 가족 및 지역사회에도 초점을 둔다. 개인으로서 아동과 청소년 또는 한 가족의 일부로서의 아동과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근린과 지역사회 일부로서의 가족에 초점을 맞춘다.

일곱째, 시민참여를 포함하는 특성이 있다. 지역사회 주민, 서비스 시스템의 고객 및 다른 지역사회 이해 당사자들이 해당 지역의 이니셔티브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강점 중심적이다. 즉, 현재의 아동·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

족과 지역사회의 강점에 입각하여 사업내용을 구축한다. 아홉째, 개별적 차이점에 반응적인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개인, 문화적, 인종적, 언어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양한 인구들의 욕구에 다양하게 반응한다. 끝으로, 이러한 지역사회 이니셔티브들은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하다. 서비스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이용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러한 공동원칙과 전제들에도 불구하고 이니셔티브들 간에는 또한 본질적인 차이점들이 있다. 오늘날의 지역 이니셔티브들은 문제에 대한 접근법, 효과를 추구하는 성과, 참가자의 본질과 의사결정 과정 및 재정적 구조 등에서 다양하다. 이러한 특성은 각 지역사회별로 추진된 여러 이니셔티브들의 구체적인 목적, 사업 참가자의 수준과 특성,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 등 몇 가지 점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부 이니셔티브는 종합적으로 특정한 성과를 목표로 한다. 예를 들면, 10대 임신율을 줄이거나 건강한 신생아 출생수를 증대하거나 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이니셔티브들은 복수의 빈곤과 관련된 문제들을 목표로 하며, 몇 개의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려고 시도한다. 예를 들면, 교육과 사회서비스에서의 투자를 통하여 인적자본을 구축하는 것이나, 물리적, 경제적 하부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근린 자본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배에서 시민적 참여를 증대시킴으로써 사회자본을 증대하고, 지역사회 소속감을 강화하며, 그 반응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있다.

둘째, 종합적 지역사회 이니셔티브들은 본질적으로 전체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많은 그리고 다양한 참가자의 개입에 대한 잠재성이 있다. 일부 이니셔티브들은 단일한 기존 조직단위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제휴를 수립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비콘 이니셔티브(Beacons Initiative)는 뉴욕시 청소년서비스과(New York City Department of Youth Services)에서 처음 시작되었지만, 이 부서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센터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학교에 접촉하여 학교시설을 방과 후에 이용하도록 했던 것이다.

셋째, 이니셔티브 중에는 하나의 새로운 주체를 창출하여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이니셔티브들은 관련 참가자들을 하나의 중립 테이블에 나오게 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큰 목소리를 부여한다. 하나의 예는, 미주리 주 캔사스시의 지역투자위원단(Local Investment Commission : LINC)의 경우인데, 이는 하나의 시민 위원단(Commission)으로, 주에 의해서 임명된다. 그러나 이 구성원들은 정부 관리나 사회서비스 제공자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단은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시에 시정부가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정책들, 복지개혁, 의료복지 제도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권고안을 주정부에 제시하기도 한다.

또 다른 예는 미국 내에서 4곳의 지역사회에서 실시된 바 있는 근린 및 가족 이니셔티브(Neighborhood and Family Initiative : NFI)이다. 주민을 포함하여 근린 지역 내의 공동체혜를 통해 추진된다. 근린지역의 욕구와 강점을 평가하고, 근린을 위한 공유된 비전을 개발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는 장단기적 전략을 고안한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하트포트(Hartford)에서는 다섯 개의 주요 욕구영역을 찾아낸 바 있다. 이는 교육, 고용, 지역사회 권한부여, 경제개발 및 가족과 개인의 건강과 복리 등이다. 이들 영역에서의 욕구를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는 다른 근린 단체들과 제휴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저소득 주민이 이용 가능한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을 조사하고, 지역사회를 조직화하고 정보를 보급함으로써 지역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을 위해 보다 옹호적이 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넷째, 대부분의 지역중심 이니셔티브들은 여러 가지 재정출처들을 합쳐서 자신들의 활동을 재정 지원한다. 일부는 지역사회 내 기존 이해당사자들과 재정과 정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시스템 당국을 함께 불러들여서 공통의 지역사회 목적을 향해 함께 일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CCI는 기존 지역사회프로그램의 행정 또는 재정지원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볼티모어 시의 샌드타운(Sandtown)이란 근린 지역에서는 동반자관계를 통한 지역사회 건설(Community Building in Partnership)이란 이니셔티브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75개 도시, 주 및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을

한데 모아서 주택, 교육, 보건 및 인적 서비스, 고용, 대중 안전 및 지역사회 구축 등의 프로그램을 변환시키는 데 사용한 바가 있다.

다른 이니셔티브는 기존의 이해당사자들을 함께 불러들이지만, 각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부문들이 특정한 재정에 대해서는 그 원천을 포기하고 보다 큰 재정 풀(Pool)에 대해 연합 의사결정 권위체를 창출하도록 요청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캔사스시(Kansas City)의 LINC는 지역사회복지기금(Caring Communities Fund)을 운용하는데, 이는 5개의 각기 다른 주정부 부서들(사회서비스, 정신보건, 보건, 노동 및 교육 등)로부터 받은 재원을 하나로 합하여 창출된 것이다. 이것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곳으로서 학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5) 지역중심 종합 이니셔티브들의 성공요인

지금까지 고찰한 지역중심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또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이다. 성공적인 요인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에서의 자치단체 중심 아동 청소년업무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복지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지적할 점은, 미국의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복지정책, 나아가 지역중심 종합 이니셔티브들에 대한 몇 가지 평가연구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그러한 정책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복잡한 목적, 구조 및 메카니즘은 해당 이니셔티브들이 성공적인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요소들이 그 성공과 실패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밝혀주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들 중에는 제대로 목적과 개념이 정의되지 않거나 쉽게 측정할 수 없는 광범위한 성과를 추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역중심 정책들은 지역적 상황에 맞게 디자인되었고 시간이 많이 걸린 후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시점을 전망하는 식의 평가

는 프로그램의 전개상황에 따라 잘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주요한 종합적 지역중심 이니셔티브들에 대해 연구한 최근의 평가는 이니셔티브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적인지를 평가하기 보다는 여전히 이니셔티브들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몇 가지 평가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유사한 지역중심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는 데 유용한 몇 가지 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지역중심의 청소년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 특히, CCI와 같은 지역사회 중심 이니셔티브를 착수하고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임을 알아야 한다. 이니셔티브 참가자들간의 협력과 제휴가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같이 일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쉽게 협력하지 않는다. 특히 돈과 힘이 공유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목표가 난해한 것이거나 관계기관과 후원집단 간에 생각하는 바나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둘째, 지역중심 이니셔티브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기관이나 단체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운영주체를 만들거나 하는 일에는 각기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다. 특히, 새로운 운영주체를 만드는 경우에 유리한 점으로는 새로운 주체는 다른 특정 지역사회 집단에 대해 신세를 지거나 은혜를 입은 바가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과 힘을 결여하기 쉽다. 기존 집단들과 함께 신뢰성을 얻고, 그들의 존경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 만든 운영주체가 명료하면서도 필요한 목적을 위해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내 다른 집단들에 중립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예가 될 것이다.

셋째, 지역중심 이니셔티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목적과 장기적 목적을 미묘하게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작은 목표를 계획단계 동안 이룩하는 것은 제휴적 과정에서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지속하는 데 필요한 전환적 계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단기적 성공들은 지지를 구축하고 장기목표에 관심을 가진 재정지원자들과 지역사회를 유지한다. CCI는 각각의 구체적 프로

그럼 요소 하나하나에서 강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질 높은 방과 후 개인교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서비스의 예가 될 것이다. 더욱이 강한 조직적 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각기 다른 서비스 기관을 통한 효과적 조정 능력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넷째, 융통성 있는 재정지원이 지역중심 이니셔티브들의 개발과 유지에 중요하다. 종종 이러한 CCI는 하나의 민간 재단, 주 또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단 하나의 융통적인 재정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몇 개의 재정범주를 합쳐서 다른 재정출처로부터 받은 재원을 보강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이미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미국의 CCI의 하나인 CCRP(Comprehensive Community Revitalization Program)의 경우에는 직원, 기술지원 및 프로젝트의 착수를 위한 융통적인 재정에 6백만 달러를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추가적인 320만달러를 다른 프로그램 전략의 실행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CCI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단 해당 정책 이니셔티브를 착수하는 재정지원이 끝났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재정적 지지를 창출해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더 많은 이익을 내려고 차입금으로 투자하거나 하는 것이 그러한 방법이 될 것이다.

4) 한국정책에의 시사점

이 글에서는 연방정부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복지정책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에서의 청소년정책의 일반적 특성과 그 속에서의 복지정책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연방정부정책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몇 가지 사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중심 청소년복지정책의 일반적 현황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연방과 주정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책사례로는 청소년흡연규제를 위한 이른바 PUP정책의 내용을 알아보았으며, 연방정부 법안의 주정부 실행사례로 텍사스(Texas)주 댈러스(Dallas)시에서의 청소년노숙자 정책사례를 고찰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오랜 역사를 두고 미국의 각 주별로 타운, 시 및 마을 단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다양한 이니셔티브 중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CCI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CCI 사례에는 그 전반적 의미와 함께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초점으로 하는 사례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메릴랜드(Maryland)주의 볼티모어(Baltimore)시에서 전개된 시민근로단(Civic Works)과 신선한 출발(Fresh Start)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보았다. 이러한 CCI의 의미와 유형, 현황 및 성공적인 최근 사례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중심 종합 이니셔티브들의 특성과 그 성공요인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하면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 청소년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청소년정책이 없는 가운데에도 주별로 주요한 청소년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된다는 점이다. 많은 주들이 연방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통합된 국가청소년정책 수립을 원하고 있지만, 주정부 중심의 미국 정치사회제도는 이러한 성과를 쉽게 달성할 수 있게 할 것 같지 않다. 이 점에서 보면,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청소년정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선진국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달성하고 있지 못한 통합적인 국가청소년정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각 주에서 나름의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독자적인 정책을 우리나라의 각 자치단체별로 수립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이관받아 시행하는 수준이며, 나름의 자치단체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청소년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곳이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 점에서 각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과 함께, 나름의 특화된 청소년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적 정책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지역별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그 한 방향이 될 것이다.

둘째, 미국 청소년정책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주별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의 방향이 전반적으로 청소년 계발(Youth Development)을 중심전략으로 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주의 경우, 청소년범죄에 방에 둔 문제 중심, 결합모델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보다 많은 주들이 청소년 계발 모델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정책의 내용도 이러한 기본 정책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각 주들이 나름의 청소년정책을 개발하고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경향은 청소년문제 중심의 모델에 입각한 주 대신에 청소년 계발모델을 강조하는 주들에서 청소년들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별로 나름의 이론적 배경을 가진 모델에 입각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자치단체 청소년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청소년 계발은 단지 청소년과 관련한 문제나 특정의 위기상황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가치, 자산성 및 아동과 청소년의 잠재력을 그 상황과 관계없이 강조한다. 청소년개발을 목표로 하는 접근법은 아동복지, 소년사법, 정신보건 분야 등에서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정책의 기본 모델이 되고 있다.

셋째, 청소년흡연구제 정책이 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의 담배 소유, 사용, 구입(Possession, Use, and Purchase : PUP)에의 접근과 관련된 사례는 미국의 청소년정책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성에 대해 알려 준다. 미국의 청소년정책은 주로 주정부 차원을 중심으로 법제화를 비롯한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실행은 주로 지역정부 차원 즉, 도시, 타운, 마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중앙정부의 법률과 정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성격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할 때, 자치단체 고유의 청소년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자치단체별로 특화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복지정책의 내용이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한 방향이

될 것이다. 농업중심의 지자체와 공업중심의 자치단체의 청소년실태와 자원 현황이 같을 수 없으며,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또한 같을 수 없을 것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지실정에 맞으면서, 지역발전에 유용한 방향으로 청소년복지정책을 구성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같은 뉴저지(New Jersey)주 내부에서도 각 타운별로 PUP조례의 적용범위,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이 내용별로 각기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미국의 남부 텍사스주의 델러스시에서 실행되고 있는 노숙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방정부에서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다시 더 구체화되어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기본 법령을 제정하고, 그러한 법의 성격에 맞게 이를 뒷받침하는 법을 주정부에서 제정하고 이를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연방정부에서 제정된 해당법률의 입법정신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역할과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정의되고 있으며, 노숙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의 시행과정, 절차, 내용 및 요건 등의 제반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도화되고 있고 표준화, 시스템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에서도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실행방법에 대해 표준적 절차를 확립하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가출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의 경우, 가출청소년을 확인하고,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에 이송하는 등의 절차와 내용 및 요건 등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표준절차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 집에 돌려보내지고, 또 어떤 경우에 보호시설로 이송되는지 등에 대해 대상의 연령과 성별 및 가출 사유 등에 따라 자치단체별 또는 지역별로 그 적용범위와 절차 등이 같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델러스(Dallas)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노숙청소년프로그램의 목표와 대상인구, 담당직원의 역할, 프로그램 실행

청절차 등이 매우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재정지원 절차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다섯째, 미국에는 오랜 역사를 두고 발전되어 온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복지정책이 다양한 형태로 지역과 시기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유사성을 갖고 시행되고 있다. 종합적 지역중심 이니셔티브(CCI)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 자치단체에서의 성공적인 사례들은 다른 곳으로 확산되고, 또 지역별 현안문제에 맞추어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그 가족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자치단체별로 도시, 타운, 마을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청소년단체, 전문가, 주민 등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 실행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의사결정의 중심이 연방에서 주정부로, 다시 주정부에서는 지역정부로 가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사회의 시민적 참여를 기반으로 종합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점은 자치단체 청소년복지정책은 해당 정책의 주요 대상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책이 적용되는 중심지역에서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청소년 가족 또는 청소년지도자와 전문가 등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전개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끝으로, 텍사스주 댈러스시에서의 노숙청소년 복지정책과 자치단체별 종합적 지역중심 이니셔티브(CCI)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청소년복지정책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해당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관련 개인과 유관기관 등의 공동협력과 제휴가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부분, 여러 기관이 정책 내용이나 대상별로 연대하거나 필요한 경우 하나의 새로운 운영주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사회 또는 자치단체 내에서의 유관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제휴는 지역중심 청소년복지정책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연계되고, 청소년과 그들의 가정이 연계되고, 그럼으로써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관련을 맺게 된다. 아동단체와 청소년기관, 가족복지를 위한 사회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활동하는 것도 이와 맥

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일반인과 전문가, 개인과 단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물론이다. 이와 같이 지역중심 청소년복지정책의 성공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 당사자 및 유관기관들이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당지역의 이니셔티브를 실천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볼티모어시의 시민근로단(Civic Works)활동의 경우 시장직속 고용개발실과의 밀접한 관련은 물론, 아메리콥스(AmeriCorps)나 청소년강화(YouthBuild) 프로그램 등과 상호 연계하여 공동 추진되고 있다. 또한 켄사스시의 LINC 이니셔티브는 5개의 정부부서들로부터 받은 재원을 하나로 합쳐서 공동 운용하는 사례이다. 자치단체 복지정책 특히 빈곤한 아동과 청소년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종합적 지역중심 이니셔티브 : CCI’에서 공동체휴과 공동재원을 통한 융통성 있는 재정집행 등은 기본적 특징이 되고 있다. 개별 프로그램 중심, 단일 예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선진국의 운영방식을 연구하고 신중히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청소년복지정책의 여러 가지 사례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관련성, 자치단체별로 지역중심으로 전개되는 다양한 ‘종합 이니셔티브’들의 성격과 내용 등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더욱이 각 사례들이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약물오남용 또는 흡연청소년, 노숙청소년, 빈곤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등에 대해 미국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숙청소년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청소년흡연이나 학교밖 청소년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밖 청소년들이 많은 볼티모어시에서 이들을 건강한 성인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시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유사한 실정에 있는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 제공된 구체적인 사례의 내용들이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2. 프랑스⁷⁾

1)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청소년 정책

프랑스는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사회연대노동가족부(Ministè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et de la Solidarité)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 정부는 청소년층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과 함께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 들어가는 이들의 연령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춘기가 시작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층을 위한 정책은 청소년 범주를 따로 정하고(이들 범주는 jeunesse라는 어휘를 사용) 이들의 문제는 정부에 청소년부(la Ministère de la Santé, de la Jeunesse, des Sports et de la Vie Association)를 따로 두어 전담하고 있다. 위의 두 정부 부처의 정책을 보면 프랑스 정부의 주된 청소년 정책을 알아볼 수가 있다.

(1) 사회연대노동가족부(Ministè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et de la Solidarité)

① 정책 동향

프랑스 중앙정부의 아동·청소년 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이 부처의 정책은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일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예방정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치료 정책이다.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층은 대개 취약계층의 청소년들로 이들

7) 이 부분은 파리 Dauphine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후 과정 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을 위한 정책은 학업보다는 이들이 미래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② 정책 프로그램

① 예방정책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을 가족부에서 담당하면서 이들의 보호를 위한 가족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동 양육이나 교육에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의 부모에 대한 관찰과 함께 취약계층의 가정에 대한 예방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예방정책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 가족수당제도(Caisse Allocation Familiale)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여 양육이나 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정부가 덜어줌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아동·청소년들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정책이다.

■ 아동재가복지(Intervenir à Domicile)

아동이나 청소년의 문제보다 이들 가정의 부모들이 문제를 갖고 있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정책으로, 부모 자신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웃의 신고나 사회복지사들이 발견하여 아동들을 보호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부모들이 부모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과 교육을 대신 수행해 주는 정책이다.

■ 지역시설에서의 예방보호서비스(les Actions Educatives en Milieu Ouvert)

위의 아동 재가복지의 경우보다 아동들의 가정환경이나 이들 부모의 문제가 심각할 경우 자녀들을 가정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을 따로 시설에 보호하는 정책이다. 이는 아동, 청소년들의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이로 인해 아동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질 수 있어 이들의 인성 발달이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특별예방(la Prévention Spécialisée)

이 정책은 위의 세 가지와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아동보다는 주로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직접 면담하여 그들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예방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정책을 실행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 제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와 연결해 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길거리 사회교육(le Travail de rue)을 들 수 있다.

② 보호치료정책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으로 예방정책보다는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보 수집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2004년 각 지방마다 지방관할 관찰기(l'Observatoire Départemental de la Protection de l'Enfance)를 설립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연계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다시 각 기관에 배포하는, 보다 효과적인 아동보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보호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 시설보호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가정이 아닌 복지시설에 보호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험환경이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켜 정상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설의 종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구분이나 이들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보호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 개인가정 재가보호(l'Accueil Familial Spécialisée)

이는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시설이 아닌 일반 위탁 가정에 보호하는 방법으로 시설보호보다는 단기성이지만 시설이 주는 분위기와는 다른 가정적 분위기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는 일반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 주는 두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2) 건강·청소년·체육·단체생활부(la Ministère de la Santé, de la Jeunesse, des Sports et de la Vie Associative)

① 정책 동향

청소년부를 따로 두어 청소년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시기가 지니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환경의 특성이 아동과는 다를 뿐 아니라 청소년기는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국가 인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모든 프랑스 국민들의 관심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 구조의 변화가 전통사회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프랑스 사회의 청소년들은 사회와 가정환경에서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청소년들의 미래를 지원하고 있다.

② 정책 프로그램

이러한 청소년부의 주요 정책은 크게 세 개의 주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생활전반을 위한 지원정책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여가생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생활 외의 여가나 취미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접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 개발이나 미래의 직업 활동을 구상하게 한다.

■ 정보제공

청소년의 자립성과 청소년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청소년 활동이나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은 프랑스 국내는 물론 유럽연합 국가들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 정보제공 기관으로는 파리에 있는 청소년정보자료센터 : CIDJ(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Jeunesse)를 중심으로 30개의 지방 청소년 정보센터 : CRIJ(Centres Régionaux Information Jeunesse), 258개의 청소년정보관 : BIJ(Bureaux Information Jeunesse), 1,224개의 청소년정보소 : PIJ(Points Information Jeunesse)가 설치되어 있다.

이 기관들은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 청소년들이 필요한 최대한의 정보를 입수하도록 돕고 있다.

- 전자정보 센터인 ‘point cyb’가 있어 청소년들의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수집을 지원하고 있다.

- www.jeunesse.gouv.fr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최우선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입수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 사이트의 주 대상은 15세에서 30세의 청소년층이다.

정부의 다른 각 부처의 협력을 요청하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된 정보로는 학교교육, 각종 자격증 취득, 취업, 직업 교육, 건강, 법적 문제, 주거 등 거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 청소년들의 활동 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 참여욕구(Envie d’Agir)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 중이며 이 프로그램을 위해 www.enviedagir.fr 사이트를 개설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권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1세에서 30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의 관심이 되는 모든 분야의 정보와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통계로 2006년 3,400개의 청소년정책 계획이 실행되었으며, 42,000명의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직접 혜택을 받은 수혜청소년은 13,500명이었다.

■ 국제교류

유럽 연합국은 물론 다른 외국 청소년들과의 국제교류를 위해 교육, 여가 활동은 물론 취업 교류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지원하고 있다.

② 보건정책

청소년을 위한 보건정책은 크게 건강프로그램과 운동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다.

■ 건강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 건

강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청소년부에서는 특히 청소년기의 특성인 호기심과 또래집단의 영향으로 인해 접하게 되는 건강에 유해한 알코올, 흡연, 마약 그리고 비만에 대한 정책을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의 임신과 에이즈에 대한 홍보 역시 중요한 정책으로 두고 있다. 특히 매해 증가하는 청소년 음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운동(sport)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정책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여가 선용은 물론, 스포츠를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 청소년 스포츠 센터를 마련하여 이용이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③ 비영리 단체인 협회(association)지원정책

프랑스는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비영리 단체인 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협회는 공 기관이 아닌 사립 기관이지만 많은 부분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된다.

■ 직업협회와 직업교육 협회에 대한 지원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정책을 실행하는 다음과 같은 주요 협회가 있다.

- 청소년과 대중교육 협력기금 : le Fonds de Coopération de la Jeunesse et de l'Education Populaire(FONJEP)
- 협회활동 발전 위원회 : le Conseil de Développement de la Vie Associative(CDVA)
- 자원봉사 정보제공 센터 : les Centres de Ressource et d'Information des Bénévoles(CRIB)
- 협회활동을 위한 지방 대표단: les Délégués à la Vie Associative(DVA)
- 협회정보와 안내 업무 : les Missions d'Accueil et d'Information des Associations(MAIA).
- 협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association.gouv.fr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협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참가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각 계층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앙정부는 청소년 생활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정책의 틀을 만들고 각각의 정책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방법을 다양하게 설정해 놓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최대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각 지방정부 단위로 정책이 실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분리되는 동시에 서로 긴밀하게 협력되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주요정책의 설정은 중앙정부가 하고 각 정책실행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어 각 지방특성에 맞게 정책실행이 되도록 하고 있다.

2) 지방정부로서의 파리시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오늘날 파리는 파리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특성과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행정 구역인 코뮌(commune)과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모두를 일컫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활동·아동·건강부서(DASES : Direction de l'Action Sociale, de l'Enfance et de la Santé)는 파리시(ville de paris)로서 뿐 아니라 데파르트망 드 파리(Département de Paris)로서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의 청소년정책은 프랑스 행정의 중심인 지역적 특성과 함께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프랑스의 지방정부 행정 모델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1) 사회활동·아동·건강부서의 청소년복지정책 동향

이 부서는 파리시(ville de paris)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 청소년정책의 본부역할을 하고 있다.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의 청소년정책 대상자는 주로 16세 이후 25세까지의 청소년이다. 이러한 연령의 구분은 16세 이전의 청소년은 학교교육에 의해 다소 위험방지에 대한 제한과 조절이 되지만 16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유해환경에 접근하기 쉬운 나이의 특성으로 인해 더 많은 보호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리시의 청소년정책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담당부서인 사회연대가족부뿐 아니라 청소년부, 보건체육부, 문공부, 법무부와 같이 부분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수립되고 있다. 특히 각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마련된 기본적인 정책이 지방정부로서 파리시의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실행되고 있다.

더 세부적으로 청소년정책은 사회활동·아동·건강부서 산하의 가족·교육활동국(la Sous Direction des Actions Familiales et Educatives : SDAFE)에서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중앙정부는 청소년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5월에 아동·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였다. 특히 이 개정법은 청소년들의 교육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모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21세 이전의 성년이 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이러한 중앙정부의 청소년방침이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① 업무

이 부서의 업무는 가족법으로 확정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❶ 청소년들은 물론, 이들 가정의 물질·교육적·심리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 지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정책.

❷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보호 정책

❸ 위기 청소년들과 취약 계층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물질 지원 서비스

④ 필요에 따라서 청소년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있는 부모나 책임자들에 대한 관찰

② 협력 기구

위의 주요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 이 부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청소년 관련 단체나 협회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협력기구는 정부기관은 물론 청소년 관련 민간 기관과 비영리단체인 협회(association)가 있다.

주요 협력기구로는 ① 사회활동·아동·건강부서(DASES)의 산하 국가기관인 파리의 다양한 청소년복지센터와 학교사회복지기구와 의료사회복지기구 ② 파리시 관할의 비영리 청소년복지협회가 있다.

③ 정책관련 통계

다음의 정책 관련 통계를 통해 파리의 청소년 정책 규모를 알 수 있다.

① 관계 직원

총 2,555명으로 이중 최전선에서 정책실행을 담당하는 573명의 사회복지사(중앙부처에 369명, 산하기관에 204명)가 있으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복지사가 904명이다. 또 1,078명의 지방정부(département) 소속 청소년·아동정책 관련 직원이 있다.

② 2007년 아동·청소년복지 재정 : 2억 9,300만유로(4,540억원)

■ 지역단위 예방 지원 총 2,113만유로

- 1,730만유로의 특별예방
- 270만유로의 복지센터
- 56만유로의 협회 예방 지원
- 26만유로의 학교교육을 위한 협회 지원
- 31만유로의 방학 프로그램 지원협회 지원

■ 개인 지원 총 3,978만유로

- 178만유로의 사회가정 복지사의 지원금
- 250만유로의 재가 교육활동(AED)과 시설교육활동(AEMO)지원금
- 560만유로의 학교 기숙사지원

- 2,320만유로가 아동보호의 명목으로 지급
- 670만유로가 가족수당으로 지급
- 기타 물적지원 1억9,000만유로 지급

위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재정을 보면 파리시의 많은 예산이 청소년 특별 예방에 집중되어 있어 파리시의 청소년정책은 특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 보다는 개인별정책 지원금이 많은 것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정책 프로그램

파리시는 취약계층의 청소년문제를 전체 공동프로그램과 함께 개인별 환경에 따르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해결해 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청소년 관련 기관들은 청소년들의 접근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여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극대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실행의 목적은 청소년 활동의 양과 질을 강화하는데 있다. 또한 건강과 교육의 증진과 더불어 소년범죄 예방강화와 재범예방에 있다.

① 예방 프로그램

취약계층청소년을 위한 예방프로그램은 지역의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청소년과 그들의 가정을 보호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청소년들의 사회부적응 예방과 사회적응을 위해 그들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변 환경이나 이들 가정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특별예방 프로그램으로 주로 사회교육에 필요한 여가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❶ 예방

■ 특별예방 (Prévention Spécialisé)

청소년들의 특별예방 프로그램은 파리시의 사회활동·아동·건강부에서 가족·교육활동국 산하에 청소년예방활동과(Bureau des Activités de Prévention pour la Jeunesse : BAPJ)을 따로 두어 전담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파리시의 취약계층청소년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 예방 프로그램은 2005년 10월 파리시와 비영리 민간단체인 협회가 결연 조약을 맺고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지방정부가 위기청소년이나 위험환경에 놓인 청소년을 위해 그들의 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18세에서 21세까지의 성년이 된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파리 데파르트망의 특별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여러 부처가 협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로 2000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해 볼 때, 사회활동·아동·건강부서의 특별예방을 위한 재정이 2000년도 1200만유로에서 2007년에는 1800만유로로 증가해 이 기관 업무의 양적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업무 담당에 있어서 전일제(Equivalent Temps Plein :ETP)로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2000년도의 근무자 수보다 72.7% 증가하여 총 297명의 직원들이 전일제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길거리교육자 팀도 58개에서 64개로 확대되었다.

* 길거리교육 프로그램(Education dans la Rue)

이 프로그램은 특별예방정책을 실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특별예방을 전담하고 있는 21개의 협회에서 64개 팀의 길거리 교육자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소외된 청소년을 직접 만나 이들에게 적합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찾아 주는 것이다. 2007년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16,340명에 달하고 있다.

길거리교육의 긍정적인 면은 위기청소년들을 최일선에서 직접 접한다는 것이다. 특성상 일반적인 정부정책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는 개

별적인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은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숙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조직은 25년 동안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차츰 제도화되어 재정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교육자들의 권한이 제도권에 의해 상당히 약화되고 있어 제도화 되면서 오히려 정책효과가 감소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도 있다. 이는 청소년 개개인의 문제해결보다는 청소년 문제를 마약중독, 알코올 중독, 청소년범죄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각 범주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을 쓰고 있어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접근방법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문제해결보다는 정해진 예산에 정책을 맞추고 있어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은 우선적으로 문제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고, 청소년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간의 중요성, 즉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청소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을 소외 고립시키지 말고 또래집단을 결성하여 같은 취미나 여가를 보내면서 서로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자아를 구축하여 스스로 해결방법을 터득케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길거리 교육자(Educateur dans la Rue)

1983년 이후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청소년선도 길거리 교육자가 구성되었다. 초기에는 자원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길거리를 배회하는 문제 청소년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다가 차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협회를 결성, 조직이 발전되어 갔다.

길거리 교육자들 외에 청소년을 선도·보호하는 다른 기구로는 소년범죄자들을 케어하는 교육자들이 있다.

■ 파리 청소년 서비스(Paris Ado Service)

이 프로그램은 1992년에 개설되어 위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위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파리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위기청소년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가족과 연결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주 대상자는 13~21세 청소년들로 주간 보호는 물론 야간 주거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협력협회로는 파리시 청소년보호협회(Association Sauvegarde de l'Adolescence de Paris)가 있으며, 이 협회는 2006년도에 파리시로부터 100만유로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야간의 주거공간이 제공 되는 장점이 있어 여자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으며, 매우 효과적인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2006년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청소년이 약 500명에 불과 이 시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홍보의 필요성도 정책 실행의 하나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 가정보호예방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주변환경 중 가정환경을 중시하여 지원이 요구되는 청소년들의 가정을 가정복지사(TISF : Techniciennes de l'Intervention Sociale et Familiale)가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 가정의 일을 도와줌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해 주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으로는

- 가정에서 제공되는 재가교육활동(AED : Actions Educatives à Domicile)으로 청소년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가정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 법적 판결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인 시설교육활동(AEMO : Actions Educatives en Milieu Ouvert)으로 복지사나 이웃의 조언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청소년문제를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함으로써 지원이 요구되는 청소년을 의무적으로 보호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위의 두 프로그램을 위해 11개의 협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② 학교생활강화 지원

■ 학교 학습지원

이 프로그램의 실행목적은 학교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학교교육을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결석이 잦은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들의 문제를 분석하여 학교학습에 충실하도록 지도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들이 학습의욕을 갖도록 해주고 있다. 즉, 청소년들의 보충학습 지원이나 부모들의 청소년자녀 교육능력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학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파리시의 두 개의 협회(파리시 19구와 13구에 위치하고 있음)에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교육전문가들이 함께 청소년의 학교결석 요인에 대해 분석한 후, 10여 명의 부모들이 한 팀이 되어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활동을 위한 정부의 연구비 지원은 2년간 9만6천유로였으며, 파리시 교육부로부터 4만9천유로의 교육비가 지원되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계속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기숙생들이 방학과 같은 퇴소기간 동안 다른 거주할 수 있는 가정을 찾아주는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즉,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지만 주말이나 방학기간에는 기숙사를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청소년을 위한 가정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단기간 보호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 이 프로그램은 수혜자는 451명이었다.

③ 특정지역을 위한 정책

파리 북서지역조직(Réseau Paris Nord-Est)이라는 이 프로그램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파리 북서부의 취약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10월에 이 지역 청소년 위생, 건강, 학교, 직업교육 담당자들이 만나 논의하여 개설된 프로그램으로 파리 데파르트망과 특별협정을 맺고 운영되고 있다. 실행기관은 파리 청소년보호협회로 각 협력기관들이 긴밀하게 연결하여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문제를 상담, 해결(특히 심리상담을 포함)하고 있다. 대상자는 파리시의 18, 19, 20구에 거주하는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재정은 2006년에 25만유로였다.

④ 문화여가활동 지원

■ 조기에방(Prévention Précoce)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취약지역 청소년들의 학교 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문제를 조기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로 청소년들의 화합과 공동생활을 통한 사회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5년 파리시와 가족수당기금부와 복지센터가 함께 결연 조약을 맺고 시작되었다. 2000년에 3개의 협회에서 5개의 지원센터를 운영하던 것이 2001년 이후 11개의 협회에서 운영하면서 각 취약지역의 청소년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그 효과를 본 결과 2007년에는 28개의 복지서비스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이 중 8개는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개설되어 청소년들의 이용과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정책 역시 긍정적인 효과와 성과를 올리고 있다.

■ 방학 프로그램

방학기간 동안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방학여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01년 60개 협회에서 15만유로의 재정지원으로 시작했던 것이 바로 다음해인 2002년에 100개의 협회에서 31만유로의 지원으로 운영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협회가 증가한 것에 비해 각 협회에 대한 재정지원의 증가는 없는 편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재정지원은 파리시의 31만유로와 중앙정부의 34만유로이다. 2007년에는 여러 협회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285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② 치료 프로그램

① 특별환경에 대한 지원 (미혼모, 약물중독, 불법 채류 외국청소년문제 등)

■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쉼터제공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미혼모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인 동시에 유아보호정책이다. 미혼모와 이들의 3세 미만의 아기들을 위한 물질적·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거주 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보호하는

장소를 마련하고 있다. 실행기관은 파리시에 2곳이 있으며, 각 22개와 24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3세 이하의 자녀와 동반 거주할 수 있다. 미혼모 청소년의 부모들과 협력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1세가 되면 퇴소해야 하며 하루 일인당 91유로의 재정지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유아와 엄마들을 위해 데파르트망 내에 4개의 모자센터가 있으며 미혼모인 청소년도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 6개의 협회에서 이 모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315명의 미혼모와 329명의 유아들이 혜택을 받았다.

■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

약물중독이나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위해 각 교육기관과 연결하여 홍보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특히 특별예방을 위한 길거리교육자들처럼 청소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해 이들을 통해 청소년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청소년범죄 예방

청소년범죄 예방과 함께 소년범죄자들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근래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시민의 대화(Dialogue Citoyen)’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10여 명의 소년범죄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 단 3일 간의 대담을 통해 이들의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일단 프로그램 실행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각 기업에 소년 범죄자들의 취업을 요청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 협력기관과 운영회를 결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소외되어 있는 외국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보호자나 연고자가 없는 외국인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5명의 사회교육복지사와 1명의 복지행정요원이 이들의 문제를 관리한다. 관리기관은 소외된 외국청소년 관리처(Cellule d'Accueil des Mineurs Etrangers Isoles : CAMEI)로 2003년 아동사회지원부(Aide Sociale à l'Enfance:ASE)산하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매해 수혜자의 수가 감소되고 있다. 2002년 760건

의 서비스 의뢰가 와 이 중 272건이 지원되었으나 매해 감소되어 2007년에는 140건의 의뢰 중 74건이 지원되었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a. 청소년이 거주할 시설 수배
- b. 건강 검진
- c. 학교교육을 포함하여 이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 d. 이러한 절차가 끝난 후 최소 2개월 후에 13개의 아동청소년 보호센터 중 한 군데에서 이들을 관리 보호한다.

이 프로그램의 재정은 2005년 270만유로이며, 행정당국이나 사법당국과의 연결과 협력에 어려움이 많아 매해 수혜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② 생활자립에 대한 지원(직업교육과 재정지원)

■ 성인이 된 청소년들의 자립성을 위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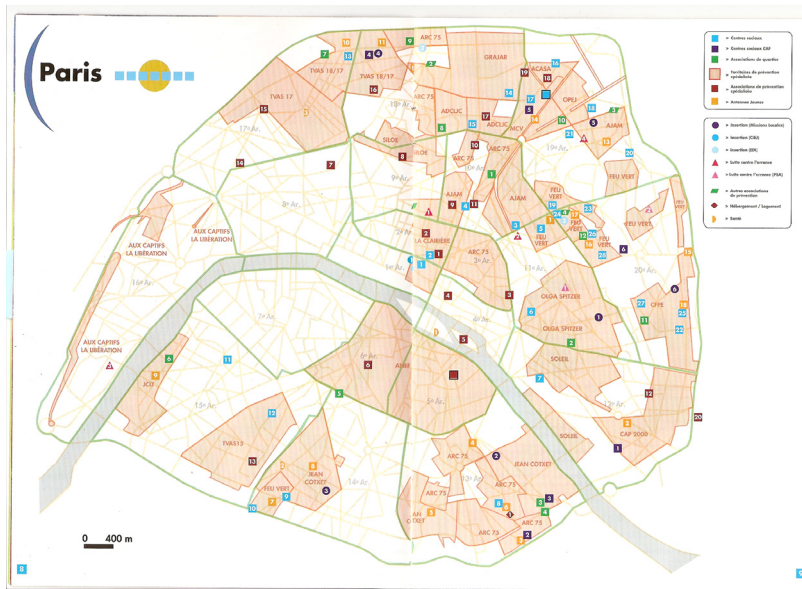
복지시설에 있던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설에 거주했던 18세 이상이 된 청소년들을 복지수혜기준에 따라 재평가한 후, 지원이 더 요구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지원을 포함한 직업교육 지원, 수당과 교통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 부모역할 지원

부모역할지원협회에서 취약한 환경에서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성년이 된 청소년(18세 이상)의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과 이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다.

(3) 청소년정책 실행기관

위의 프로그램의 실행은 지원 청소년 각자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요구되는 지원에 따르는 다양한 보호 기관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들과 격리 보호 되거나 가출한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 하면서 청소년 지원 정책을 실행 하고 있다.



[그림 III-1] 파리의 청소년정책 실행기관 위치

위의 지도는 파리에 설립되어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센터들을 표시한 것이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옅은 밤색으로 면이 칠해진 곳은 특별예방지역(Territoires de Prévention Spécialisée)이다. 다음으로 많은 곳이 27개의 청소년을 위한 일반 복지 센터(Centres Sociaux)이고, 가족수당기금부센터(Centres Sociaux CAF) 6개가 있으며, 지역의 청소년협회(Associations de Quartier) 12개가 있다. 특별예방협회(Associations de Prévention Spécialisée) 20개가 있으며, 젊은이들의 정보센터인 Antennes Jeunes가 18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외에 7개의 배회하는 청소년을 위한 센터, 단기숙소(1개), 건강센터(1개)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지도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주로 파리 북동쪽의 취약지구(Quartier)에 복지시설들이 많은데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근접지역에 시설을 마련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① 2007년도 취약계층청소년의 복지수혜 통계

① 보호서비스를 받은 수혜자는 4,933명, 이중 1,115명의 성년이 된 청소년(Jeunes Majeurs)들과 360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청소년들이 보호지원을 받았다.

② 4,933명의 수혜자중 2,431명이 시설보호, 1,904명이 가정보호, 272명이 다양한 거주지를 이용(보호센터, 호텔 등), 104명이 단기입양 장소, 222명이 법의 판결로 지정된 보호소에서 보호를 받았다.

② 데파르트망의 공공 보호기관

① 1개의 긴급보호센터

② 6개의 아동/보호기관

③ 8개의 청소년기관 중 1개의 학교나 직업학교 준비기관, 5개의 직업교육기관, 2개의 긴급 청소년 기관

④ 4개의 미혼모 보호기관

③ 데파르트망의 가정 보호 서비스(Services d'Accueil Familial du Département)는 훈련된 사회복지사들이 문제청소년의 가정을 지원 보호하고 있다.

④ 비영리협회 청소년 보호기관

① 대부분 파리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000명 이상의 수용이 가능한 장소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1901년 이후 제정된 협회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② 2개의 긴급보호소는 13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③ 1개의 직업교육훈련센터

④ 4개의 주거보호센터(Services d'Accueil en Hebergement)

⑤ 가정지원 보호서비스는 5개의 가정지원서비스를 파리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가정지원복지사가 활동하고 있다.

⑤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관이나 프로그램 소개

야간청소년쉼터(Abri de Nuit)로 파리에 한 군데 있으며, 가출청소년들의 숙소를 마련해 주고 있다.

⑥ 모자센터(Centre Maternel)

모자센터는 주로 취약계층의 젊은 산모들과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위한 센터로 청소년 미혼모들에 대한 보호지원의 임무를 갖고 이들을 물질적·정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파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모자센터는 4개로 파리에 3개와 외곽에 1개가 있다.

이 기관은 155명의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 비영리 민간협회에서도 여러 군데 모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연간 총 300만유로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⑦ 직업교육센터(les Centres Educatifs et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지원이 요구되는 청소년 개개인의 적합한 교육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센터의 대상 청소년은 14세에서 21세의 청소년들로 실행기관은 5개이다. 직업교육은 물론, 외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어교육도 실시한다.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과 함께 청소년 직업 활동에 대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❶ 훈련기간 동안 받는 월급에 대한 세금면제, ❷ 직업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주택수당의 혜택, ❸ 이들 부모들은 이들의 월급이 최저 임금의 55%를 넘지 않을 경우 20세 까지 가족수당을 받는다. 청소년 취업은 16세부터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직업 형태와 경우에 따라 14세 부터도 가능하다. 특히 방학기간 동안 파트타임의 노동이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은 성인노동자들과는 다른 노동보호를 받게 된다.

⑧ 관련 사이트

각 정책 서비스에 대한 정보입수와 청소년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개의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다.

www.jeunes.paris.fr

www.paris.fr/portail/Solidarit 

(4) 취약계층청소년의 정보수집과 평가

2005년 이후 프랑스는 청소년지원의 최적 효과를 얻기 위해 위기청소년의 상황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 대한 판결을 강화하여 청소년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위기 청소년이나 지원이 요구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① 위기청소년 정보수집처(Cellule de Recueil des Informations Préoccupantes : CRIP 75)

이곳은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수집기관으로 주요 수집 경로는 첫째, 데파르트망 내의 각 복지기관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위기 청소년들을 적합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청소년들에 대해 보낸 정보와 이 기관 자체에서 직접 입수한 정보들에 대해 평가한다. 둘째, 위기 아동·청소년 긴급전화(Service National d'Accueil Téléphonique de l'Enfance en Danger : SNATED)와 긴급전화 119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다. 이 기관은 이들 정보의 수집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매해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2006년도 이곳에 접수된 위기청소년 신고는 840건이었으며 이 신고접수로 1,246명의 청소년 문제가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② 위기와 위기경보에 대한 치료처(Cellule de Traitement des Signalements et de l'Urgence)

이 기관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평가하고, 정책실행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청소년문제 정보제공 담당 역할로 보아서는 위의 수집처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청소년문제를 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유일한 전달기관으로 이 기관을 통해서만 청소년 문제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이 기관은 관계전문가들이 위기청소년들의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법적 보호판결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

법을 연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무들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 ① 청소년의 관찰이 가능한 학교나 청소년 주변의 측근에 의해 정보를 수집한다.
- ② 119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이를 통한 아동학대나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 ③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이들의 문제를 평가한다.
- ④ 경우에 따라 이들의 문제를 법원에 제출한다.
- ⑤ 위기 청소년 보호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이를 청소년 관계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③ 지방아동보호관찰관(Observatoire Départemental de Protection de l'Enfance)

2007년 5월에 개정된 법에 의해 모든 데파르트망은 이 관찰관을 두어야 하며 파리시에도 현재 부분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분석만을 보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안을 제안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임무의 폭을 넓혀 갈 예정이다. 이 관찰관의 멤버들은 아동재판소장, 지방 아동담당 경찰청, 청소년 법적보호 담당관, 지방의 청소년 의료사회 담당 책임자, 교육청 검사관, 공립병원의 사회복지사 관련 협회 임원들로 청소년 관계 전문가들이 고루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연 단위로 모임을 갖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여러 협력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와 문서를 제출한다.

(5) 정책실행의 질적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파리시는 청소년정책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① 정책실행 지원체계의 다양화

- ① 긴급보호 : 긴급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즉시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

- 정신장애와 인성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위한 데파르트망 차원의 긴급 보호서비스 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 현재 파리시에 6개의 실행기관이 있다.

- 실행방법은 긴급으로 접수된 청소년을 최대 70일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 중 이들 가정 상황에 대한 분석을 겸하여 서비스를 실행한다.

-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청소년들의 긴급보호소 거주기간을 최소화한다.

- 긴급보호 기관과 복지 서비스와의 연결을 강화 보완한다.

- 각 청소년 보호기관에 다음과 같은 긴급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각 기관은 긴급청소년 보호 능력을 확대하고 개발한다. 또한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한다.

② 청소년재가복지 개발(Developper l'Accueil Familial) :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가족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가정보호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 재가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청소년 가족들과 복지사들의 관계증진을 위한 구조를 개발한다.

- 가정복지사 증원과 이들의 대우를 개선한다.

- 재가복지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한다.

- 현재 재가복지는 파리에 9개의 서비스기관과 5개의 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257개의 가구가 2007년에 수혜를 받았으며 앞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③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단기보호소(Accueil Séquentiel au Sein des Maisons d'Enfants à Caractère Sociale)

가정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시설에서 단기 간 보호한 후 문제가 완화되거나 해결책이 마련되면 바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낸다. 현재 2개 기관에서 실행 중이며 2007년 6세~21세의 아동·청소년 100여명이 수혜를 받았다. 1일 1인에 대한 재정지원은 140유로 정도이다.

④ 청소년문제치료 교육기관(les Instituts Thérapeutiques, Educatifs et Pédagogiques : ITEP)

학습장애나 심리정신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능력이나 사고를 개발하여

이들의 독립적인 자립심과 정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청소년들의 학교와 가정생활을 지원한다. 이 기관의 목적은 치료와 교육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는 것으로 예전의 재교육기관이나 심리치료 교육기관들이 이 기관으로 통합 재조정 되었다. 학교생활에 대한 개인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별로 치료 교육한다. 파리시에 2곳이 있다.

② 관계전문가들을 위한 정책 실행능력의 개발

① 아동복지정책을 위한 업무 능력 개발

아동복지(ASE : Aide Sociale à l'Enfance)관련기관 직원들과 사회교육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② 정책실행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침

- 각 기관에 공통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 더 많은 정보입수 방법을 모색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관련기관이나 서비스정책의 노하우에 대한 평가를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실행 그룹과 협회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지방정부와 협회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수시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한다.
- 정책실행자들의 자가평가개발 기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한다.

③ 아동·청소년 정책부의 조직개발과 이에 따르는 적합한 청소년복지서비스 개발

- 효과적인 정책실행을 위해 지역을 구분한다.
- 각 지역을 구조화하여 지역별로 조직을 구성한다.
- 복지정책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정의한다.

④ 파리의 청소년정책 재정

100% 데파르트망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정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6년에는 9만유로의 재정지원이 있었다.

③ 협력체계

지원이 요구되는 청소년들의 개인별 프로젝트를 위한 지역내 협력체계.

① 아동정책을 위한 기술위원회(les Comités Technique Enfance : CTE)

이 기관의 임무는 청소년 가족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평가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정책서비스 기관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② 청소년 보호의 날(Journées de Protection de l'Enfance)

청소년정책에 대한 데파르트망 차원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청소년정책 관련자들의 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연중 필요한 시기에 열린다.

③ 전문가들의 모임

청소년정책 전문가들이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연중 기관에 따라 3~4회씩 개최한다.

④ 협회

프랑스에서는 청소년정책을 정부에서 수립하지만 각각의 프로그램 실행에 대해서는 정부산하 실행기관보다는 각 관련협회에서 더 많이 주도하고 있어 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 협회는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협회에 따라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곳도 많다.

취약계층청소년을 위한 협회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방학기간 동안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협회는 파리시에 무려 90개나 되며 이들은 한해에 1만 5천개나 되는 바캉스 프로그램 실행 장소를 마련하고 있어 이들 협회의 큰 규모를 알 수 있다.

3) 파리시의 취약계층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복지정책 사례분석

(1) 청소년 특별예방정책 : 길거리교육 활동(l'Education dans la Rue)

① 특별예방의 정의

이 프로그램은 위기환경에 노출되어 있거나 이미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청

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히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길거리교육'이라는 명칭과 같이 정책수행 장소가 길거리라는 지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프로그램 대상자들도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의미 외에 길거리라는 것은 가정이나 학교나 보호시설과 같은 제도권 기관에서 벗어나거나, 소속이 되어있어도 소속 행동반경에서 벗어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범주에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② 역사

① 기원 : 이 프로그램의 기원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사회교육활동의 하나로 학교교육 제도밖에 있거나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들의 생활 속에서(dans leur milieu de vie)'라는 명칭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몇 년 뒤에 이 정책의 주요 개념이 청소년 문제/예방의 강화로 바뀌면서 지금 명칭인 '특별예방(Prévention Spécialisée)'으로 바뀌게 되었다.

② 초기 : 청소년 문제에 뜻있는 성인들이 취약계층의 청소년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해 이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정책수행에 참가하는 관련 교육자들은 행정적으로 정해진 임기도 없었으며 이 활동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적 조항도 없었다.

이후 협회가 결성되고 활동을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과 정책을 수행하는 전문종사자인 교육책임자,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아동정책 담당자들이 합류하면서 제도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③ 1957년 : 협회 관계자, 자원봉사자, 청소년 교육자, 청소년문제 전문가들이 함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국가청소년예방위원회(Comission National Prévention)'를 창설하였다. 이 시기의 활동은 주로 문제청소년들의 치료에 그 목적을 두었으며 치료가 필요한 지역에서 그룹활동으로 이루어졌다.

④ 1963년 : '청소년 사회부적응을 위한 예방팀과 클럽 국가위원회(La Comité National des Clubs et Equipes de Prévention contre l'Inadoption Sociale

de la Jeunesse)’가 창설되었다.

⑤ 1960년 말 : 1968년 5월 혁명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변화가 일어나면서 청소년 교육에 대한 각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여러 분야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이 활동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정책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⑥ 1970년 : 프로그램 수행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 협회와 정부의 재원을 겸하여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당시 정부의 주 재정지원은 아동복지 부서(l’Aide Social à l’Enfance)로, 재정 지원이 시작되면서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정책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었다.

⑦ 1972년 : 1972년 7월 4일, 이 프로그램에 대한 법령이 공포되면서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정부 각 관련 부처의 협력으로 길거리교육자 팀이 더 조직화되고 지방정부의 ‘청소년 보건, 사회활동과 스포츠’ 부서(l’Action Sanitaire et Sociale et de la Jeunesse et des Sports)에서도 지원하게 되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이 프랑스 전역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활동의 발전과 더불어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을 교육(Education)과 치료(Curative) 중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특별예방 활동팀과 정부의 정책권한과의 갈등이 일기 시작하였다.

⑧ 1978년 : 청소년체육부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특별예방에 대한 정의를 요약, 대상 청소년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제시 하였다.

“특별예방은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에서 제외되거나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출구를 찾도록 도와 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⑨ 1986년 : 1월 아동보호정책의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지방정부의 아동정책 업무의 하나로 아동복지 부서(l'Aide Social à l'Enfance : ASE)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보호정책부의 교육활동의 하나로 더 강화하였다. 이러한 전담 부서의 창설로 프로그램 대상 청소년은 예전과 같지만 정책방법론에 있어서는 새로운 노력을 하게 되었다. 즉, 위기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가정에서만 찾지 않고 사회공동체와 사회 역할의 역기능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등 새로운 방법론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⑩ 1990년 :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청소년정책 제도권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협회의 자율성에 맡겨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유연성을 갖도록 한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고유의 특성으로 사회관계 형성이나 길거리교육자들에 대한 전문지식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교육자들의 교육이 강화되면서 1983년 당시 2,500명이었던 길거리교육자의 수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3,000명으로 증가하는 발전을 가져왔다.

⑪ 2000년 : 프랑스 지방정부 의회는 ‘특별예방에 대한 지방정부의 준거틀’을 발간하여 특별예방의 임무로 ‘고립된 위기청소년들의 사회 관계 회복’이라는 중요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⑫ 2007년 : 지방 정부가 위기청소년이나 위험한 위해 환경에 놓인 청소년을 위해 그들의 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③ 활동정책

① 목적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위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안전한 환경으로 복귀시키고자 세워진 정책인 동시에 다른 제도권에서 행해지는 청소년복지정책이 실패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수행되는 정

책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탈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과 정신적인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에 두고 있으며 소년범죄 예방의 목표를 더불어 갖고 있다. 또한 이 활동은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얻는 것에 활동 목표를 맞추고 있다.

② 활동 담당부서

이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으로 파리시와 파리근교를 포함하고 있는 데파르트망 일 드 프랑스(Île de France) 경우는 사회활동과 아동건강부의 가족교육부 산하에 청소년예방활동국(Bureau des Activités de Prévention pour la Jeunesse : BAPJ)을 따로 두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프로그램 수행은 협회에서 맡아 하고 있다. 공공정책의 하나로 법령에 의해 실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특히 1986년 1월 6일 지방분권 화법에 의해 사회활동과 가족법에 등록되었다.

③ 대상 청소년

정부는 전체적인 아동보호정책 대상 연령을 10세에서 21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교육기간은 늘어나고 있는(대학 교육과정 이상) 반면, 청년들의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대를 확대시켜 16세에서 25세까지의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18세 이상의 성년이 된 청소년으로 학교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청소년의 수도 상당히 많고, 21세 이상의 청년들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예방 대상자들은 직업능력이나 전문기술 없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로서 이들의 수는 매해 6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 청년실업자로 전락되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의 청년실업률은 1993년 이후 다소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 주고 있는데 1996년 이 연령대의 실업률이 23%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16.4%로 감소되었다.

■ 배회 청소년의 배경

60년대 이후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시빈곤화 현상이 나타

난 한편, 경제와 산업기술의 발달로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실업자의 증가는 물론 인간관계가 예전과는 다르게 변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1970년 이후 이혼율의 증가, 편부모 가정의 증가와 함께 변화된 가족구조는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청소년들에게 사회규범의 기준을 보여 주지 못했다.

또한 사회규제의 약화, 전통적으로 성인과 청소년을 화합시켜 주었던 사회관계의 약화, 학교교육 문화의 부재, 그리고 각종 문화의 다양성이 가져온 부차적인 역기능 등 여러 가지 사회변화로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기보다는 또래집단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긍정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면에서 또래문화를 형성하고 있어 오늘날 청소년문제는 여러가지 복잡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④ 활동 실행방침

■ 교육자 행동지침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이 프로그램은 활동의 역할이 중요할 뿐 아니라 교육자들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행동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매일 일상생활을 통해 이들을 만나 친교를 나눈다.

· 이는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강조하는 프랑스 청소년정책의 기본으로 특히 이 활동의 기본지침이 되기도 한다.

· 불안전하고 불분명한 청소년들의 환경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 어른으로서의 행동과 규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과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어른으로서의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 또한 교육자들의 언어행동은 청소년들에게 규범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중립을 지켜야 한다.

위기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매우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이들에게 도덕적이거나 교육적인 훈계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즉시 거부반응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활동을 함께 할 때는 정부의 정책활동에 맞추어 청소년들을 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이들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청소년들의 소리와 정부의 정책 사이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

■ 부모역할의 중요성

이 프로그램은 길거리교육자들의 활동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이 부딪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부모의 협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부모와의 갈등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부모역할이 이 활동에 주는 의미는,

첫째, 상징적인 의미로 가정에서 벗어나 있어도 가족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고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

둘째, 부모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미성년자로 문제 해결방법이 있어도 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통해 청소년들은 부모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자녀교육을 비롯한 일상생활은 물론, 주말이나 방학기간에 가족과의 시간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형성되는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감은 이들 미래의 부모 역할에 모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부모의 협력 외에도 이 활동은 청소년 주변의 연계망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 이 활동에 참가하는 여러 유형의 교육자는 물론, 청소년들의 친구들, 가족, 그리고 이들이 모이는 지역주민들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보다 효과

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의 특성

이 프로그램은 정책수행에 있어서 다른 청소년 보호정책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서류상에 기재되는 청소년들의 보호 제한기간이 없으며, 행정이나 법적 권한에 의한 결정이 아닌 상황에 따르는 필요에 의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자유로워야 한다. 교육자들이 문제를 의논하고 방법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선택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주 컨셉이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와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프로그램 실행과정의 하나라 생각해야 한다.
- 청소년들의 익명을 존중해야 하고 청소년 개인사항에 대한 서류상 기재는 하지 않는다.
- 청소년뿐 아니라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제도적 장치에 의해 마련된 프로그램이 아닌 자유로운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청소년 그룹이나 청소년들의 다양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이러한 자유로운 운영과 함께 이 프로그램의 실행방침은 특별예방정책에 근거하기 때문에 길거리교육자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결망과 협력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행방침에 근거하는 세부적인 지원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들 개개인의 직업생활과 여가활동을 위한 교육적 지원.
- 취약지역 청소년들의 사회생활 규칙에 대한 의식계발 지원.
- 사회생활과 지역문화에 참가하는 주민의식계발 지원.
- 청소년들의 잠재능력계발 지원.
-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지원.

■ 정보전달과 교환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길거리교육자들은 청소년들의 상황

에 대한 정보를 지역행정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정보교환은 각 지역마다 또 교육자 개개인에 의해 주어지고 법률적으로 정해진 근거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닌 ‘비밀리에 교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전달 교환되어야 정보교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를 중재하는 기관인 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협회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청소년의 역할과 공공의 질서를 위한 청소년의 의무나 규범들에 부합되는 정책 활동을 해야한다.

■ 활동지역

그룹이나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이 프로그램은 활동의 형태가 자세하게 규정지어져 있지 않고 지역의 인구학적,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활동량이 달라지고 또한 접근방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이 달라진다.

이 활동은 교육적 지원형태로 주어지지만 매우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활동이 수행되어 학교교육 지원에서부터 문화, 운동, 직업활동, 직업교육 등 청소년들의 생활이나 취미활동 등을 고려하여 수행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장소 역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행해지기도 하고 시기와 필요에 따르는 적합한 장소를 찾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등 청소년들의 상황에 따라 지역의 유동성이 있다.

■ 활동의 문제점

길거리교육은 위기청소년들을 최일선에서 직접 접하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정부정책을 기준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정책은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숙고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이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을 청소년의 자발적인 사회참여에 대한 의욕을 주는 것이 아닌 사회안전에 돌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없애는 것에 최종 목적을 둘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지역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 역할로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 활동이 청소년과 교육자들 간에 개별적으로 실행되고 있어 규격화된 활동결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늘 계속되어 오면서 조금씩 변화를 갖고 있어 오늘날은 대상 청소년들을 문제범주별로 나누어 실행하고 있지만 이 방법 또한 범주별로 규격화된 평가기준에 의해 예방활동을 실시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예방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청소년 개개인의 문제해결보다는 청소년문제를 마약중독, 알코올중독, 청소년범죄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각 범주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을 쓰고 있어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접근방법이 약화되므로 실행방법은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셋째, 이 조직은 25년 동안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차츰 제도화되어 제도권으로부터 재정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교육자들의 권한이 제도권에 의해 상당히 약화되어 가고 있고 정부는 문제해결보다는 정해진 예산에 정책을 맞추고 있어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정책은 제도화되면서 오히려 정책효과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이 특별예방은 문제청소년들의 특별예방과 더불어 교육적 실천, 청소년 안전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다.

④ 활동평가

이 활동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 프로그램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방법도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정책의 결과를 얻기 위해 나름대로 평가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마다 다른 평가방법과 평가목적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의 기본틀 내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❶ 평가의 기본틀

- 평가 요구에 대한 분석틀
 - 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 평가를 원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 평가의 관리 담당은 누가 하는가?
 - 평가 대상은 누구인가?
 - 중점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무엇인가?
- 평가 후 이어지는 추후 분석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활동계획 당시 이미 예상했던 결과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 외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다.

- 지방정부의 아동복지 부서(ASE)의 정책방침에 따른 활동의 부합성을 평가한다.

❷ 평가의 의미

지방정부는 이 활동을 지방행정 정책의 하나로 수행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정평가를 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두어 이 프로그램의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 평가는 지방정부와 길거리교육팀에게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지방정부가 지니는 평가의 의미는,

- 책임 수행에 대한 결과
-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운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홍보
- 활동의 적합성 확인
- 활동의 결과와 재정에 대한 보고

협회와 길거리교육팀이 갖는 평가의 의미는,

- 자신들이 수행한 활동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

- 활동의 성격과 방법 등을 보여주는 도구적 역할

❸ 평가의 특성

그러나 이 평가방법은 활동이 지닌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행정

평가 방법과는 점점 다른 것으로 차별되어 가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된다.

- 특별예방활동의 평가는 활동에 대한 분석보다는 교육자나 청소년들의 입장과 태도만을 보여줄 수 있다.

- 이 활동의 명칭처럼 예방의 의미는 정확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활동 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되거나 평가할 수가 없다. 또한 이 정책은 늘 다른 청소년정책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따로 분리되어 이 정책만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특별예방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안전을 위한 사회예방과 청소년 개인이나 그룹별의 문제를 진단하여 예방하는 교육예방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더 나아가 사회문제 예방의 의미도 있어 이 활동을 평가할 때는 이 세 가지 예방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복잡하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 어떤 면에서는 더 효과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각적인 평가는 청소년문제를 여러 가지 면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서는 청소년보호관찰소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평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 연계 제도권 기관들과의 협력으로 길거리팀은 1987년 ‘자가 평가 방법 기준’을 만들어 발간하였으며 협회와 지방정부는 평가에 대해 꾸준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④ 평가 도구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평가도구는 다음과 같다.

- 규격화 되어 있는 활동 보고서
- 정책을 세운 지방정부와 자문위원회에게 제출하는 활동보고서
- 활동이 수행되는 청소년 지역에 대한 관찰 보고서

⑤ 길거리교육자(Éducateurs dan la Rue)

이 활동은 초기에는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길거리를 배회하는 문제청소년을 선도하면서 시작되어 차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협회를 결성, 조직이 발전 되어 왔다. 특히 1985년 이후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 담당자팀이 강화 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길거리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로 ‘길거리교육자’라고 명칭하게 되었다.

① 지위와 역할

길거리교육자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되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에게 다가가 이들의 고민과 문제를 들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주로 길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교육자들은 위기청소년들을 최전방에서 만나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협회를 통해 일을 하고 있지만 일종의 공공서비스 역할과 임무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주된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회활동가로서의 역할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회 교육자로서의 역할이다.

이 두 가지 지위를 통해 문제청소년들과 직접 만나 이들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들어 주고 함께 이들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자들은 청소년들과 직접 만나게 되고 이들의 생활 속으로 함께 들어가 접촉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규범 기준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들의 언어, 행동, 그리고 이들의 생각은 청소년들에게 ‘상징적인 준거틀(Référence Symbolique)’이 될 수 있어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그런 이유로 이들에게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자들의 자질만큼 이들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협회들은 교육자들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권한이 클 경우 이들의 지위에 혼란이 올 수 있어 협회는 제도권의 정책과 적합한 조율을 함으로써 교육자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이들의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② 구성

이들의 대부분은 특별교육을 받은 특별교육자(Educateurs spécialisés)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사와 청소년 관련교육 자격증을 가진 자들도 함께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며 몇 년전부터는 교육모니터(Moniteurs Educateurs)라는 직함을 가진 교육자들도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길거리교육자들의 주요 구성원은 대략 다음과 같다.

- 50.6% 전문 특별교육자(Educateurs Spécialisés)
- 8.8% 교육 모니터(Moniteurs Educateurs)
- 3.7% 기술교육자(Éducateurs techniques)
- 2.3% 사회복지사
- 1.7% 체육교사
- 4.0%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전공자

2004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규모로 전체 길거리교육자 중 52.5%가 남성이고 47.5%가 여성으로 교육자의 남녀 비율이 거의 평등하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이 전체 교육자의 12%가 되는 반면, 전체 교육자의 4분의 1이 30세 미만이다.

파리 근교를 포함하고 있는 지방정부인 일 드 프랑스(Ils de France)에는 전체 83개 협회에서 825개의 교육자 자리가 있지만 매해 전체 교육자의 20%가 이 자리를 떠나고 있어 매해 약 10%의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들은 팀을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파리시(Ville de Paris)에는 21개의 협회에서 64개 팀의 길거리교육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교육자의 자리는 930개로 증가, 마련되어 있으며 앞으로 교육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다른 아동정책기관에서도 이 교육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③ 교육자의 직업 전문성

이 활동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 직업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되면서 이들의 보수 역시 다른 정책 종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되어 가는 등 많은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 비해 교육자의 4분의 1이 이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직업의 전문성과 경험의 부족으로 이 프로그램의 질적 활동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육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적으로 길거리교육자를 교육하는 기관이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이곳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이 바로 길거리교육자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활동에 적합한 다른 분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교육자를 모집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

교육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직업적 능력으로 전문적인 지식은(qualifications) 물론, 활동경험(expérience)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자의 50%가 5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 이 경우는 경험 있는 교육자와 한 팀이 되어 경험을 쌓아가는 방법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나 이 경우는 지방정부의 예산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직업 전문성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이들은 역할수행에 있어서 제도권의 규격화된 활동기준과 평가기준에 의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 1983년 관계부처의 보고서 자료에서 길거리교육자들이 불량 청소년들의 비호자가 될 우려성을 지적하고 있어 이들 활동의 제약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약을 조절하기 위해 교육자들은 늘 협력 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의 활동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자보다는 사회안전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⑥ 지방정부의 역할

① 성격

이 정책은 지방정부의 청소년 보호정책으로 시행되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사회정책, 도시정책, 문화정책과도 연결되어 있다.

활동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마다 조금씩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어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서비스 범위로 이 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프랑

스 지방행정의회(l'Assemblée des Départements de France)에서 공식적으로 이 활동에 대한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짓고 있다.

“특별예방 프로그램은 지방행정부의 권한 하에 지역의 특성에 의한 필요에 따라 임무수행의 유연성을 갖고 개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은 정책이 필요한 지역에 따라 상황에 적합하게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② 주요 역할

이 프로그램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역할은 다음과 같다.

- 지방정부의 아동복지정책에 맞추어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의 틀을 마련한다.

-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협회와의 협력방안을 세운다.

-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한다.

- 재정지원을 한다.

이러한 역할 중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협회들이고 협회활동의 대부분은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1985년 지방분권화 정책 이후 지방정부가 특히 청소년 예방정책을 강화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다른 청소년 보호정책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몇 년에 걸쳐 강화되어 온 사회안전정책, 소년범죄예방(1982), 지역안전문제정책(1985), 소년범죄예방과 안전에 대한 지역적 계약(2000), 학교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예방정책(2001) 등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에 의해 더 많이 발전되어 왔다.

또한 지방정부가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오면서 더 발전하였다.

③ 정책 시행단위

이러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시(municipale)단위나 데파르트망(département) 아니면 코뮌(commune)단위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보다 더 작은 행정단위인

구(arrondissement) 단위의 행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예로 파리시의 특별예방정책은 데파르트망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있지 파리시의 각 구청의 활동은 아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정도는 파리시의 구의 인구학적 경제학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는 각 구의 행정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주관하는 협회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장소를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④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지방정부는 이 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자원으로는 인적자원, 물적자원(활동, 장소 등), 그리고 다른 부분의 지방 정책 자원 등이 있다. 인력 자원으로는 지역의 청소년전문가들이 청소년문제에 관심이 많은 자원봉사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활동을 하고 있다.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길거리교육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러 분야 청소년전문가인 특별기술 교육자, 사회교육자, 사회복지사, 가정경제 자문, 심리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법관들의 협력도 중요해 이들 인적 자원과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의 물적 자원과의 연계는 청소년 활동의 장으로 주로 공공기관을 이용하기도 하고 활동의 성격에 따라 지역의 여러 시설을 이용한다.

정책자원은 다른 아동복지정책과의 협력으로 특별예방팀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른 정책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다.

⑤ 중앙정부와의 관계

이 활동에 관해 중앙정부는 법무부, 청소년체육부, 보건복지부와 같이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여러 부처에서 협력하고 있지만 특별예방 프로그램은 전체 아동복지정책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고 실제 활동 수행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두고 있어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참여는 거의 없다.

⑦ 협회(association)의 역할

특별예방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의 정책이지만 정책수행은 협회가 주관하고

있어 이 협회의 업무와 역할은 지방정부의 특별 제도권에 두고 있다. 특별 예방에 대한 국가협약에 따르면 협회는 협회자체의 목적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지방정부의 아동보호정책자문위원회가 결정하는 목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협회는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관이 되어 창설된다. 1970년대 초에는 지역의 자원봉사자들로 협회를 만들어 활동해 왔지만 최근 20년 사이 협회의 활동은 질적, 양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해 왔다. 1985년대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더욱 더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을 거듭한 협회는 길거리교육과 함께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지역안전을 위한 정책까지 맡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예방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길거리교육자팀들은 특별예방이 문제청소년을 위한 고유의 역할보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더 치중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역할 확대로 인해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과 청소년문제에 뜻을 둔 자원봉사자들의 감소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협회 고유의 역할과 지방행정과의 조절을 통하여 협회와 제도권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협회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지방행정의 아동보호정책과 협회의 역할을 조절하고 이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협회는 지방행정자문위원회, 관련 행정공무원들, 그리고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할로 인해 협회 대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즉, 활동을 주관하는 협회의 장으로서 활동에 대한 분석은 물론, 활동의 지역적 역할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공공의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까지를 수행해야 하는 다중의 책임을 맡고 있다.

협회에 따라 여러 개의 길거리교육팀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단 한 개의 팀만을 운영하는 협회도 있다. 그러나 협회의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협회가 운영하는 팀의 수보다는 단 한 개의 팀이라도 이들이 수행하

는 활동의 질이 더 중요하다. 이는 질적으로 우수한 활동을 수행하는 협회는 다른 협회에 좋은 모델역할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협회가 생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 전국에 있는 협회의 33.2%가 1972년 이전에 설립된 것이고 39%가 1973년에서 1985년에 생겼으며, 27.8%가 1986년 이후 설립되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협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함께 협회의 양적인 증가를 알 수 있다.

참고로 파리를 포함한 데파르트망인 일 드 프랑스(Île de France)에는 총 83개의 협회가 있으며 1972년 전에 설립된 협회가 25개, 1972년부터 1985년 사이에 설립된 곳은 26개, 그리고 지방분권정책이 활발해진 1985년 이후에는 32개의 협회가 설립되었다.

전체 협회의 97.4%가 지방정부와 협정을 맺고 활동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협회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33.9%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협약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협회가 지방행정 단위인 데파르트망과 코뮌 두 곳의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협약을 맺고 활동을 하는 것이다.

협정을 맺는 방식은 3가지 방법으로 협약(convention), 계약(contrat), 허가(charte)가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협력관계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참고로 이 협력관계 방식의 통계를 보면, 전체 협회의 40%가 데파르트망과 연간 협약을 맺고 있으며 33.9%가 데파르트망(département)과 시(Municipale)와 동시에 계약을 맺고 있다.

협회의 재정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어 대부분의 교육자들의 보수도 지방정부가 지원한 협회의 예산에서 지급된다. 교육자들의 5% 미만이 지방의회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

■ 자원봉사자

협회를 통해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길거리교육자 외에 자원봉사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이 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육자들과 함께 청소년들의 그룹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⑧ 예산

이 활동의 주 재정은 지방정부의 아동복지부의 예산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재정지원은 확정된 연간 예산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상황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이 활동이 정해진 기간이 없고 익명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재정 지원방법은 지방정부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협회 간의 협정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정부 외에 이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은 코문의 지원과 가족수당공단(CAF)의 지원이 있다.

전국 규모의 특별예방 연간 재정은 1억3천만유로(2080억원)이며 이중 지방정부의 아동복지부 지원이 1억400만유로(1,664억원)로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808만유로(130억원)는 지방정부 외에서 지원되는 재정 지원금이다.

지방정부의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정책 예산은 36%이고 아동복지 예산은 11%인데 비해 특별예방정책을 위한 재정은 0.3%에 불과하다.

⑨ 활동 성과

이 프로그램은 활동의 특성상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활동의 성과에 대한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활동 자체보다는 이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 업무량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의 변화를 볼 수 있다.

파리시를 포함한 데파르트망인 ‘일 드 프랑스’의 2000년도와 2007년도의 활동 업무량을 비교해 보면, 사회활동과 아동건강부처(Direction de l'action Sociale, de l'Enfance et de la Santé : DASES)의 특별예방을 위한 재정이 2000년도 1200만유로(192억원)에서 2007년에는 1800만유로(288억원)로 증가했다.

또한 업무담당에 있어서 전일제(Equivalent Temps Plein : ETP)로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2000년도의 근무자 수보다 72.7% 증가하여 총 297명의 직원들이 전일제로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길거리 교육자팀도 58개에서 83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행정업무의 증가는 이 활동이 확대 발전하고 있고,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07년 이 프로그램의 수

해청소년 수는 총 16,340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증가에 반해 활동의 기본 컨셉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즉, 이 활동이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강화되면서 활동의 주 목적을 청소년문제보다는 지역안전에 목적을 두어 청소년문제에 소홀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활동방법에 있어서 청소년 개개인의 개별적인 환경을 고려했던 초기의 접근방법과는 다르게 개개인의 문제보다는 전체 청소년의 문제를 범주화하여 이 범주 내에서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즉, 이들의 문제를 활동이 개시되는 시기의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가출, 약물중독, 실업, 빈곤 등 청소년의 상황만을 고려하고 개별적 환경이 고려되지 않아 효과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우선적으로 문제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제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문제는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데 목표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생활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소외되고 고립되어 제도권이나 사회조직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그룹으로 팀을 형성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나누면서 청소년 각자가 또래들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자아를 스스로 구축해 가도록 하는 이 활동의 고유한 접근 방법이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특별예방 프로그램은 다른 청소년보호정책과는 차별화된 다른 방법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제도권에서 이 프로그램을 흡수하면서 고유의 특성과 효과가 감소되고 있어 제도적으로 실행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

(2) 청소년정보자료센터(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Jeunesse : CIDJ)

① 정책목표

이 기관은 위기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기관의 정책목표는 모든 계층 청소년들의 관심 주제인 학업, 직업, 직업 교육, 건강, 여가 활동, 운동 등 모든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 생활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와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주된 업무목표를 갖고 있다. ❶ 청소년을 위한 정보제공센터의 역할뿐 아니라 건강센터로서의 역할도 겸한다. ❷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❸ 각 산하조직들을 청소년들이 잘 모이는 장소에 배치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전달하고 센터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② 역사적 배경

1945년 드골 정부는 청소년정책의 기본방침을 변경하여 청소년문제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협회(Association)가 주관하도록 하였다. 이 후 이 방침이 발전하여 대중교육(Education Populaire)이 확대되고 청소년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이 기관에서는 특정한 청소년 정책보다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관은 청소년부 청소년정책의 일환으로 1969년 설립되었다.

그 후 1971년 처음으로 지방청소년정보센터(CRIJ : Centre régional Information Jeunesse)를 개원하였고 2000년 사이버 정보소를 설치하였다.

③ 주요업무

주요 업무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상당히 포괄적이다.

- ❶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학업 및 취업 정보검색을 위한 인터넷 무료 사용
- ❷ 전화를 통한 정보제공
- ❸ 청소년들의 직업계획에 대한 정보지원
- ❹ 청소년의 여가생활을 위한 여행정보 제공
- ❺ 법적인 문제에 대한 상주 변호사의 무료자문
- ❻ 주택에 대한 정보

⑦ 건강에 대한 정보

⑧ 문화 활동 정보와 문화공연 티켓발매

이러한 업무의 대부분은 이 기관 1층에 마련된 정보센터에서 실행되고 있다.

④ 기구편성과 산하기구

이 기관은 정부기관이지만 기관장만이 정부에서 임명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모든 직원들은 일반 기업의 직원처럼 채용되는 일반 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재 직원수는 100여명이다.

이 기관은 정보, 출판판매,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행정과 재정을 담당하는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정보센터의 일반적인 업무는 물론 국제 업무와 여행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하기구는 다음과 같다.

① 26개의 지방청소년정보센터(CRIJ : Centres Régionaux Information Jeunesse)

② 파리 외곽 일 드 프랑스(Île de France)지역에 4개의 청소년정보센터(CIJ : Centres d'Information Jeunesse)

③ 256개의 청소년정보사무소(BIJ : Bureaux Information Jeunesse) : 이 사무소의 운영은 50%는 비영리 협회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④ 1,251개의 청소년정보소(PIJ : Points Information Jeunesse) : 특히 이러한 산하기구들은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 이 산하기구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는 연간 500만 명에 달하고 있어 이 기구의 효율성을 알 수 있다. 프랑스 내에 이 기관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대략 1,700개의 지방조직과 département차원의 30개 조직이 있다. 이 중 80%는 municipale과 코뮌(commune)에서 지원 관리하고 있다.

⑤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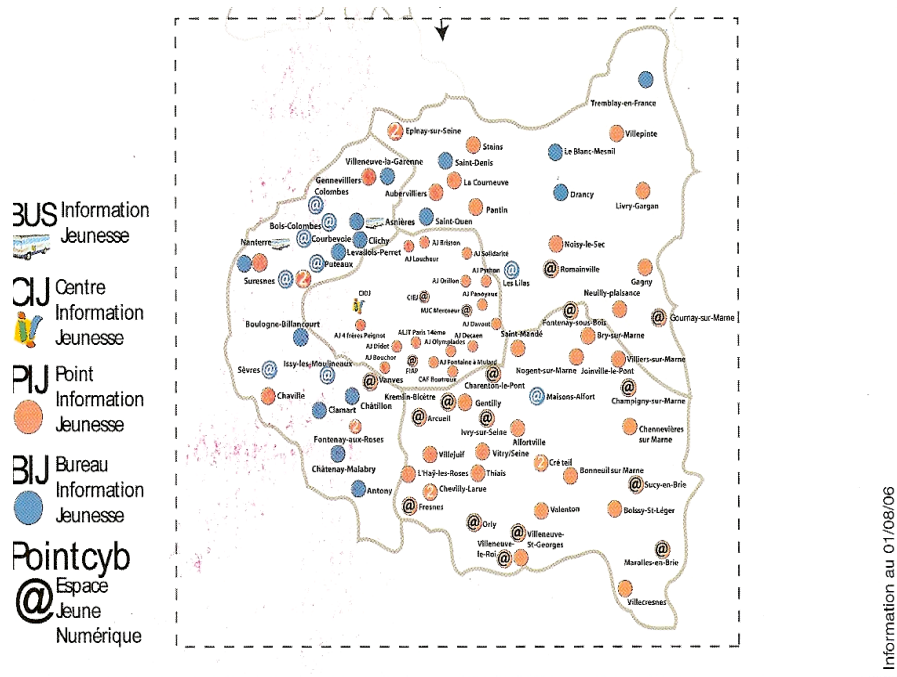
연간 재정은 750만유로로(120억 원) 이 중 45%는 공공기관의 지원금이며

55%는 자체내 사업에서 얻는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자체내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출판사업⁸⁾을 들고 있다.

⑥ 이용 청소년들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프랑스 제일의 정보센터로 연간 500만 명, 1일 1,000명의 청소년이 이 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이용청소년의 성별 비율은 전체의 57%가 여성이며 남성 청소년들은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 비율은 이용청소년의 41%가 20세에서 24세의 연령대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15세에서 19세 연령대 청소년으로 전체 이용 청소년의 28%가 된다.

① 일 드 프랑스 지역의 CIDJ 산하 정보센터 분포도



[그림 III-2] 일 드 프랑스 지역의 CIDJ 산하 정보센터 분포도

- 8) 각종 청소년 관련 전문서적을 포함하여 홍보물을 출판하여 각 정보 센터와 정기 구독자에게 배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판매가 된다.

BUS(Bus Informaion Jeunesse) 버스정보센터

CII(Centre Information Jeunesse) 청소년정보센터

PIJ(Point Information Jeunesse) 청소년정보소

BIJ(Bureau Information Jeunesse) 청소년정보사무소

Point cyb(Espace Jeune Numérique) 사이버공간

위의 지도를 보면 CIDJ 산하 센터들이 일 드 프랑스지역에 고루 분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도 가운데 파리시를 보면 파리의 서부보다는 동부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 취약지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3) 미션 로칼(Mission Locale)



[그림 III-3] 파리시 미션 로칼 분포도

‘미션 로칼’이라는 이 기관을 굳이 번역 하자면 ‘지역 임무’라 할 수 있는데 이 명칭과 같이 파리시 각 구역의 청소년정책을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그림 III-3]에서처럼 5개(기관1 : 19+20, 기관2 : 8+17+18, 기관3 : 6+7+14+15

+16, 기관4 : 5+12+13, 기관5 : 1+2+3+4+9+10+11)의 <미션 로칼>이 분담하여 파리시의 모든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1982년 취약계층의 청소년이 학업을 일찍 중단하고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공동과제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 두 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학업을 마친 16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거주 구역에 따라 정해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센터의 주 임무는 학업을 마치거나 중도에서 그만 둔 청소년들의 취업계획, 건강, 직업교육, 거주지 마련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프랑스 전역에서 2005년 이 센터를 이용한 청소년 수는 115만 명으로 96만 명이 전문 관계자와 개별적으로 직접 상담을 하였으며 매해 이용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35만 5천명의 청소년이 취업정보를 원했으며 6만 8천명이 보조직으로 취업을 했으며 23만 명이 직업교육을 받았다.

사회생활입문 계약(CIVIS : Contrat d'insertion dans la Vie Sociale) : 이 계약은 직업교육이 충분치 못하고 전문적인 능력이 없는 청소년을 위해 취업 입문을 도와주는 정책서비스의 하나이다. 이 계약과 관련된 관계 법령이 이미 제정되었으며 16세에서 25세 연령의 취약계층청소년으로서 학업을 마쳤으나 취업이 곤란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동복지부 프로젝트 중 하나인 '80만 명의 취약 계층 청소년을 위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능력이 없는 청소년을 위해 기업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직업생활과 사회생활의 입문을 돕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5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이곳 미션로칼과 또 다른 실행기관인 '상시 정보창구 (les Permanences d'Accueil, d'Information et d'Orientation : PAIO)'⁹⁾에 정책실행을 위임하여 운영되고 있다.

9) 상시 정보창구 (les permanences d'accueil, d'information et d'orientation:PAIO) 는 1982년 꼬문과 중앙정부의 협력 하에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취업서비스를 위해 개설된 기관으로 mission locale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주로 청소년취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곳의 주 임무는

- 청소년 개개인의 취업계획에 대한 지원
 - 취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보장에 대한 지원
 -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실업수당이나 가족수당 등 아무 보조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최고 연간 900유로까지의 정부 재정지원
 - 기본적인 생활능력인 문자해독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 청소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을 다시 세분화하여 ‘청소년 공간(espace jeune)’이라는 협력센터를 두고 있다.

4) 프랑스 지방정부 아동·청소년 정책의 특성

프랑스 정부가 정의하고 있는 특별계층의 청소년 주 범주는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과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학교교육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이다.

파리시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 특징은 정책 프로그램을 예방과 치료로 구분하여 실행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을 예방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문제범주로 구분하고 다시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개별적인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지역의 청소년보다 취약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청소년 주변 환경을 중시하는 예방정책 강화

프랑스 정부가 취약지역의 청소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청소년들의 주변 환경 특히 가정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문제는 물론 부모들이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자녀에게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청소년 자체 보다는 이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을 고려하는 예방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환경과 더불어 또래집단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게 되는 이 시기의 특성으로 전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일반 청소년 문제를 예방할 뿐 아니라 문제 발생 가능성이 많은 또래 집단 형성을 최소화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 치료를 위한 정책

그러나 이러한 예방정책과 함께 이미 위험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정책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다. 즉, 학교교육에서 이탈하거나 중도에서 포기한 청소년들을 위해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는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직업교육과 취업에 대한 지원이다. 즉, 학업이 부진하여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으로 이들 부모와의 협력은 물론, 다른 학부모들의 지원을 함께 얻어 청소년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고 있어 두 가지의 효과를 함께 얻고 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미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의 실시와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취업 프로그램은 각 기업과 연결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까지 발전되었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꾼으로서 정착할 때까지 세금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파리지의 위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 취약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교육 지원을 위해 전체청소년 지원정책을 이용하여 계층간 차별로 인한 취약지역 청소년들이 입을 수 있는 스티그마를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른 일반 프로그램보다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교교육을 떠나 자신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초기 단계부터 시작하여 직업교육 과정을 통해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 전체를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더불어 기존의 사회기반시설과 사회조직을 연결 이용하여 이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사회 각 조직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시너지 효과도 얻고 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로는 청소년을 단기적으로 보호해 주는 위탁 가정들과 저소득 계층의 직업 청소년들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 정부는 청소년정책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흡수하고 지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프랑스 지방정부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는 점을 특성으로 들 수 있다. 특히 파리시는 지역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 지방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실행되기도 하여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처럼 전국에서 실행되는 것도 프랑스 청소년 정책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좋은 예가 현재 전국으로 확산되어 실행되고 있는 파리시의 청소년정보자료센터인 CIDJ의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 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에 하달되는 수직하향의 정책보다는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어 서로 협력체계를 이루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5) 한국 정책의 시사점

첫째, 앞서 언급한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에서 얻어지는 정책의 효과를 통해 우리나라도 청소년 복지 정책 실행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하달식 정책보다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어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의 기반시설을 이용하거나 지역에 따르는 인구학적 특성이나 문화적 환경들을 이용함으로써 정책 실행의 효과를 최적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또한 청소년 정책을 위해서 지역 사회의 물적 자원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프랑스의 청소년정책 실행에 있어

서 비영리 단체인 협회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서 알 수 있듯듯이 청소년문제를 정부의 전문가와 담당자들만으로 실행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단체의 협력은 정책 실행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효과를 얻게 할 뿐 아니라 이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자녀들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예방정책에 참가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알게 해야 한다. 직접적인 정책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간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특히 취약 계층의 청소년을 위한 예방정책은 문제에 대한 치료정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정책에 대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에게 다가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프랑스 청소년 정책 슬로건의 하나처럼 청소년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문제를 함께 의논해 주는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대화는 청소년 그룹은 물론 청소년 개개인을 통한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실행할 수 있다. 즉, 문제를 범주별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이거니와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그리고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청소년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여 청소년들의 이용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청소년들 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이러한 여러 가지 시사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이들을 이해하는 심리적인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3. 독일¹⁰⁾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가 국가권력 하에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는 지방주민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라기보다 국가로부터의 수여물로 생각되었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점령국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연방제의 채택으로 각 주가 지방자치제도를 독자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기관구성과 운영을 발견할 수 있다. 독일의 전반적인 지방자치체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 : 우리의 읍·면·동에 해당)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주민의 일반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비교적 넓은 범위의 지방분권이 되어 있으며, 지방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부여 방법은 포괄적 위탁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감독, 통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되며, 국가사무는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¹¹⁾ 동향

독일은 중앙의 연방(Bund)과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면서 하나의 독립된 국가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16개 자치 주(州) 정부들(Länder)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가이다.¹²⁾ 주 아래에는 [그림Ⅲ-4]에서 보는 바와

10) 이 부분은 이민희교수(평택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가 집필하였음.

11) 독일의 청소년정책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지 않고 청소년복지정책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도 않다. 독일의 청소년정책은 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복지적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독일이 이미 1922년 ‘제국청소년복지법’(Reichs jugend wohlfahrtgesetz)을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 하였던 것과 같은 의미이다. 독일의 대학에 따로 사회복지학과가 없고 넓은 의미로 사회복지란 모든 학과가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같이 기초자치단체(Kommune)가 있고 그 밑에 우리나라의 시·군 단위에 해당하는 자치단체(Landkreis)와 그 아래 가장 작은 자치단체의 단위로서 우리나라의 시 단위에 있는 자치구나 군 단위의 읍·면·동과 같은 자치단체(Gemeinde)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I-4] 독일연방국가의 국가행정체계도

독일의 청소년정책은 다른 많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교육정책과 분리되어 시행되었으며, 1922년에 ‘제국청소년복지법’을 제정한 이래 독립된 법령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다. 이는 독일이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급변하는 사회를 맞아, 학교 밖에서 교육정책이 해줄 수 없는 청소년 성장에 대한 국가적 정책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깊이 인식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폐허 위에서 무엇보다 먼저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50년 처음 수립되었던 독일의 ‘연방청소년계획’¹³⁾은 이러한 독일의 청소년과 국가 미래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이 계획은 활동 초기에는 주로 전쟁고아나 망명자 중의 청소년들에게 직업을 마련해 주기 위한 구제(救濟)성격을 가졌으나 국가가 안정되면서 점차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각 주(州)에서는 청소년 자치단체 활동을 존중하고, 행정관청은 공공 위주의 활동보다는 민간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진흥하고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의 자율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기본 원칙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¹⁴⁾

12) 1990년 통일 후 구(舊) 동독의 5개 주가 합해져서 16개주로 확대되었다.

13) Bundesjugendplan(BJP)

현행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청소년지원(Jugendhilfe)’이다. 이 개념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성인들이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청소년들을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청소년지원’의 내용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업 밖에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사회화·육성·교육과 관련된 여러 대책들과 노력들, 그리고 기관 및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지원이라는 큰 개념을 실천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으로서 다수 청소년들의 활동을 위주로 하는 ‘청소년사업(Jugendarbeit)’과 소수의 사회복지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의미를 가진 협의의 ‘청소년사회사업(Jugendsozialarbeit)’이 독일의 청소년정책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청소년지원을 위한 여러 청소년사업들과 청소년사회사업들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복지 정책은 ‘아동·청소년지원법’(KJHG)¹⁴⁾과 여러 정부조직 구조들과 제도들로 구성되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제1조 3항에는 수행하여야 할 기본과제들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 젊은이들이 개인적, 사회적 계발을 하는 것을 장려하고, 차별을 지양하거나 배제하기 위해 기여해야 한다.
- 부모와 그 밖의 교육권자가 교육하는 데에 상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을 위험으로부터 지켜 그들의 복지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젊은이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또한 아동친화적이고 가정친화적인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삶의 여건을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 기여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독일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청소년복지정책의 수행 내용은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사회사업’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독일에서의 ‘청소년사업’(Jugendarbeit)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과 관련된 청소년업무의 총괄적

14) 이종원(1990). 독일의 청소년정책과 제도. 외국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 한국청소년연구원, p.227 참조.

15)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연방아동·청소년계획’(BKJP)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사회사업’(Jugendsozialarbeit)은 사회적 취약상황과 개인적인 지원 상황에 있는 대상자들이나 가정 밖의 장소나 관련기관에 있는 젊은이들, 이민 아동·청소년들을 위하여 사회교육적이고,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사업들을 말하고 있다.

청소년사업은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의 장(場)으로서 청소년들의 발달을 위하고, 그들의 관심과 연계되어 있다. 청소년사업은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며, 동반자적 사회적 책임을 키워주는 복지 차원의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을 마련해주는 지원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민·관의 다양한 청소년 단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 국제교류, 여가선용, 상담 등의 청소년지원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1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청소년사업의 주요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 전인적(全人的), 정치적, 사회적, 보건적, 문화적, 자연환경적, 기술적 교육의 내용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교육
- 스포츠, 오락 그리고 친교(親交)에서의 청소년사업
- 근로, 학교, 가정과 관련된 청소년사업
- 국제청소년 교류
- 아동·청소년 레크리에이션
- 청소년상담

청소년사회사업은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학업능력이 취약한 학생, 이주민 자녀와 같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청소년들의 근로와 직업의 영역에 관한 인생설계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는 지원의 장이다. 현재 독일은 거의 50%에 가까운 청소년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관련 교육 및 상담, 근로, 주거, 그리고 사회통합에 관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청, 사회지원청, 학교, 민간시설, Job-Center, 직업 훈련, 고용주 등과 네트워크 체제를 이루어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독일의 청소년정책에서 또 하나의 주요한 복지적 과제는 부모들의 사회

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들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6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정책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들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들의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다. 부모가 그들의 처지에 따라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라면 그들을 지원해서 그들의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으면 이들의 화해와 조정을 돕는 일이 그 경우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정책에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의 기회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교육기관을 만들거나, 부모와 자녀들의 동반 가족여행, 가족 레크리에이션, 가족 간 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한편, 혼자 사는 부모가 사정이 있어 자녀를 돌볼 수 없으면 청소년청에 자녀의 위탁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청은 이들을 의무적으로 돌보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의뢰가 들어오면 청소년청의 전문가나 민간시설에 위탁 보호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7조에서는 이와 함께 부모가 이혼의 위기에 있을 때에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⁶⁾ 한편, 자녀의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모가 필요한 조치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동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아동·청소년정책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1조에서는 청소년사업의 서비스들은 아동과 청소년들과 함께 결정되어야 하고,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동법 제12조에는 청소년단체에서는 청소년사업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함께 형성하며, 함께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은 UN의 ‘아동권리에관한국제협약’이 1989년에 공포된 이후 아동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중시하고 사회적 결정들과 논의들에 아동들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지원법’ 제8조 1항에서는 남성과 여성 청소년들이 정부나 민간의 청소년지원과 관련된 모든 결정들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조 3항에서는 청소년 개체의 인권을 존중하여 청소년들이 청소년청에 그들의 긴급상황이나 갈등상

16) 독일의 아동 3명 중 하나는 부모가 이혼하고 있고 도시에서 2명 중 한 명 꼴로 부모의 별거나 이혼으로 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황에 대하여 의뢰를 해왔을 때에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그들을 상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독일의 청소년정책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영역에서 그들의 중요한 삶의 결정들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아동과 청소년들의 발안(發案) 권리와 행동들
- 아동·청소년 의회
- 아동포럼과 원탁회의
- 아동위탁과 아동변호
- 프로젝트 관련 행사들
- 학교에서의 학생 대변
- 청소년사업 현장에서의 청소년 대변
- 청소년단체와 시설들에서의 의사결정 참여
- 청소년보호시설과 교육시설에서의 청소년 대변

연방공화국인 독일(Bundesrepublik Deutschland)의 국가 최고통치기구로서의 연방정부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¹⁷⁾는 이러한 ‘아동·청소년지원법’을 근간으로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아동·청소년지원법’을 통하여 각 주(州)정부를 총 지휘하는 청소년지원의 장려와 고무의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정부는 ‘아동·청소년지원법’ 8조 2항에 따라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된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Bundesjugendkuratorium)에 의한 청소년지원의 근본 문제들을 자문한다. 셋째, 정부는 각 정부의 임기동안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보고서’(Kinder-undJugendbericht)를 연방의회와 상원에 제출한다.

독일의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적 지원은 ‘아동·청소년지원법’을 기초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州) 아래의 행정단위인 시(市)들과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각기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자치적인 청소년복지의 행정체계를 소속된 자치단체의 ‘청소년청’(Jugendamt)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의 ‘청소년청’은 역사적으로 그 기원을 1900년의 시민법, 지방고아원

17)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n, Senioren, Frauen und Jugend(BmFSFJ)

후견재판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청’이란 이름의 청소년 행정기관이 최초로 설치된 것은 1924년부터 시행된 ‘제국청소년복지법’에서 정하여진 이후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히틀러(Hitler)의 독재시대 때에는 이 기구가 가족과 아동, 청소년들을 출생 시부터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교조하는 역할을 했던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1947년부터 1952년까지 ‘청소년청’은 내무부 경찰관할하에 놓여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 어린아이들을 입양시키는 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독일의 ‘사회법’(SGB) VIII권에서는 모든 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이 ‘청소년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법에는 청소년복지의 행정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있는데, 각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들이 서로 파트너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아동·청소년지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적 체계를 형성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 ‘청소년청’은 독일의 모든 청소년복지정책의 실천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청소년복지정책 수행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구는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까지 설치되어 있는 독일 청소년정책의 실질적인 핵심기구라 할 수 있다. ‘청소년청’은 따라서 각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청소년정책 업무의 기획, 시행, 예산 등을 총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청’은 독일의 행정체계에 따라 광역시에는 구(區)마다 ‘구 청소년청’(Bezirksjugendamt)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市)에는 ‘시 청소년청’(Stadtjugenamt), 지방의 작은 단위 기초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 청소년청’(Kreisjugendamt)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지원법’의 관련조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공적 서비스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청소년사업(제11조, 12조)과 청소년사회사업(제13조)
- 청소년상담과 가족지원(제16조)
- 부모의 파트너십, 별거, 이혼의 상담(제17조)과 위탁훈련(제18조)
- 아동의 아동탁아시설과 탁아를 통한 보호(제22조 이하)
- 교육의 지원(제27조 이하), 정신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지원(제35조 a),

청년의 지원(제41조)

■ 기타 다수의 청원에 따른 지원(제2조 2)

‘청소년청’의 청소년업무는 앞에서 서술한 독일의 ‘사회법’ VIII권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지원 업무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청’은 다시 각 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Jugendhilfeausschuss)의 결정과 자문을 받아 계획되며, 시행되고 있다. 이 기구는 독일 연방중앙정부 소속의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Bundesjugend/kuratorium)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계와 현장에서 일하는 15명 이하의 청소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독일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사회법’ VIII권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는 ‘청소년청’을 소위 ‘이분화된 기구’로 말하는데 이는 ‘청소년청’이 바로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와 ‘청소년청’ 행정업무의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는 자치단체 대표자들과 청소년단체 및 복지단체 등에서 추천된 민간지원자들이 청소년을 위한 여러 지원들과 제안을 하고 ‘청소년청’의 행정과 관련된 청소년지원계획과 민간의 청소년지원에 관한 기본방향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청’은 여기서 결정된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수행하는 보조 역할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에는 3/5이 자치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되고, 2/5는 청소년단체들과 복지단체들에서 추천된 민간지원자들에 의해서 선출된다.¹⁸⁾ 이 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정책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서 청소년과 그들 가정의 현실문제들을 논의하고, 청소년지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격려들과 제안들을 하고 청소년지원계획과 민간의 청소년지원을 상담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법’ VIII권 제2조 3항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지원 과제’들과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의 다른 과제들’ 몇몇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사회사업, 교육적 아동·청소년보호의 제공

18) ‘아동·청소년지원법’ 제7조 1항과 2항.

-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제공
- 아동탁아소와 보호소의 지원 제공
- 교육 제공과 보완 대책 지원
- 아동교육 및 입양의 상담과 보호권리 및 사교권리의 상담
-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권과 사교권에 관한 후견소송 및 가정재판 지원
- 청소년의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자문 참여
- 아동과 청소년의 친자확인과 생계책임 지원
- 당사자의 요청 시나 위급상황 시 보호권을 위한 일시보호의 수행¹⁹⁾

독일 청소년정책의 중요한 일반현황을 통계로 살펴보면 먼저 아동들을 위한 탁아시설들은 2006년 3세 미만의 12.1%, 3~6세 미만의 86.4%가 이용하였다. 또한 11만 아동들이 3,600개가 넘는 부모협회소속 탁아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는 약 370만 명(그 중 49%는 여성)의 청소년들이 97,267개의 청소년지원사업에 참여했다. 2005년에는 309,357건의 청소년상담(그 중 44% 여성)이 이루어졌고 자발적으로 상담기관을 찾아간 청소년은 7.1%가 남성이었고, 64.9%가 여성청소년이었다. 같은 해에 29,978 가정이 사회교육적 청소년지원을 받았고 그 중 35%가 3명 이상의 청소년자녀를 두고 있었다. 또한 50,364명의 청소년들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되었고, 4,762명의 미성년들이 입양되었는데 그 중 40% 가깝게 6세 미만이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아동·청소년지원에 소요된 예산은 2004년에 총 2억 700 유로가 지출되었으나 총 사회비용의 2.4%에 불과했다. 이러한 예산의 57%는 아동의 보육 및 탁아에 지출되었으며, 28%는 교육지원과 청소년들의 일시보호에 사용되었다. 재원을 보면 90%는 세금으로 충당되었으며, 3%는 판매와 임대수입, 사용자의 자부담이 7%였다. 이 예산의 70%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달되었고 29%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리고 1%만 연방정부에서 지원되었다. 2002년에 독일에는 아동·청소년지원 기관들이 78,500개였고 56,800명이 종사하였으며 그 중 86%가 여성이었고 12% 정도가 대학 졸업의 학력 소지자였다.

19) 2006년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청소년청’을 통한 이러한 일시보호(Inobhutnahme) 사례가 25,800건이나 있었다.

독일의 아동정책은 청소년정책 안에서 함께 수행되어 왔는데 1992년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국이 된 후 관련법령도 ‘청소년복지법’에서 ‘아동·청소년지원법’으로 확대되면서 아동정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지난 6년간 혼자있는 아동이 16%에서 20%로 상승했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0~2세까지의 영유아를 돌보는 킨더크리페(Kinderkrippe)와 킨더슈투베(Kinderstube), 3~6세의 아동을 돌보는 킨더가르텐(Kindergarten),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킨더호르테(Kinderhorte), 연령구분이 없는 그룹탁아시설, 그리고 보모로부터 돌보아지는 형태로 위탁 보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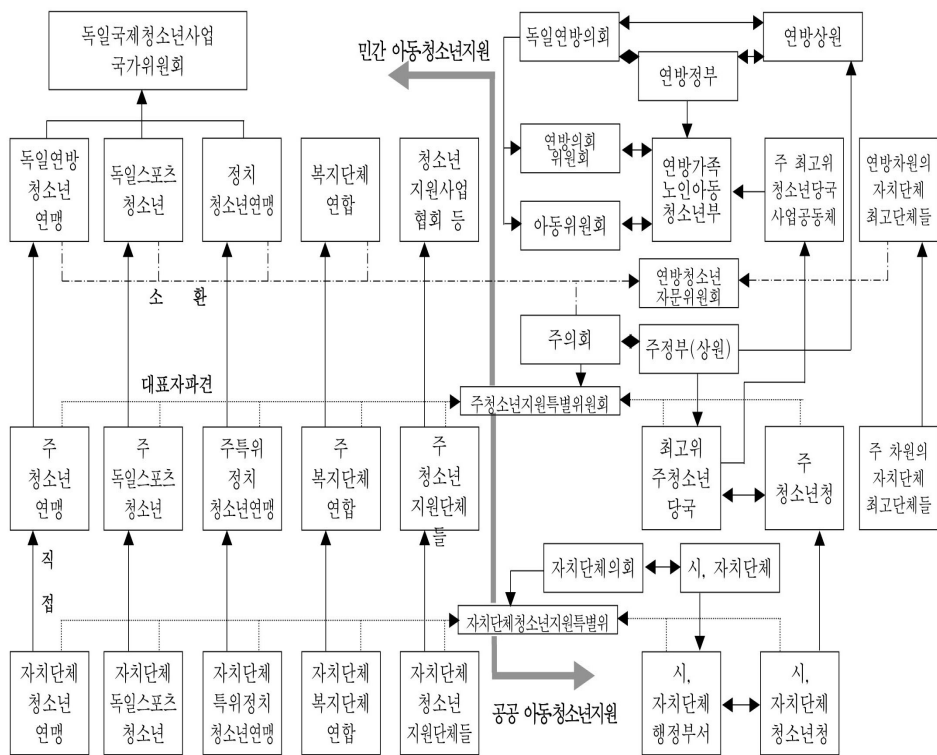
특히, 1996년부터 ‘아동·청소년지원법’ 제24조에 따라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 누구나 우리나라의 유치원에 해당하는 킨더가르텐에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또 2005년부터는 같은 조항 제2호에 “3세 미만의 아동과 초등학생들도 방과 후 탁아시설에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아동의 탁아시설 확대 관련법²⁰⁾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2006년 3월 현재 독일에는 약 59,829명의 아동들이 탁아되고 있고 30,427명의 인력이 이들을 돌보고 있다. 같은 해 말 방과 후 초등학생들은 킨더호르테에 356,144명이 위탁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독일 아동·청소년지원의 전달체계는 [그림 III-5]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그림의 왼쪽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독일의 민간 청소년복지정책 전달체계는 독일연방과 주정부의 행정체계와 마찬가지로 연방 차원과 주(州) 차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Kommune) 차원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소의 기초자치단체 단위에까지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위에는 중앙정부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로부터 16개 ‘주(州) 청소년청’, 광역시의 ‘구

20) TAG : Tagesbetreuungsbaugesetz

(區)청소년청’(Bezirksjugendamt), 중소도시의 ‘시(市)청소년청’(Stadtjugenamt), 지방의 작은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단체 청소년청’(Kreisjugendamt)이 수직적인 전달체계를 가지고 형성되어 있다. 각 영역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관과 단체들이 영역에서 수행되는 정부의 공공 청소년정책과 긴밀한 협력관계, 때로는 감독 내지는 비판적 관계에서 각기 고유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각 영역별로 간략히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5] 독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정책 전달체계

연방 차원에서의 대표적인 민간 청소년단체들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상위 기구인 ‘독일국제청소년사업국가위원회’²¹⁾에 관계되어 있는 ‘독일연방청소년연맹’²²⁾, ‘독일스포츠청소년’²³⁾, ‘정치청소년연맹’²⁴⁾의 3개 기관들과 복지단체연합, 그리고 ‘청소년지원사업협회’²⁵⁾와 ‘독일유스호스텔연맹’²⁶⁾ ‘독일청소년연구소’²⁷⁾를 비롯한 다양한 독일의 대표적 민간 청소년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각 기관들의 설립목적과 정체성에 따라 고유의 업무를 연방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 수행이 연방차원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이들의 대표가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 8조 2항에 따라 구성된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대부분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행정체계에 따른 하위 영역의 주와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공공 청소년 행정체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주와 자치단체에서는 주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나 자치단체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에 대표들을 참여시켜 각 영역의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청소년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자문하거나 조언하기도 하며, 다양한 청소년사업들을 제안하고, 때로는 공공의 청소년행정을 비판하거나 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앞의 독일의 청소년복지정책의 전달체계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공공과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날줄과 씨줄로 엮여 서로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각 형성기구들은 독립적, 자율적인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21) Deutsches Nationalkomitee für internationale Jugendarbeit(DNK)

22) Deutscher Bundesjugendring(DBJR)

23) Deutsche Sportjugend(DSJ)

24) Ring politischer Jugend(RPJ)

25) Arbeitsgemeinschaft für Jugendhilfe(AGJ)

26) Deutsche Jugendherbergswerk(DJH)

27) Deutsches Jugendinstitut(DJ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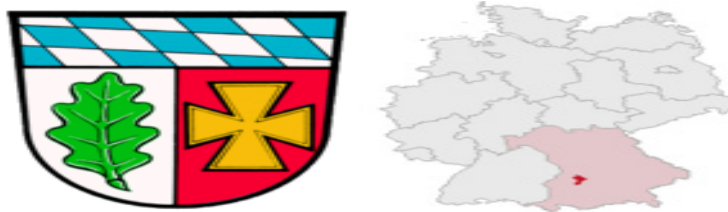
3) 기초자치단체 아이히아흐-프리트베르그(Aichach-Friedberg)의 청소년복지정책 사례

(1) 아이히아흐-프리트베르그(Aichach-Friedberg)의 배경

① 아이히아흐-프리트베르그의 역사

아이히아흐-프리트베르그는 독일의 16개 연방 주중 하나인 독일 남부 지역의 바이에른(Bayern)주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군(郡) 단위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이다. 아이히아흐-프리트베르그 지역에서 사람이 거주한 고고학적 유물로 미루어보면 이 지역의 거주 역사는 1만년이 넘는다. 아이히아흐(Aichach)지역에 있는 비텔스바흐(Wittelsbach)성(城)은 1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프리트베르그(Friedberg)시(市)는 1264년에 시작되었다. 이후 30년 전쟁 등의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1818년에 와서 기초자치단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1862년에 아이히아흐-프리트베르그 지역의 행정구역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에 많은 게마인데들이 아이히아흐-프리트베르그 자치단체에 속했다가 탈퇴하는 것이 반복되다가 1973년에 와서야 우리나라의 군 단위와 같은 아이히아흐-프리트베르그 기초자치단체(Landkreis)로 형성되었고, 자치단체 정부를 아이히아흐에 두고 있다.

② 아이히아흐-프리트베르그의 사회지도(Social Atl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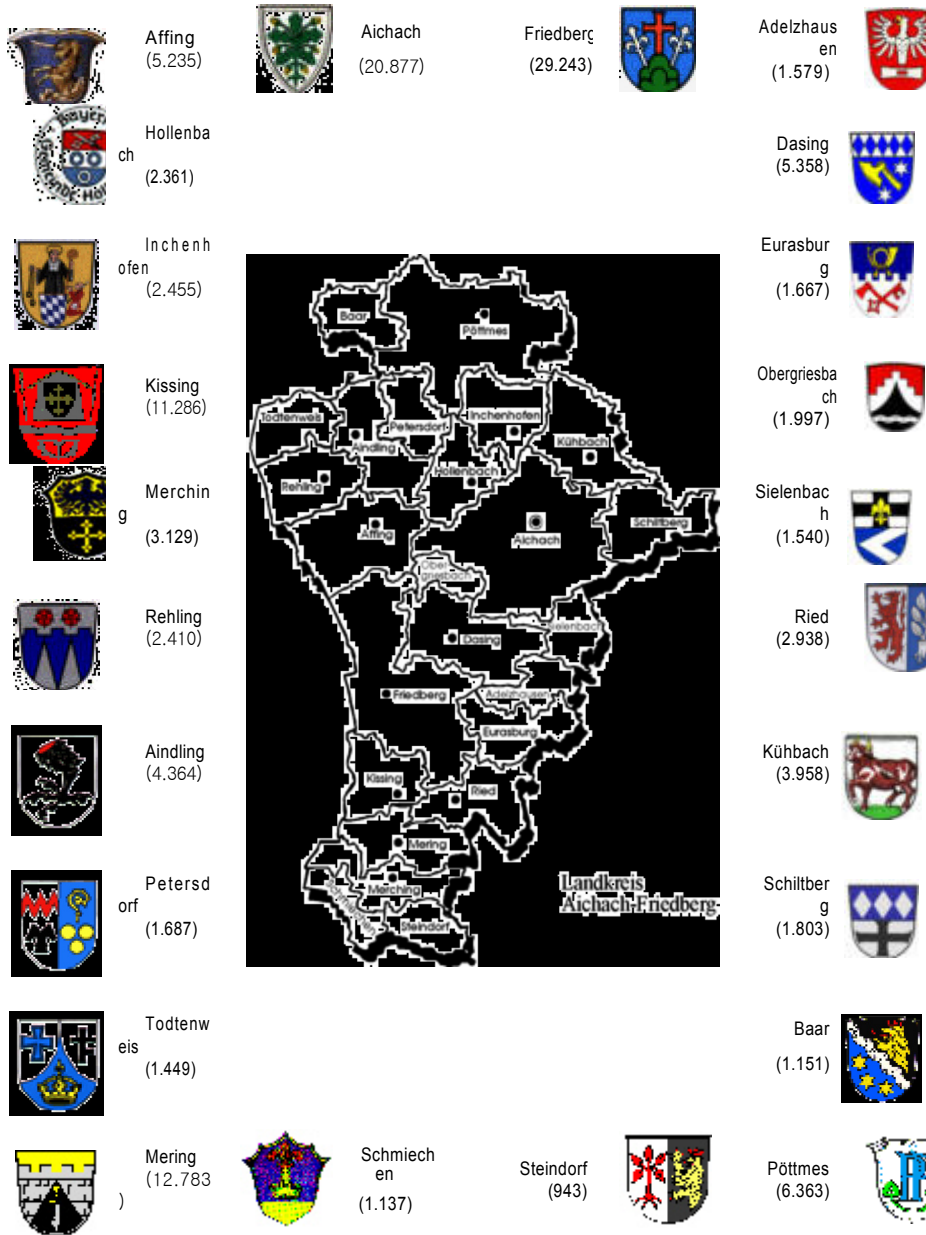
[그림 III-6] 아이히아흐-프리트베르그 문장(紋章) 독일에서의 위치와 크기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크 기초자치단체는 <표 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 베를린(Berlin)시를 비롯한, 브레멘(Bremen), 함부르크(Hamburg) 3개 광역시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도(道)에 해당하는 13개 연방주(州) 중 하나인 독일 남부 바이에른(Bayern)주의 중서부에 속해있는 기초자치단체이다. 바이에른 주에는 독일 전체 301개의 기초자치단체(Landkreis) 중 총 71개 중 하나로서 24개의 자치 게마인테(Gemeinde)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아이히아흐, 프리드베르크, 다징(Dasing), 메링(Mering), 키싱(Kissing)정도만 주민수가 10,000명이 넘는 정도이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의 작은 면이나 동 정도의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다.

<표 III-5>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크 자치단체의 기초통계

연방 소속 주	바이에른(Bayern)
정부 행정구역	슈바벤(Schwaben)
자치단체 청사 소재지	아이히아흐(Aichach)
면적	783.1 km ²
주민 수	127,713명 (2006년 9월 기준)
인구밀도	163명 (1km ² 당)
자치구 수	24 게마인테(Gemeinden)
주무관청 소재지	Münchener Str. 9/86551 Aichach
웹사이트 주소	www.lra-aic-fdb.de

면적은 731km²이고 인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9월 현재 12만 7,713명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자치단체 청사는 아이히아흐시에 위치하고 있다. 집권 정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인 기독교사회당(CSU)이 집권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수공업과 제조업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다음 <그림 III-7>은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크의 위치와 2006년 9월의 각 자치구역 주민수 현황이다.



[그림 III-7] 독일 Aichach-Friedberg의 기초자치단체들과 주민수

독일 쾰른(Köln)시 경제컨설팅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기초자치단체는 독일 전국의 조사된 기초자치단체 435개 중 종합 47위로 실업자가 적고 경제적 기반이 단단한 자치단체이다. 특히, 실업수당을 받는 주민 수 비율이 낮아 전국 4위에 해당될 정도로 부유한 자치단체이고 범죄율도 전국에서 21위로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에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는 대학졸업자 수가 적어 전국에서 376위로 매우 낮은 편이며, 주민 100명의 수요 당 직업훈련 자리는 95.1개로 전국에서 290위로 낮은 편이며 주민 당 생산량과 임금수준도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

(2)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복지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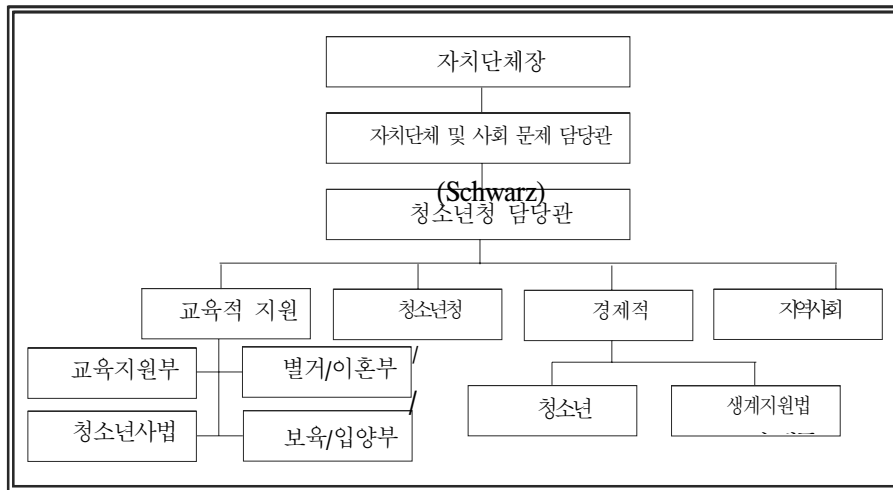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독일 전역의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청(Kreisjugendamt)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치단체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청소년청’은 상위기관인 바이에른 ‘주(州) 청소년청(Landesjugendamt)’에서 법제도적으로 정한 범주 내에서 청소년복지정책을 수행하게 되지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자치적인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복지정책은 독일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사회법’ 제8권의 ‘아동·청소년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지원계획’(Jugendhifeplanung)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관련기관들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계획은 위의 법 제정의 기초를 언급하고 있는 다음의 말을 준수하고 있다. 즉, “사회기관과 서비스들의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효과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정책의 원칙이다.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빠듯한 재정을 조심스럽게 심사숙고하여야만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투입으로 필요에 따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고 특히, 민간과 공공의 청소년지원의 노력들을 중장기적으로 서로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아이히아흐-프리트베르그에서는 1999~2002년 사이에 ‘청소년사업’, ‘교육적 지원’, 그리고 ‘아동 보육’의 3가지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단체 의회에서 채택하였다. 이 계획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아이히아흐-프리트베르그 자치단체의 사회공간분석’이 추가로 고려되었다. 현재는 계획의 각 부분에서 제시된 대책 제안들과, 각 부분 계획 및 사회공간분석의 지속적 개선과 평가, 그리고 질적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위해 일이 진행되고 있다.

① 아이히아흐-프리트베르그 청소년복지정책의 일반현황

아이히아흐-프리트베르그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은 ‘아이히아흐-프리트베르그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청소년청에는 23명(그 중 11명은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으며 주로 경제적인 청소년지원, 교육지원, 별거와 이혼의 상담, 소년소송지원, 아동지원, 입양중개, 자치단체 청소년사업, 인턴 고용, 학교와의 청소년사업 등의 일과 관련하여 일하고 있다. 직원들은 ‘바이에른 주 청소년청’에서 하는 보수교육에 참가하고 있으며 실습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III-8] 독일 Aichach-Friedberg 자치단체의 청소년청의 행정체계(2004)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청소년청의 장은 바이에른주 청소년청 청소년지원위원회의 위원이며 동시에 바이에른주 청소년보호와 직업소개소 당연직 이사로 있으면서 슈바벤(Schwaben)지역 청소년청들의 공동체 대변인을 맡고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청소년청도 ‘아동·청소년지원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소위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와 청소년청 행정업무의 “이분화된 기구”의 원칙 하에서 [그림 III-8]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전달체계를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III-6>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각 자치구 연령별 주민수

	합 계	0 - 2	3 - 5	6 - 9	10 - 14	15 - 17	18 - 24	25세 이상
Aichach-Friedberg	126.711	3.769	4.360	6.107	8.201	4.833	10.080	89.361
Adelzhausen	1.502	38	56	68	120	76	114	1.030
Affing	5.140	180	190	291	350	203	380	3.546
Aichach	20.814	619	691	949	1.285	787	1.815	14.668
Aindling	4.387	142	162	238	295	195	329	3.026
Dasing	5.276	173	178	256	357	192	380	3.740
Eurasburg	1.628	52	57	74	127	73	129	1.116
Friedberg	29.420	772	939	1.262	1.749	1.054	2.195	21.449
Hollenbach	2.377	72	92	129	177	110	162	1.635
Inchenhofen	2.382	94	94	130	186	82	201	1.595
Kissing	10.988	302	369	500	673	392	835	7.917
Kühbach	3.965	158	158	230	266	140	314	2.699
Merching	3.097	96	119	192	200	110	255	2.125
Mering	12.521	350	433	613	760	457	1.031	8.877
Obergriesbach	1.998	71	66	105	164	78	144	1.370
Petersdorf	1.713	57	64	65	117	60	149	1.201
Pöttmes	6.280	190	215	310	472	246	482	4.365
Rehling	2.376	72	88	111	167	95	206	1.637
Ried	2.945	106	108	160	184	144	278	1.965
Schiltberg	1.795	46	65	97	127	68	168	1.224
Schmiechen	1.142	37	44	62	83	51	86	779
Sielenbach	1.466	42	48	99	126	71	126	954
Steindorf	937	36	38	48	47	33	58	677
Todtenweis	1.403	32	44	52	90	62	140	983
Baar	1.159	32	42	66	79	54	103	783

출처 :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 청소년보고서(2005)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청소년청의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에는 15명의 심의위원과 11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의 인구분포를 보면 위의 표와 같다.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연령의 인구는 전체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주민수의 약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7>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2003-2004 청소년예결산 현황

(단위: €)

	2003	2004	2004.12.15	2004.12.30
지 출	5,801,552	5,599,417	5,667,977	5,917,284
수 입	1,174,232	888,000	1,155,480	1,203,933
결 산	4,627,320	4,711,417	4,512,497	4,713,351

출처 :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 청소년보고서(2005)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복지정책 예산의 결산일은 12월 15일로 <표 III-7>의 2003년과 2004년의 예결산 표를 보면 그 규모와 형편을 잘 알 수 있다. 2004년도 예결산 내용에서 특이한 사항들을 보면 지출이 68,560유로와 수입이 267,480유로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추가예산이 -4.2%로 114,823유로를 절약해 전년도에 비해서 잘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8>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청소년 예산 지출내역 현황

지 출 내 역	지출 규모(단위:€)	비 율(%)
‘교육에의 지원’	3,938,671	66.6
사회통합지원	1,279,897	21.6
청소년사업	249,724	4.2
교육후원	237,820	4.0
보육시설	145,589	2.5
청소년지원 행정	45,624	0.8
기타	20,410	0.3

출처 :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 청소년보고서(2005)

이 추가예산을 청소년 개인별로 계산하면 1인당 165유로가 지출되었고, 민간위탁 기관의 지원 예산이 503,908유로에 달했다. 예산의 지출 중 가장 많은 부분은 ‘교육에의 지원’과 ‘사회통합지원’의 비용이 5,218,568유로로 전체 예산지출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예산의 지출내역을 보다 자세히 제시하면 <표 III-8>과 같다.

가장 많은 청소년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교육에의 지원’은 자치단체 청소년복지정책의 큰 프로젝트 사업으로 중요한 지출의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다. 먼저 청소년교정교육에 이 사업의 58.2%에 해당하는 2,293,644유로를 지출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종일탁아소 지원이 11.7%로 459,631유로를 지출하고 있다. 또 탁아소 교육에 10.6%, 기타 교육지원에 10%로 각각 417,610유로와 394,104유로를 지출하고 있다.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요 복지적 지원의 현황을 2001년에서부터 2004년까지의 일반 현황과 비교해서 대략 살펴보면 <표 III-9>와 같다.

<표 III-9>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아동·청소년지원 현황(2001~2004)

수행 내용	2001	2002	2003	2004
유치원 비용 부담(거부)	205(95)	239(112)	215(73)	209(67)
국가공무원 인건비	7,735,000DM	4,266,295 €	4,553,800€	4,681,163€
농촌체험 휴가 지원비	2,520DM	966€	644€	773€
반나절 탁아 지원소	56개	48개	45개	38개
사회교육적 가정지원	12건	14건	22건	22건
치료교육적 지원소	31개	36개	29개	33개
아동보호소 수용	90명	93명	102명	93명
이주민 청소년 지원	195건	216건	266건	234건
일시보호	4건	10건	8건	11건
청소년사법 지원	461건	447건	439건	525건
생계비 대출 지원	924건	995건	1,088건	1,026건

출처 :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 청소년보고서(2005)

②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복지정책 사업 내용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청은 ‘자치단체 청소년사업’영역이나 ‘학교연계 청소년사회사업’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자치단체 청소년사업’영역에는 자치구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상담과 **Street Worker**나 청소년센터, 청소년위탁기관과 같은 서비스와 시설들을 네트워크화하고 함께 참여하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연계 청소년사회사업’영역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청의 전문 인력들이 학생 청소년들을 상담하거나 돌보는 일과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적 워크숍과 강연, 코스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민간 청소년기관들은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청소년사업, 청소년사회사업, 교육적 아동·청소년보호와 같은 일들을 위탁받아 일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예산은 <표 I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지원예산의 합계가 249,725유로이다.

<표 III-10>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민간위탁 청소년기관 및 지원 예산

청소년사업 위탁내용	위탁 청소년단체	지원예산 (2004)
교육적 아동·청소년보호	약물중독지원 Schwaben	€ 7,592
교육적 아동·청소년보호	아동보호단체	€ 6,212
교육적 아동·청소년보호	Wildwasser Augsburg	€ 9,500
청소년사업	자치단체청소년연맹	€ 104,894
레크리에이션장지원	스포츠단체들	€ 45,985
학교연계청소년사업	GFI	€ 16,445
청소년직업지원	청년작업단체	€ 3,000
Streetwork	SIA-Lehmbau	€ 55,645

출처 :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 청소년보고서(2005)

③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가족 교육지원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청은 실무자들이 청소년 부모의 별거나 이혼에 있어서나 타아소문제, 생계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교육적 접근을 통

하여 이들을 상담하고 있다. 특히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 자치구들 중에서 Aichach, Friedberg, Kissing과 근린지역의 Augsburg에 있는 민간 상담기관에서는 문제 가정의 부모나 그들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심리적 상담을 활발히 하고 있다. 아래의 <표 III-11>에는 이러한 교육적 상담 관련기관들과 장소, 지원예산 규모(총 237,820 유로)들을 자세히 알 수 있다.

<표 III-11>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민간 청소년상담기관 및 지원 예산

청소년사업 위탁내용	위탁 청소년단체	지원예산 (2004)
교육 상담	천주교 청소년복지	€ 123,250
사회교육 상담	천주교 청소년복지	€ 46,000
교육 상담	Diakonisches Werk	€ 33,918
별거와 이혼 상담	Diakonisches Werk	€ 14,001
동반자 사업	Diakonisches Werk	€ 12,000
결혼·가정·인생 상담	Diözese Augsburg	€ 7,592
부모·아동 그룹	천주교 여성단체	€ 1,059

출처 :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 청소년보고서(2005)

④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보육시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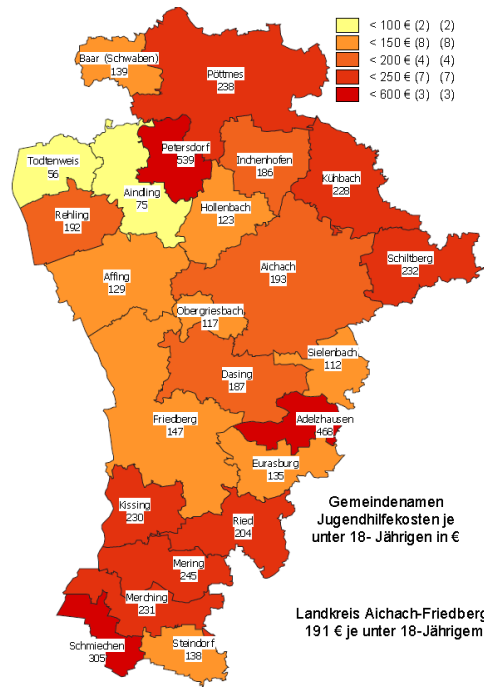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에는 2004년 62개의 유치원에서 4,385명의 영유아들이 보육되고 있다. 청소년청에서는 주정부의 인건비로 4,881,420유로가 배정되어 있고 4,2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인 유치원과 186명의 자리가 있는 탁아소가 설치되어 있다. 프리드베르그의 탁아소는 25명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Affing, Affing-Haunswies, Aichach, Kühbach, Merching 등 5개 탁아소에 125명을 수용할 수 있다. 특별히 가족단위의 ‘농촌에서의 휴가’ 프로그램에 772유로가 지원되고 있다. <표 III-12>에서 보육시설 종류에 따른 수용 및 인건비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표 III-12〉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크 보육시설 종류 및 인건비 현황

보육시설 종류	수	그룹	수용인원	인 건 비
유치원	62	174	4,265	€ 4,693,676
탁아소	5	8	186	€ 187,744
아동 네트워크	4	8	60	Schwaben 자치단체에서 지원

출처 :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크 자치단체 청소년보고서(2005)

⑤ 청소년지원, 이주민지원, 청년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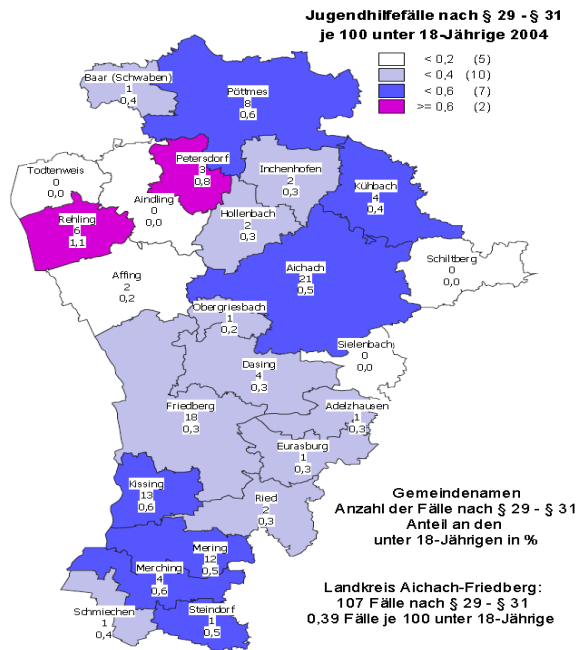


[그림 III-9] Aichach-Friedberg의 자치구별 1인당 청소년 지원 규모

① Aichach-Friedberg의 자치구별 청소년 지원 규모

위의 [그림 III-9]에서는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크의 자치구별로 아동·청소년

년지원의 규모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치구들의 2004년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1명에게 지원된 예산을 살펴보면, 제일 많은 자치구는 앞의 표에서 제시된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각 자치구 연령별 주민수에서 총 주민수가 1,713에 불과한 페터스도르프(Petersdorf)로 이곳의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수가 363명인데 1인당 지원은 539유로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주민수가 4,387명이고 아동·청소년수가 1,032명인 토텐바이스(Todtenweis)는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 평균 191유로에 훨씬 못 미치는 56유로로 가장 적게 지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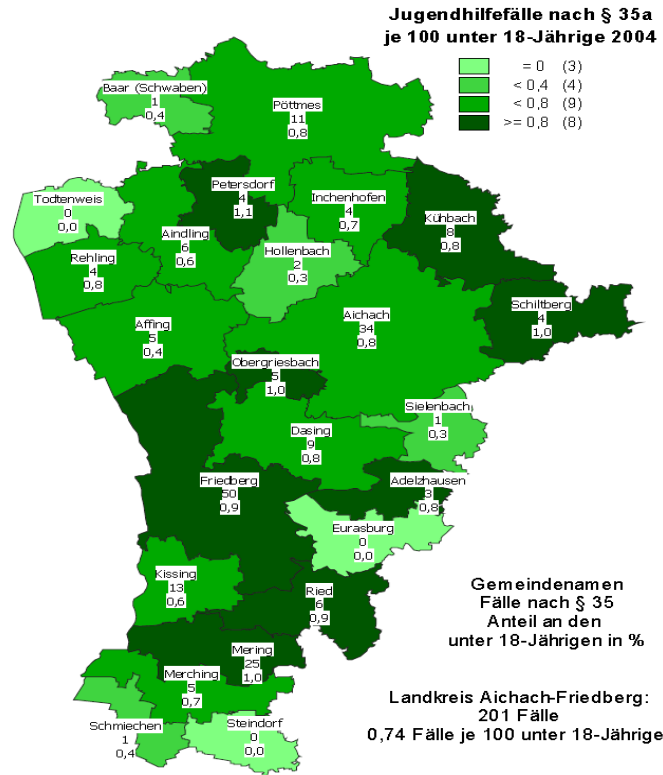


[그림 III-10] Aichach-Friedberg의 자치구별 1인당 긴급 청소년 지원 상황

② Aichach-Friedberg의 자치구별 청소년 긴급 지원 상황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2004년 사회사업 그룹별 지원, 교육보조, 사회교육적 가족지원에 아동·청소년 100명 당 자치구별로 긴급 지원된 경우는

[그림 III-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를 보면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크 자치단체 전체 긴급지원 총 107건 중에서 역시 인구가 가장 많은 아이흐아흐와 프리드베르크가 21건과 18건 수로 가장 많고 주민수가 적은 토텐바이스, 아인들링, 쉴트베르크(Schiltberg), 질렌바흐(Sielenbach) 등의 자치구들에는 전혀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림 III-11] Aichach-Friedberg의 자치구별 다문화청소년 지원 상황

③ Aichach-Friedberg의 자치구별 다문화청소년 사회통합 지원 상황

독일은 9개국과 인접한 나라이다. 인구이동이 많고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이기에 동유럽과 아프리카, 구소련 등지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12차 세계대전의 발발국이고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이주민들을 받아들였던 독일은 일찍부

터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 문제도 청소년복지정책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독일 남부의 작은 자치단체인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에서도 다문화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은 중요한 청소년복지정책의 하나이다. 앞의 [그림 III-11]과 같이 2004년 이 자치단체에서는 총 201건의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있었다. 그 중 역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프리드베르그의 50건, 아이히아흐의 34건, 메링의 25건, 그리고 키싱의 13건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토텐바이스와 오이라스부르크(Eurasburg), 슈타인도르프에서는 한 건의 다문화청소년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위에서 서술한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의 주요 청소년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는 ‘교육지원’, ‘청년지원’, ‘다문화청소년 지원’과 같은 청소년복지정책과 관련된 세부 사업 지원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III-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2004년 기준의 표에 따르면 여러 청소년복지정책관련 사업들 중에서 상주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1건당 45,652유로가 지출되어 가장 많았고, 문제청소년들의 보호관찰 비용이 23,948유로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긴급지원 비용이 응급처치 비용이기에 882유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한 기간을 보면 종일 위탁비용이 40개월이 넘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보호관찰이 35개월이 넘어 다음으로 많았다. 가장 적은 기간 동안 지원한 것은 30명의 아동을 돌본 4개의 사회그룹 사업이 약 3개월로 가장 짧은 지원을 받았다.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이 알아야 할 흥미 있고, 가치가 있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역시 기초자치단체인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에서도 “청소년지원은 남자청소년 지원이다”라는 말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은 여성 청소년은 39%에 불과하였다.

〈표 III-13〉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복지 사업 세부현황

청소년복지사업 내용	평균연령	여성(%)	건당 평균비용	지원기간 (월)
사회사업 그룹	13,1	20	€ 7,592	3,2
교육보조 및 보조원	13,8	35	€ 7,592	13,8
사회교육적 가족 지원	13,8	35	€ 7,592	14,2
아동·청소년 위탁소(낮)	9,4	24	€ 6,212	21,5
아동·청소년 위탁소(종일)	11,4	67	€ 9,500	40,8
보호관찰	15,5	35	€ 104,894	35,7
청년 지원	19,3	42	€ 45,985	15
다문화청소년 지원(긴급)	11,9	38	€ 16,445	17,8
다문화청소년 지원(계약)	10,9	22	€ 3,000	22,6
다문화청소년 지원(지속)	15,6	56	€ 55,645	12

출처 :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 청소년보고서(2005)

■ 전년도에 비해 청소년복지 관련 통계가 전체적으로 안정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긴급한 상황이 늘어난 반면, 지속적인 대책들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 2000년 수행된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사회공간분석에서도 나타났다지만 자치구 ‘도시와 농촌사이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남쪽 자치구들과 함께 북쪽 자치구들에 청소년 지원의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이한 사항으로 프리드베르그 자치도시는 청소년지원 요청 중 “교육 지원”의 요청은 낮았던 반면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자치단체 총 지급지원의 25%가 프리드베르그에 지원되었다.

■ 또한, 자치구인 아이히아흐와 프리드베르그 도시는 다문화청소년의 비상주 거주 대책에 대한 지원이 높은 것이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다.

■ 상주하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긴급지원의 경우는 3건 밖에 없었는데 이는 청소년청에서 정확한 지원대상 선발의 질 향상과 긴급지원 대책이 교

육적으로 성공적인 과정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긴급지원 총 151건 중 57%가 읽고, 쓰는 장애 20%가 긴급한 치료 교육적 조치, 17%가 생각장애의 심리치료의 형태를 보였다.

⑥ 일시적 아동·청소년 보호대책

2004년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에서는 10건의 ‘일시보호’²⁸⁾를 수행하였다. 경찰에게 한 청소년이 붙잡혀 청소년지원기관으로 보내졌다. 일시보호 대상 청소년들의 평균연령은 14세였고 그 중 8명이 여성 청소년들이었다. 이 청소년들을 위해 지출된 예산은 2004년 10,379유로였다. 청소년청에서는 16세~21세 청소년을 최대 3개월 동안 살 수 있도록 ‘긴급거주지’를 확보해서 2004년에 총 평균 64일 동안 사용하도록 하였다.

⑦ 청소년사법지원 영역에서의 현황

<표 III-14>에서 제시한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초에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던 외국청소년과 독일청소년들은 총 233건이었는데 이 회기 중에 314건이 더 발생하였고 345건이 처리되었다. 연말에는 202건이 처리중으로 남아있었다. 반면에 18세 이상 21세까지의 나이가 많은 ‘성인청소년’²⁹⁾들에 대한 사법처리 및 지원의 건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전체적인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20%가 증가한 수치이고 5년 전에 14~21세 100명의 청소년 당 4.9건의 사법처리 수와 같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의 종류를 살펴보면 지난 수년간 가장 많았던 절도가 2004년에 처음으로 마약류 사범(18.9%)보다 적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2004년의 청소년 범죄 중에는 사법처리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청소년 사법처리들이 88건이 있었으며 이 중 50%는 상점에서의 절도로 나타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주민수가 가장 많은 아이히아흐나 프리드베르그보다 키싱과 메링이

28) 참고로 2006년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청소년청’을 통한 이러한 일시보호(Inobhutnahme) 사례가 독일 전역에 총 25,800건이나 있었다.

29) 독일어 표기로 ‘성인청소년’들을 ‘성장세대(Heranzwachsende)’로 부른다.

청소년 범죄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³⁰⁾ 사법처리 세부현황(2004)

회기 중 사법처리 대상 청소년 표기	독일청소년		외국인청소년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합 계
	18세미만 청소년		18세미만 청소년		
회기 초 사법처리 중 청소년	188	38	5	2	233
회기 중 사법처리 청소년	227	67	11	9	314
사법처리가 종결된 청소년	261	68	11	5	345
회기 말 사법처리 중 청소년	154	37	5	6	202

출처 :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 청소년보고서(2005)

<표 III-14>를 보면 2004년 한 해 동안 18세 미만 사법처리 대상 청소년들 총 547명 중에 독일 남자청소년들이 7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독일 여성청소년들은 19%로 나타났다. 외국인 청소년들은 전체 사법처리 대상 청소년들 중 5%였으며 그 중 남성이 3%에 해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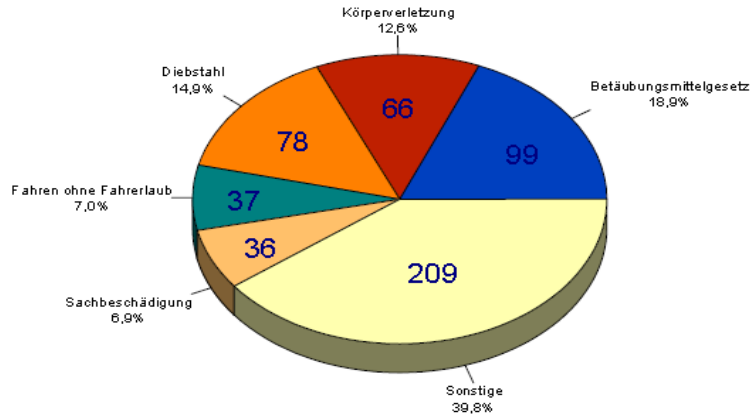
<표 III-15>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성인청소년 사법처리 세부현황(2004)

회기 중 사법처리 대상 성인청소년 표기	독일 성인청소년		외국인 성인청소년		합 계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회기 초 사법처리 중 성인청소년	86	29	2	12	129
회기 중 사법처리 성인청소년	156	37	15	3	211
사법처리가 종결된 성인청소년	162	37	13	2	214
회기 말 사법처리 중 성인청소년	80	29	4	13	126

출처 :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 청소년보고서(2005)

30) 이 현황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만 계수되었다.

이러한 비율은 18세 이상 21세까지의 성인청소년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 <표 III-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 사법처리 대상 성인청소년 340명 중 독일의 남성 성인청소년이 71%, 여성이 19%, 외국인 성인청소년은 9%였으며 그 중 남성은 5%에 해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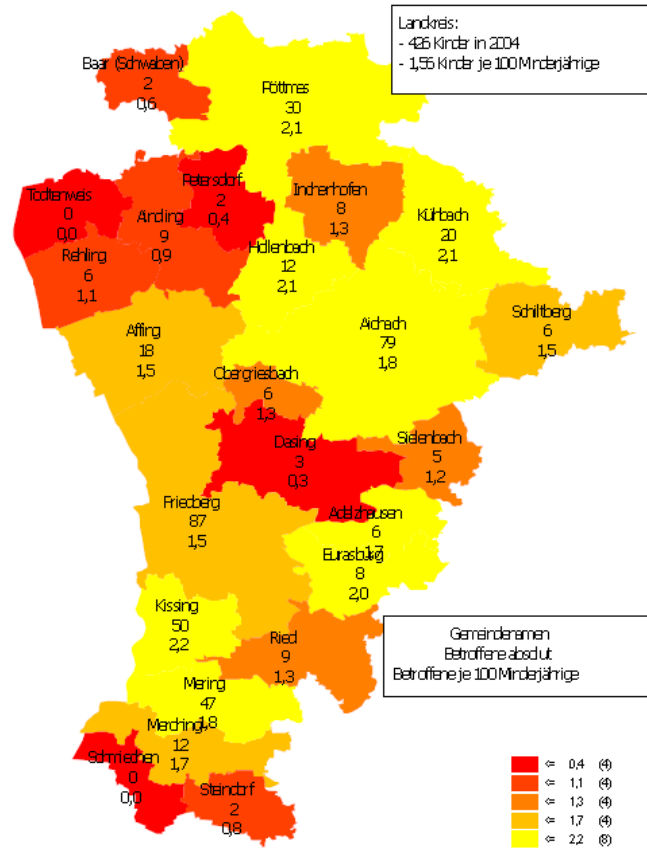


[그림 III-12] Aichach-Friedberg의 청소년 범죄 가담 종류 상황

[그림 III-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4년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의 청소년 범죄 종류를 살펴보면 마약류 접촉이 18.9%, 절도가 14.9%, 신체상해가 12.6%, 무면허 운전 7%, 기물파손 6.9%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범죄가 39.8%로 나타났다.

[그림 III-13]은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에서 2004년 부모가 별거나 이혼 등의 가정문제로 가정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총 426명의 아동들이 이에 해당되고 있으며 100명의 아동들 중 평균 1.56명에 달하고 있다. 지구별로 살펴보면 주민수가 가장 많은 프리드베르그가 87명, 다음으로 아이히아흐가 79명이고, 비율로 보면 키싱이 100명당 평균 2.2명으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이혼이나 별거에 해당하는 심각한 상황은 280건으로 지난해 250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2004년에도 이혼의 경우 공동으

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2003년의 103건에서 128건으로 더 많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림 III-13] Aichach-Friedberg 자치구별 이혼소송 중인 청소년 현황(2004)

⑧ 생계비 대출 지원

2004년 한 해 동안 아이히아흐-프리트베르그 자치단체의 생계비를 위한 대출지원 처리상황은 총 1,026건이 있었다. 그 중 291건이 적극적으로 판정되었고, 42건은 지원이 거부되었으며, 137건은 대출이 중단되었고, 532건은 반

환청구 중에 있으며 24건은 아직 미결정 상태에 있다. 지난해에 국가 대출 지원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총 507,009유로인 반면에 상환금으로 189,177유로가 들어왔는데 상환비율은 37%에 해당되었다.

⑨ 학교에서의 청소년사회사업

독일의 청소년복지정책 중 ‘청소년사업’과 더불어 중요한 정책인 ‘청소년사회사업’은 학교와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 사업의 일환인 ‘학교사회사업’으로 실천되기도 한다.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는 청소년정책과 학교와의 연계사업으로 집단따돌림과 같은 학생들 각 개인의 문제들을 상담해 주거나 학생과 교사와의 대화를 주선해주고, 학부모들과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교육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고 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하여 집단따돌림을 위한 중재 코스를 마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거나 학업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긴장완화 기술, 게임 등의 코스 그리고 매체와 토의 등을 통해 ‘성폭력’을 주제로 워크숍을 무료로 개최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제공되며 학부모의 밤에 강연과 아버지의 역할, 청소년약물중독, 폭력을 조장하는 컴퓨터게임에 대한 특강들이 무료로 제공되기도 한다.

한편,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자치단체 청소년청’은 청소년문제를 예방하는 프로젝트 ‘클릭(Klik)’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와 같은 청소년관련 기관에게 워크숍이나 부모강연, 교사 보수교육, 체험교육적 사례 등을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약물중독이나 폭력, 인종차별, 유해매체 등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예방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6개월 단위로 수행되는데 매달 4개의 수업모형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설문문을 통해 양질의 내용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후에는 매년 통계를 내어 중단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민간기관들의 기존 프로그램들과 연계, 코디네이션이 클릭 프로젝트와 통합되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4) 한국 청소년정책에의 시사점

(1) 행정체계에 있어서의 시사점

독일은 연방국가이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관계법령을 가지고 정책의 기본틀을 만들어 국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의 주체는 16개 주(州)라 할 수 있다. 즉,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각 주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체도가 이제 10년이 조금 넘은 상태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아직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와 전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정책에 있어서도 아직 중앙정부에 모든 정책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청소년정책의 행정이 미비하고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행정의 고질적 문제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로 청소년정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지방공무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전체적으로 보아 독일은 안정적인 지방분권을 기초로 각 주와 주 아래의 작은 단위 기초자치단체까지 중앙정부와 주정부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을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각 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 영향력이 중앙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오히려 지방의 행정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되어 중앙과 지방 청소년정책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바람직한 행정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한편, 청소년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독일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살펴보면 독일은 일찍부터 청소년정책 전체를 하나의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청소년복지정책을 청소년정책 중 일부분으로 떼어서 수행하고 있다. 독일은 일찍이 1922년 ‘제국청소년복지법’을 만들어 청

소년정책의 기본법령으로 세웠다. 이후 이 법은 1960년에 ‘청소년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1990년 10월 3일 통독 후 1991년 1월 1일부터 현행 ‘아동·청소년지원법’으로 개정되었다. 즉, 독일은 청소년정책 자체가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적 이념과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정책의 모법(母法)이 되고 그 아래에 하위법의 위치로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크게 청소년활동정책, 청소년복지정책,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을 근간으로 하는 청소년보호정책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청소년정책의 행정체계 비교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시사점은 독일은 아동정책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동정책은 청소년정책 안에서 다루어져 오고 있다. 독일에서 ‘청소년정책(Jugendpolitik)’이라 함은 그 대상이 0~25세를 말하고 있다. 즉, 아동을 청소년정책에 항상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해방 후 정부수립 이래로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육성법’으로 독립된 법을 가지게 된 1987년까지 ‘아동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을 기초로 하여 왔던 아동정책 안에서 함께 수행되어온 것을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청소년의 존재보다는 아동의 존재에 더 가치와 비중을 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987년부터 근 20년 동안 청소년정책은 아동정책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책의 이념과 목적을 가지고 빠르게 발전해왔는데 2008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청소년정책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정책과 통합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아동정책으로 보나 청소년정책으로 보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다. 정책의 후퇴요 역행이라 할 수 있는 비판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失政)이다.

(2)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시사점

독일의 청소년복지정책의 전달체계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시사하는 바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정책의 수행기관인 ‘청소년청’이다. 독일에서 ‘청소년청’은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이미 1922년 그의 설립에 대하여 ‘제국청소년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독일은 전국적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를 이미 85년 전인 1922년부터 갖추었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라는 말이 유효하다면, 독일의 막강한 국력과 경쟁력이 바로 이러한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에서 나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우리나라 청소년정책과 전국으로의 전달체계는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의 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을 독일과 비교하자면 독일이 부러울 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 청소년정책은 오히려 전국조직을 가지고 있는 YMCA나 스카우트(Scout), 홍사단, 청협 등의 일부 청소년단체들로부터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정부는 정부주도의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전국의 16개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바꾸고, 전국의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청소년상담센터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로 바꾸어 청소년활동정책과 청소년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범위가 기초자치단체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업무가 혼재되고 중복되어 있어 관련기관 및 시설들의 정체성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또한, 인력들도 개편된 업무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여 목적사업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읍·면·동까지 청소년복지정책이 전달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빨리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는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설치와 시·군·구의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싹틔줄과 같이 독일의 구석구석 자치단체에 조직되어 있는 ‘청소년청’과 같은 전달체계가 아직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현장에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통합되는 과정에 있다. 중앙정

부인 ‘보건복지가족부’에는 이미 이 두 정책을 통합하여 ‘아동·청소년정책실’이 새롭게 구성되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차제에 전국의 동사무소에까지 아동·청소년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과인 ‘아동·청소년사무소’를 두도록 하여야만 한다. 우리가 다시금 재연되어서는 안 될 군사정권의 개발독재와 중동건설, 베트남전쟁에서의 땀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이루고자 한다면 독일에서의 ‘라인강의 기적’의 진정한 기초가 되었던 ‘청소년청’의 전달체계를 우리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정책목표에 있어서의 시사점

독일은 1922년 제정된 ‘제국청소년복지법’ 제4항에서 청소년정책의 목표를 “(...) 학교수업 밖에서 의무교육 연령에 있는 청소년³¹⁾의 복지와 (...)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복지”에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복지정책의 대상과 목표가 일부 소수의 청소년들을 지칭하지 않고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정책과 구별하여 청소년복지정책은 학교(수업)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전쟁고아나 빈곤아동 등의 취약한 아동들을 돌보기 위하여 이미 1919년에 도시와 농촌의 전국에 ‘청소년청’의 행정체계를 갖추도록 결의한 것을 알 수 있다.³²⁾ 그러나 ‘제국청소년복지법’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까지 ‘청소년청’을 정책수행의 핵심기구로 해서 소수의 아동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의 연령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들의 복지를 청소년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독일은 이때부터 ‘청소년지원’의 개념을 사용하여 당시 소수의 취약 청소년이나 문제청소년들을 돌보는 것을 포함하여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목표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31) 당시의 이 법에서 ‘청소년’은 이미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였다. Gries, J. & Ringler, D.(2005). Jugendamt und Jugendhilf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ltmannsweiler: Schneider Verlag Hohengehren, p. 28 참조.

32) 위의 책, p. 25 참조

1990년에 마련된 독일의 현행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조 1항에서 “모든 젊은이는 개인의 발달을 위하여 지원받을 권리와 책임감 있고, 공동생활능력이 있는 한 개체로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의 목표는 이러한 청소년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목표의 대상도 동법 제7조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아동’은 14세 미만³³⁾, ‘청소년’은 14세 이상 18세 미만, ‘젊은 성인(成年)’은 18세 이상 27세, 모든 ‘젊은이’는 27세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이 9세~25세로 되어 있지만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있어서 두 정책의 통합 과정에서 연령의 통일 규정문제가 핵심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청년을 포함한 청소년의 연령과 아동의 연령을 중복되지 않도록 정책목표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연령을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아동복지법’을 기초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행하지 못했던 아동정책의 목표가 청소년정책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어떠한 정책목표를 가져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의 ‘복지’개념과 청소년복지정책의 목표와 ‘아동복지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능동적 복지’의 개념과 정책목표가 서로 다른 정책의 대상 범주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조정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4) 정책내용에 있어서의 시사점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정책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보면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사회사업, 그리고 가족차원에서 교육 지원, 탁아시설 지원, 교육적 아동·청소년보호 지원, 정신장애 아동·

33) 단 동법 제1조 2항에서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과 교육은 자연권이고 최우선의 의무이다.”라고 하는 경우의 ‘아동’은 18세 미만을 의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지원, 아동·청소년 일시보호, 부모의 별거와 이혼에 따른 화해·조정·양육권 문제 상담 등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청소년사업은 우리나라의 청소년활동정책과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청소년참여 등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내용으로 말할 수 있다. 청소년사회사업은 소수의 사회적 취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사업적 정책내용이다. 우리나라도 부모의 별거와 이혼 등에 따른 가정문제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정신적,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이후 문제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정책내용을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통합되는 가칭 ‘아동·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많은 정책들 중 우리와 비교하여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권 침해를 보호하는 내용을 비롯한 교육지원이다. 우리 청소년정책의 이념은 이 시대와 사회에서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덕성과 신체적 건강을 보완하는 역할을 교육정책이 수행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교육으로부터 지식을 습득하고 청소년정책으로부터 덕성과 체력을 쌓아 전인적 인간개체로 성장하는 것을 이념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와는 달리 청소년정책이 교육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연계와 협력을 하도록 청소년정책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학교와 청소년정책이 각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에까지 연계·협력하는 지방조례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를 통하여 많은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호 분리되어 무관심하던 독일의 학교와 청소년정책이 다양한 모습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이러한 원인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환경들과 조건들이 급속하게 변화되면서 가정, 학교, 청소년지원과 같은 사회화 기관들의 과업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자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의 변화를 맞아 학교나 학교 밖 청소년정책도 방과 후 이들의 자녀를 돌보는 문제로 새로운 사고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로 청소년정책은 점차 자연스럽게 방과 후 학생들 특히, 저학년 초등학생들을 학교와 연계하여 돌보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정책 영역에서의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제공들을 보면 크게 보육기능과 학업부담 축소기능(숙제지도), 그리고 전통적인 여가활동 기능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청소년기관들은 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학교숙제를 돌봐주며, 다양한 여가활동과 문화활동, 체육활동, 보호 및 복지활동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에서 소개했던 자치단체 아이히아흐프리트베르그의 학교사회사업과 프로젝트 ‘클릭’이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일의 이러한 청소년정책 영역과 학교와의 연계·협력은 장점도 있으나 청소년정책에 부정적으로 기능하는 바도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독일에서의 학교와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에 있어서 청소년정책의 입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청소년영역에서의 이러한 방과 후 프로젝트가 자칫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속적인 위험이고 둘째, 학교도 ‘종일학교(Ganztagsschule)’가 등장하면서 청소년정책의 주요 과업이라 할 수 있는 여가활동도 학교에서 제공하게 되면서 ‘경쟁자’로 등장하게 된 것 셋째, 학교와 연계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기관들은 재정지원 상태가 악화되면서 재정적 이유로 청소년정책이 학교교육정책에 종속될 수 있는 상황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청소년정책 영역에서의 우려는 요컨대 무엇보다 학교와의 연계·협력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점차 학교체제로부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관 종사자들은 점차 도구화되어 가는 청소년정책 고유의 과업에 대한 이해와 자율과 자결을 근본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의 정체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³⁴⁾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우리가 직면하게 될 상황이므로 잘 심사숙고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미리 인식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수

34) Sachverständigenkommission Zwölfter Kinder- und Jugendbericht(Hrsg.) (2005). Kooperationen zwischen Jugendhilfe und Schule. München: Verlag Deutsches Jugendinstitut, 참조.

있어야 하겠다.

(5) 정책수단에 있어서의 시사점

정책수단은 크게 인적수단과 물적수단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독일의 청소년복지정책의 인적자원은 사회교육사(Sozialpädagoge)와 사회사업사(Sozialarbeiter ; Social Worker)라 할 수 있다. 사회교육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자나 3년제 전문대학(Fachhochschule)에서 사회교육을 전공한 자들로서 청소년을 전문대상으로 많은 시간 이론적 학업과 현장에서의 실습을 받은 전문가이다. 사회사업사는 이들을 포함하여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직업교육을 받아 사회사업사의 자격을 얻은 포괄적 의미의 직업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대학에는 사회복지학과가 따로 없고 사회교육을 대학에서 전공한 졸업자들이 졸업장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성인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아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독일 대학의 사회교육학(Sozialpädagogik)은 우리나라의 평생교육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보육학, 청소년학 등을 합쳐놓은 범주의 학문으로 교육학, 사회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문이다. 언뜻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학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교과과정과 학업내용을 보면 학업의 질과 전문성에서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제도에는 청소년지도사라는 국가자격증이 있다. 최근에 4년제 청소년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연수를 마치면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학과나 평생교육원 등에서 다른 학과 전공자들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8개 과목만 이수하면 시험이 면제되고³⁵⁾, 사회복지사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면 검정자격을 부여 받아 합격하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하여 4년 간 전공한 졸업자들이 관련 현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실습을 의무 조항으로 넣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지

35) 1년 만에 8개 과목을 이수할 수도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는 사회복지사가 청소년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학 영역의 제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차제에 사회복지학과도 1학년 과정이 끝나면 3학기부터 아동,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으로의 대상별로 전공을 세분화하여 졸업 시에 전공별 사회복지사, 예를 들면 청소년전공 사회복지사로 자격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청소년정책 현장에서는 사회교육사가 사회사업사보다 더 높은 지위를 맡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사회교육 영역에서 청소년을 세부 전공하여 많은 이론과 현장실기로 더 높은 전문성을 소유한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정책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물적수단 즉,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독일의 아동·청소년정책의 예산은 앞에서 밝힌 것 같이 2004년에 총 2억700유로가 지출되었는데³⁶⁾ 이는 독일 총 사회비용의 2.4%에 불과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같은 해 청소년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은 약 231억 원으로 정부예산대비 0.02%(교육예산대비 0.16%; 2003년)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04년 청소년육성기금 약 408억과 지방균형발전특별예산 302억, 시설용자 약 60억 등과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 예산 88억을 합하면 총 1,100억원이 조금 못되는 예산으로 독일 아동·청소년정책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다. 이 가운데 2004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정책의 예산 중 총 43%를 차지하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원인 468억원은 기금이기에 고갈되면 없어지는 예산이다.³⁷⁾ 독일의 2004년 아동·청소년정책 예산의 90%는 세금으로 충당되었으며, 3%는 판매와 임대수입, 사용자의 자부담이 7%인 반면,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약 56%가 충당되고 나머지는 국가 경륜사업으로부터 지원된 청소년육성기금이였다. 독일의 아동·청소년정책 예산은 거의 99%가 자

36) 같은 해 자치단체 아이히아흐-프리트베르그의 총 아동·청소년정책에 지출된 비용은 총 5,599,417유로였다.

37) 청소년육성기금은 정부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가 현 문화체육관광부일 때에 경륜으로부터 기금이 조성되어 2004년 당시 3,371억원 정도가 누적되었는데 2005년부터 주무부서가 바뀐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은 더 이상 축적되지 못하고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치단체 예산이고 1%만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중앙 정부의 예산이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정책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당시에는 아동정책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보육업무는 여성부에 나뉘어 있어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독일의 아동·청소년정책의 예산의 절반이 넘는 57%는 아동의 보육 및 탁아에 지출되었다. 또, 독일은 우리와는 달리 청소년정책이 직접 학교 교육을 지원하여 28%는 교육지원과 청소년들의 일시보호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정책 예산을 늘리는 행정체계와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지역적으로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육성기금과 같은 기금은 경륜과 같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재원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해 쓰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 주무부처가 바뀔에 따라 없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한시적이거나 불안정한 예산구조를 탈피해서 국민의 세금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정책을 위한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일본³⁸⁾

1) 청소년복지정책 동향

일본은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 소자녀화의 진행에 따라 청소년이 자라는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가치관의 다양화로 인해 가족관계가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소자녀화로 인한 지나친 과보호·과간섭이 청소년에게 스트레스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주민사이의 연대감과 친밀감이 감소하고 있으며, 물질만능주의에 따른 상업화에 의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이 증가하고 있다. 이

38) 이 부분은 정일교교수(가톨릭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집필하였음.

러한 사회의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쳐 청소년문화에 소비문화의 침입, 규범의식의 희박, 배려심의 부족, 집단생활의 부적응, 사회적 자립의 지연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왕따와 부등교, 고교 중퇴와 같은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비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내각부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 7월 25일 책정된 내각부의 신<청소년육성시책대강(青少年育成施策大綱)>³⁹⁾은 이러한 사회변화의 현실을 반영하여 “모든 청소년이 성장과정 동안 주변 사람들의 애정과 배려, 책임 속에서 보호되며, 신뢰하는 사람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청소년육성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시책의 기본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청소년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의 보장, ② 부모에 대한 신뢰감과 자존감 그리고 규칙적이고 바른 생활습관 등 건강한 성장의 기초형성, ③ 사회에서 ‘살아가는 힘’과 창조력을 기르기 위한 체험과 교류 등의 충실, ④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과 관계기관의 연계 지원 ⑤ 사회의 모든 조직과 구성원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인식처 만들기과 과제의 해결 등이 있다.

나아가 개별 청소년 육성시책의 추진방향으로는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사회 전체가 지원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을 위해서는 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의 기초 형성 촉진(영유아기~사춘기 : 건강한 심신 만들기, 바른 식습관 만들기, 학력의 향상, 의사소통기술의 육성 및 향상, 규범의식의 각성, 놀이 및 다양한 체험·교류의 기회 보장), ② 사회적 자립의 추진(사춘기~청년기 : 전문지식·기능의 습득지원, 취업지원, 사회일원으로서의 의식확립, 다른 문화의 이해를 위한 국제교류)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39)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은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법무성 등 전 각료를 구성원으로 한 청소년육성추진본부가 중장기적인 시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추진방안을 말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81).

청소년의 지원(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지원,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 등
요보호아동의 지원, 소년비행 대책, 왕따에 대한 지원, 부등교, 은둔외톨이형
등에 대한 지원, 니트⁴⁰⁾·프리터⁴¹⁾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사회 전체가 지원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는 첫째로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상호관계 구축을 목표로 ① 휴식과
성장의 기초가 되는 안식처 만들기로서 가정지원 : 자녀양육가정, 한부모가
정지원,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의 확보지원, 아동학대, 은둔외톨이형 문제 등
에 대한 조기발견·조기대응, ② 외부의 힘을 활용한 기능강화로서 학교지원
: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열린학교 만들기, 교육·상담체제 및 기능의
충실, ③ 다른 사람·사회·자연과 접할 기회와 장소의 확대로서 지역사회지원
: 놀이·체험·교류 등 다양한 활동만들기,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교류, 안전
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로, 종합적인 네트워크 만들기를 목표
로 ① 청소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네트워크 만
들기, ② 청소년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직의 육성·배치 등을 추진
하고 있다. 셋째로 청소년 주변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으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는 시책으로서 미디어를 활용한 능력의 향상, 휴대
전화 등의 무료전화 보급촉진 등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⁴²⁾.

이러한 청소년 정책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시정촌
(市町村)과도 상호 연관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종합청소년시책에 따라 ‘청소
년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청소년정책의 기획, 부처간 조정 및 시책추진
등을 펴하고 있다. 도도부현의 시책은 시정촌에도 조연과 정책방향을 제시
하여 주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3:245).

40)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란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교육도 고용도,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相川康子, 2005: 42).

41) 프리터란 free와 Arbeiter의 합성어로 15세~34세로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며, 여성은
미혼으로 가사에도 종사하지 않고 시간취업·아르바이트의 일을 희망하는 자를 지칭
한다(小杉札子, 2003:53).

42) <http://www8.cao.go.jp/youth/suisin/taikou/wakugumi/wakugumig.html>.

2)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지방자치단체인 에히메현(愛媛県)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본청(本庁)에 에히메현 청소년대책본부를, 각 지방국에 ‘지방 청소년대책반’을 설치하고, 청소년대책의 종합적인 기획, 관계기관의 연락조정 등을 하고 있다.

현재 에히메현 청소년대책본부는 청소년 건전육성 대책으로, ‘튼튼하고 심성 풍부한 청소년의 육성’,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일체된 왕따·비행방지의 추진’,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의 촉진’을 기본 방침으로 가정·학교·지역·제기관이 연계한 청소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⁴³⁾

특히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강조하여 2005년부터 지역의 중점사업으로 ‘지역과 일체된 청소년의 건전육성·안전대책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가정만들기의 추진

① 따뜻한 가정만들기의 추진

가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가족의 강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가족끼리 정이 있는 따뜻한 가정 만들기를 추진한다.

② 가정의 교육력 향상

가정이 청소년의 기본적인 윤리관과 생활습관, 자제심, 자립심 등을 기르는 중요한 책임주체임을 자각시킨다. 모든 현은 자녀양육 학습에 대해 노력을 경주한다.

③ 자녀양육 지원체제의 충실 강화

가정의 자녀양육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녀양육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체제

43) http://www.pref.ehime.jp/h15450/1173943_1929.html.

강화에 힘쓴다.

④ 남녀 공동참여에 의한 가정만들기의 추진

남녀 공동참여에 의한 가정 만들기를 추진한다. 특히 아버지의 가정참여, 그 역할의식의 고양을 위한 가정교육자료의 제공, 의식개발에 힘쓴다.

⑤ 상담활동의 강화

가정교육 상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가정교육능력강화, 지원 상담활동에 힘쓴다.

⑥ 아동학대 방지체제의 강화

시정(市町) 요보호아동대책 지역협의회와 아동상담소의 기능강화, 아동학대방지에 힘쓴다.

(2) 학교교육에서 심성교육과 학생지도의 철저

① 학생지도 추진체제의 확립

학생지도에 대한 전체 계획과 학생실태에 따른 지도체제를 갖추어 학교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가족과 지역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면서 한 사람 한사람의 개성과 가능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원조·지도를 하며, 사회적으로 자기실현이 가능하도록 자질과 태도의 육성에 힘쓴다. 특히 왕따와 부등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도체제 확립을 위해 힘쓴다.

② 심성 풍부한 인간의 육성

학교교육활동을 통하여 풍부한 마음과 건강한 인간을 만든다. 특히,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 자각하게 하는 도덕시간의 충실, 노동과 봉사·자원봉사와 관련된 체험학습,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 등을 통하여 인간관계 형성능력을 육성하는 등 학생의 심성교육에 힘쓴다.

③ 건강교육의 충실

체육·스포츠활동, 야외활동의 추진과 함께 학교교육활동을 통하여 튼튼한 신체만들기와 풍부한 인간성 기르기, 특히 성교육, 약물남용교육, 안전교육에 노력한다. 또한 2006년부터 배치하고 있는 영양교사를 중심으로 한 급식의 충실 등 건강교육을 한층 더 추진함으로써 생애동안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만들기에 힘쓴다.

④ 정서교육의 충실

청소년 한사람 한사람에게 맞는 지도 연구와 특별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개성을 살리고 창조성을 만들며, 풍부한 감성과 정서를 가진 청소년 육성에 힘쓴다.

⑤ 왕따·부등교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체 교직원은 왕따 등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항상 의식하고 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조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철저한 실태파악 후 신속하게 대응하며, 왕따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강한 자세로 왕따 문제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를 한다.

⑥ 교육상담의 충실

교원의 상담연수를 충실히 시행하고, 교육상담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청소년 한사람 한사람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여러 고민 해결과 삶의 방법에 대해 원조를 하며, 건전한 심신 육성에 힘쓴다.

⑦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청소년이 정보의 유용성과 역할, 정보화가 가져올 영향 등을 이해하고 컴퓨터와 정보통신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정보를 수집·처리·발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또한 사회변화와 소비생활 및 소비자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소비자로서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하도록 한다. 더욱이 이문화체험과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며, 고교생의 국제 이해와 국제적 시야를 넓히도록 한다.

(3) 지역에서 건전육성활동의 추진

①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도자 양성의 확보

연수회·강습회를 충실히 함으로써 개발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도자의 양성과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활동을 한층 더 활성화 한다.

② 청소년 스포츠 활동의 추진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스포츠 활동을 계획적,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력의 향상과 생애를 통해 스포츠를 가까이 할 기본을 배양하고, 스포츠교실, 스포츠대회, 야외활동 등 각종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전한 생활습관을 몸에 익히게 한다.

③ 체험활동의 추진

소년, 소녀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학교를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체험, 자연체험, 교류체험 등 여러 체험활동을 촉진한다.

창조력, 인내력, 사회성, 협조성, 연대감을 몸에 익히고, 자연과 과학·환경 문제 등을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교실과 강좌를 개최하는 등 풍부한 체험활동을 추진한다.

④ 거점정비의 추진

‘에히메 아동의 성’에 관한 사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각 지역의 아동관 및 아동센터의 정비와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건전육성의 거점시설 정비촉진에 힘쓴다.

⑤ 청소년의 머물 장소 만들기 추진

방과후와 주말에 청소년이 안심하고 모일 장소를 만든다.

(4)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의 촉진

① 학교진로지도의 충실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자신의 능력, 적성, 진로희망에 따라 앞으로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원조·지도에 힘쓴다. 또한 진로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경력교육의 추진과 학생 한명 한명의 근로관·직업관의 육성을 도모한다.

② 직장체험활동의 충실

다음 세대를 담당할 청소년이 직장생활에 희망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직장체험과 인턴십, 직장견학회를 실시한다.

③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의 추진

학교에서 근로와 봉사, 자원봉사 등과 관련된 체험적인 학습을 실시하며, 지역에서도 지역행사, 자원봉사활동, 서클활동 등 보다 다양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을 추진하여 청소년에게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자각시킨다.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 지원 사업으로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류를 촉진하고 자주적·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애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른다. 나아가 ‘청소년자원봉사센터’활동의 충실화를 통하여 고교생들의 자주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계발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④ 취업지원의 충실

‘Job Cafe 사랑 work’(에히메현 청소년취업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상담과 직업적성진단 등을 통하여 개개 사례에 맞는 구체적인 지

원을 하고 있으며 취업·직장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 외에 에히메현내 기업의 요구에 따른 인재의 육성과 재학시절부터 직업의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청소년의 고용대책, 인재육성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2006년 7월에 에히메현이 주도하여 설립한 ‘에히메 청소년인재육성추진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일체가 되어 에히메의 미래를 담당할 청소년육성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청소년을 지원하는 경제단체, 교육기관, 보호자단체, 기업, NPO법인 등 관계자의 자율적인 조직을 추진한다.

⑤ 니트(청소년무직자)지원체제의 정비

일하지 않으며, 학교에도 가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니트’들에 대하여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개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에히메청소년 서포트 스테이션(Support station)’을 축으로 다양한 청소년지원기관과 지원책을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확립·정비한다. 또한 에히메현민의 지원의식 만들기를 위한 계발활동을 실시하며 나아가 니트지원 체제를 정비하고 니트의 장기화를 방지하여 취업지원으로 이어간다.

⑥ 직업능력의 개발

에히메현 고등기술전문학교에서의 훈련과 기업 내의 연수와 실습훈련을 조합한 ‘일본판 이중시스템(Dual System)’훈련 등의 실시를 통하여 청소년 취업 및 직장안정을 촉진한다.

(5) 가정·학교·지역·제기관의 연계강화

① 청소년육성 현민운동의 추진

에히메현 청소년육성협의회 등 관계단체·기관과 NPO, 자원봉사집단 등과 연계한 계발활동·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전지역주민의 건전육성·비행방지활동을 추진한다.

② 왕따·부등교 대응, 비행방지, 안전확보 등 지역 전체의 추진체계 강화
 각 시정(市町)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보호육성협의회와 관내연락회의 개최, 청소년과의 관계를 활발하게 하는 지역활동의 촉진, 학교왕따대책위원회의 적극 활용, 학교상담가·학교사회사업가 등의 배치, 건강상담활동에 관한 자문의 파견, 에히메현 종합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적응지도교실, 학교·가정·관계기관이 밀접하게 연계한 지역의 왕따와 부등교대책의 네트워크와 같은 조직적인 활동이 지역 전체로 확대되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정착하도록 원조·지도에 힘쓴다.

또한 학교와 경찰의 연계로 ‘에히메 청소년보호육성 서포트제도’를 운영하고, 학생의 문제행동 등에 대해 상호연락하며, 학교에서 비행방지교실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추진한다. 나아가 학교와 지역 및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청소년수호대 등 지역에서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조직설립을 추진하고,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한다. 이외 부등교, 섭식장애, 은둔외톨이형 등의 사춘기 특유의 정신적인 고민과 불안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체제를 정비하고 관계기관의 지원·연계체제를 강화하여 사춘기 청소년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한다.

③ 청소년대책관계기관의 연계강화

에히메현 청소년대책본부와 지방청소년대책반, 나아가 관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소년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에 관한 안전관리와 비행의 저연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육성 연락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관계자, 경찰, 가정 및 지역의 연계를 강화한다.

④ 피해청소년보호대책의 추진

피해청소년 서포트활동을 통하여 피해청소년의 발견에 힘쓰고 피해청소년 서포트와 연계한 피해청소년의 보호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각종 청소년상담전화의 홍보 및 마쓰야마시(松山市) 교육지원센터에 에히메현 서포트센터에 의한 ‘출장상담실’의 홍보를 활발히 하고, 상담조언가 등의 효과적인 활용으

로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담 활동을 추진한다.

(6) 비행방지대책의 강화

① 소년보호센터의 지원과 상호연계

다양화, 광역화하는 소년비행으로 인해 시정(市町)이 설치한 소년보호센터 내 소년보호위원회의 자질 향상에 힘쓰고, 센터 간 상호연계를 한 보호활동을 추진한다.

② 종합적인 소년비행 방지활동의 강화

관계기관·단체를 비롯하여 가정·학교·지역 등의 연계강화에 따른 가두보호·소년상담 등의 모든 기회를 통하여 문제행동을 가진 소년의 조기발견과 피해소년의 보호육성에 힘쓰는 등 적절한 보호활동을 추진한다

③ 비행방지대책의 추진

에히메현 비행방지대책협의회 관계단체·관계기관·업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소년의 심야배회, 흡연 등의 문제행동은 물론 흥기·약물·성비행 등 비행경향의 변화에 적절한 대책을 추진한다.

④ 비행소년의 재기대책의 추진

경찰과 경찰본부의 소년상담체제에 따라 소년과 보호자의 상담에 대응하고, 비행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사회성의 확립과 규범의식을 계발하는 등 소년의 재기를 돕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에히메현 아동상담소의 우범 및 촉법행위 등 문제행동이 있는 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원조활동을 추진한다. 기타 갱생보호관계 단체가 실시하는 비행방지 활동과 비행소년의 재기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7) 환경정화활동의 추진

① 환경정화 중점지구 등의 촉진

환경정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지역으로 지정하고, 소년관계 자원봉사 등 지역의 유해환경의 실태파악과 정화활동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돕는다.

② 관계업자의 지도강화와 자율규제의 촉진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정으로 관계업자에 대해 지도강화를 철저히 하고, 자율규제를 촉진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도서와 비디오 등의 범람과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에서의 유해정보 출현 등 청소년 주변환경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에히메현 청소년보호조례의 홍보와 운용에 힘쓴다.

③ 관계단체와의 연계

PTA 등 관계단체와 연계를 긴밀히 하고 교육환경의 정화활동에 힘쓴다.

④ 전화 이성소개영업 등의 규제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화이성소개영업(텔레폰 클럽 및 Two-Shot 다이얼)에 대한 규제, ‘인터넷 이성소개 사업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만남사이트에 관한 규제를 한다.

(8) 각성제·신나 등 약물남용방지 대책의 추진

① 관계기관·단체와의 연계 강화

관계기관과 단체에서 구성하는 연락회의를 개최하고, 대책방침 협의·정보교환을 통하여 연계를 강화한다.

② 신나 등 취급자에 대한 지도강화

에히메현의 신나 등 유기용제 취급업자에 대하여 남용우려가 있는 자에게 판매 자숙(自肅), 도난방지·대면판매 등을 실시, 판매자 명부의 기록 등에 대하여 지도를 강화한다.

③ 계몽활동 강화

에히메현 약물방지도원협의회 및 6지구협의회에 의한 계몽활동을 통하여 미연에 약물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의식을 갖게 한다. 특히 신나 등을 남용하는 청소년 비행이 많은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협의회 활동을 강화한다. 나아가 학교에서 약물남용방지 교실을 개최하는 등 약물남용방지 교육을 충실히 한다.

④ 약물상담 충실

에히메현의 6개 보건소와 심신건강센터에 정기적인 상담서비스를 개설하고 일반 현민과 약물의존자와 그 가족에게 약물관련 상담을 하고 동시에 약물의존자의 사회복귀 지원과 재남용방지에 힘써 약물남용방지를 위해 철저히 노력한다.

⑤ 거리보도활동 강화

약물남용청소년의 조기발견과 남용방지를 위한 거리활동을 강화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사례

이 연구에서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중 최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프리터와 니트에 대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에히메현)의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개발배경

2006년(연평균)의 15세~29세의 청소년⁴⁴⁾인구는 2,215만 명으로 이들 중 1,328만 명(60.0%)이 노동력인구⁴⁵⁾이다. 한편 2006년(연평균)의 15세~29세의 청소년의 실업자 수는 92만 명으로 연령별로 보면 15세~19세가 10만 명, 20세~24세가 40만 명, 25세~29세가 42만 명이다(내각부, 2007).

이러한 수치가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최근 청소년들이 정규직에 취업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을 하고 있거나 실업 중에 있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첫번째 원인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취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회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프리터와 니트의 문제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프리터와 니트가 되기 쉬운 특정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⁴⁶⁾. 즉 사회적으로 불리한 형편에 있는 낮은 계층의 청소년들이 취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들이 프리터와 니트로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평균으로 프리터가 187만 명, 소위 니트에 가까운 개념인 청소년 무실업자가 62만 명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 더욱이 졸업 후 3년 이내에 중졸 70.4%, 고졸 49.3%, 대졸 35.7%(2003년 3월 신규졸업자)가 이직하고 있어 소위 ‘753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청소년이 애써 취업을 하고도 자신이 생각 하던 기대치 이미지와 현실과 괴리 때문에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다(내각부, 2007).

이러한 상황을 가져오게 한 청소년의 취업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4) 일본에서 청소년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선 종래 ‘청소년보호육성조례’에 의해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대두되고 있는 프리터와 니트 등은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개정된 ‘청소년건전육성조례’에서는 ‘보호’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지원’에 대해서는 연령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http://www.pref.gunma.jp> 참조).

45)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완전실업자를 포함한 수치.

46) 이미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계층적 배경에 있는 청소년이 실업율이 높고 프리터와 니트로 되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内田龍史, 2005:27).

① 세계화의 영향

1990년 이래 세계화의 영향을 받아 기업의 인재전략이 크게 변화하였다. 즉 세계화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혁신을 꾀하게 되었으며, 국제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소수의 전문적·창조적 능력을 가진 인재에 대해서는 주요 노동자로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고용하려고 하지만, 누가 하여도 동일한 단순노동은 기계화 혹은 파견이나 아르바이트에 맡겨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하려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경험이나 기술이 없는 청소년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되어버렸다.

더구나 주요 노동자들은 그 기업을 그만둔 후에도 프리에이전시로서 고수입을 유지하면서 활약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은 일단 단순노동에 진입해 버리면 자력으로 신분상승이 어려워져 빈부격차가 커지게 된다(相川康子 2005:5).

②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측면에서 고교생의 구인비율이 1992년 버블경제 절정기에는 약 167만 명이었지만 현재는 그 1/7로 급감할 정도로 고교생의 취업 가능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고교생 채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직종으로 보면 ‘사무’, ‘판매’는 고졸이상의 졸업자가 많이 차지하고 고졸자에 대한 ‘사무’, ‘판매’에 대한 구인은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생산공정’의 일도 일본국내에서는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고졸자가 취업할 수 있는 일이 점차 사라져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현재 고교졸업자가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는 곳은 중소 영세기업의 ‘서비스’, ‘생산공정’이다(小杉札子 2003:56-57).

여기서 기업이 고교졸업자의 채용을 중지한 이유로는 2000년도에 실시한 ‘일경련·동경경연자협회조사’에 의하면, ‘경영환경악화’, ‘고학력자로의 대체’, ‘고용조정’, ‘업무의 고도화’ ‘비정규직사원으로의 이행’, ‘응모자의 질 저하’의 순이다. 이처럼 점점 더 고교졸업자의 취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小杉札子 2003:57-58).

리크루트 works연구소의 ‘노동조사 2002’에 의하면 과거 2년간 비정규사에서 정규사원으로 되는 것은 30.1%로, 70% 가까이가 전직하여도 비정규사원 신분 그대로였다. 반면 정사원으로부터는 36.8%가 비정규사원이 되고 있다. 본래 신분상승이 되어야 할 전직이 비정규직→비정규직으로의 평행이동, 혹은 정규직→비정규직으로의 하향이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계약사원·촉탁 혹은 파견으로부터 정규사원이 되는 사람은 40% 이상이지만 프리터에서 정규직으로 된 것은 34.0%에 머물렀다. 프리터의 경우 채용 측의 편견도 있어 파견노동자보다도 신분상승이 어려운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相川康子 2005:5-6).

③ 학교의 계층구조

현재 고등학생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의뢰되는 구인에 그 학교의 학생이 응모한다는 학교별 노동시장이다. 학생으로서는 자신의 노동시장이 학교에 오는 구인의 종류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질은 학교에 따라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어떤 학교에 재학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에게 기회의 폭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도시의 경우에는 학교의 계층구조와 노동시장의 구조가 크게 계층화되고 있는 상황이다(小杉札子 2003:59-61).

④ 취업관행구조

최근에는 3년 이내 학교졸업자의 이직율이 중졸에서 70%, 고졸에서 50%, 대졸에서 30%라는 ‘7·5·3’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고교생의 경우는 이전에도 약 40%가 3년 이내에 그만두고 있다. 그 원인의 하나로 ‘1인 1사’ 제 등의 취업관행구조 때문이다. 고교생의 취업구조에서는 조기선발을 막기 위하여 취업선발 전에 기업과 일체 접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때문에 학생들은 취업 전에 기업정보를 알지 못해 취업 후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욱이 학생은 비교할 수 있는 참고대상이 없기 때문

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만두기가 쉽다.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를 비교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만두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학생 개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직업·취업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의 선택에 의존해 취업해 버리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 버리면 곧 그만두어 버린다(小杉札子 2003:58-59).

⑤ 프리터와 니트로 되는 학생의 특징

2003년의 일본노동연구기구의 ‘진로결정에 관한 고교생 의식과 행동’에 의하면 졸업 직전의 시점에서 스스로 프리터가 될 것이라는 학생들의 반수는, 한때 취업을 희망했지만 끊임없는 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계에서 취업에 대한 희망이 없어진 경우, 즉 취업희망에서 프리터 희망으로 변한 학생들이 40%를 점하고 있다. 요컨대 3학년이 되면서부터 취업을 단념한 경우 프리터 희망으로 변할 확률이 40%이다. 따라서 프리터를 희망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취업할 수 없다는 상황 때문이다. 기업이 고교생을 채용대상으로 삼지 않게 되었다는 문제 역시 가장 큰 이유이다(小杉札子 2003:60-61).

조사연구에 의하면 프리터가 되는 고교생의 학교생활에서의 특징을 보면 성적이 좋지 않고 3년 동안 결석이 많다는 것이다. 3년에 20일 이상 결석한 학생들은 현재의 학교 추천제에서는 취업하기가 어렵다. 이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며 소비문화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없지만 학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석해도 상관없다는 의식이 커지게 된다. 이처럼 프리터가 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은 적당히 하고 아르바이트에 비중을 두는 생활스타일이 지배적이다. 아르바이트 수입도 꽤 많아 휴대전화와 패션 등 그들이 하고 싶은 소비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프리터가 될 생각을 하고 있는 고교생의 경우 아르바이트의 경험 상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혹은 ‘정규직은 손해다’라는 의식을 갖기 쉽다. 이렇게 아르바이트의 경험은 프리터로의 의식강화를 하

게 한다.

따라서 일찍부터 학생들은 현 시장구조나 학교구조에서 자신이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⑥ 성인으로 이행의 어려움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이행기간’이 연장, 혹은 다양화되고 있다. 종래에는 학교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청소년층은 좋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런 이유에서 보다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과 일단 취업 후 회사를 바로 그만두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중퇴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기’의 어려운 점은 부모세대에는 없었던 과제이다. 지금의 청소년은 부모의 삶의 방식을 부정하면서도 다음 세대의 생활방식에는 모델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나아가 일을 통해 사회참여와 자기존엄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할 때, 그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살아갈 의욕과 가치가 저하되는 두려움이 있다. 직업의 불안정화는 사람의 정체성 문제를 야기시켜 사회질서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山田 2004, 相川康子 2005:4-5 재인용).

(2) 프리터와 니트의 개념

① 프리터(フリーター)의 개념

프리터란 free(프리)와 Arbeiter(아르바이터)의 합성어로 15세~34세로 학교도 재학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아르바이트 혹은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 혹은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小杉札子, 2003:53).

이 용어는 80년대 후반에 아르바이트 정보잡지가 만들어 낸 것이지만 그 당시 프리터란 개념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확실히 있어서 그것을 위해 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것을 말하였다. 90년대 초기 프리터

는 일본사회 전체로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꿈 추구형’으로 예술과 재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졌다. 그러한 유형은 현재의 프리터 가운데에는 소수만이 그 맥을 잇고 있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규직원이 되고 싶어 취업활동을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아르바이트밖에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형’과 취업이 어려워짐으로써 자신의 일자리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이유에서 선택을 연장하고 있는 ‘모라토리엄(moratorium)형’이다.

이 두 종류의 프리터가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기업의 채용형태가 변화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자기 회사에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면 무리하게 고용하지 않는다는 엄정채용이 그 특성이다. 현 사회는 변동이 아주 빠르므로 기업이 정규직사원이라는 장기고용자를 많이 채용해 버리면 사회변동의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을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파견, 계약사원이라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小杉札子 2005:20-21).

② 니트의 개념

2005년 6월 내각에서 결정된 ‘호네부토(骨太)방침 2005’에서 처음으로 니트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대책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니트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줄여서 쓰는 용어로 이것을 직역하면 학교에 가지 않고, 취업하지 않고 있으며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청소년을 의미하는데 일본에서는 여기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도 포함하여 니트라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학교를 졸업할 시기에 취업상황이 아주 나빠 취업활동을 포기해 버린 청소년을 의미한다. 여기에 연령에 관계없이 대부분은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이 많이 해당한다(‘취업구조기본조사’, 小杉札子 2005:22, 재인용). 중퇴자는 학교에서 중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의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자신과 가족이 열심히 구직을 하지 않으면 어느 곳으로부터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원래 일본에서는 중졸의 취업은 크게 힘든 상황이다. 고교

중퇴자의 최종학력은 중졸이 되며, 고교중퇴자가 연간 수십만 명으로 니트의 증가에는 고교중퇴자의 문제가 있다(小杉札子 2005:22-23).

일본에서는 2006년 현재 니트로 분류된 청소년의 수가 68만 명으로 4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양키형’으로 반사회적 향락적 특성을 보이며 ‘지금이 즐거우면 괜찮다’라는 유형, 둘째는 ‘은둔외톨이형’으로 사회와의 관계를 맺지 않고 숨어버리는 유형, 셋째는 ‘꿈작 안하는 형’으로 취업을 앞서 고민하다가 자신의 미래방향 설정에 실패하고 꿈작하지 않게 되는 유형, 넷째는 ‘실패형’으로 일단 취업을 하였지만 빨리 그만두어 자신감을 상실한 유형이다. 이상과 같이 니트는 은둔외톨이형도 포함하여 사회라는 틀에서 보면 고립된, 혹은 고립에 가까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穴澤義晴, 2006:70).

프리터와 니트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학력이 낮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청소년이 프리터와 니트가 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 프리터는 대졸자가 10% 정도, 전문대학·전문학교가 20% 정도, 나머지 70% 정도가 고교졸업자이며, 니트도 압도적으로 학력이 낮은 사람이 많다(小杉札子 2005:23).

③ 프리터와 니트에 대한 대응

프리터와 니트의 증가는 사회의 안정차원에서도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프리터와 니트가 증가하면 우선 본인의 문제로 생활이 불안정하여 저축할 수 없게 되며, 사고나 재해를 당하면 한꺼번에 생활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취약성을 가진다.

UFJ종합연구소에 의하면 프리터의 연수입은 정규직원의 1/4 정도로 생애임금에서는 1억 5천만 엔 가깝게 차이가 난다. 결혼하는 비율도 정사원의 1/2 정도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정사원과 비정규사원의 격차가 점점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프리터와 니트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므로 활력이 없어지고 산업면에서는 일본의 국가경쟁력을 잃게 된다. 또한 장래 불안으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소

자녀화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게 된다. 나아가 연금의 기여금 납부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대 간의 연대를 전제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토대가 동요되기 쉽다.

기업으로서는 프리터라는 시장은 편리한 점은 있지만 이대로 프리터와 니트가 증가하게 되면 장래의 사회적 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사원이 되면 OJT(On the Job)와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깨닫게 된다. 이것은 젊은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프리터와 니트가 되어버리면 그런 힘을 키울 장소가 충분히 없다. 특히 니트의 경우는 전혀 사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무런 힘도 키울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것은 장래 사회의 큰 문제이다(小杉札子 2005:24).

이러한 프리터와 니트와 같은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일본 정부는 ‘청소년육성시책대강’(2003년 12월 내각부) 가운데 직업적 자립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청소년 자립·도전플랜(2004년 6월 18일 청소년자립·도전전략회의)’을 4대신(大臣)의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의해 관계 각 부성(府省)은 연계하여 각 시책의 구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 속에서 2004년부터 노동체험을 통한 학습과 취업, 직장에 있어서 학습·기능의 습득 등을 종합적으로 통합한 근로연계학습이 시작되었으며, 재학 중의 취업체험이 크게 강조되었다(相川康子 2005:8).

한편, ‘청소년육성시책대강’보다 먼저 후생노동성에서는 Young Job Spot사업(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 실시)을 2002년부터 전국 25개소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직업에 관한 포럼, 직업인과의 만남사업을 중심으로 상담업무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한 사업 ‘Job Cafe’를 ‘청소년 자립·도전플랜’의 행동플랜으로서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과 협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Job Cafe는 취업활동의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즉 니트의 자립지원을 위해 2004년에 ‘청소년자립기숙사’를 설립하기 시작하여 합숙형식에 의한 생활훈련, 노동체험을 통하여 직업인·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기본능력의 습득, 노동관을 양성하고, 일하는데 자신감과 의욕을 부

여하는 사업을 전국 2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청소년자립기숙사’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직업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시설에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스 코디네이터 사업으로 각 지역에서 과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전문인재를 배치하고 있다(穴澤義晴, 2006:71).

그리고 2004년부터 교육훈련기관이 주체가 되어 청년실업자와 프리터의 취업지원책으로 ‘일본판 이중시스템(교육과 기업실습의 연계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기업과 민간 교육훈련기관의 도입 촉진을 통하여 동 시스템의 사회적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이 플랜의 중심이 Job Cafe로 도도부현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원스톱서비스로 직업능력 개발과 상담·알선 등 서비스를 정리하여 제공되고 있다(小杉札子 2005:25).

나아가 청소년을 위한 경력컨설팅센터를 직업능력개발 대학교 등에서 양성하는 것과 더불어 시정촌의 기존시설 등을 활용한 경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5단체를 새롭게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25개소가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지역 청소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청소년이 처해진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청소년지원기관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자립지원 측면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서 에히메현의 ‘Job Cafe 사랑 work’, ‘서포트스테이션’, ‘자립기숙사’, ‘근로청소년홈’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05년 국세조사에 의하면 에히메현에 거주하는 15세~24세 청소년의 완전실업률은 13.0%로 전국 33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2년 3월 졸업자 중 3년간 조기이직률도 높아 고교졸업자의 47.4%, 전문대졸의 41.3%, 대학졸업자 36.9%로 나타나고 있다⁴⁷⁾.

47) [http://www.kantei.go.jp/jp/saityarenzi/siensaku/siryo2/1_1_47s.pdf#search= ‘ジョブカフェ’work](http://www.kantei.go.jp/jp/saityarenzi/siensaku/siryo2/1_1_47s.pdf#search=‘ジョブカフェ’work)

에히메현 고등학교에서는 인턴십과 직장견학회 등 직장체험활동을 보다 충실하게 하여 고교생에게 사회인·직장인으로서 기초적인 자질·능력을 체득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주체적인 직업선택 능력과 직업의식의 고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교육과 기업실습을 효과적으로 조합한 ‘에히메 고교 이중시스템’을 실시하는 등 3년간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을 양성하고, 사회인으로서 능력있는 인재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정비체제로 지역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서비스센터인 Job Cafe를 운영하고 있다. Job Cafe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조직으로서 지역실정에 따라 설치되고, 관민협동으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학생, 프리터, 청소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직장체험, 개인상담,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厚生労働, 2003:12). 또한 니트의 장기화 방지, 취업촉진을 위하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히메현 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자립기숙사는 니트를 위한 사업으로 3개월~6개월간의 합숙형식인데 집단생활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생활훈련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근로청소년홈은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각종 상담, 지도 이외에 여가활동을 이용하여 휴식과 스포츠·레크리에이션·문화·교양 등 동일한 취미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다수의 친구와 우정의 장을 넓힐 수 있는 시설이다.

(3) 청소년복지정책 사례 1 - Job Cafe 사랑 work(에히메현 청소년취업지원센터)⁴⁸⁾

① 사업대상

에히메현에 거주하는 청소년

48) 에히메현 마쓰야마시(松山市) 미나토초(湊町) 4-6 소재.

[http://www.kantei.go.jp/jp/saityarenzi/siensaku/siryo2/1_1_47s.pdf#search= ‘ジョブカフェ愛work’](http://www.kantei.go.jp/jp/saityarenzi/siensaku/siryo2/1_1_47s.pdf#search=‘ジョブカフェ愛work’)

② 사업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상담과 직업적성훈련에 기초하여 취업에서 직장 정착에 이르기까지 개개의 사례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에히메현내 기업의 욕구에 적합한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청소년의 고용 대책, 인재육성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①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 직업상담의 충실, 강화

지정상담, 이동상담, 직업적성진단, 재직자·보호자를 위한 카운슬링, 집단상담, 메일상담, 직원능력 향상대책, 전자의학시스템, 카운슬러 교류회, 이용자만족도(CS) 독자조사, 청소년을 위한 출장강좌, 학습도우미의 배치, 경력 컨설턴트를 배치한다.

■ 집단토론회

청소년이 흥미를 가진 직종과 그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선배사회인의 체험담,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 듣기와 서로의 의견교환을 하는 집단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미니 기술향상 세미나

소집단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직장예절, 컴퓨터 기본기술 등을 습득하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모의 면접회

소집단을 대상으로 면접을 받는 마음자세, 태도, 면접방법 등 면접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소수 모의 면접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에히메 벤치마킹

수도권 소재의 청소년과 에히메현내 유망한 중소기업 사이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에히메 벤치마킹(2박3일의 현내 기업·경영자 순회)을 개최하여 의욕있는 학생의 본현으로의 U·I턴⁴⁹⁾취업을 촉진한다.

49) I턴은 태어나 성장한 고향 이외 지역에서 취업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도시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지방의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U턴은 지방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이 한번은 도시에서 근무한 후 다시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고향으로 돌아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http://ten-navi.com/contents/keyword/alphabet_01.php.

■ Job Cafe 사랑 work 축제

산업계, 교육계, 보호자, 행정기관을 연계하여 에히메현 청소년의 취업지원 및 산업진흥·고용창출의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축제이다. 청소년과 기업·사회인이 서로 유익한 점을 찾아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취업활동에 힘쓰기 위한 자립의식, 직업의식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에히메현 각 지역에 개최한다.

■ 내발적 동기유발형 세미나

워크숍과 집단활동 등을 통한 체험형 세미나를 개최한다. 청소년에게 체험을 통하여 의식과 행동의 명확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세미나 참여로 전향적인 취업활동을 하게 한다.

■ 청소년(학생)의 중소기업 이해촉진 사업

에히메현 소재 대학에서 현내 중소기업의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특별강의를 실시하여 청소년(학생)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한다. 그 후 중소기업경영자의 강의를 청취하고,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기업경영평가 및 경영과제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사대상 기업에 제시함으로써 청소년(학생)과 현내 중소기업과의 접점을 만들고, 청소년(학생)의 현내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취업 희망기업의 선택을 넓힌다.

또한 현내 중소기업은 청소년(학생)에 대한 자사 PR의 장, 우수한 청소년 인재 발견의 장으로 활용한다.

■ 인스피레이션 매칭 시스템

기존의 근무조건과 급여 등의 일반적인 매칭 항목이 아닌 청소년 자신의 생각과 성격, 목표 등을 매칭 항목으로 한다. 직감(인스피레이션)적인 구인정보검색시스템 ‘인스피레이션 매칭시스템’을 운영한다.

■ 기업·청소년 교류회(Job 클럽)

교류회 장소에서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경영자와 인사담당자,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모집하여 서로 이해를 돕도록 한다. 이는 기업으로서는 우수한 인재의 발견의 장, 청소년으로서는 직장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장의 역할을 한다.

■ 청소년(학생)에 의한 기업홍보

청소년(학생)이 기업을 방문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기업의 장점을 취재하고 홍보전시물이나 책자를 작성한다. 이 홍보전시물을 합동취업면접회 회장에 설치하거나 책자를 배포하는 등 각 사업에 활용하여 기업의 장점을 청소년의 홍보에 활용한다.

■ 직장견학회

방문할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참가자(청소년)를 모집하여 각 기업을 방문하는 버스투어를 실시한다. 방문할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청소년이 희망하지 않았던 기업이나 업종·직종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느끼게 하고, 취업할 곳의 선택폭을 넓힐 기회가 되며 동시에 기업에게는 청소년에게 자사를 홍보할 기회, 청소년의 직업의식과 욕구 등의 정보를 수집할 기회가 된다. 또한 젊은이의 견학 욕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소집단으로 직장을 견학하는 수요자 견학회도 실시한다.

■ 직장체험(취업체험)

지정상담(직업상담)에서 밝혀진 상담자(청소년)의 직업적성, 일에 대한 흥미·생각에 기초하여 가벼운 직장체험을 할 수 있는 취업체험을 실시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청소년에게 제공한다.

■ 제조업체 정보발신사업

3D 직장으로 청소년이 회피하기 쉬운 지역 제조업 중에는 명성은 낮지만 국내외에서 상위의 기술력과 제품을 소유한 우량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의 장점과 매력,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생각을 폭넓게 청소년들에게 홍보하여 제조업에 대한 취업의욕을 환기시킨다.

■ 프리터 등 청소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

프리터 등 청소년 구직자에 대하여 직업의식 고양과 취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리플렛을 만들고, 에히메현내 대학이 개최하는 직업보도와 중학·고교 취업담당자가 참여하는 진로지도 담당자 연수회, 고교의 PTA 모임,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프리터 문제에 관한 강연 등 학생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Job Cafe 사랑 Work 방문자에게도 리플렛을 배포하고, 프리터화 방지 및 탈프리터화를 도모한다.

- 사회인 데뷔 강좌

프리터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인 데뷔 강좌(취업 기초능력 속성강좌)’를 실시하여, 직무수행을 위한 기초적인 능력의 습득과 직업의식을 양성한다.

- 청소년의 직장정착 지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직장예절의 습득 등 취업의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인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육성 커뮤니케이션 세미나를 개최한다.

- 합동취업 면접회

청소년과 기업의 매칭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Job Cafe와 사랑 Work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합동취업 면접회를 대략 7월과 2월 연 2회 개최한다.

- 직업상담, 직업소개 실시

구인 등의 채용관련 정보의 제공과 직업상담 및 희망자에 대한 직업소개를 실시한다.

- 에히메현으로의 U·I턴 취업희망자 취업지원

에히메현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현외 대학 졸업예정자와 유턴희망자, 그리고 채용하려는 기업의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상담원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본 에히메현으로 U·I턴 취업을 촉진한다.

② 학교·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 인턴십 지원

인턴십, 주니어인턴십을 실시할 기업을 발굴하고, 이러한 사업에 대한 의향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교육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한다.

- 중학·고교 진로지도 담당자 및 보호자의 지원

진로지도 담당자의 연수에 Job Cafe 사랑 Work의 경력컨설턴트와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에히메현 내의 고용정세와 기업이 신규졸업자에게 희망하는 인재에 대한 강연과 Job Cafe 사랑 Work 안내 및 각종 지원메뉴를 소개한다.

또한 PTA 모임에 경력컨설턴트와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에히메현의 고용 상황과 기업이 바라는 인재에 대한 강연을 하고 기업의 채용담당자와 의견 교환을 실시한다.

-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일에 대한 자세’ 작문대회의 개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가까운 어른의 ‘일에 대한 자세’를 소재로 작문대회를 열어 재학 시부터 직업의식을 함양한다.

- 학교, 보호자를 위한 출장강좌

에히메현 내의 학교와 각 PTA의 요청으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력 교육에 강사를 파견하며 직업상담과 모의면접회 등 Job Cafe 사랑 Work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학교,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에 출장형식 강좌를 제공한다.

- 대학 등이 실시하는 직업보도의 지원

에히메현 내의 대학이 취업보도를 실시할 시기에 Job Cafe 사랑 Work에서는 기업의 임원과 인재육성 전문가 등의 강사를 파견하여 학생·청소년의 직업의식 함양과 더불어 취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중학교의 프리터 대책 지원

중학교에 Job Cafe 사랑 Work의 경력컨설턴트와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프리터 문제에 대하여 강연한다.

- 보호자를 위한 강연회

취업에 대하여 청소년들과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면 바람직할까 또는 청소년들과 어떻게 대면하면 좋을까 등을 생각해 보는 강연회를 개최한다.

- 집단토론회

청소년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업종, 직종에 취업한 선배·사회인의 체험담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청취하고 의견교환을 하는 선배@Cafe를 고교, 대학에서 실시한다.

③ 기업을 위한 서비스

- 경력컨설턴트와 산업계의 교류

경력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거나 기업채용담당자가 Job Cafe 사랑 Work

를 방문하는 등 경력컨설턴트와 산업계(기업채용담당자)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보교환을 통하여 개별 청소년의 취업지원과 인재채용활동에 도움을 준다.

- 기업을 위한 홈페이지

기업을 위한 정보를 게재한 홈페이지를 작성하여 Job Cafe 사랑 Work의 업무와 청소년의 고용정보를 기업에 발신한다.

- 은행의 기업용자 담당자와의 연계

은행의 기업용자 담당자가 기업방문을 할 경우에 기업의 구인 욕구를 파악하고, Job Cafe 사랑 Work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에 기초하여 Job Cafe 사랑 Work에서 기업에 접촉하여 각종 기업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인스피레이션 매칭 시스템을 매개로 구인정보 등을 청소년에게 제공한다.

- Job Cafe 사랑 Work ‘기업을 위한 강연회’

산업계, 교육계, 보호자, 행정기관이 연계하여 에히메현의 청소년 취업지원 및 산업진흥·고용창출의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청소년과 기업·사회인과의 접점을 찾아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취업활동에 힘쓰게 하기 위한 자립의식, 직업의식 함양을 위한 이벤트를 현내 각지에서 개최한다. 또한 기업의 청소년 인재 육성의식의 함양 및 청소년 인재 채용의식의 향상을 위한 ‘기업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한다.

- 채용 컨설팅사업

2006년에 축적한 컨설팅 노하우를 매뉴얼화하여 청소년 인재채용을 고려하는 중소기업에게 폭넓게 제공하는 등 잡지에 의한 채용, 원포인트 충고의 발신, 대학과 연계한 채용실천 공개강좌의 실시를 통하여 기업의 인재 채용능력의 강화를 지원한다.

- 기업을 위한 출장강좌

에히메현 내의 상공회의소와 각 기업의 요청에 따라 채용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 노하우를 제공하는 인재채용 세미나와 청소년 사원의 정착률 향상을 지원하는 청소년육성 커뮤니케이션 세미나 개최 등 Job Cafe 사랑 Work

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출장형식으로 제공한다.

- 구직자 정보의 제공

기업에 학생 및 청소년 구직자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외에 직장견학회, 합동취업 면접회, 직장체험, 제조업정보발신사업, 인스피레이션 매칭 시스템, 청소년에 의한 기업홍보, 기업·청소년교류회, 청소년의 직장정착지원, 청소년의 중소기업 이해촉진사업, 에히메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학교,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에서 서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④ 기타 서비스

- 서포터 제도의 운영

기업의 임원과 인사담당자 중에서 청소년 육성에 대한 이해와 의욕이 있는 자를 모집하여 Job Cafe 사랑 Work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등에 활용한다.

- 학생스태프의 활용

학생의 아이디어와 행동력을 활용하여 Job Cafe 사랑 Work에 새로운 발상을 가져오게 한다.

- 상점가와의 연계

상점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동개최로 청소년 모임 이벤트를 실시한다.

③ 사업제공자

센터장은 사업의 운영·관리총괄, 관계기관과의 연락조절, 새로운 사업의 기획·입안, 경력컨설턴트의 지도·육성을 담당한다.

④ 예산(재정)

예산은 현 위탁사업비, 후생노동성 위탁사업비, 경제산업성 위탁사업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각 성은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⑤ 전달체계

에히메현(愛媛県)은 청소년대책본부의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방책의 하나

로 ‘경제노동부’의 관리국 소속 노동고용과 고용대책실에서 Job Cafe 사랑 Work를 운영하고 있다.

Job Cafe 사랑 Work는 26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 위탁사업비에 의한 직원으로 센터장 1명, 학습조언자 1명, 경력컨설턴트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 위탁사업비에 의한 직원으로 코디네이터 2명, 하위코디네이터 2명, 인턴십 개발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위탁사업비에 의한 직원으로는 코디네이터 2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현의 비상근 촉탁직원인 센터취업지원상담원 1명, 고용·능력개발기구 에히메 센터의 경력컨설턴트 6명, 에히메 노동국 병설 상담원 4명, 에히메 청소년인재육성추진국 사무직원 4명, 사무국장 1명(에히메현 직원), 사무국 직원 3명(마츠야마시 직원, 에히메대학 직원, 에히메현 중소기업단체 중앙회 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외 접수 아르바이트 2명, 학생 스태프 여러 명이 배치되어 있다.

■ 개소일·개소시간

- 평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7시
- 토요일 : 오전 10시 - 오후 6시
- 휴일 : 일요일, 축일, 연말연시

(4) 청소년복지 정책 사례 2 -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Support Station)⁵⁰⁾

① 사업대상

35세미만으로 직장이 없는 자, 보호자

② 사업내용

청소년 서포트 스테이션 사업은 니트 등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주도하에 청소년자립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50) <http://www.ys-station.jp/katudou/index.html>

직업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원대상자의 파악

사업활동 또는 타 청소년지원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파악하고, 그 후보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악된 정보에 기초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청소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활용하게 한다.

② 종합상담

경력컨설턴트는 청소년에게 경력형성에 관한 상담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정신적인 측면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임상심리사 등의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경력컨설턴트는 개개인에 따라 적절한 지원메뉴를 선정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외부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적절한 지원기관·단체 등에 소개한다. 이때 경력컨설턴트는 청소년별 지원상황에 관한 개인카드를 작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취업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지원을 한다.

③ 청소년개발 프로그램

‘일하는 것’에 대한 자신과 의욕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직업인의 체험담 등을 듣는 직업체험담 강연, 직장과 공장 등의 분위기 체험, 실제의 작업 견학, 근로의식 향상을 위한 워크숍·직장견학회와 같은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 취업경험이 없는 청소년과 일할 의욕이 싹트기 시작한 청소년에게 우선 일하는 체험을 하게 하고, 의욕향상을 촉진시켜 협력사업장 등에서 단기간에 취업체험사업과 지역이벤트 기획·입안·운영 등을 실시한다.

④ 보호자 대상의 강습

청소년보호자에게 세미나를 개최하고 개별면담을 실시하는 등 직업적 자립지원 방법과 청소년과의 접촉방법, 고민의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⑤ 타 청소년기관과의 연계

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다른 청소년지

원기관에 소개하는 등 각 기관 사이에 지속적인 연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지원대상 청소년 파악은 개인정보 보호조례를 준수하면서 타 청소년지원기관과 정보를 교환한다.

③ 사업제공자

현 또는 시정촌의 추천을 받은 단체

④ 예산(재정)

개별상담은 완전예약제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1개소당 국가 직접 위탁사업비는 17,663,000엔 이내의 보조를 받고 있다.

⑤ 전달체계

청소년 서포트 스테이션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지원네트 구축의 일환으로서 2008년 현재 전국 77단체에 지원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 의해 지역의 민간단체 중 적절하다고 인정된 단체에게 국가 위탁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역 서포트 스테이션은 중앙서포트센터의 정보제공·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다.

청소년 서포트 스테이션사업의 담당부서를 보면 중앙정부는 상공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부서로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 육성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다⁵¹⁾.

에히메현에서는 2001년 11월 27일 결정된 ‘에히메현 긴급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며 경제노동부⁵²⁾의 관리국 소속 노동고용과 고용대책실의 지원을 받는다.

■ 개소일·개소시간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18시
- 휴일 : 수·일·축일·연말연시

51) <http://www.pref.ibaraki.jp/bukyoku/kikaku/chikei/sienjigyousyu/syoukou/wakamonosupport.htm>

(5) 청소년복지 정책 사례 3 - 청소년자립기숙사(自立塾)⁵²⁾

① 사업대상

1년 이상 일과 구직활동의 실적이 없고 학교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35세 미만의 미혼자로 소위 니트 상태에 있는 자.

② 사업내용

일정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숙형 집단생활을 통하여 훈련, 노동훈련을 함으로써 사회인,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적 능력을 획득하고 노동관을 양성하며 일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체득하게 하여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3개월의 합숙을 대상자에게 제공하는데 기숙사생활의 전반기는 사회에 익숙하도록 협력·협동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기간이며 후반기는 일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워가는 기간으로 나누어져 서서히 의욕이 생기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합숙생 한명 한명의 상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수정해 가면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립기숙사는 취업에 연결되는 비율의 목표를 90%로 세우고 있다.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생활훈련, 노동체험, 특별프로그램, 자격취득강좌 등이 있다.

① 생활훈련의 내용

- 시간사용방법 훈련(자유시간, 일·작업의 시간)
- 생활습관 훈련(아침 기상부터 심야 취침의 주기정착, 식사시간의 일정화)
- 가사훈련(세탁, 청소·정리, 식사준비·정리, 목욕준비·청소, 장보기)
- 야외활동에 의한 훈련(워킹, 점프)
- 모임 참여(발언, 경청, 배려, 지지, 메모 등)

52) <http://jiritsu-juku.esp.ne.jp/modules/tinyd1/index.php?id=34>

② 노동체험 내용

- 공장에서 제조작업 체험(봉제회사, 식품회사, 철공소)
- 서비스업 체험(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 복지시설 체험(개호시설)
- 시설관리 체험(접수·정보, 골프장 운영)
- 이벤트 스태프 체험(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 농업체험(야채·과일의 수분, 수확)
- 어업체험(감·잔멸치 등 가공품, 양식관리)

③ 특별프로그램 내용

- 예술활동 체험(스케치, 수채화, 수묵화, 회화, 도예)
 - 스포츠 체험(트래킹, 암벽등산, 축구, 야구, 수영, 낚시, 사이클링)
 - 지역축제·이벤트 체험(가을축제, 여름축제, 봄축제)
 - 수제 가공식품 체험(수제 두부, 수제 대나무용품, 훈제 등)
 - 자원봉사활동(지역 초등학교 청소활동, 지역자치회 청소작업, 도로청소, 시설내 페인트 도장, 장작패기 작업)
 - 정신수양 체험(좌선)
- ## ④ 자격취득 강좌 내용
- 컴퓨터기능 취득(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워드)
 - 자격취득 선택 코스(소형 차양계건설기구 특별교육, 소형 지게차운전 특별교육, 대형 특수자동차 면허, 대형자동차 면허)

③ 사업제공자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청소년자립기숙사·에히메현

④ 예산(재정)

자기부담 : 1개월에 10만엔(3개월 30만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후생노동성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저소득 세대는 참가비 면세조치가 있다.

⑤ 전달체계

2003년에 내각부,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의 1府(부)3省(성) 합동으로 책정된 ‘청소년자립·도전플랜’에 따라 2004년에 발표된 청소년자립 기숙사의 계획 개요에 근거하여 2005년에는 20개의 사업주체가 선정되었으며 2007년도에 30단체로 증가하였다. 각 사업자는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 청소년복지 정책 사례 4 - 근로청소년 홈⁵³⁾

① 사업대상

에히메현의 니하마시에 거주 또는 근무지가 있는 30세까지의 근로청소년.

② 사업내용

근로청소년홈은 근로청소년에게 각종 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하며, 레크리에이션·클럽활동 기타 노동의 여가에서 실시되는 활동을 위해 편의를 공유하는 등 근로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근로청소년복지법 제15조).

니하마시 근로청소년홈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기강좌와 클럽활동이 있다. 정기강좌로는 서도교실, 기모노교실, 다도교실이 있으며 클럽활동으로는 공수교실이 있다.

③ 사업제공자

니하마시(新居浜市) 행정계획추진과

④ 재정

2005년 직접경비는 모두 6,259,000엔이다. 재원내역을 보면 국가와 현의

53) 에히메현 니하마시(新居浜市)一宮町 2 - 2 - 1 7
http://www.city.niihama.lg.jp/soshiki/detail.php?lif_id=3349

보조금은 없으며 일반재원으로 6,259,000엔이다. 이중 인건비는 1,416,268엔이다.

⑤ 전달체계

후생노동장관은 근로청소년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근로청소년홈은 니하마시 행정계획추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근로청소년홈에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근로청소년홈지도원을 두고 있다(근로청소년복지법 제16조). 근로청소년홈지도원은 후생노동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근로청소년홈에서 청소년의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연수회를 실시한다. 근로청소년홈의 운영을 원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홈의 운영에 대하여 시장(市長)의 자문에 응하며 의견에 답신을 한다. 시장이 위촉한 15명으로 조직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개소일·개소시간

- 평일 : 오후 1시 - 오후 9시 45분
- 휴관일 : 매주 토·일요일, 축일, 연말연시

(7) 정책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서 이 연구가 소개한 에히메현의 ‘Job Cafe’ 사랑 Work’, ‘청소년서포트스테이션’, ‘자립기숙사’, ‘근로청소년홈’은 직업관의 각 성부터 취업훈련지원까지 취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관계기관에서 연계하여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청소년들의 정규직 취업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 졸업후 바로 취업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도 학교를 경유한 취업, 즉 기업과 학교를 연계한 정규고용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小杉礼子編, 2005).

현재, 청소년 실업률은 15세-19세가 9.4%, 20세-24세가 7.7%, 25세-29세가 6.0%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12세-19세에서 0.8%, 20세-24세에서 0.7%, 25-29세에서는 0.2%가 낮아지고 있다. 이는 실업률이 최고 낮은 1990년도와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2006년에는 청소년의 각 연령층에서 모두 낮아졌다(內閣府, 2007 靑少年白書).

2006년 현재 프리터의 수는 187만 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니트에 가까운 개념인 청년무직자 연령을 15세에서 30세로 한정하여 보면 비노동력 인구 중 가사도 통학도 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2006년에는 62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만 명이 감소하였다.

에히메현의 경우 정규직원의 비율은 노동자 전체의 1/2이며, 약 1/4은 자영업(혹은 자영업에 고용 중), 약 1/4은 아르바이트와 시간제 취업 등 비정규직 고용이다. 프리터의 비율은 전국의 수치와 비슷하여 전체 청소년의 약 12.0%로 약 42,000명(국민생활백서, 노동경제백서의 정의로는 약 21,000명)이며 니트의 비율은 전국의 수치보다 조금 낮아 전체 청소년의 약 0.9%로 3,100명(노동경제백서)이다(에히메지역정책연구센터, 2005).

이렇게 프리터와 니트의 수가 감소하게 된 것은 에히메현과 지역사회의 많은 노력도 있었지만 에히메현의 청소년 건전육성대책의 일환인 청소년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취업체험은 아르바이트 체험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정규직으로 취업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필요한 만큼만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프리터로서의 길’로 진입하게 되어버리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취업체험은 청소년 자립을 위한 교육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일부 고교생들은 아르바이트만으로 취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취업세계라는 넓은 세계의 아주 작은 일부뿐이다. 일부분만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이 좋다’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여러 일자리의 장에서 어떻게 사람이 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고교생의 취업체험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小杉札

子 2003:64).

또한 학교재학 중에 취업체험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취업체험은 자신들의 장래의 모습인 어른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나아가 학교와 다른 가치관을 접함으로써 넓은 시야에서 장래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小杉札子 2005:26).

이외에 각각의 사례에 나타나고 있는 정책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ob Cafe 사랑 Work’에서는 기업의 욕구에 맞는 인재육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고용대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원스톱서비스는 많은 고용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많은 고민과 갈등, 좌절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서비스는 특히 호응이 높으며 Job Cafe에서 개최하고 있는 여러 세미나는 청소년들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알게 하여 서로의 관계를 깊게 함으로써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Job Cafe의 서비스 중에 니트의 발굴 및 지원서비스는 니트를 사회와 연결시킨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니트들은 스스로 일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전혀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Job Cafe에서는 심야에 광고를 내보내거나 개별적인 접촉 활동 등을 통해 니트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집에 있는 청소년 니트를 걱정하여 찾아오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도 호응도가 높다.

‘청소년 서포트 스테이션’에서는 경력컨설턴트가 개개 청소년의 경력과 특성에 따른 종합상담을 하여 개인카드를 작성 한 후 취업이 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정신적 측면의 지원을 위한 임상심리사와의 상담과정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대인공포증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서서히 자신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나아가 의사소통기술을 익히고 자신의 장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과정 등을 통하여 일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갖게 되며, 이는 상담자와 신뢰관

계를 구축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상담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은 다른 구성원과의 신뢰관계 구축에도 영향을 주어 소속집단의 관계에도 순기능을 하게 되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개 청소년은 사회의 구조를 알게 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존재가치를 알게 된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구축된 신뢰관계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서포트 스테이션이라는 공간을 신뢰감 있는 장소로 만들고 있으며, 청소년 서포트 스테이션에 대한 애착을 생기게 한다. 또한 이는 청소년 서포트 스테이션의 다양한 활동과 활동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립기숙사’는 니트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다. 즉 자립기숙사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니트인 청소년을 부모와 떨어뜨려 합숙시키는 형태로 생활훈련과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小杉札子 2005:26). 3개월 동안의 합숙과정 속에서 생활과 직업에 대한 체험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일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자립기숙사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립기숙사의 생활에서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어려운 니트들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더욱이 자신이 무리라고 생각하였던 일들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스포츠대회와 같은 교류기회를 통하여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등을 익히게 된다.

‘근로청소년홈’은 일하고 있는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일과 여가활동이라는 양방향의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인간관계의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일의 측면에서는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얻는 스트레스와 고민을 상담으로 해소해 줌으로써 직장에서의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을 돕고 있다. 여가활동의 측면에서는 문화교양강좌 수강을 통하여 문화교양의 취득 및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근로청소년홈은 서클활동을 통해 좋은 인간관계 만들기 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각하게 하고 있다.

4) 한국정책에의 시사점

일본은 최근 나이가 적을수록 또는 학력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현저해지고 있다. 프리터와 니트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젊고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프리터와 니트와 같이 취업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점점 주변화되면서 경제적·사회적으로도 크게 사회문제화되고 사회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침체와 대기업의 신규채용 감소, 산업수요와 괴리된 인력과잉 배출의 원인인 고학력화,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동향 속에서 청소년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져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상태인 비정규직의 취업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상황의 하락, 절대적 궁핍에 의한 자살, 비정상적인 소득을 위한 불법적 아르바이트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2008년 3월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도리마(길거리 악마) 살인사건⁵⁴⁾의 용의자가 프리터의 절망적인 생활 속에서 충동적으로 사건을 일으킨 것이 크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프리터화, 니트화 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 실업층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실업자가 될 위험성이 있으며 프리터와 니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본 연구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첫째로 청소년 직업능력을 높이는 정책, 둘째로 청소년실업자와 그 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한 교육훈련정책, 셋째로 노동청소년에 대한 노동수요를 확대하는 정책, 넷째로 청소년의 직업의식 각성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

54) 도쿄 아키하바라 쓰치우라에서 거리를 지나는 8명을 무차별 살상한 사건(한겨레신문, 2008년 8월 10일자).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Job Cafe 사랑 Work’, ‘청소년 서포트 스테이션’, ‘자립기숙사’, ‘근로청소년홈’은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각각의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정규직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정규직 취업을 위해 고교 등 신규졸업자에게 학교와 연계한 구인개척, 직업소개의 추진, 고교졸업자 취업시스템에 의한 인터넷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직장견학회, 취업면접회 등의 개최를 통해 학생과 기업의 만남의 장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취업준비를 위한 취업보도(가이던스)를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진로지도담당자들에게도 지역의 산업구조 등 고용에 관한 세미나개최와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고등학생의 취업지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프리터와 니트와 같은 청소년을 일정기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직장생활에 적응하여 지속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한 청소년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대학진학 외에 취업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취업기회의 제공 외에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체험·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계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등 학교교육 내용에 직업교육·취업체험·취업준비강습 등을 포함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에히메현에서는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 기업에서의 실습훈련을 병행하여 수료 시에는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일본판 이중시스템(dual system)’제도에 의해 청소년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계고등학교에

서는 실제로 이와 유사한 직업교육과 훈련, 체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 이외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없다. 또한 이러한 취업체험과 직업훈련은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도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확립과 자세, 태도의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보다 직업에 대한 확고한 준비로 미래의 프리터와 니트를 예방하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된다.

셋째, 직업능력 향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직업의식 형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능한 이른 시기부터 직업의식 형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어떠한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잘 모르고 성적에 의해 직업을 선택하기가 쉽다. 졸업 후 취업한 직장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쉽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평생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쉽다. 따라서 학교교육시간 중 특별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적성과 직업관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주니어 인턴십의 실시와 직장견학, 선배직장인의 직업에 대한 체험과 의식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모임의 개최와 같이 직업의식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과 청소년취업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보호자의 취업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높여 학생의 적절한 진로선택에 관한 이해의 촉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에 있어 취업교육에 대한 교육자, 학생, 학부모의 폭넓은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로 인해 학부모와 교사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지만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이 대학졸업후 청년백수로 이어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수업 안에서 미래 자신의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심화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프리터화 및 니트화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간관계형성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니트와 같은 유형의 무직자들은 직장에

서 인간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에 이직해버리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청소년의 직업적 자립지원의 방법으로 인간관계 형성과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에 처한 개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대응(개별사회사업·개별상담)에서부터 집단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사례인 ‘Job Cafe 사랑 Work’, ‘청소년 서포트 스테이션’, ‘자립기숙사’, ‘근로청소년홈’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담프로그램과 프로그램 활동속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형성은 소극적이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과 의사소통의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과 자신의 직업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야 한다. 일시적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심층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통합적(Social Inclusion)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실업자 증가요인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불평등과 배제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근본적으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고립되는 청소년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이행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는 중요한 방안의 하나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쉬운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을 사회의 유능한 인재로 양성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와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함께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바른 심성을 갖도록 바른 인간관계 형성능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자립형기숙사처럼 생활훈련과 근로체험을 함께 실시하여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와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청소년을 사회적 인재로 육성하는 사회적 지원시스템 체제의 구

축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의 프리터와 니트화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비정규직, 기계화 등 사회적 일자리의 감소에 있다. 프리터와 니트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든 내수소비의 촉진과 안정적인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장기적 안목에서 청소년의 잠재능력을 존중하여 인재를 길러내는 기업의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이 신규졸업생을 채용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로 청소년의 능력을 개발하여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을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학교와 연계하여 인재육성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에히메 청소년 서포트 스테이션(Support Station)’에서는 니트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지원기관과 기업을 활용한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청소년 인재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일곱째, 보다 활발하게 관계기관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처럼 근로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 기관과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에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와 산업계의 활발한 연계가 필요하다. Job Cafe 사랑 Work와 청소년 서포트 스테이션에서는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서 경제단체, 교육기관, 보호자단체, 기업, NPO법인 등이 서로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여덟째, 청소년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이용료 지불에 있어 자기부담금이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용촉진을 위해 이용료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프리터와 니트의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을 관련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니트의 성격상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므로 니트가 있는 곳으로 Out-Reach(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사례 발견과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에히메현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Job Cafe 사랑 Work’, ‘청소년 서포트 스테이션’, ‘자립기숙사’, ‘근로청소년홈’간 연계

와 더불어 에히메현 청소년대책본부와 관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례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IV.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현황

1. 조사개요
2. 아동·청소년복지업무관련 세부현황
3.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역할분담
4. 지역별 인구·재정규모 및 업무 일반현황
5. 요약 및 정책제언

IV.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현황

1. 조사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전국의 250여개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부서 담당자 316명을 대상으로 2008년 8월 4일(월)부터 2008년 8월 30일(토)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담당부서명을 전수 파악한 후, 2명의 연구보조원으로 하여금 2008년 7월 28일(월)부터 2008년 8월 1일(금)까지 파악된 아동·청소년담당부서에 직접 전화하여 연구의 취지와 설문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게 한 후, 설문응답을 위한 담당자 연락처를 파악하여 해당 담당자에게 설문지를 등기우편 발송하고, 작성된 설문지를 등기우편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각 지역별로 아동·청소년 업무가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개의 설문지를, 아동·청소년 부서가 별도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서 담당자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한 부서에서 아동·청소년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도 한 사람이 설문에 응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 각각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해당지역 아동·청소년 복지업무 담당자와의 협의와 협조확인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총 316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이 중 244부가 최종 수거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조사된 자료는 SPSS Windows Ver. 1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 배포대상 관련사항과 응답자 관련사항은 빈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지역별(인구50만이상 시, 인구 50만미만 시, 특별광역시 자치구, 농산어촌 군) 아동·청소년 복지업무 관련사항,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역할분담, 인구·재정·업무관련 일반 현황은 분할표 분석(crosstabs)과 피어슨 카이검증을 활용하였다. 지역별 평균차이는 분산분석(ANOVA)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집단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경우 사후검증으로 셰페(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지역별 설문조사 세부 배포지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V-1> 지역별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명

구분	지역별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명
(인구50만 이상) 시	강원도 삼척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18부 배포)
(인구50만 미만) 시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파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남양주,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마산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해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충주시(102부 배포)
(특별, 광역) 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중구(90부 배포)
(농산어촌) 군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화천군,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여주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장수군, 전북도 진안군,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당진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연기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청원군(106부 배포)

2. 아동·청소년복지업무관련 세부현황

1) 개요

우선 조사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지는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관련부서 담당자 316 명에게 배포되었으며 이중 5.7%는 (인구 50만이상) 시, 32.3%는 (인구 50만미만) 시, 28.5%는 (특별, 광역시) 자치구, 33.5%는 (농산어촌) 군에 해당하였다.

〈표 IV-2〉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관련부서

구분		빈도	%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관련부서	(인구50만이상) 시	18	5.7
	(인구50만미만) 시	102	32.3
	(특별, 광역시) 자치구	90	28.5
	(농산어촌) 군	106	33.5
	계	316	100.0

설문지 배포대상의 46.5%는 아동·청소년 업무를 함께 하는 부서였으며 26.6%는 아동 업무만을 담당하는 부서, 26.9%는 청소년 업무만을 담당하는 부서였다.

〈표 IV-3〉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관련업무부서

구분		빈도	%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관련업무부서	아동·청소년	147	46.5
	아동	84	26.6
	청소년	85	26.9
	계	316	100.0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관련업무부서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서의 경우 사회복지과가 32.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18.0%, 주민복지과 9.5%, 주민생활지원과 8.8%, 가족여성과 4.1%, 복지사업과 4.1%, 여성가족과 3.4%, 복지과 2.7%, 복지서비스과 2.7%, 복지지원과 2.0% 순이었다. 이 외에도 가족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노인여성복지과, 문화공보과, 복지여성과, 복지위생과, 아동·청소년과, 양성평등지원과, 여성과, 여성복지과, 주민생활과,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서비스과, 체육진흥과 등에서도 업무가 수행되고 있어 매우 다양한 부서에서 아동·청소년 업무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업무만을 수행하는 부서의 경우 역시 사회복지과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 14.3%, 여성가족과 8.3%, 주민복지과 6.0%, 복지사업과 6.0%, 가정복지과 3.6%, 복지과 3.6%, 복지서비스과 3.6%, 주민복지서비스과 3.6%, 가족여성과 2.4%, 행복나눔과 2.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복지여성과, 복지위생과, 복지지원과, 복지행정과, 사회경제과, 사회여성과, 양성평등지원과, 여성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등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청소년복지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부서의 명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와 체육청소년과가 15.3%로 동일하게 가장 많았으며 문화체육과 11.8%, 문화관광과 9.4%, 문화공보담당관 3.5%, 평생학습과 3.5%, 여성가족과 2.4%, 주민생활지원과 2.4%, 문화공보실 2.4%, 평생교육과 2.4% 순이었다. 이 외에도 청소년복지업무는 가족여성과, 관광공보실, 교육지원과, 교육청소년과, 교육체육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담당실, 문화홍보실, 복지위생과, 복지여성과, 복지증진과, 사회지원과, 생활지원과, 양성평등지원과, 여성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위생과 청소년계, 인재양성과, 인재육성과, 주민생활과,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과, 총무과, 평생학습청소년과, 행정지원과 등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4〉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관련업무부서 명칭

구분			아동·청소년 업무부서 구분			계
			아동·청소년 업무부서	아동 업무부서	청소년 업무부서	
과	가정복지과	빈도(%)	25(17.0)	3(3.6)	0(0)	28(8.9)
	가족복지과	빈도(%)	1(.7)	0(0)	0(0)	1(.3)
	가족여성과	빈도(%)	6(4.1)	2(2.4)	1(1.2)	9(2.8)
	가족여성팀	빈도(%)	0(0)	1(1.2)	0(0)	1(.3)
	관광공보실	빈도(%)	0(0)	0(0)	1(1.2)	1(.3)
	교육지원과	빈도(%)	0(0)	0(0)	1(1.2)	1(.3)
	교육청소년과	빈도(%)	1(.7)	0(0)	0(0)	1(.3)
	교육체육과	빈도(%)	0(0)	0(0)	1(1.2)	1(.3)
	기획감사실	빈도(%)	0(0)	0(0)	1(1.2)	1(.3)
	노인여성복지과	빈도(%)	1(.7)	0(0)	0(0)	1(.3)
	문화공보과	빈도(%)	1(.7)	0(0)	3(3.5)	4(1.3)
	문화공보담당관	빈도(%)	0(0)	0(0)	1(1.2)	1(.3)
	문화공보담당실	빈도(%)	0(0)	0(0)	1(1.2)	1(.3)
	문화공보실	빈도(%)	0(0)	0(0)	2(2.4)	2(.6)
	문화관광과	빈도(%)	0(0)	0(0)	8(9.4)	8(2.5)
	문화예술과	빈도(%)	0(0)	0(0)	1(1.2)	1(.3)
	문화체육과	빈도(%)	0(0)	0(0)	10(11.8)	10(3.2)
	문화홍보과	빈도(%)	0(0)	0(0)	1(1.2)	1(.3)
	문화홍보실	빈도(%)	0(0)	0(0)	1(1.2)	1(.3)
	복지과	빈도(%)	4(2.7)	3(3.6)	0(0)	7(2.2)
	복지사업과	빈도(%)	6(4.1)	5(6.0)	0(0)	11(3.5)
	복지서비스과	빈도(%)	4(2.7)	3(3.6)	0(0)	7(2.2)
	복지여성과	빈도(%)	1(.7)	1(1.2)	1(1.2)	3(.9)
	복지위생과	빈도(%)	1(.7)	1(1.2)	1(1.2)	3(.9)
	복지증진과	빈도(%)	0(0)	0(0)	1(1.2)	1(.3)
	복지지원과	빈도(%)	3(2.0)	1(1.2)	0(0)	4(1.3)
	복지행정과	빈도(%)	0(0)	1(1.2)	0(0)	1(.3)
	사회경제과	빈도(%)	0(0)	1(1.2)	0(0)	1(.3)
	사회복지과	빈도(%)	47(32.0)	27(32.1)	13(15.3)	87(27.5)
	사회복지팀	빈도(%)	2(1.4)	0(0)	0(0)	2(.6)
	사회여성과	빈도(%)	0(0)	1(1.2)	0(0)	1(.3)
	사회지원과	빈도(%)	0(0)	0(0)	1(1.2)	1(.3)
	생활복지여성과	빈도(%)	1(.7)	0(0)	0(0)	1(.3)

구분		빈도(%)	아동·청소년 업무부서 구분(계속)			계
			아동·청소년 업무부서	아동 업무부서	청소년 업무부서	
과	생활지원과	빈도(%)	0(0)	0(0)	1(1.2)	1(1.3)
	아동·청소년과	빈도(%)	1(1.7)	0(0)	0(0)	1(1.3)
	양성평등지원과	빈도(%)	1(1.7)	1(1.2)	1(1.2)	3(9)
	여성가족과	빈도(%)	5(3.4)	7(8.3)	2(2.4)	14(4.4)
	여성과	빈도(%)	1(1.7)	0(0)	0(0)	1(1.3)
	여성복지과	빈도(%)	1(1.7)	1(1.2)	1(1.2)	3(9)
	여성복지팀	빈도(%)	1(1.7)	0(0)	0(0)	1(1.3)
	여성유소년팀	빈도(%)	1(1.7)	0(0)	0(0)	1(1.3)
	여성청소년과	빈도(%)	0(0)	1(1.2)	1(1.2)	2(6)
	위생과 청소년	빈도(%)	0(0)	0(0)	1(1.2)	1(1.3)
	인재양성과	빈도(%)	0(0)	0(0)	1(1.2)	1(1.3)
	인재육성과	빈도(%)	0(0)	0(0)	1(1.2)	1(1.3)
	주민복지과	빈도(%)	14(9.5)	5(6.0)	0(0)	19(6.0)
	주민복지서비스과	빈도(%)	0(0)	3(3.6)	0(0)	3(9)
	주민복지팀	빈도(%)	1(1.7)	0(0)	0(0)	1(1.3)
	주민생활과	빈도(%)	1(1.7)	0(0)	1(1.2)	2(6)
	주민생활복지과	빈도(%)	1(1.7)	2(2.4)	0(0)	3(9)
	주민생활지원과	빈도(%)	13(8.8)	12(14.3)	2(2.4)	27(8.5)
	주민서비스과	빈도(%)	1(1.7)	0(0)	0(0)	1(1.3)
	체육시설사업소	빈도(%)	0(0)	0(0)	1(1.2)	1(1.3)
	체육진흥과	빈도(%)	1(1.7)	0(0)	1(1.2)	2(6)
	체육청소년과	빈도(%)	0(0)	0(0)	13(15.3)	13(4.1)
	총무과 체육청소년팀	빈도(%)	0(0)	0(0)	1(1.2)	1(1.3)
	평생교육과	빈도(%)	0(0)	0(0)	2(2.4)	2(6)
	평생학습과	빈도(%)	0(0)	0(0)	3(3.5)	3(9)
	평생학습청소년과	빈도(%)	0(0)	0(0)	1(1.2)	1(1.3)
	행복나눔과	빈도(%)	0(0)	2(2.4)	0(0)	2(6)
	행정지원과	빈도(%)	0(0)	0(0)	1(1.2)	1(1.3)
	계	빈도(%)	147(100.0)	84(100.0)	85(100.0)	316(100.0)

위 표와 관련하여, 특히 청소년복지업무의 경우 주무부서가 문화체육부에서 문화관광부로, 국가청소년위원회, 현재의 보건복지가족부로 변환 과정

을 반영하듯, 상대적으로 더욱 다양한 부서에서 업무가 수행되고 있어 업무 수행 부서 간에 일관성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다. 지방자치체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지역 간의 부서명 차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일정부분 의미 있으나,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정부의 아동·청소년 업무 연계협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다양하고 일관성 없는 업무전담부서와 업무체계는 자칫 지역간 연계성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복지업무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또한 아동복지 업무가 상대적으로 “복지”관련 부서에서 주로 수행되는 측면은 이제까지 아동복지관련 정책이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에서의 육성과 복지를 강조하기보다 당장 시급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한 국지적이고 시혜적인 정책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관련부서로 배포된 설문지 수는 총 316부이며 이중 244 곳이 설문에 응답하여 응답률은 77.2%이다. 수거된 설문지는 부실기재여부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IV-5>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관련부서

구분		빈도	%
설문지 응답여부	무응답	72	22.8
	응답	244	77.2
	계	316	100.0

2) 설문조사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수거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41.2%, 여자가 58.8%를 차지하였다.

〈표 IV-6〉 조사응답자의 성별

구분		빈도	%
조사응답자의 성별	남	98	41.2
	여	140	58.8
	계	238	100.0

조사응답자의 아동·청소년업무 종사기간을 살펴보면 1년미만이 45.1%, 1년이상 2년미만 33.0%, 3년이상 4년미만 2.6%, 4년이상 5년미만 2.1%, 5년이상 6년미만 2.1%, 6년이상 7년미만 0.9% 등으로 3년미만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8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1년미만인 경우도 45.1%로 상당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자가 잦은 교체를 경험하며,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는 소수에 달함을 알 수 있다.

〈표 IV-7〉 아동·청소년 업무에 종사한 총기간

구분		빈도	%
아동·청소년업무에 종사한 총기간	1년미만	105	45.1
	1년이상 2년미만	77	33.0
	2년이상 3년미만	27	11.6
	3년이상 4년미만	6	2.6
	4년이상 5년미만	5	2.1
	5년이상 6년미만	5	2.1
	6년이상 7년미만	2	.9
	10년이상 11년미만	1	.4
	11년이상 12년미만	2	.9
	14년이상 15년 미만	1	.4
	15년이상 16년미만	1	.4
	17년이상 18년미만	1	.4
	계	233	100.0

설문조사 작성자가 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국가자격증을 살펴보면 조사에 응답한 233명 중 1/2에 못 미치는 97명만이 아동·청소년관련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지하고 있는 국가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96.0%로 가장 많았다. 이는 본 연구의 주된 연구내용이 아동·청소년 정책 중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치중되어 있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외의 자격증으로는 가정폭력상담사, 보육교사, 상담심리사, 유치원정교사, 평생학습지도사 등이 있었다. 이에 반해 청소년과 관련된 국가자격인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자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사회복지사가 생애단계 전영역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빈곤’, ‘소외’된 서비스 대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능동적 복지와 예방, 육성에 더욱 관심을 갖는 다른 자격증도 함께 취득토록 하거나, 기존의 자격증 소지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표 IV-8〉 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자격증

구분		빈도	%
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관련 국가자격증	없음	3	3.0
	사회복지사	97	96.0
	기타	1	1.0
	계	101	100.0

3)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특성

다음에서는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행정단위와 인구를 고려한 (인구 50만이상) 시, (인구50만미만) 시, (특별, 광역시) 자치구, (농산어촌) 군의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의 세부특성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부특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대해 응답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파악하였다. 문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관한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특성 중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은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한 추진의지가 강하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56.0%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인구 50만 이상시가 77%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인구 50만미만) 시 62.7%, (농산어촌) 군 51.3%, (특별, 광역시) 자치구 5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9> 지방자치단체장의 아동·청소년복지에 대한 추진의지

구분			지역				계	χ2
			(인구50만 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시	(특별, 광역 시) 자치구	(농산어촌) 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은 아동, 청소년복지에 대한 추진의지가 강하다.	그렇지 않다.	빈도	1	2	4	7	14	11.376
		%	7.7	2.7	5.3	9.0	5.8	
	보통	빈도	2	26	33	31	92	
		%	15.4	34.7	44.0	39.7	38.2	
	그렇다.	빈도	6	35	24	32	97	
		%	46.2	46.7	32.0	41.0	40.2	
	매우 그렇다.	빈도	4	12	14	8	38	
		%	30.8	16.0	18.7	10.3	15.8	
계		빈도	13	75	75	78	241	
		%	100.0	100.0	100.0	100.0	100.0	

*<.05, **<.01, ***<.001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특성 중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31%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인구 50만 이상) 시가 38.5%로 가장 높았으며, (인구 50만미만) 시 37%, (특별, 광역시) 자치구 30.6%, (농산어촌) 군 24.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3 안팎의 긍정응답률을 보여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0>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분			지역				계	χ ²
			(인구50만 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시	(특별, 광역 시)자치구	(농산어촌) 군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1	0	2	3	8.535
		%	.0	1.4	.0	2.6	1.3	
	그렇지 않다.	빈도	1	7	11	8	27	
		%	7.7	9.6	14.7	10.3	11.3	
	보통	빈도	7	38	41	49	135	
		%	53.8	52.1	54.7	62.8	56.5	
	그렇다.	빈도	3	20	19	16	58	
		%	23.1	27.4	25.3	20.5	24.3	
계		빈도	13	73	75	78	239	
		%	100.0	100.0	100.0	100.0	100.0	

*<.05, **<.01, ***<.001

<표 IV-11> 아동·청소년 복지분야 예산증가의 필요성

구분			지역				계	χ ²
			(인구50만 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시	(특별, 광역 시)자치구	(농산어촌) 군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에 예산증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빈도	0	0	1	1	2	4.355
		%	.0	.0	1.4	1.3	.8	
	보통	빈도	0	9	10	13	32	
		%	.0	12.2	13.5	16.5	13.3	
	그렇다.	빈도	9	48	47	46	150	
		%	69.2	64.9	63.5	58.2	62.5	
	매우 그렇다.	빈도	4	17	16	19	56	
		%	30.8	23.0	21.6	24.1	23.3	
계		빈도	13	74	74	79	240	
		%	100.0	100.0	100.0	100.0	100.0	

*<.05, **<.01, ***<.001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특성 중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에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85.8%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예산증가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로 (인구 50만이상) 시는 100.0% 전원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인구 50만미만) 시 87.9%, (특별, 광역시) 자치구 85.1%, (농산어촌) 군 82.3% 순으로 응답하여 고르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 예산 증가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IV-12>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증액의 필요성

구분			지역				계	χ ²
			(인구50만 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시	(특별, 광역 시) 자치구	(농산어촌) 군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지방이양사 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	빈도	0	0	0	2	2	12.998
		%	.0	.0	.0	2.6	.8	
	보통	빈도	0	3	3	10	16	
		%	.0	4.0	4.0	12.8	6.7	
	그렇다.	빈도	6	42	46	38	132	
		%	50.0	56.0	61.3	48.7	55.0	
	매우 그렇다.	빈도	6	30	26	28	90	
		%	50.0	40.0	34.7	35.9	37.5	
계		빈도	12	75	75	78	240	
		%	100.0	100.0	100.0	100.0	100.0	

*<.05, **<.01, ***<.001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특성 중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92.5%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역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인구 50만 이상) 시 100.0%, (인구 50만미만) 시 96%, (특별, 광역시) 자치구 96%, (농산어촌) 군 84.6% 순으로 지방이양사업 예산증가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V-13〉 아동·청소년 복지 특성화 사업의 유무

구분			지역				계	χ ²
			(인구50만 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시	(특별, 광역 시)자치구	(농산어촌) 군		
우리 지역에는 지역실정과 문화에 맞으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아동· 청소년 복지 특성화 사업을 가지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0	1	1	2	24.672*
		%	.0	.0	1.3	1.3	.8	
	그렇지 않다.	빈도	1	11	16	23	51	
		%	7.7	14.7	21.3	29.1	21.1	
	보통	빈도	4	36	36	42	118	
		%	30.8	48.0	48.0	53.2	48.8	
	그렇다.	빈도	5	24	19	12	60	
		%	38.5	32.0	25.3	15.2	24.8	
	매우 그렇다.	빈도	3	4	3	1	11	
		%	23.1	5.3	4.0	1.3	4.5	
계		빈도	13	75	75	79	242	
		%	100.0	100.0	100.0	100.0	100.0	

*<.05, **<.01, ***<.001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특성 중 “우리 지역에는 지역실정과 문화에 맞으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아동·청소년 복지특성화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9.3%만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지역실정과 문화를 고려한 특성화된 사업을 가진 경우가 1/3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인구 50만 이상) 시 61.6%, (인구 50만미만) 시 37.3%, (특별, 광역시) 자치구 29.3%, (농산어촌) 군 16.5% 순으로 나타나 지역규모가 적은 (농산어촌) 군 지역으로 갈수록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한 사업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지역별로 다양한 아동·청소년 복지특성화 사업이 필요하되, 특히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특성 중 “우리 지역에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37.7%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역시 1/3 정도의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인구 50만 이상) 시 84.6%, (인구 50만미만) 시 41.3%, (특별, 광역시) 자치구 40.6%, (농산어촌) 군 22.4% 순으로 나타나 역시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질적 수준향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인구 50만이상) 시의 경우 84.6%의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어 이러한 광역지자체의 행정서비스 관련 노하우에 대한 다양한 벤치마킹 혹은 행정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IV-14〉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한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구분			지역				계	χ ²
			(인구50만 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시	(특별, 광역 시) 자치구	(농산어촌) 군		
우리 지역에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아동·청소년복지사업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	빈도	0	9	10	17	36	22.263**
		%	.0	12.0	13.5	22.1	15.1	
	보통	빈도	2	35	34	42	113	
		%	15.4	46.7	45.9	54.5	47.3	
	그렇다.	빈도	10	27	25	17	79	
		%	76.9	36.0	33.8	22.1	33.1	
	매우 그렇다.	빈도	1	4	5	1	11	
		%	7.7	5.3	6.8	1.3	4.6	
계	빈도	13	75	74	77	239		
	%	100.0	100.0	100.0	100.0	100.0		

*<.05, **<.01, ***<.001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특성 중 “우리 지역은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27.9%만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인프라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지역별로는 (인구 50만 이상) 시가 76.9%로 가장 높고, (특별, 광역시) 자치구 37.4%, (인구 50만미만) 시 27.4%, (농산어촌) 군 11.4%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는 아동·청소년복지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반면 역시 지역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인프라가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작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구 50만 미만) 시와 (농산어촌) 군 측면에서의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인프라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IV-15>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인프라 구축

구분			지역				계	χ^2
			(인구50만 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시	(특별, 광역 시) 자치구	(농산어촌 군		
우리 지역은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0	1	5	6	52.284***
		%	.0	.0	1.3	6.3	2.5	
	그렇지 않다.	빈도	2	11	12	30	55	
		%	15.4	15.1	16.0	38.0	22.9	
	보통	빈도	1	42	34	35	112	
		%	7.7	57.5	45.3	44.3	46.7	
	그렇다.	빈도	8	11	23	8	50	
		%	61.5	15.1	30.7	10.1	20.8	
계		빈도	2	9	5	1	17	
		%	15.4	12.3	6.7	1.3	7.1	
		빈도	13	73	75	79	240	
		%	100.0	100.0	100.0	100.0	100.0	

*<.05, **<.01, ***<.001

<표 IV-16>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의 주민참여 기회

구분			지역				계	χ ²
			(인구50만 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시	(특별, 광역 시) 자치구	(농산어 촌) 군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는 주민참여 기회가 열려 있다.	그렇지 않다.	빈도	2	5	11	21	39	16.242
		%	15.4	6.8	15.1	26.6	16.4	
	보통	빈도	4	39	32	36	111	
		%	30.8	53.4	43.8	45.6	46.6	
	그렇다.	빈도	7	25	28	19	79	
		%	53.8	34.2	38.4	24.1	33.2	
	매우 그렇다.	빈도	0	4	2	3	9	
		%	.0	5.5	2.7	3.8	3.8	
계		빈도	13	73	73	79	238	
		%	100.0	100.0	100.0	100.0	100.0	

*<.05, **<.01, ***<.001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특성 중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는 주민참여 기회가 열려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37%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1/3을 약간 넘는 정도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인구 50만 이상) 시가 5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특별, 광역시) 자치구 41.1%, (인구 50만미만) 시 39.7%, (농산어촌) 군 27.9%인 것으로 나타나 소도시 혹은 (농산어촌) 군으로 갈수록 주민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IV-17> 중앙정부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과의 유사성

구분			지역				계	χ ²
			(인구50만 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시	(특별·광역시) 자치구	(농산어촌) 군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아동·청소년복지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1	0	0	1	12.187
		%	.0	1.4	.0	.0	.4	
	그렇지 않다.	빈도	1	10	12	8	31	
		%	7.7	13.5	16.2	10.3	13.0	
	보통	빈도	8	31	41	37	117	
		%	61.5	41.9	55.4	47.4	49.0	
	그렇다.	빈도	3	28	20	32	83	
		%	23.1	37.8	27.0	41.0	34.7	
	매우 그렇다.	빈도	1	4	1	1	7	
		%	7.7	5.4	1.4	1.3	2.9	
계		빈도	13	74	74	78	239	
		%	100.0	100.0	100.0	100.0	100.0	

*<.05, **<.01, ***<.001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특성 중에서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문항에 대해서 37.6%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인구 50만미만) 시(43.2%)와 (농산어촌) 군(42.3%)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 30.8%, (특별, 광역시) 자치구 28.4% 순이었다. 이 결과를 통해, 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특성 중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은 가정이나 지역사회보다 아동·청소년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28%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인구 50만 이상) 시 30.8%, (인구 50만미만) 시 30.7%, (특별, 광역시) 자치구 27.4%, (농산어촌) 군 25.6%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즉,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24.3%이며 지역별로는 (인구 50만 이상) 시 30.8%, (특별, 광역시) 자치구 23.3%, (인구 50만미만) 시 22.7%, (농산어촌) 군 25.6%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 혹은 아동·청소년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 모두 각각 1/3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방향정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V-18〉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의 핵심 대상

구분			지역				계	χ ²
			(인구50만 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시	(특별, 광역시) 자치구	(농산어촌) 군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은 '가정'이나 '지역사회'보다 아동·청소년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 않다.	빈도	4	17	17	20	58	4.781
		%	30.8	22.7	23.3	25.6	24.3	
	보통	빈도	5	35	36	38	114	
		%	38.5	46.7	49.3	48.7	47.7	
	그렇다.	빈도	4	20	20	17	61	
		%	30.8	26.7	27.4	21.8	25.5	
	매우 그렇다.	빈도	0	3	0	3	6	
		%	.0	4.0	.0	3.8	2.5	
	계		빈도	13	75	73	78	239
			%	100.0	100.0	100.0	100.0	100.0

*<.05, **<.01, ***<.001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특성 중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시설(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진다.”는 문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58.8%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2/3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다. 지역별로

는 (인구 50만 이상) 시 84.6%, (인구 50만미만) 시 65.3%, (특별, 광역시) 자치구 62.7%, (농산어촌) 군 44.2%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시설(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과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농산어촌) 군의 협조비율이 낮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산어촌) 군 지역의 아동·청소년시설이 부재한 것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산어촌) 군 지역의 아동·청소년 인프라 부족과 구축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수 있다.

〈표 IV-19〉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시설과의 협력관계

구분			지역				계	χ ²
			(인구50만 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시	(특별, 광역 시) 자치구	(농산어촌) 군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시설(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0	0	2	2	24.124*
		%	.0	.0	.0	2.6	.8	
	그렇지 않다.	빈도	0	1	5	11	17	
		%	.0	1.3	6.7	14.3	7.1	
	보통	빈도	2	25	23	30	80	
		%	15.4	33.3	30.7	39.0	33.3	
	그렇다.	빈도	8	40	32	26	106	
		%	61.5	53.3	42.7	33.8	44.2	
	매우 그렇다.	빈도	3	9	15	8	35	
		%	23.1	12.0	20.0	10.4	14.6	
계		빈도	13	75	75	77	240	
		%	100.0	100.0	100.0	100.0	100.0	

*<.05, **<.01, ***<.001

지역별 복지정책특성의 전반적인 수준과 차이유무를 살펴보기 위해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입력하여 평균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⁵⁵⁾. 전체적으로 가장 열악하게 응답된

55) 단, 긍정적인 내용의 문항과 부정적인 내용의 비교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문항 평균 점수 옆 괄호 안에 긍정적 측면이 강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재부호화(recode)한 점수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문항 순으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늘어야 한다.”가 4.29점(1.71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되었으며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에 예산증가가 필요하다.” 4.08점(1.92점),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3.27점(2.73점),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은 가정이나 지역사회보다 아동·청소년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06점(2.94점)⁵⁶⁾, “우리 지역은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3.07점, “우리 지역에는 지역실정과 문화에 맞으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아동·청소년 복지 특성화 사업을 가지고 있다.” 3.11점,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3.24점,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는 주민참여 기회가 열려있다.” 3.24점, “우리 지역에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아동·청소년복지사업을 가지고 있다.” 3.27점,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시설(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진다.” 3.65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은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한 추진의지가 강하다.” 3.66점 순이었다.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한 단체장의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한 추진의지의 경우에서 조차도 중간값인 3점을 약간 넘는 것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가장 열악하게 지각되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 예산증가’ 등 재정관련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의 필요성’과 ‘개인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을 고려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추진’,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또한 시급함을 알 수 있다.

56) 이 문항은 방향의 긍정·부정성을 결정하기 어려우나, 이 문항에 대한 연구자의 의도가 개인중심보다 가족과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으로의 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바탕한 만큼, 가족, 지역사회 관련 프로그램으로의 방향을 긍정적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하겠다.

<표 IV-20>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특성(평균)

구분		빈도	평균	F 값	Scheffe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은 아동·청소년복지에 대한 추진의지가 강하다.	(인구50만이상) 시	13	4.00	1.888	—
	(인구50만미만) 시	75	3.76		
	(특별,광역시)자치구	75	3.64		
	(농산어촌) 군	78	3.53		
	계	241	3.66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50만이상) 시	13	3.46	1.314	—
	(인구50만미만) 시	73	3.34		
	(특별,광역시)자치구	75	3.21		
	(농산어촌) 군	78	3.13		
	계	239	3.24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에 예산증가가 필요하다.	(인구50만이상) 시	13	4.31	.713	—
	(인구50만미만) 시	74	4.11		
	(특별,광역시)자치구	74	4.05		
	(농산어촌) 군	79	4.05		
	계	240	4.08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늘어야 한다.	(인구50만이상) 시	12	4.50	1.604	—
	(인구50만미만) 시	75	4.36		
	(특별,광역시)자치구	75	4.31		
	(농산어촌) 군	78	4.18		
	계	240			
우리 지역에는 지역실정과 문화에 맞으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아동·청소년 복지 특성화 사업을 가지고 있다.	(인구50만이상) 시	13	3.77	6.867***	A A A B B
	(인구50만미만) 시	75	3.28		
	(특별,광역시)자치구	75	3.09		
	(농산어촌) 군	79	2.86		
	계	242	3.11		
우리 지역에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아동·청소년복지사업을 가지고 있다.	(인구50만이상) 시	13	3.92	6.553***	A A A B
	(인구50만미만) 시	75	3.35		
	(특별,광역시)자치구	74	3.34		
	(농산어촌) 군	77	3.03		
	계	239	3.27		
우리 지역은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인구50만이상) 시	13	3.77	12.655***	A B B B
	(인구50만미만) 시	73	3.25		
	(특별,광역시)자치구	75	3.25		
	(농산어촌) 군	79	2.62		
	계	240	3.07		

구분		빈도	평균	F 값	Scheffe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는 주민참여 기회가 열려 있다.	(인구50만이상) 시	13	3.38	2.755*	-
	(인구50만미만) 시	73	3.38		
	(특별,광역시)자치구	73	3.29		
	(농산어촌) 군	79	3.05		
	계	238	3.24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아동·청소년복지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인구50만이상) 시	13	3.31	1.169	-
	(인구50만미만) 시	74	3.32		
	(특별,광역시)자치구	74	3.14		
	(농산어촌) 군	78	3.33		
	계	239	3.27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은 '가정'이나 '지역사회'보다 아동·청소년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구50만이상) 시	13	3.00	.209	-
	(인구50만미만) 시	75	3.12		
	(특별,광역시)자치구	73	3.04		
	(농산어촌) 군	78	3.04		
	계	239	3.06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시설(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진다.	(인구50만이상) 시	13	4.08	5.454***	A A B A B B
	(인구50만미만) 시	75	3.76		
	(특별,광역시)자치구	75	3.76		
	(농산어촌) 군	77	3.35		
	계	240	3.65		

*<.05, **<.01, ***<.001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특성이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낸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 지역에는 지역실정과 문화에 맞으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아동·청소년 복지 특성화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인구 50만이상) 시 3.77점 혹은 (인구 50만미만) 시 3.28점 보다 (농산어촌) 군 2.86점이 유의미하게 낮은 응답을 보여 (농산어촌) 군 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 특성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우리 지역에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 했다고 생각되는 아동·청소년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인구50만 이상) 시(3.92점), (인구 50만미만) 시(3.35점), (특별, 광역시) 자치구(3.34점)에 비해 (농산어촌) 군(3.03점)이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여 역시 (농산어촌) 군 지역 지방자

치단체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노력 및 지원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우리 지역은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문항에 대해 (인구 50만이상) 시(3.77점)에 비해 (인구 50만미만) 시(3.25점), (특별 광역시) 자치구(3.25점), (농산어촌) 군(2.62점) 모두 유의미하게 낮은 응답을 보여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시설(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진다.”는 문항에 대해 인구 50만이상 시(4.08점)에 비해 농산어촌 군(3.35점)이 유의미하게 열악한 응답을 보여 (농산어촌)군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시설의 건립 및 네트워크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3.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역할 분담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간의 효율적 역할분담과 이에 따른 충실한 업무수행, 네트워크를 주된 성공요소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일천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채 수립되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와 시행착오를 거쳐 한국적 지방자치제의 모형을 구축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서는 실무에서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간의 역할분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한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정책적 제언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의견을 지방자치규모나 단위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다중응답). 정책역할분담에 관한 의견 중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문항에 대해 전체적

으로는 재원확보(43.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분산된 책임영역의 통합과 조정(16.9%), 다양한 자원이 활용가능한 여건과 환경조성(15.7%), 아동·청소년 관련 법체계정비(13.2%), 부처간 유기적 체계망 구축(11.6%), 아동·청소년 건전 보호·육성정책의 수립(11.2%),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6.6%), 정책과 제도의 시행에 대한 평가, 관리 및 통제(6.6%), 법·제도 수정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5.4%), 기타(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다중응답)

구분			지역				계
			(인구50만 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시	(특별, 광역 시)자치구	(농산어촌) 군	
아동·복지 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책과 제도의 시행에 대한 평가, 관리 및 통제	빈도	2	6	7	1	16
		%	15.4	8.0	9.3	1.3	6.6
	재원 확보	빈도	7	30	35	32	104
		%	53.8	40.0	46.7	40.5	43.0
	부처간 유기적 체계망 구축	빈도	2	8	8	10	28
		%	15.4	10.7	10.7	12.7	11.6
	아동·청소년 관련 법체계 정비	빈도	3	14	8	8	32
		%	23.1	17.3	10.7	10.1	13.2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빈도	1	4	4	7	16
		%	7.7	5.3	5.3	8.9	6.6
	분산된 책임 영역의 통합과 조정	빈도	3	16	9	13	41
		%	23.1	21.3	12.0	16.5	16.9
	아동·청소년 건전 보호·육성 정책의 수립	빈도	1	11	7	8	27
		%	7.7	14.7	9.3	10.1	11.2
	법·제도 수정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빈도	0	5	5	3	13
		%	.0	6.7	6.7	3.8	5.4
	다양한 자원이 활용가능한 여건과 환경 조성	빈도	0	8	15	15	38
		%	.0	10.7	20.0	19.0	15.7
	기타	빈도	0	0	1	0	1
		%	.0	.0	1.3	.0	.4
계		빈도	19	102	99	97	316
		%	146.2	134.7	132	122.9	130.6

지역별로는 (인구 50만이상) 시의 경우, 재원확보(53.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법체계 정비(23.1%), 분산된 책임 영역의 통합과 조정(23.1%), 정책과 제도의 시행에 대한 평가, 관리 및 통제

(15.4%) 순이었다. (인구 50만미만) 시의 경우 재원확보(40.0%), 분산된 책임 영역의 통합과 조정(21.3%), 아동·청소년 관련 법체계 정비(17.3%) 순이다.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재원확보(46.7%), 다양한 자원이 활용가능한 여건과 환경조성(20.0%), 분산된 책임 영역의 통합과 조정(12.0%) 순이었다. (농산어촌) 군의 경우 재원확보(40.5%), 다양한 자원이 활용가능한 여건과 환경조성(19.0%), 분산된 책임 영역의 통합과 조정(16.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관계없이 재원확보를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시의 경우에는 분산된 책임영역의 통합과 조정, 아동·청소년 관련 법체계 정비 등 정책총괄 업무를, 자치구와 군의 경우에는 다양한 자원이 활용가능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구축을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과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 정책분담에 관한 의견 중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55.0%)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앙 정부의 정책 실현 및 재원 확보(16.9%), 전문인력의 배치와 활용(16.1%),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14.5%),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7.0%),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의 확립(6.2%),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3.7%), 서비스 전달과 모니터링(2.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53.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앙 정부의 정책실현 및 재원 확보(15.4%), 전문인력의 배치와 활용(15.4%), 아동·청소년복지기관별 특성화 사업 선정 및 활용(15.4%), 서비스 전달과 모니터링(15.4%),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15.4%)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인구 50만 미만 시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5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앙 정부의 정책 실현 및 재원확보(26.7%), 전문인력의 배치와 활용(16.0%)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57.3%),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17.3%), 전문인력의 배치 및 활용

(14.7%) 순이었다. (농산어촌) 군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54.4%), 전문인력의 배치와 활용(17.7%),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15.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별,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17.3%) 인식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표 IV-22〉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구분			지역				계
			(인구50만 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시	(특별, 광역 시) 자치구	(농산어촌) 군	
아동·복지정책과 관련한 지방정부 의 역할과 책임으로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것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빈도	7	40	43	43	133
		%	53.8	53.3	57.3	54.4	55.0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	빈도	0	0	6	3	9
		%	.0	.0	8.0	3.8	3.7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	빈도	1	5	6	5	17
		%	7.7	6.7	8.0	6.3	7.0
	중앙 정부의 정책 실현 및 재원 확보	빈도	2	20	8	11	41
		%	15.4	26.7	10.7	13.9	16.9
	다양한 전문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여건 조성	빈도	0	2	2	5	9
		%	.0	2.7	2.7	6.3	3.7
	전문 인력의 배치와 활용	빈도	2	12	11	14	39
		%	15.4	16.0	14.7	17.7	16.1
	아동·청소년복지기관별 특성화 사업 선정 및 활용	빈도	2	2	3	5	12
		%	15.4	2.7	4.0	6.3	5.0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제의 확립	빈도	0	4	7	4	15
		%	.0	5.3	9.3	5.1	6.2
	서비스 전달과 모니터링	빈도	2	1	1	2	6
		%	15.4	1.3	1.3	2.5	2.5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	빈도	2	8	13	12	35
		%	15.4	10.7	17.3	15.2	14.5
계		빈도	18	94	100	104	316
		%	138.5	125.4	133.3	131.5	130.6

지역별 정책분담에 관한 의견 중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관한 민간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24.8%), 그리고 다양한 아동·청소년복지 관련사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22.3%)을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국가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담당(18.5%), 민간사업의 적극적인 복지사업비 투자확대(12.2%), 다양한 복지서비스 실천과 전달(13.4%), 전문인력의 확충(13.0%),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문제점이나 개선안의 제시 및 평가(8.0%),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6.7%),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3.8%),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3〉 민간기관의 역할과 책임(다중응답)

구분			지역				계
			(인구50만 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시	(특별, 광역 시) 자치구	(농산어촌) 군	
아동·복지정책 과 관련한 민간기관의 역할과 책임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빈도	3	19	22	15	59
		%	23.1	26.0	29.7	19.2	24.8
	전문인력의 확충	빈도	1	10	9	11	31
		%	7.7	13.7	12.2	14.1	13.0
	다양한 복지서비스 실천과 전달	빈도	2	11	5	14	32
		%	15.4	15.1	6.8	17.9	13.4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문제점이나 개선안의 제시 및 평가	빈도	0	9	7	3	19
		%	.0	12.3	9.5	3.8	8.0
	다양한 아동·청소년복지 관련사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빈도	4	14	16	19	53
		%	30.8	19.2	21.6	24.4	22.3
	국가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담당	빈도	2	15	11	16	44
		%	15.4	20.5	14.9	20.5	18.5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빈도	0	2	0	2	4
		%	.0	2.7	.0	2.6	1.7
	민간사업의 적극적인 복지사업비 투자 확대	빈도	3	6	11	9	29
		%	23.1	8.2	14.9	11.5	12.2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빈도	0	2	4	3	9
		%	.0	2.7	5.4	3.8	3.8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빈도	2	3	6	5	16
		%	15.4	4.1	8.1	6.4	6.7
계		빈도	17	91	91	97	296
		%	130.9	124.5	123.1	124.2	124.4

즉, 전반적으로 민간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및 책임을 실제적인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다양한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30.8%),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23.1%), 민간사업의 적극적인 복지사업비 투자 확대(23.1%) 순이며 (인구 50만미만) 시의 경우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26.0%), 국가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담당(20.5%), 다양한 아동·청소년복지 관련사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19.2%) 순이다. (특별,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29.7%), 다양한 아동·청소년복지 관련사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21.6%), 국가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담당(14.9%), 민간사업의 적극적인 복지사업비 투자 확대(14.9%) 순이며 (농산어촌) 군의 경우 다양한 아동·청소년복지 관련사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24.4%), 국가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담당(20.5%),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19.2%) 순으로 나타났다.

4. 지역별 인구·재정규모 및 업무 일반현황

다음은 설문지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인구·재정규모 및 업무 일반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설문지에 기재된 지역별 인구규모와 지역별 아동·청소년 인구를 살펴본 후 역시 설문지에 기재된 지역별 재정규모를 전체예산과 인구 1인당 예산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역시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별 아동·청소년 복지예산과 아동·청소년 인구 1인당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을 살펴본 후 지역별 아동·청소년복지업무 일반현황을 알아본다. 인구 및 재정규모의 기준 시기는 2007년 12월 31일이다.

그러나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 글에서 산출된 지역별 인구·재정규모는 통계연보나 지방재정연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제시되는 수치는 전적으로 아동·청소년 담당자의 설문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통계연보나 지방재정연감을 바탕으로 산

출된 수치와는 상당부분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설문지와 사전공지를 통해 인구통계치의 기준 시기(예: 2007년 12월 31일 기준),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예산과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는 예산항목들에 대해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재된 예산에는 아동·청소년 보육예산과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건립 예산, 혹은 아동·청소년 육성 관련 예산 등이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응답자에 따라 아동·청소년 예산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⁵⁷⁾. 주민등록상 인구현황이나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은 비교적 명확한 반면 아동·청소년 예산,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이 부분의 인구·재정 산출 값 중 특히 아동·청소년 복지 재정관련 산출 값은 설문지 작성자의 이해에 따라 다소 과대 추정되었을 위험이 있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하는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예산 자체를 정확한 절대치로 보거나 인용하기 보다는 아동·청소년 관련예산의 전반적인 수준을 유추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차이를 예상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단, 비교적 명확하고 예상 가능한 사실은 수치의 과대추정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실제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은 여기에서 제시하는 수치보다도 더 적을 것이라는 것이다.

1) 지역별 인구 규모(평균)

인구규모를 평균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1개 지방자치단체 당 평균 인구는 19만 9,852명이며 최소값은 5,114명, 최대값은 106만

57) 이러한 가능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2008년 아동·청소년 복지 사업 내용 분석(※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을 통해서도 예상할 수 있다. 연구자는 세부사업 예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만을 제시토록 하였으나 실제 기재된 내용에는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이외의 아동·청소년 보육관련사업, 아동·청소년 육성관련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에 대한 내용도 설문지 응답자의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에 대한 이해 차이, 아동·청소년 예산에서 복지 관련예산만을 따로 분류하는데서 오는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보육예산, 아동·청소년 육성예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7,702명이다⁵⁸⁾. 지역별로는 (인구 50만이상) 시의 경우 1개 지방자치단체 당 평균 82만 3,74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소값은 62만 3,693명, 최대값은 106만 7,702명이다. (인구 50만미만) 시의 경우 1개 지방자치단체 당 평균 18만 132명이 거주 하고 있으며 최소값은 2만 610명, 최대값은 42만 4,749 명이다. (특별, 광역 시) 자치구의 경우 1개 지방자치단체 당 평균 29만 7,69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소값은 4만 5,383명, 최대값은 61만 6,753명이다. (농산어촌) 군의 경우 1개 지방자치단체 당 평균 5만 4,96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소값은 5,114명, 최대값은 18만 3,261명이다. 남녀 성비는 지역별로 각각 대략 1:1의 비율을 이룬다.

<표 IV-24> 지역별 전체인구

구분			지역				계
			(인구50만 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시	(특별,광역시) 자치구	(농산어촌) 군	
전체인구 59)	계	평균	823,745	180,132	297,693	54,961	199,852
		표준편차	146,047	99,498	151,702	32,469	198,774
		최소값	623,693	20,610	45,383	5,114	5,114
		최대값	1,067,702	424,749	616,753	183,261	1,067,702
	남	평균	363,276	92,728	152,445	27,692	100,002
		표준편차	160,816	49,165	73,569	16,489	97,487
		최소값	35,653	18,692	24,944	8,037	8,037
		최대값	536,253	213,117	302,823	93,811	536,253
	여	평균	360,116	91,391	153,138	27,610	99,700
		표준편차	161,086	48,272	75,646	15,819	97,632
		최소값	35,138	19,083	20,439	6,762	6,762
		최대값	531,449	211,632	313,930	89,450	531,449

아동·청소년 인구규모를 평균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1개당 0세이상 9세미만 아동·청소년 평균수는 3만 1,028명, 9세이상 만 18세미만 아동·청소년 평균수는 2만 5,710명, 18세미만 만 25세미만 아동·청소년 평균수는 2만 3,634명이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1개당 아동·청소년인구(0세이상-25세미만)는 평균 7만 6,697만 5,323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58) 전체인구와 예산의 각 세부항목들은 각각 설문지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항목별 결측치로 인해 세부항목값과 합계간의 계산이 부득이 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59) 예산 및 인구관련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표 IV-25> 지역별 아동·청소년 인구

구분				지역				계	
				(인구50만 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시	(특별,광역시) 자치구	(농산어촌) 군		
아동·청소년 인구	0세이상 9세미만	계	평균	82,035	19,491	62,258	4,433	31,028	
			표준편차	38,248	13,158	160,606	3,417	95,986	
			최소값	6,236	4,475	2,916	1,025	1,025	
			최대값	113,202	58,019	963,381	19,998	963,381	
		남	평균	42,527	10,046	25,601	2,344	13,866	
			표준편차	19,843	6,474	71,725	1,790	42,532	
			최소값	3,239	2,331	1,539	525	525	
			최대값	58,762	29,974	498,572	10,501	498,572	
		여	평균	39,507	9,517	28,216	2,151	14,453	
			표준편차	18,405	6,659	72,434	1,630	43,376	
			최소값	2,997	2,144	1,377	500	500	
			최대값	54,440	30,025	464,809	9,497	464,809	
	9세이상 만18세미만	계	평균	102,262	23,603	39,028	5,512	25,710	
			표준편차	48,782	15,565	20,040	3,659	28,176	
			최소값	8,283	1,148	7,610	1,130	1,130	
			최대값	154,354	65,145	83,325	22,652	154,354	
		남	평균	53,505	12,683	22,652	2,954	14,420	
			표준편차	25,532	8,166	16,685	1,974	16,813	
			최소값	4,310	2,793	2,534	603	603	
			최대값	81,025	33,529	109,573	12,448	109,573	
		여	평균	48,808	11,468	18,417	2,640	12,327	
			표준편차	23,260	7,188	9,462	1,694	13,371	
			최소값	3,973	2,453	2,160	527	527	
			최대값	73,329	31,616	39,100	10,204	73,329	
	18세미만 만25세미만	계	평균	62,272	16,203	45,134	4,918	23,634	
			표준편차	30,363	10,479	62,909	7,063	41,456	
			최소값	6,261	991	4,885	1,452	991	
			최대값	99,636	40,230	340,828	53,873	340,828	
		남	평균	31,762	8,648	21,513	2,687	11,725	
			표준편차	15,295	5,188	31,065	3,559	20,279	
			최소값	3,390	1,755	2,853	817	817	
			최대값	49,790	21,643	177,421	27,039	177,421	
		여	평균	30,587	7,802	22,557	2,274	11,708	
			표준편차	15,190	5,077	32,827	3,570	21,467	
			최소값	2,871	1,544	2,302	577	577	
			최대값	49,846	20,108	163,407	26,834	163,407	
소계				평균	250,584	65,714	118,688	15,018	76,697
				표준편차	87,661	45,411	106,351	10,398	90,391
				최소값	20,780	14,386	15,411	3,965	3,965
				최대값	367,192	231,935	716,085	63,893	716,085

(인구 50만 이상) 시 지방자치단체 1개당 0세이상 9세미만 아동·청소년 평균수는 8만 2,035명, 9세이상 만 18세미만 아동·청소년 평균수는 10만 2,262명, 18세미만 만 25세미만 아동 평균수는 6만 2,272명, 0세이상 25세미만 전체 아동·청소년 인구수는 25만 584명이다. (인구 50만미만) 시 지방자치단체 1개당 0세이상 9세미만 아동·청소년 평균수는 1만 9,491명, 9세이상 만 18세미만 아동·청소년 평균수는 2만 3,603명, 18세미만 만 25세미만 아동·청소년 평균수는 1만 6,203명, 0세이상 25세미만 전체 아동·청소년 인구수는 6만 5,714명이다. (특별, 광역시) 자치구 지방자치단체 1개당 0세이상 9세미만 아동·청소년 평균수는 6만 2,258명, 9세이상 만 18세미만 아동·청소년 평균수는 3만 9,028명, 18세미만 만 25세미만 아동·청소년 평균수는 4만 5,134명, 0세이상 25세미만 전체 아동·청소년 인구수는 11만 8,688명이다. (농산어촌) 군 지방자치단체 1개당 0세이상 9세미만 아동·청소년 평균수는 4,433명, 9세이상 만 18세미만 아동·청소년 평균수는 5,512명, 18세미만 만 25세미만 아동·청소년 평균수는 4,918명, 0세이상 25세미만 전체 아동·청소년 평균 인구수는 1만 5,018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인구 50만 이상) 시의 평균 아동·청소년인구 수가 25만 5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별, 광역시) 자치구 11만 8,688명, (인구 50만 미만) 시 6만 5,714명, (농산어촌) 군 1만 5,018명 순이었다. (농산어촌) 군의 경우 아동·청소년 인구가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2) 지역별 재정규모

(1) 지역별 예산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1개 당 평균 세출 예산은 2,865억 4,919만 4,930원이다. 지역별로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1개 당 평균예산이 8,426억 3,799만 6,000원, (인구 50만 미만) 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1개당 평균예산이 3,980억 2,282만 1,140원, (특별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1개당 평균 예산이 1,699억 8,415만 7,480원, (농산어촌) 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1개당 평균예산이 2,071억 5,092만 9,640 원이었다.

<표 IV-26> 지역별 전체예산(단위: 원)

구분		지역				계
		(인구50만 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시	(특별, 광역시) 자치구	(농산어촌) 군	
전체 예산 (단위: 원)	평균	842,637,996,000	398,022,821,140	169,984,157,480	207,150,929,640	286,549,194,930
	표준편차	49,695,923	189,698,360	90,598,156	110,131,129	241,349,221
	최소값	64,492,681,000	23,365,000	212,239,000	107,600,000	107,600,000
	최대값	1,651,464,785,000	853,500,000,000	334,606,874,000	397,705,639,000	1,651,464,785,000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1개당 평균 세출 예산은 국비 13억 7,968만 2,370원, 시도비 14억 1,958만 5,450원, 자체 17억 1,787만 4,330원으로 총계 46억 7,085만 1,610원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50만 이상) 시의 경우 국비 21억 5,393만 7,440원, 시도비 21억 2,225만 6,750원, 자체 77억 3,011만 120원, 계 109억 1,159만 9,110원이며, (인구50만미만) 시의 경우 국비 18억 2,313만 7,050원, 시도비 14억 3,641만 6,240원, 자체 22억 9,080만 5,050원, 계 59억 2,832만 890원이다. (특별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국비 16억 3,722만 4,640원, 시도비 23억 2,482만 9,180원, 자체 13억 4,612만 3,580원, 계 52억 9,140만 2,690원이며, (농산어촌) 군의 경우 국비 5억 9,430만 9,900원, 시도비 3억 8,519만 3,470원, 자체 6억 4,444만 2,710원, 계 16억 2,524만 5,640원이다.

<표 IV-27>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에산(단위: 원)

구분			지역				계
			(인구50만 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시	(특별, 광역시) 자치구	(농산어촌) 군	
아동·청소년 복지에산	계	평균	10,911,599,110	5,928,320,890	5,291,402,690	1,625,245,640	4,670,851,610
		표준편차	19,789,289	6,245,018	8,823,273	1,657,734	8,043,445
		최소값	75,574,000	285,044,000	44,428,000	27,510,000	27,510,000
		최대값	61,956,161,000	28,568,668,000	44,907,368,000	7,592,917,000	61,956,161,000
	국비	평균	2,153,937,440	1,823,137,050	1,637,224,640	594,309,900	1,379,682,370
		표준편차	4,089,991	2,821,109	3,726,488	901,847	2,856,961
		최소값	15,000,000	21,589,000	5,000,000	700,000	700,000
		최대값	12,845,397,000	12,707,249,000	18,365,808,000	3,993,149,000	18,365,808,000
	시도비	평균	2,122,256,750	1,436,416,240	232,482,9180	385,193,470	1,419,585,450
		표준편차	2,933,049	2,128,007	3,252,070	472,746	2,419,875
		최소값	84,000,000	34,100,000	21,000,000	2,000,000	2,000,000
		최대값	8,985,656,000	10,790,846,000	14,866,758,000	1,968,206,000	14,866,758,000
	자체	평균	7,730,110,120	2,290,805,050	1,346,123,580	644,442,710	1,717,874,330
		표준편차	13,559,195	2,154,580	2,452,544	525,063	3,854,318
		최소값	60,574,000	159,079,000	2,428,000	25,350,000	2,428,000
		최대값	40,125,108,000	9,076,749,000	12,868,868,000	1,959,177,000	40,125,108,000

(2) 인구 1인당 예산

주민등록상 인구 1인당 평균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명당 249만 5,030원이다. 지역별로는 (인구50만 이상) 시 118만 5,623원, (인구50만 미만) 시 279만 8,081원, (특별, 광역시) 자치구 75만 9,578원, (농산어촌) 군 421만 9,701원이다. 인구 1인당 예산은 (농산어촌) 군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구50만미만) 시, (인구 50만이상) 시, (특별, 광역시) 자치구 순이었다. (농산어촌) 군이 (인구 50만이상) 시 혹은 (특별, 광역시) 자치구 보다 유의미하게 주민등록상 인구 1인당 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지역별 주민등록상 인구 1인당 예산(단위: 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Scheffe
지역별 주민 등록상 인구 1인당 예산	(인구50만이상) 시	8	1,185,623	468	357,960	2,063,570	24.801***	AB BC A C
	(인구50만미만) 시	42	2,798,081	2,801	100,740	19,243,040		
	(특별, 광역시) 자치구	49	759,578	683	470	4,445,700		
	(농산어촌) 군	48	4,219,701	2,287	2,270	9,882,450		
계		147	2,495,030	2,482	470	19,243,040		

* $<.05$, ** $<.01$, *** $<.001$

아동·청소년 인구 1인당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9만 4,149원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인구 50만미만) 시가 11만 5,365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산어촌) 군 11만 458원, (특별, 광역시) 자치구 6만 8,095원, (인구 50만이상) 시 5만 1,056원 순이었다. 주민등록상 인구 1인당 평균 세출 예산이 전체적으로 1명당 249만 5,030원이고, 지역별로는 (인구50만 이상) 시 118만 5,623원, (인구50만 미만) 시 279만 8,081원, (특별, 광역시) 자치구 75만 9,578원, (농산어촌) 군 421만 9,701원임을 고려해볼 때, 아동·청소년 1인당 복지예산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 복지영역에 관한 시급한 예산확충이 필요하다.

〈표 IV-29〉 지역별 아동·청소년인구 1인당 아동·청소년복지예산(단위: 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Scheffe
지역별 아동·청소년 인구 1인당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인구50만이상) 시	8	51,056	100	3,640	298,220	1.883	-
	(인구50만미만) 시	38	115,365	104	4,430	399,270		
	(특별, 광역시) 자치구	44	68,095	119	1,020	704,930		
	(농산어촌) 군	42	110,458	117	1,600	655,620		
계		132	94,149	114	1,020	704,930		

* $<.05$, ** $<.01$, *** $<.001$

3) 시도별 재정규모

주민등록상 인구 1인당 예산평균을 시도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1 곳당 인구 1인당 예산은 평균 249만 5,030원이었다. 시도별 인구 1인당 예산 평균을 살펴보면 경상남도가 416만 6,27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북도 388만 9,479원, 전라남도 352만 2,813원, 충청북도 350만 0,267원, 강원도 319만 2,938원, 경상북도 307만 3,326원, 경기도 302만 8,532원, 충청남도 292만 670원, 인천광역시 221만 6,656원, 제주도 163만 7,313원, 서울특별시 98만 8,154원, 울산광역시 97만 0,965원, 대전광역시 86만 1,564원, 광주광역시 73만 6,525원, 대구광역시 54만 7,887원, 부산광역시 45만 9,792원 순이었다.

<표 IV-30> 시도별 주민등록상 인구 1인당 예산(단위: 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Scheffe
시도별 주민등록상 인구 1인당 예산	서울특별시	13	988,154	1,119	540	4,445,700	2.738**	-
	부산광역시	12	459,792	265	23120	980,350		
	대구광역시	5	547,887	441	470	1,221,370		
	인천광역시	9	2,216,656	3,048	9,740	9,882,450		
	광주광역시	4	736,525	186	561,120	1,000,170		
	대전광역시	4	861,564	255	629,180	1,202,850		
	울산광역시	5	970,965	565	546,690	1,742,150		
	경기도	19	3,028,532	4,209	100,740	19,243,040		
	강원도	11	3,192,938	2,162	357,960	7,398,950		
	충청남도	13	2,920,670	1,894	62,550	5,615,610		
	충청북도	4	3,500,267	1,157	2,179,400	4,856,450		
	전라남도	14	3,522,813	1,694	2,270	5,131,690		
	전라북도	8	3,889,479	2,178	6,830	6,294,650		
	경상남도	10	4,166,273	2,356	1,252,020	7,917,440		
	경상북도	15	3,073,326	2,054	33,590	8,478,480		
제주도	1	1,637,313	.	1,637,310	1,637,310			
계	147	2,495,030	2,482	470	19,243,040			

*<.05, **<.01, ***<.001

시도별 아동·청소년인구 1인당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1개 지방자치단체별 1인당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은 평균 9만 4,149원이다. 지역별로는 충청북도가 26만 3,807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19만 8,235원, 경상남도 15만 7,169원, 전라남도 14만 3,357원, 인천광역시 12만 2,476원, 경상북도 10만 3,635원, 강원도 10만 677원, 대전광역시 8만 1,353원, 충청남도 7만 8,773원, 경기도 6만 7,527원, 전라북도 6만 5,089원, 제주도 4만 6,751원, 울산광역시 4만 3,286원, 부산광역시 4만 818원, 대구광역시 2만 9,710원, 서울특별시 2만 4,858원 순이었다.

<표 IV-31> 시도별 아동·청소년인구 1인당 아동·청소년 복지예산(단위: 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Scheffe
시도별 아동·청소년 인구 1인당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서울특별시	11	24,858	16	9,390	67,040	2.086*	-
	부산광역시	8	40,818	58	2,880	171,370		
	대구광역시	6	29,710	29	1,020	71,140		
	인천광역시	7	122,476	109	12,260	285,010		
	광주광역시	4	198,235	338	4,150	704,930		
	대전광역시	5	81,353	93	19,450	242,780		
	울산광역시	4	43,286	54	5,630	123,230		
	경기도	17	67,527	80	6,410	298,220		
	강원도	12	100,677	85	3,640	278,700		
	충청남도	12	78,773	63	5,790	222,150		
	충청북도	4	263,807	284	36,630	655,620		
	전라남도	13	143,357	113	1,600	314,650		
	전라북도	6	65,089	57	15,180	149,590		
	경상남도	9	157,169	114	30,100	399,270		
	경상북도	13	103,635	100	4,430	339,330		
	제주도	1	46,751	.	46,750	46,750		
계		132	94,149	114,81793	1,020	704,930		

*<.05, **<.01, ***<.001

4) 지역별 업무 일반현황

지역별 업무일반 현황 중 지역별 아동·청소년복지업무 분담 현황을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63.6%가 아동복지업무와 청소년복지업무가 한 부서 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36.4%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인구 50만이상) 시의 경우 14.3%, (인구 50만미만) 시의 경우 58.3%, (특별,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66.0%, (농산어촌) 군의 경우 70.9%가 아동복지업무와 청소년복지업무가 한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대도시일수록 아동복지업무와 청소년 복지업무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2〉 지역별 아동·청소년복지업무 분담현황

구분			지역				계	χ 2	
			(인구50 만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시	(특별, 광역시) 자치구	(농산어촌) 군			
아동· 청소년 복지업 무분담 현황	아동복지업무와 청소년복지업무 가 한 부서내에서 이루어 진다.	빈도	1	21	35	39	96	9.187*	
		%	14.3	58.3	66.0	70.9	63.6		
	아동복지업무와 청소년복지업무 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진다.	빈도	6	15	18	16	55		
		%	85.7	41.7	34.0	29.1	36.4		
계			빈도	7	36	53	55	151	
			%	100.0	100.0	100.0	100.0	100.0	

*<.05, **<.01, ***<.001

지역별 아동·청소년복지업무가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담당 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3> 지역별 아동·청소년복지업무가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담당인력

구분			지역			계	χ ²
			(인구50만미만) 시	(특별,광역시)자치구	(농산어촌)군		
아동·청소년복지업무가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담당인력	1	빈도	2	2	11	15	43.758**
		%	14.3	5.4	28.9	16.9	
	2	빈도	3	9	19	31	
		%	21.4	24.3	50.0	34.8	
	3	빈도	5	11	6	22	
		%	35.7	29.7	15.8	24.7	
	4	빈도	1	10	1	12	
		%	7.1	27.0	2.6	13.5	
	5	빈도	0	3	0	3	
		%	.0	8.1	.0	3.4	
	6	빈도	0	1	1	2	
		%	.0	2.7	2.6	2.2	
	7	빈도	1	0	0	1	
		%	7.1	.0	.0	1.1	
	10	빈도	1	0	0	1	
		%	7.1	.0	.0	1.1	
	16	빈도	0	1	0	1	
		%	.0	2.7	.0	1.1	
	20	빈도	1	0	0	1	
		%	7.1	.0	.0	1.1	
계		빈도	14	37	38	89	
		%	100.0	100.0	100.0	100.0	

*<.05, **<.01, ***<.001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청소년복지업무 담당인력이 2명인 경우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명 24.7%, 1명 16.9% 순으로 3명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76.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인구 50만미만) 시의 경우 3명이 3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명 21.4%, 1명 14.3% 순이었다.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3명이 29.7%로 가장 많았고 4명 27.0%, 2명 24.3% 순이었다. (농산어촌) 군의 경우 2명인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로 1명 28.9%, 3명 15.8%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방대한 아동·청소년 업무가 단지 2-3명의 인력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업무추진에 한계가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복지업무 담당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지역별 아동·청소년복지업무가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담당인력을 평균값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1개 지방자치단체당 평균 3.04명이 아동·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인구 50만미만) 시의 경우 4.57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특별, 광역시) 자치구 3.51명, (농산어촌) 군 2.03명으로 나타났다. 시의 경우 비교적 많은 인원이 아동·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고는 있었지만 (50만미만) 시의 평균 아동·청소년인구가 약 6만 5715명임을 고려할 때 최대 담당인력을 대략 5명으로 환산할 경우 담당인력 1명당 대략 14,000 여명의 아동·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34〉 지역별 아동·청소년복지업무가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담당인력(평균)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값	F 값	Scheffe
아동·청소년복지업무가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담당인력	(인구50만미만)시	14	4.57	5.04	1	20	5.989**	A A B B
	(특별, 광역시)자치구	37	3.51	2.39	1	16		
	(농산어촌) 군	38	2.03	1.00	1	6		
계		89	3.04	2.73	1	20		

*<.05, **<.01, ***<.001

지역별 아동복지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복지업무 담당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1명이 52.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2명 19.6%, 3명 13.0%, 4명 8.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인구 50만이상) 시의 경우 2명이 50.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명 25.0%였다. 7명인 경우도 25.0%를 차지하였다. (인구 50만미만) 시의

경우 1명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명 20.0%, 4명 20.0%였다.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1명이 5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명 23.1%, 3명 7.7% 순이었다. (농산어촌) 군은 1명이 77.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명인 경우가 22.2%였다.

〈표 IV-35〉 지역별 아동복지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복지업무담당인력

구분			지역				계	χ ²
			(인구50만이 상) 시	(인구50만미 만) 시	(특별,광역시) 자치구	(농산어촌) 군		
아동 청소년 복지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복지업 무 담당인력	1	빈도	1	9	7	7	24	29.283*
		%	25.0	45.0	53.8	77.8	52.2	
	2	빈도	0	4	3	2	9	
		%	.0	20.0	23.1	22.2	19.6	
	3	빈도	2	3	1	0	6	
		%	50.0	15.0	7.7	.0	13.0	
	4	빈도	0	4	0	0	4	
		%	.0	20.0	.0	.0	8.7	
	7	빈도	1	0	0	0	1	
		%	25.0	.0	.0	.0	2.2	
	10	빈도	0	0	1	0	1	
		%	.0	.0	7.7	.0	2.2	
	15	빈도	0	0	1	0	1	
		%	.0	.0	7.7	.0	2.2	
	계	빈도	4	20	13	9	46	
		%	100.0	100.0	100.0	100.0	100.0	

*<.05, **<.01, ***<.001

지역별 아동복지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복지업무 담당인력 평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35명이며 지역별로는 (인구 50만이상) 시가 3.50명으로 가장 많고 (특별, 광역시) 자치구 3.15명, (인구 50만미만) 시 2.10명, (농산어촌) 군이 1.22명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소도시, 농산어촌의 경우에 아동복지업무 담당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상대

적으로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인구 50만이상) 시의 경우에도 아동담당업무인원이 평균 4명에 미치지 못하여 아동·청소년복지업무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당인력의 시급한 충원이 요청된다 하겠다.

〈표 IV-36〉 지역별 아동복지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복지업무담당인력(평균)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Scheffe
아동·청소년 복지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복지업무 담당인력	(인구50만이상) 시	4	3.50	2.51	1	7	1.358	-
	(인구50만미만) 시	20	2.10	1.21	1	4		
	(특별,광역시)자치구	13	3.15	4.31	1	15		
	(농산어촌) 군	9	1.22	.44	1	2		
계		46	2.35	2.57	1	15		

*<.05, **<.01, ***<.001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청소년 복지업무 담당인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명인 경우가 3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명 23.2%, 2명 17.9%, 4명 14.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구 50만이상) 시의 경우 4명인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3명 25.0%, 8명 25.0%였다. (인구 50만미만) 시의 경우 3명이 30.8%로 가장 많았으며 1명 19.2%, 2명 19.2%, 4명 15.4% 순이었다.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1명이 43.8%로 가장 많았으며 2명 31.3%, 4명 12.5% 순이었다. (농산어촌) 군의 경우 1명이 80.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3명이 20.0%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역시 규모가 작은 (특별, 광역시) 자치구와 (농산어촌) 군이 청소년복지업무 담당인력이 작게 나타났다.

〈표 IV-37〉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청소년복지업무담당인력

구분			지역				계	χ ²
			(인구50만 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시	(특별광역시) 자치구	(농산어촌) 군		
아동·청소년 복지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청소년복지업 무 담당인력	1	빈도	0	5	7	8	20	37.475*
		%	.0	19.2	43.8	80.0	35.7	
	2	빈도	0	5	5	0	10	
		%	.0	19.2	31.3	.0	17.9	
	3	빈도	1	8	2	2	13	
		%	25.0	30.8	12.5	20.0	23.2	
	4	빈도	2	4	2	0	8	
		%	50.0	15.4	12.5	.0	14.3	
	6	빈도	0	2	0	0	2	
		%	.0	7.7	.0	.0	3.6	
	8	빈도	1	0	0	0	1	
		%	25.0	.0	.0	.0	1.8	
	14	빈도	0	1	0	0	1	
		%	.0	3.8	.0	.0	1.8	
	24	빈도	0	1	0	0	1	
		%	.0	3.8	.0	.0	1.8	
계		빈도	4	26	16	10	56	
		%	100.0	100.0	100.0	100.0	100.0	

*<.05, **<.01, ***<.001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청소년복지업무 담당인력 평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평균값이 3.02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인구 50만이상) 시의 경우 4.75명, (인구 50만미만) 시의 경우 4.04명, (특별,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1.94명, (농산어촌) 군의 경우 1.40명으로 나타났다. 역시 인구규모가 큰 지역에 비해 작은 지역의 담당인력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주지할 사실은 아동·청소년 복지업무가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평균 담당인력이 3.04명 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아동·청소년 복지업무가 두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 평균 담당인력이 2.35명, 3.02명임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복지업무가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두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더 많은 인력이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복지업무가 두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아동 복지업무 평균 담당인력 2.35명 보다 청소년 복지업무 평균 담당인력 3.02명이 약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38〉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청소년복지업무 담당인력(평균)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Scheffe
아동·청소년 복지업무가 다른 부서 에서 이루 어지는 경 우 청소년 복 지 업 무 담당인력	(인구50만이상)시	4	4.75	2.21	1	24	2.350	-
	(인구50만미만)시	26	4.04	4.82	1	4		
	(특별,광역시)자치구	16	1.94	1.06	1	3		
	(농산어촌)군	10	1.40	.84	1	24		
계		56	3.02	3.57				

*<.05, **<.01, ***<.001

5.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1) 아동·청소년 관련업무부서 명칭

아동·청소년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업무 부서는 사회복지과가 32.0%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복지과 18.0%, 주민복지과 9.5%, 주민생활지원과 8.8% 순이었다. 아동복지업무만을 수행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주민생활지원과 14.3%, 여성가족과 8.3% 순이었다. 청소년복지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와 체육청소년과가 15.3%로 동일하

게 가장 많았으며 문화체육과 11.8%, 문화관광과 9.4% 순이었다.

(2) 지역별 복지정책특성

가장 열악하게 지각되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 예산증가” 등 재정관련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의 필요성”과 “개인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을 고려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추진”,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또한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산어촌 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열악한 상황이었다.

(3)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의 역할 분담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재원확보(43.0%)가 가장 높았으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서 정책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55.0%)이 가장 높았다. 민간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24.8%), 다양한 아동·청소년복지 관련사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22.3%)이 가장 높았다.

(4) 아동·청소년 인구 1인당 연간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아동·청소년 인구 1인당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9만 4,149원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인구 50만미만) 시가 11만 5,365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산어촌) 군 11만 458원, (특별, 광역시) 자치구 6만 8,095원, (인구 50만이상) 시 5만 1,056원 순이었다. 주민등록상 인구 1인당 평균 세출 예산이 전체적으로 평균 249만 5,030원이고, 지역별로는 (인구 50만 이상) 시 118만 5,623원, (인구50만 미만) 시 279만 8,081원, (특별, 광역

시) 자치구 75만 9,578원, (농산어촌) 군 421만 9,701원임을 고려해볼 때, 아동·청소년 1인당 복지예산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 복지영역에 관한 시급한 예산확충이 필요하다.

2)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문조사한 결과를 통해 도출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업무부서의 중앙정부·지방정부 차원의 업무조직 개선이 필요하다. 담당부서 명칭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복지업무는 같은 부서에서 수행되거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기도 하였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간에도 명칭상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복지업무의 경우 주무부서가 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현재의 보건복지가족부로 변한 과정을 반영하듯, 더욱 다양한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어 업무수행 부서 간에 일관성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다. 지방자치제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지역 간의 부서명 차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일정 부분 의미가 있으나,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정부의 아동·청소년 업무 연계협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다양한 업무체계와 업무전담부서 차이는 자칫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복지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복지업무 부서간에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둘째, 아동·청소년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전문화를 꾀하고 아동·청소년 복지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아동·청소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3년미만이 8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1년미만인 경우도 45.1%로 상당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자가 잦은 교체를 경험하며,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는 소수에 달함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발전가능성, 아동·청소년

전문인력 양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관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간의 체계적인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간의 효율적 역할분담과 이에 따른 충실한 업무수행, 네트워킹을 주된 성공요인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일천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채 수립되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와 시행착오를 거쳐 한국적 지방자치제의 모형을 구축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조사결과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원확보(43.0%), 분산된 책임영역의 통합과 조정(16.9%), 다양한 자원이 활용가능한 여건과 환경조성(15.7%), 아동·청소년 관련 법체계정비(13.2%), 부처간 유기적 체계망 구축(11.6%), 아동·청소년 건전 보호·육성정책의 수립(11.2%) 순이었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55.0%)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실현 및 재원 확보(16.9%), 전문 인력의 배치와 활용(16.1%),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14.5%) 순이었다. 민간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24.8%), 그리고 다양한 아동·청소년복지 관련사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22.3%)을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국가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담당(18.5%), 다양한 복지서비스 실천과 전달(13.4%), 전문인력의 확충(13.0%), 민간사업의 적극적인 복지사업비 투자확대(12.2%)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된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복지업무의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간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분담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 예산 증가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특성 중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에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85.8%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예산증가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

별로 (인구 50만이상) 시는 100.0%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인구 50만미만) 시 87.9%, (특별, 광역시) 자치구 85.1%, (농산어촌) 군 82.3% 순으로 고루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특성 중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92.5%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역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인구 50만 이상) 시 100.0%, (인구 50만미만) 시 96%, (특별, 광역시) 자치구 96%, (농산어촌) 군 84.6% 순으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예산증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특성 중 “우리 지역에는 지역실정과 문화에 맞으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아동·청소년 복지특성화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9.3%만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지역실정과 문화를 고려한 특성화된 사업을 가진 경우가 1/3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특성 중에서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37.6%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인구 50만미만) 시(43.2%)와 (농산어촌) 군(42.3%)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 30.8%, (특별, 광역시) 자치구 28.4% 순이었다. 특히 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우리 지역은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27.9%만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는 아동·청소년복지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반면 역시 지역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인프라가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작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구 50만 미만) 시와 (농산어촌) 군 측면에서의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인프라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단, 농산어촌의 경우

노인과 아동·청소년 인구비율이 타지역과 비교하여 다른 특성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아동·청소년복지관련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필요한 경우 노인과 아동·청소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연령 공동활용 가능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곱째, 아동·청소년 인구 1인당 복지예산의 시급한 확충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시된 것 중 하나는 조사된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규모가 교육예산이나 육성관련 예산을 포함하여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다⁶⁰⁾. 즉, 이러한 과대추정 위험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인구 1인당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은 실제보다 많게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서 나타난 아동·청소년 인구 1인당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이제까지 아동·청소년 예산이 일회성 사업이나 빈곤·장애 아동 등 제한적 대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의 개념에서 계획되고 활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동·청소년 복지는 어려움을 겪거나 현재 가시적인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도 활용되어 져야 한다. 이에 아동·청소년 복지영역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업무영역의 설정, 사회적 여론 형성, 그리고 예산확충이 시급하다 하겠다.

60) 이 글에서 제시하는 수치는 아동·청소년 담당자의 설문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통계연보나 지방재정연감을 바탕으로 산출된 수치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예산 자체를 정확한 절대치로 보거나 인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예산의 전반적인 수준을 유추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차이를 예상하는 정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V.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사례

1. 농산어촌
2. 중소도시
3. 특별·광역시 자치구
4. 종합적 발전방안

V.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사례

이 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타 도시에 비해 비교적 전체사업예산과 자체사업예산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고, 사업수가 많은 등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정과정은 첫째,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30개 정도의 자치단체를 일차적으로 선정하고, 둘째, 인천경기지역,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을 고려하여 대도시(자치구), 중소도시, 농산어촌 도시급별로 각각 3-4개씩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중 담당자의 면담거절로 인해 지역안배에 배치된 경우도 있다.

사례조사는 농산어촌, 중소도시, 특별·광역시 자치구 등 도시급별로 3명의 연구자가 3-4개씩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V-1〉 사례조사 대상 지방자치단체 명단

분 류	시·군·구	세부사업수		사업예산 (단위: 천원)		아동· 청소년 담당자
		아동	청소년	계	자체	
군단위 농산어촌	전라남도 무안군	24	2	1,151,698	297,822	4
	전라남도 해남군	5	4	1,228,918	574,536	3
	경상남도 거창군	6	3	3,923,516	1,331,508	3
	충청북도 음성군	18	2	2,920,390	1,232,588	2
중소도시 (50만↑)	경기도 부천	26	3	8,073,761	4,058,837	12
	경기도 안양	6	7	1,445,370	-	10
중소도시 (50만↓)	전라북도 군산	12	3	7,337,833	4,287,457	10
	경상남도 밀양	9	4	2,315,466	1,641,753	4
특별/ 광역시 자치구	서울광역시 강서구	14	7	3,972,959	901,064	4
	대전광역시 동구	12	1	959,122	323,466	5
	인천광역시 서구	6	7	5,291,026	976,582	8

1. 농산어촌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복지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와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 나누어서 현지 실사를 하였다.

농산어촌의 경우, 2008년 9월 초순부터 방문할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9월 24일에 전남 해남군과 무안군을 방문하고, 9월 25일에 경남 거창군과 충북 음성군을 방문하였다. 방문할 자치단체의 선정은 설문조사에서 비교적 아동·청소년사업을 활발히 하는 곳을 선정하여, 전화로 문의하여 방문에 동의하는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 중에서 자치단체의 축제준비 혹은 담당자의 교육훈련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방문조사에 협조하였다.

농산어촌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방문 조사할 때에는 다음 몇 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첫째, 농산어촌지역은 대도시에 비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수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는데,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예산 배분에서 아동·청소년복지는 어떤 상황인가?

둘째,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사업 중에는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청소년사업(예,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문화존,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고,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업은 무엇인가?

셋째, 2008년 2월에 시작된 새 정부는 기존의 여성가족부의 영유아보육정책,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정책을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실로 통합하였다.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통합된 후 아동청소년활동정책과 아동청소년복지정책으로 조정되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아동·청소년정책을 통합하여 활동업무와 복지업무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넷째, 흔히 농산어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전문 인력도 대도시에 비교하여 낮은데, 열악한 상황에서도 아동·청소년복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특히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를 방문 조사하였는데, 각 자치단체의 방문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해남군

(1) 해남군의 개요

전남 해남군은 해남읍·삼산면·화산면·현산면·송지면·북평면·북일면·옥천면·계곡면·마산면·황산면·산이면·문내면·화원면 등 1개읍 13개면 178개 동리가 있다. 면적은 859.70km²로 전남에서 가장 넓은 군이다. 우리나라 육지부의 최남단인 토말(土末 : 일명 땅끝마을)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되고 도로가 정비되는 등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다.

2007년말 기준 해남군의 인구는 82,529명이고, 그중 9세 미만은 7,090명(8.65%), 9세 이상 18세 미만은 7,707명(9.3%), 18세 이상 25세 미만은 5,713명(6.9%)이다. 아동·청소년은 20,510명으로 전체 인구의 24.9%를 차지한다.

(2) 아동·청소년복지 개요

2007년말 기준 해남군의 전체 예산은 303,551,243천원이고, 그중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은 2,278,612천원으로 전체의 0.8%이다.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의 구성을 보면, 국비가 692,359천원으로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의 30.4%이고, 시도비는 1,039,312천원으로 그것의 45.6%이며, 자체예산은 546,941천원으로 그것의 24.0%이다.

아동·청소년복지예산 중에서 비교적 큰 액수의 사업은 청소년방과후 아카

데미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이다.

〈표 V-2〉 전라남도 해남군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족 복지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53.890	76.945		76.945
	청소년 문화존 운영	38.400	19.200	9.600	9.600
	청소년 예절 교실	4.000		2.000	2.000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7.000	3.500	1.750	1.750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	13.000	6.500	45.000	6.500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50.000			5.0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40.000	20.000		20.000
	지역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지원	80.000	40.000	112.200	40.000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	448.800	224.400	3.000	112.200
	저소득 수능 공부방 지원	12.000	6.000	53.996	3.000
	아동 복지 교사 지원	370.908	262.914	25.000	53.998
	소년 소녀 가정 대학 진학 자금	5.000		5.400	2.500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36.000	25.200	1.500	5.400
	가정 위탁 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	10.000	7.000	11.160	1.500
	소년 소녀 가정 세대 위로금	22.320			11.160

(3) 주요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해남군 가족복지과 아동·청소년팀 팀장과 담당자는 해남군의 아동·청소년 복지 중에서 특징적인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등이라고 말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는 23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그중 21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다. 월평균 2,200천원씩 운영비, 프로그램비, 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지

급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달 1인당 평균 100만원씩 24명에게 지급되며, 연간 예산액은 370,908천원이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아직 낮지만, 운영비와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포함할 때 연간 예산액은 900,108천원이다. 이는 한 지역아동센터당 42,862천원씩 지원되는 셈이다.

해남군에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상 규정되기 이전부터 교회가 운영하는 공부방이 많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된 이후에도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에게 방과후에 학습지도와 하고, 생활지도를 하며, 간식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2008년도 해남군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금액이 9억을 넘는 것은 군 내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인 등대원(62명 아동, 직원 19명)에 대한 지원금 568,488천원을 훨씬 넘는 것이다. 흔히 아동복지는 아동양육시설(구 고아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는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복지비를 크게 상회하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2009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 출석하는 715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방학중에 프로그램과 함께 급식을 지원할 예정인데, 방학중 90일 동안 715명에게 매끼 3,000원씩 계산하면 193,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볼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2009년에 꼭 실현되길 기대한다.

둘째, 해남군은 해남군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를 넘어서 전체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해남군청소년지원센터는 1943년에 설립된 해남YMCA가 수탁하여 운영하는데, 소장 외 4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청소년상담지원 50,000천원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80,0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

러 해남YMCA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사업비는 153,890천원이다.

한편, 해남군에는 청소년수련원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와 유스호스텔 2개소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수련시설이 많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이처럼 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이 많은 것은 해남군에 대둔산(대흥사), 우수영 등 관광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은 것은 좋지만, 대체로 자연권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에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해남군은 해남읍에 청소년복지와 보호를 위한 청소년복지센터로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2009년도 신규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다. 해남고등학교 앞 부지에 40억원(국비 3,520백만원, 군비 480백만원)을 들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려는 것이다. 수련관은 청소년수련시설이면서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향후 해남군 청소년복지의 증진을 위해 기대가 된다.

2) 전라남도 무안군

(1) 무안군의 개요

전남 무안군은 3개의 반도와 2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무안읍·일로읍·삼향면·몽탄면·청계면·현경면·망운면·해제면·운남면 등 2개읍 7개면 105개 동리가 있다. 면적은 432.51km²이다.

2007년 말 기준 무안군의 인구는 61,766명이고, 그중 9세 미만은 5,287명(8.6%), 9세 이상 18세 미만은 6,781명(11.0%), 18세 이상 25세 미만은 4,163명(6.7%)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은 16,231명으로 전체 인구의 26.3%를 차지한다.

(2) 아동·청소년복지 개요

2007년말 기준 무안군의 전체 예산은 240,610,743천원이고, 그중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은 7,592,917천원으로 전체의 3.2%이다.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의 구성을 보면, 국비가 3,866,608천원으로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의 50.9%이고, 도비는 1,898,603천원으로 그것의 25.0%이며, 자체예산은 1,827,706천원으로 그것의 24.1%이다.

아동·청소년복지예산 중에서 비교적 큰 액수의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이다. 무안군은 가정복지담당이 영유아, 아동을 다루고, 체육청소년담당이 청소년을 맡고 있다.

<표 V-3> 전라남도 무안군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복지과 아동복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499.548	349.684	74.932	74.932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6.000		3.000	3.000
	시설아동 생활용돈	12.600		6.300	6.300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	19.200		9.600	9.600
	시설아동 종사자 특별수당	21.480		21.480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197.818	140.221	28.798	28.799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6.000		3.000	3.000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6.000	3.000	1.500	1.500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36.960	29.568	3.696	3.696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5.300	3.710	795	795
	입양아동 양육지원 보조금	6.000	4.200	900	900
	결식아동 급식지원	3.284	1.642	821	821
	학기중 아동급식비	69.540		69.540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58.860	29.430	14.715	14.715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30.960	21.672	4.644	4.644
	아동시설 운영지원	660			660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2,520	2,016	252	252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	8,000		4,000	4,000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	15,360		7,680	7,680
	소년소녀가정세대 명절제수비	6,400		3,200	3,2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16,800	118,800	59,400	138,6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380			4,380
	어린이날 기념행사지원(어린이꿈나무큰잔치)	40,400			40,400
	저소득층 조부모가정 아동위로금	36,000			36,000
	지역아동센터 차등화 인센티브 지원	3,600			3,600
	지역아동센터 외국어 학습 교재비	6,000			6,000
사회복지과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 및 상담센터 운영	9,246			9,246
	청소년 행사	34,850			34,85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53,890	76,945		76,945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운영	1,400	700		700
	청소년 예절교실	4,400		2,200	2,200

(3) 주요 사업의 현황

무안군에서 특색 있는 사업으로 무안군청 아동복지담당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차등지원과 원어민 교육강사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양육비 지원, 그리고 청소년담당자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강조했다.

첫째, 무안군은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매월 개소당 2,000천원씩 연간 288,000천원을 지원하고, 군 자체예산으로 교재비(6,000천원), 간식비 12,000천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2007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하여 프로그램운영 우수센터 1개소에 월 2,100천원을 지원하고, 일반 센터 6개소에 월 2,000천원씩, 그리고 미진 센터 1개소에 월 1,900천원을 지원하였다. 이에 덧붙여 학습교재, 교구 및 간식비로 연간 1,000천원씩 8,000천원을 지원하고,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원

어민 강사를 1명씩 모두 8명을 파견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는 공무원 1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명이 평가위원으로 각 센터당 이용아동수, 종사자수, 급식지원여부,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여 이루어졌다.

2008년 현재 이용아동수가 30명 이상인 3개 센터에는 월 2,100천원을 지원하고, 이용아동수가 20명 이상인 6개 센터에는 2,000천원을, 그리고 이용아동이 10명 이상인 센터에는 1,9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모두 2,200천원씩 지원한다. 우수 프로그램 운영 센터로 지정된 3개 센터에는 운영비 지원과 별도로 매달 100천원씩 모두 300천원(연간 3,600천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시군과 다른 점이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금액은 별로 크지 않지만, 무안군은 등록된 12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9개소뿐만 아니라, 아직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3개소에도 군비로 지원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또한 일 년에 2번씩 평가를 통해서 운영비와 별도로 우수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동·청소년복지의 발전을 위한 좋은 시도이다.

무안군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원어민 교육강사 지원’을 시도할 예정이다. 현재 등록된 13개소에 이주여성 중에서 어학능력이 뛰어난 사람 13명을 파견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은 매달 800천원씩 13명에게 12개월을 지급하면 124,800천원이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아동복지교사와 별도로 원어민 강사 1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것이기에 지역아동센터의 인력을 보충하고 아동에게 영어교육과 함께 다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 사업은 이주여성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계기를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둘째, 무안군은 가정위탁보호와 함께 자체예산으로 조부모가정아동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는 과거 수급자인 아동에서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확대했다. 대상자가 60명에서 135명(88가정)으로 확대되어, 한 달 양육비가 1인당 70,000원이고, 한 달 전체 양육비는 9,450천원이며, 연간 양육비는 113,400천원이다. 한 아동당 양육비는 매월 70천원에 불과하여 많

은 액수는 아니지만, 지급 대상으로 수급자에게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군 자체예산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조부모가정아동 100세대에게 매달 30천원씩 지급하여, 매월 3,000천원, 연간 36,000천원을 지급한다. 그 액수는 많지 않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외)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표명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다.

셋째, 무안군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민간단체인 무안아카데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무안읍내 초등학생 1개반과 중학생 1개반 각각 20명씩 총 40명에게 교육과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다른 지역의 사업과 유사하게 기본선택과정(논술·독서, 수학, 영어, 한문·서예)과 전문선택과정(환경+생태계, 바둑, 중국어, 요가·댄스, 원예치료상담, 일본어, 세계문화, 마술과 과학, 컴퓨터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무안군은 무안종합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생활체육공원과 함께 청소년수련관이 입주하는 이 사업은 2009년말을 목표로 진행중인데, 공정율은 41% 가량이다. 군민의 생활체육 향상과 함께 전지훈련을 위해서 무안군을 찾는 외지선수에게 공간을 개방할 예정이다. 청소년수련관에는 상담실, 특성화실, 정보활동실, 강의실, 세미나실 등과 함께 객실 40여실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 또한 아동·청소년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아니지만, 향후 무안군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기대가 된다.

3) 경상남도 거창군

(1) 거창군의 개요

경남 거창군은 소백산맥과 가야산맥 사이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간분지지

역으로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와 약용작물의 재배지로 이름난 지역이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이곳의 지명이 크고 밝은 벌판이란 의미를 담은 거열(居列)·거사(居陀)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거창읍·가북면·가조면·고제면·남상면·남하면·마리면·북상면·신원면·웅양면·위천면·주상면 등 1개읍 11개면 94개 동리가 있다. 면적은 804.30㎢이다. 2005년말 기준 거창군의 인구는 64,735명(25,406세대)이고, 청소년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이다.

(2) 아동·청소년복지 개요

2008년도 거창군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사업은 494,890천원이다. 그중 국비는 192,195천원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하고, 도비는 73,732천원으로 전체의 14.9%이며, 군비는 229,963천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한다. 대체로 청소년 건전육성 예산 중에서 군 자체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국비이며, 도비의 비중이 가장 낮다.

(3) 주요 사업의 현황

거창군의 아동·청소년복지사업에서 특징적인 사업을 소개해 달라는 요구에 거창군 아동·청소년팀 담당자들은 청소년사업이 활발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거창군에서 청소년관련 사업은 월성눈꽃캠프, 청소년만남의 축제 및 한마음 가요제,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야외영화상영, 청소년풋살대회, 모범청소년표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수련시설 프로그램,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문화존,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청소년자치위원회, 참새미학교, 청소년천체관측대회, 청소년동반자 운영, 청소년유해환경단속, 청소년공부방운영 등을 열거했다.

거창군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고등학교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거창군으로 유학 오는 고등학생이 많아서 다른 군보다 고등학생이 많다.

〈표 V-4〉 경상남도 거창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2008년 예산액(단위: 천 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청소년 팀	월성논꽃축제	10,000			10,000
	청소년 만남의 축제 및 한마음가요제	30,000			30,000
	고3청소년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1,500	750	750	
	야외영화상영	3,000			3,000
	청소년 풋살대회	3,000			3,000
	모범청소년표창	1,000			1,0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30,000			30,000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3,000	6,500		6,50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53,890	76,945	38,472	38,473
	청소년문화존 운영	48,000	19,000	9,500	19,500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13,000	6,500	3,250	3,250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	3,000	1,500		1,500
	참새미학교 운영	2,500			2,500
	청소년전체관측대회	10,000			10,000
	청소년동반자 운영	50,400	21,000	21,000	8,400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2,600		760	1,740
	청소년공부방 운영	120,000	60,000		60,000
	합계	494,890	192,195	73,732	229,963

거창군에는 청소년지원센터를 거창군이 직영을 하면서 위기청소년을 포함하여 일반청소년에게 상담, 찾아가는 상담, 사회복지,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거창YMCA와 거창홍사단 등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월성청소년수련원 등이 있어서 청소년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거창YMCA는 자체 회관을 갖고 있고, 다양한 청소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거창YMCA는 범죄예방위원회 등과 함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민간자율감시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1318해피존사업단의 지원을 받아서 1318해피존을 운영하기도 한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월성청소년수련원이 거창기능대학과 함께 초등학생 4~6학년 40여명에게 영어, 수학, 한문, 컴퓨터, 서예, 체육활동, 공동체놀이, 레크리에이션, 체험 및 현장학습 등을 실시한다. 월성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천체관측대회를 열고, 월성눈꽃캠프를 개최하기도 한다. 월성청소년수련원은 월성(月星)이란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신라시대부터 천체관측을 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거창군에서 청소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거창지역에 명문 고등학교가 많아서 청소년이 많고, 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거창YMCA, 홍사단 등 청소년단체의 지도력 때문이다. 대도시와 떨어져서 외부의 자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창군이 자체 자원을 통해서 청소년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군단위에서도 자체 인재양성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도력을 키우면 아동·청소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창군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열린청소년상담대학’을 개설하여,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 참가자는 교양을 습득하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다. 실제로 최근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을 뽑을 때,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선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한다. 그만큼 좋은 인재를 양성시켜두면, 지역의 복지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

4) 충청북도 음성군

(1) 음성군의 개요

충북 음성군은 예로부터 서울과 경기도지방에서 충청북도로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1987년 12월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수도권과 더욱 가까워져 산업입지 유망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음성읍·금왕읍·소이면·원남면·맹동면·대소면·삼성면·생극면·감곡면 등 2개읍 7개면 114개 동리가 있다. 면적

은 522.01km²이다.

2007년말 기준 음성군의 인구는 86,789명이고, 그중 9세 미만은 10,000명(11.5%), 9세 이상 18세 미만은 10,855명(12.5%), 18세 이상 25세 미만은 5,214명(6.0%)이다. 아동·청소년은 26,069명으로 전체 인구의 30.0%를 차지한다.

(2) 아동·청소년복지 개요

2007년말 기준 음성군의 전체 예산은 261,626,980천원이고, 그중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은 955,029천원으로 전체의 0.37%이다.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의 구성을 보면, 국비가 130,174천원으로 전체의 13.6%이고, 시도비는 312,570천원으로 그것의 32.7%이며, 자체예산은 512,285천원으로 그것의 53.6%이다.

(3) 주요 사업의 현황

음성군이 수행중이거나 기 수행한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중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으면 간략하게 소개하여 주기 바란다는 제안에 담당 사회복지사는 다음 두 가지를 열거했다.

첫째,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이다. 아동양육시설 2개소,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포함하여 전체 아동복지시설이 12개소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하여 많은 편이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이 2개소나 되는 것은 음성군이 아동·청소년복지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다른 시·군의 요보호아동을 음성군이 보호함으로써 지방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음성군에는 1952년에 설립된 음성향애원과 2004년말에 설립된 음성꽃동네 아동복지시설이 있다. 음성향애원은 현재 88명의 아동을 22명의 직원이 양육하고, 음성꽃동네아동복지시설은 100명의 아동을 30명이 양육하고 있다. 당초 음성에는 아동양육시설로 음성향애원 1개소 밖에 없었지만, 국내입양 알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꽃동네천사의 집에서 입양되지 않고 성장한 아동을 위한 아동양육시설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한다.

<표 V-5> 충청북도 음성군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복지과 아동복지	요보호아동지원	600			600
	건전아동육성지원	11.290			11.29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	122.958		61.479	61.479
	소년소녀가정지원	1.680	756	168	756
	아동급식지원 (학기중)	105.450		105.450	
	아동급식지원 (방학중)	91.020	46.420	22.755	21.845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	164.250	57.488	49.275	57.487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	58.800		17.640	57.487
	가정위탁양육지원	48.000	21.600	4.800	21.600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16.800	11.760	2.520	2.520
	입양수수료지원	25.900	18.130	3.885	3.885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12.000	1.500	6.000	4.500
	소년소녀가정 시설아동 등 자립지원	34.000		17.000	17.000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58.320	40.824	8.748	8.748
	아동복지시설운영	1.770.603	684.886	230.178	855.539
	입양기관운영	15.049	7.525	3.762	3.762
	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	20.560		10.280	10.28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90.400	145.200	72.600	72.600
	아동복지교사	240.000	168.000	36.000	36.000
	아동복지시설확충	38.000	19.000	9.500	9.500
사회복지과 청소년복지	청소년활동 지원	5.130			5.130
	청소년 한마음 축제	6.000			6.000
	청소년대상 시상식 및 어울마당	8.000			8.000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56.911			56.911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42.000	21.000		21.000
	소외청소년 문화체험사업	4.000		2.000	2.00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8.000	6.500		11.500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	1.800	900		90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18.720	9.360		9.360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5.000	2.500	1.250	1.250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38.400	19.200	9.600	9.600

문제는 ‘아동복지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1,770,603천원 중의 48.3%인 855,539천원을 음성군이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요보호아동을 돌보는 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인데도, 국비는 684,886천원으로 전체의 38.7%에 불과하고, 도비는 230,178천원으로 전체의 13.0%만을 분담하고 있다. 두 개의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음성군이 부담하는 855,539천원은 음성군이 10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 72,600천원의 11.8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국내입양을 위해서 입양알선기관에 입소되는 아동은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고, 그중 일부는 입양되지만 입양되지 못할 경우에 ‘꽃동네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게 된다. 이점에서 음성에서 태어나서 음성에서 자라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위한 예산보다 음성군이 11.8배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아동양육시설에 입소되는 아동이 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고,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국가가 80%, 시·도가 10%, 시·군·구가 10%씩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재원조달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큰 부담이다.

둘째, 입양기관의 운영이다. 관내 요보호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데, 도내에 1개소밖에 없는 시설인 ‘꽃동네 천사의 집’이 음성군에 소재한다. 입양기관에 대한 운영지원예산은 15,049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8년 상반기에 상담원 1인 인건비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08년 6월말 현재 7명을 국내 입양시켰고, 하반기에는 29명을 입양시킬 예정이다.

한편 음성군의 아동·청소년담당자는 군 단위에서 청소년문화존 사업을 수행하는데 농산어촌은 도시형과 다른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본 연구팀의 연구주제와 다소 거리가 있지만, 군 단위에서 아동·청소년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간략히 소개한다.

청소년문화존은 개념상 한 지역을 문화존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날짜(흔히 특정 주/ 특정 요일)에 청소년이 문화공연 등을 하여 문화마당을 펼치는 것이다. 하지만 군 단위에서는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군청 소재지인 읍단위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읍소재지에 사는 청소년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읍에서 먼 거리에 사는 청소년은 일 년에 단 한 번도 문화존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문화적 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면단위에 사는 청소년은 문화적 소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음성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읍에 문화존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면단위를 순회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농어촌지역에서 아동·청소년복지를 수행할 때 사업의 내용에 따라 이동서비스 혹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시한다.

5) 농산어촌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네 곳의 기초자치단체를 방문조사하면서 농산어촌의 아동·청소년복지는 몇 가지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아동·청소년복지에 대한 전달체계가 제각각이었다. 아동·청소년복지는 대체로 사회복지과 소속의 아동·청소년담당에서 맡은 경우가 많았지만, 아동업무와 청소년업무는 분절되어 있었다. 특히 무안군은 청소년업무를 체육청소년담당이 맡고 있어서 업무량이 많은 체육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청소년업무를 담당할 여력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다.

둘째, 아동·청소년복지를 담당하는 인력의 안정성이 다소 낮았다. 특히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대부분 해당 업무를 수행한지 1년 미만이었다. 청소년업무 담당자는 대부분 행정직이기에 순환보직으로 단기간 일하고, 반면 아동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년 전에 계획을 하기에, 1년 미만인 사람이 많다는 것은 해당 업무를 지속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수행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이 매우 적고, 대부분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로 수행할 뿐이었다. 군이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청소년단체를 지원하거나, 기존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었지만, 예산 단위가 100천원, 1,000천원인 경우가 적지 않아서, 실질적인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넷째, 아동·청소년복지 사업의 대부분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 민간의 전문성이 대도시에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었다. 군청이 아동·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절한 단체가 없거나, 단체는 있더라도 기관 혹은 사업을 책임성 있게 수행할 전문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문 인력이 적은 것도 한 요인이지만, 아동·청소년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보상이 낮고 근로조건이 좋지 않아서 일하던 사람도 좀 더 나은 일자리가 나면 전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팀은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동업무와 청소년업무를 통합한 후에 아동·청소년복지, 아동·청소년활동업무로 분장시킨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정책실이 보육, 아동·청소년활동, 아동·청소년복지로 분장한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게 하여 전달체계를 체계화시켜야 한다. 현재 많은 자치단체는 기존의 아동업무와 청소년업무를 한 부서(아동·청소년담당)로 통합시키고 있지만, 기존처럼 아동업무, 청소년업무로 분장시키고, 아동·청소년복지, 아동·청소년활동으로 분장시키지는 않고 있다. 기존 업무를 통합하여 조정하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와 같이 사업의 속성이 비슷한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에 대한 표준화작업을 중앙정부에서 먼저 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과 지도 감독을 위한 업무를 표준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복지와 아동·청소년활동을 담당할 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업무는 지난 20여년간 구분되어 왔고, 아동업

무는 복지측면에서 청소년업무는 육성측면에서 다루어졌다. 따라서 담당인력도 아동은 사회복지사가 청소년은 일반 행정직이 담당했다. 두 업무가 통합되면, 아동·청소년복지는 복지측면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하고, 아동·청소년활동업무는 사회복지직이나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을 갖춘 행정직이 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청소년복지를 3년 이상 담당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아동·청소년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예산의 분담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전국 어디에 살거나 국민으로서 균등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에서 사는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사업이기에 국가, 시·도, 시·군·구의 재정분담을 80: 10: 10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므로 그 분담비율을 80: 10: 10으로 하거나, 재정자립도가 좋은 자치단체는 50: 25: 25로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80: 10: 10로 할 것을 제안한다. 무안군에서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표준 이상을 지원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역량과 의지에 맡기도록 한다.

넷째, 아동·청소년복지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민간단체를 키우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혁신시켜야 한다. 아동·청소년복지사업은 사실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청소년단체, 사회사업을 신고한 개인 등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사업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자발성과 전문성을 갖고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늘어난 개인 신고기관이 보조금의 사용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관련 법규나 회계교육을 통해서 공익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농산어촌에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인접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습생과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고, 이주여성 중에서 학력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원어민 강사로 활용하는 등 자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거창군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 중에서 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상담대학과 같은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존 아동·청소년복지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 아동·청소년복지업무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에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복지의 내용도 생계급여와 같이 경제적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학습지도, 생활지도, 간식·급식제공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아동학대, 청소년의 가출, 부적응, 지적 능력의 부족 등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지속적인 보살핌, 상담, 치료 등이 이루어질 때, 욕구가 충족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치료형 프로그램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배치가 꼭 필요하다.

특히 농산어촌에는 가정위탁을 받는 아동, 조손가족 등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학대를 받거나 방임된 경우가 많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청소년이 문제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별로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군청이 있는 읍단위에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도 있지만, 면단위에는 전문적 상담을 해줄 인력이 별로 없다. 따라서 가벼운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이나 정신지체와 같은 장애아를 위한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절실하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은 기초교육을 시킨 후에 현장에 투입하고,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우면서,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로부터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멘토링사업이 효과적일 것이다.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수년간 가르쳐서 현장에 내보내기에는 현장의 근무조건이 별로 좋지 않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문가를 양성해서 배치하기보다는 기초교육을 시킨 다음에 현장경험을 통해서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여섯째, 아동·청소년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이 절실하다. 농산어촌에는 우수한 전문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교육청, 혹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시설과 각급 학교와의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 사업 대상자가 서로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과 각급 학교간의 협조가 낮은 수준이기에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가정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하여 군청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데, 뒤늦게 초등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개설하여 아동을 학교에서 보호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동일한 아동을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교실이 서로 쟁탈을 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학교는 운동장, 강당, 도서관, 다양한 문화활동공간이 있기에 이러한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한다면 교육문화 인프라를 더욱 활발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소도시

이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중 중소도시로 분류될 수 있는 기초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 9월 20일부터 10월 초순까지 중소도시 중 인구 10만 및 20만 이상 규모의 도농통합도시 중 권역별로 각 1씩 선정하고, 수도권인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2개 도시를 선정하였는데, 선정도시는 경상남도 밀양시, 전라북도 군산시, 경기도 안양시, 부천시 등 네 개이다. 조사는 사전에 설문자료, 통계연보, 업무분장, 주요업무현황자료 등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한 후, 현지를 방문하여 아동·청소년 복지 담당자와 면담을 통하여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중 일부 담당자의 교육출장, 축제지원 등으로 면담을 하지 못한 도시를 제외하고는 담당자의 면담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1) 경상남도 밀양시

(1) 밀양시 개요

밀양시는 전통과 학문을 숭상하고 충효정신이 투철한 선비의 고장,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역사·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한 고장, 주변 천만 대도시와 인접한 동부경남의 떠오르는 고장으로 인구와 면적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 면적 : 798.94km² (경남의 7.6%) - 2006.12.31현재
- 인구 : 44,412세대, 111,565명 (남 54,824, 여 56,741) - 2007.12.31현재
- 행정구역 : 2읍 9면 5동 (322리통, 1,353반)
- 행정조직 : 2국 2담당관 17과 2직속기관 1사업소이고, 지역여건을 보면,
- 산업구조 : 1차 64%, 2차 9%, 3차 27%

지역특산물로 사과, 대추, 갯잎, 풋고추, 딸기, 단감, 한천 등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SOC 현황은 도로포장률 74.4%, 상수도보급률 57.03% 으로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에 의하여 밀양시, 밀양군 통합으로 전형적인 도·농 복합형 도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지리적 특성은 극동 산내면 남명리 동경 129 ° 1' 극서 무안면 가례리 동경 128 ° 34' 동서간 38km, 극남 하남읍 명례리 북위 35 ° 21' 극북 산내면 원서리 북위 35 ° 38' 남북간 24.5km경남의 동북부에 위치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경북 청도군을 경계하여 주변 6개 시군에 포용되어 있고, 동·서·북 3면은 십산준령에 위치해 있으며 남으로는 낙동강이 유하하여 동북쪽이 높고 서남쪽이 낮으며 동서의 길이가 남북의 길이보다 큰 지형 형태를 이루고 있고 서북쪽은 밀양의 진산인 화악산이 우뚝 솟아 서북풍을 막아 주며 동북쪽으로는 재약산(1,189m)을 중심으로 하여 가지산(1,240m)을 주산으로 하고 남쪽은 천태산(631m), 서쪽으로 운문산(1,188m), 구만산(785m), 철마

산(630m)을 산맥으로 엮어 있으며, 밀양강이 북에서 남으로 합류하여 강유역 토질이 비옥하고 농업이 발달되었다.

(2) 아동·청소년복지 개요

아동·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총무국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1담당 보육, 청소년, 아동 업무를 각각 1명씩 3명이 아동복지시설 지원관리,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추진,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 지도, 청소년보호법 시행 강화,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 강화, 청소년 긴급전화(1388)운영 등의 업무를 분장하여 담당하고 있다. 아동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내실화, 청소년수련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 등 프로그램활성화, 취약 청소년보호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등을 사업목표로 아동복지 시설의 지원 및 확대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관련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밀양시의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기준으로 3,907억원으로 일반회계 3054억원, 특별회계 85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입구조를 보면 지방세 498억원, 세외수입 795억원, 보조금 1084억원, 지방교부세 1446억원, 재정보전금 83억원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한편 세출 중 사회복지예산은 361억원으로 이중 아동복지예산은 124억원, 청소년예산은 6억7천6백만원으로 아동복지예산은 보육예산 88억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2억3천8백만원, 센터 강사료지원 1억9천2백만원 등 19억1천6백만원이며 결식아동지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어려운 아동지원에 8억6천3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어있다. 또한 청소년관련예산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지원 3억8천5백만원, 상담지원센터 운영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등 주로 시설 및 기관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다.

청소년인구수는 2007년도 말 기준 9세에서 18세미만 13,391명, 18세이상 25세미만 10,311명으로 전체인구의 23%가 된다. 한편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7%로 고령사회에 들어 있다. 학교현황은 초등 24개 7,122명, 중

등 14개 4,149명, 일반고 5개 2,695명, 실업계 3개 958명 등이며 대학은 1개교가 있다.

<표 V-6> 경상남도 밀양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025,299			1,025,299
	아동발달 지원계좌	31,680	22,176	4,752	4,752
	결식아동 급식지원	575,490		265,314	310,716
	가정위탁 아동지원	84,000			84,000
	소년소녀 가정지원	16,800			16,800
	어린이날 행사	10,000			10,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78,000		39,000	39,000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	33,600		13,440	20,160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지원	37,030	14,812	11,109	11,109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255,167	204,133	25,517	25,517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공부방운영	28,000	14,000		14,000
	청소년상담센터운영지원	90,000		18,000	72,000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50,400	21,000	21,000	8,400
	청소년문화의집운영	85,000			85,000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감시	10,000			10,000
	청소년축제 및 선도활동	25,000			25,000

(3) 주요사업 현황

청소년복지에 관한 운영사례를 보면 청소년시설로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지원센터가 있으며 문화의 집

이 다른 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상담지원센터는 직영으로 운영되다가 금년 9월 수련관 위탁과 함께 수련관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위기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을 6명의 지도자가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동반자는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청소년관련 전공자들은 아니지만 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에 관한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들로 지역연고가 있는 자들 중 공개로 모집하여 채용하였다. 2007년도 사업실적으로는 대상자 선정 및 상담 사례가 74건으로 대상별로 보면, 편부모가정 28건, 조손가정 13건, 소년소녀 가장 2건, 학교밖 청소년 31건 등이다.

또한 동반자들의 지역연고를 활용하여 태권도장소개, 식당연계 요리학원, 보건소, 산부인과진료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전함에 있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학교급식조리사들과 연계한 밑반찬지원사업도 실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다.

노동부와 연계한 사업으로 학교폭력전문상담사 배치사업은 신청주의형식으로 관내 초·중교에 1인 2개교를 기준으로 7명의 상담사를 14개교에 배치하여 일반상담과 폭력예방사업을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 대상학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한 사업비확보로 인해 지속적인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 한편 위기청소년을 위한 CYS-NET사업은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실시도 희망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15개 지역아동센터운영을 지원하며 국고사업으로 보육강사를 파견하며 결식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 빈곤아동방학 중 학원수강료 지원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교육지원 사업은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책사업으로 학습관을 운영하여 유명강사 초청강의 및 장학금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연계하여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등 지역청소년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었다.

2) 전라북도 군산시

(1) 군산시 개요

군산은 금강과 금만경이 서해로 대단원을 이루며 따뜻이 감싸안은 터잡아 기름진 들과 풍부한 바다, 고즈넉한 산들이 어우러진 서해 중부권 도시이며, 현대 첨단산업도시이자 국제무역항이다. 금강의 끝자락 북위 36도 선이 지나는 곳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포항과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칭따오, 일본의 요코하마와 비슷한 위도에 있다. 동쪽으로 서수면, 서쪽으로는 아름다운 등대가 유명하고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어청도, 남쪽으로 기러기가 날아간다는 이름을 가진 비안도, 북쪽으로는 나포면 원나포가 경계이다. 또한 금강의 왼쪽 끝에 있는데 넓은 호남평야를 뒤에 두고 있으며 서해안의 중심적 항구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서천군, 보령시와 이웃하고 있으며 전주-익산-군산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도시의 서쪽은 바다 및 섬들이 있고 남쪽과 동쪽은 평야와 나지막한 군산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서울에서 231.5km, 부산에서 337.5km, 광주에서 140.0km, 전주에서 47.9km 거리에 이르는 곳에 있으며, 금강의 왼쪽 끝에 호남평야를 배후지로 하는 서해안의 중심적 항구도시로 금강하구둑의 완공으로 충남의 장항, 서천과 연결되어 논산 강경 부여를 포함하는 금강 하류권의 형성 군장산업기지개발, 섬들이 육지가 된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위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1995년1월1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되어 현재의 군산시가 되었다.

인구 면적 등 기본현황을 보면

- 인구 : 261,337명 (남 132,609명, 여 128,728명) 97,237세대
- 면적 : 675.03km² (기존지역 390.08km², 새만금지역 284.95km²)-전북의 8.42%
- 해안선 363.9km
- 행정구역 : 1읍 10면 16동 (125법정동리, 842행정통리, 2,957반, 774 자연부락) 도서 63개 (유인 16, 무인 47)

- 행정조직 : 5국, 4소, 41과, 3전문, 27읍면동
- 공무원 : 정원 1,414명
- 의회 : 의원 24명 (선출 21, 비례 3), 상임위 3개 등이며, 사회기반시설로는
- 주 택 : 보급률 91.65%(86,906호), 도 로 : 2,270개 노선 1,390.7km
- 산업단지 : 29km² (군장국가16, 군산국가 7, 군산지방농공 6)
- 국제항로 : 중국 청도 - 주3회, 중국 석도 - 주3회, 중국 상해 - 주1회, 일본 동경 - 주1회 등이 있다.

한편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260억원, 13개 특별회계 625억원 등 총 4,885억원으로, 세입규모는 보조금 1,513억원, 지방교부세 1,529억원, 자주채원 1,218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4.6%이다.

(2) 아동·청소년복지 개요

아동 및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아동복지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 여성복지과 아동복지담당에서 담당1명, 직원 3명이 각각 아동복지 업무전반 계획 수립 및 추진,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 수립, 사회복지법인 재산대책관계 계획수립을 담당이, 아동복지일반, 아동복지생활시설 관리 및 지원, 아동복지법인 관리, 아동 입양, 어린이날 행사, 아동복지 예산관리, 아동발달계좌(CDA) 사업에 1명, 지역아동센터 관리 및 지원, 그룹 홈 관리, 사회적 일자리 사업 지원에 1명, 급식아동 지원 및 관리 관계, 급식위원회 운영 관리,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지원 관리, 일반사무 등 업무에 1명이 분장하여 담당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 청소년담당에 2명이 전담하고 있는데, 담당 1명이 청소년육성계획수립, 청소년시설확충 및 위탁운영관리, 청소년 문화존 사업추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추진, 청소년 성문화센터운영,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청소년 지원센터관리, 청소년 공부방관리,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 및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직원 1명은 청소년업무 보

조금지급 및 정산,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포상금 지급,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 청소년단체 행사지원, 청소년증 발급, 성년의 날 행사추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정운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시설로는 청소년회관을 시설관리사업소 청소년회관관리과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문화의집은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표 V-7> 전라북도 군산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여성 복지과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765.600	382.800	191.400	191.400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사업)	672.000	470.400	100.800	100.800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	75.336	30.135	22.600	22.60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50.350	225.175	112.588	112.587
	아동급식 지원사업	1.610.835		899.678	711.157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보호지원	217.640		34.092	183.548
	입양아동 지원	108.528	67.570	18.079	22.879
	아동발달지원 계좌	118.800	83.160	17.820	17.820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15.000		31.050	83.95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지방이양)	3.161.720		474.258	2.687.462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179.800		53.940	125.860
	아동복지시설지원	168.134		50.440	117.694
	보호아동 1인1자격 지원	15.000		4.500	10.500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20.240			20.240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	2.000			2.000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4.759			4.759
	아동복지 일반운영비 및 여비	16.280			16.280
문화 체육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93.132		93.132	
	청소년 성문화 센터운영	70.000	35.000	35.000	
	청소년 문화존 사업	38.400	19.200	19.200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12.000	6.000	6.0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60.000	80.000	80.000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93.000		93.0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98.000	28.000	70.000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13.000	6.500	6.500	

한편 아동복지담당 2007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아동복지사업 운영지원을 위한 요보호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및 요보호아동의 보호시설 운영사업 그리고 아동급식 내실화 추진을 위한 저소득아동에게 필요한 급식 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그리고 수요처 발굴 등을 추진전략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으로 아동복지사업운영에 4,287백만원(국비384, 도비804, 시비3,099)으로 사업규모 및 내용을 보면,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지원 (6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1개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129명)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10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1개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23명)이며, 아동급식사업에 1,750백만원(도비1,046, 시비704)으로 사업규모 및 내용은 기존 결식아동(102명), 학기중 결식아동(2,759명), 방학중 결식아동(2,759명)이다. 문화체육과의 주요추진업무에는 청소년관련 사업이 제외되어 있으며, 청소년육성시행계획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아동복지관련 예산은 77억원으로 복지시설지원 36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7억6천만원, 지역아동센터 보육강사비지원 6억7천만원 급식지원 1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관련 예산은 6억3천2백만원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1억 6천만원, 청소년지원센터 1억9천만원, 청소년공부방 9천3백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1억6백만원, 성문화센터 3천만원 등이다. 청소년인구수는 26만명 중 9세이상 19세미만 35,678명, 19세이상 25세미만 19,976명으로 전체인구대비 17.6%로 다른 도시보다 약간 낮은 편이다. 65세이상 노령인구는 전체인구대비 10%를 약간 상회하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각급학교는 152개교로 유치원 57개, 초등학교 54개, 중학교 19개, 고등학교 일반계 7개, 실업계 5개, 전문대학 3개, 대학교 2개 등이다. 학생수는 초등학생 21,256, 중학생 10,719 고등학생 8,905명 등 유치원생 포함 64,105명이다. 소년소녀가장의 수는 2001년 42명에서 2007년 13명으로 이는 가정위탁아동의 지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주요사업 현황

청소년복지에 관한 운영사례를 보면 청소년시설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 1개소,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지원센터 그리고 군산YMCA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다.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수련원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시립도서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편 문화의 집에서는 40명의 정원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공부방은 7개소가 설치운영 중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3개소, 노인회가 2개소 그리고 복지관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 청소년인원수는 하루 15명에서 20명 정도이며 노인회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중국어강좌를,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영어강좌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문화센터를 수련관 내에 설치 운영 중으로 학급단위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다. 문화존 사업은 지역의 4개 단체가 은파관광지를 중심으로 예술공연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교류는 민간단체에서 중국 자매시와 실시하고 있다. CYS-NET이나 쉼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담당자는 중앙정부의 기구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책변화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시설위탁에 따른 위탁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자들의 낮은 처우로 인해 지도감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관내 지역아동센터 38개소 중 28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면 이를 통해 수혜를 보는 아동은 1,000여명에 이른다. 41명의 아동복지교사를 각 센터별 1명에서 2명 정도 파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부스러기 나눔회 전복지회에서 주관이 되어 관리한다. 이들 강사는 연계형과 전담형으로 구분되는데 연계형은 예체능계열의 강사로 권역별 2-3개소를 담당하여 시간별로 아동을 지도한다. 반면, 전담형은 월정액의 보수를 받으며 일정센터에서 학습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7년도는 비예산 시책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인근 고교와 연계

하여 시설과 강사를 지원받아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방학중 대상자들에게 식품권을 배급하며, 기존결식아동은 자원 봉사자들과 연계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1일 체험캠프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아동입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입양아동에 대하여 국비로 13세 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것 이외에 입양후 3년동안 월 10만원씩을 시·도 비로 지원하고 있다.

3) 경기도 안양시

(1) 안양시 개요

안양의 역사는 율목군이라는 행정명칭이 있으나 이전의 원삼국시대와 선사시대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1989년 평촌지역 문화유적 조사시 석기시대의 각종 유물과 청동기시대의 지석묘가 발견되어 안양지역의 오래된 주거근거를 알 수가 있으며 청동기시대를 거쳐 원삼국시대에는 마한의 영토에서, 백제 근초고왕(346-375)때에 백제의 영토가 되었다가 고구려 장수왕(394-491)때 한강연안 및 경기도 전지역이 고구려 남쪽의 영토가 되었다. 안양(安養)이란 명칭은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창건된 안양사(安養寺)에서 유래되었다. 신라 효공왕 4년(900)에 궁예의 후예인 왕건이 금주(시흥)와 과주(과천) 등의 지역을 정벌하기 위해 삼성산을 지나게 되었다.

이때 산꼭대기의 구름이 5가지 빛으로 채색을 이룬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살피게 했다. 구름 밑에서 능정(能正)이란 노스님을 만났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왕건의 뜻과 같으므로 이곳(만안구 석수1동 산 2번지 일대)에 안양사를 창건하게 되었다. 이 안양사로 인해 안양이란 명칭이 탄생하였다. 조선시대에 정조대왕께서 부친 사도세자의 능행을 위해 가설한 만안교의 안(安)자와 함께, 양(養)자는 후세사람에게 인류의 근본인 효의 뜻을 살리기 위해 쓰여진 것으로 짐작한다. 또한 1941년 시흥군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칭되며 쓰였는데 안양이란 불교에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몸을 쉬게 하는 극락정도의 세계로 모든 일이 원만구복하여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은 없는 자유롭고 아늑한 이상향이다.

안양은 서남쪽에 수리산, 북쪽으로는 관악산과 삼성산이 있고 중앙에 타원형의 분지를 이루고 있다. 안양은 서울에서 남서쪽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의 지류인 안양천의 중상류에 발달된 도시다. 안양천을 따라 농업과 공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안양천의 물은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이용되어 사람들은 안양천 유역을 생활터전으로 삼아 왔다. 안양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일찍부터 공업이 발달하고 여러 방면으로 뻗어갈 수 있는 도로가 발달되어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안양은 전 국토면적의 0.05%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동쪽으로는 과천시와 의왕시가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광명시와 시흥시가, 남쪽으로는 군포시와, 북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관악구가 접하고 있다. 1989년부터 1995년까지 평야지대이던 평촌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여 오늘날의 평촌 신도시가 조성되었다.

안양시 인구는 226,720가구, 622,693명으로 인구밀도 : 10,640명/km² 상당히 높은 편이다. 도시면적은 58.52km²이고, 행정구조 : 2구 31동 793통 4,909반으로 이를 구별로 살펴보면

- 만안구 : 14동 361통 2,147반
- 동안구 : 17동 432통 2,762반이다.

73년 시로 승격하였으며 교육기관은 91개교로 초등학교 40, 중학교 24, 고등학교 22, 대학 5개교이다.

2007년 기준 재정규모는 7,339억원으로 일반회계 5,794억원, 특별회계 1,545억원 재정자립도 64.6%, 재정자주도 79.5%이다.

(2) 아동·청소년복지 개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팀에서 1팀장 2명으로 아동복지 총괄, 결식아동 급식관련 시책업무 추진, 가

정위탁아동 선정 및 지원, 시설아동 수급자 책정 및 관리, 시설아동 입·퇴소 관리, 아동복지시설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관리, 지역아동센터, 입양관련업무, 가정위탁아동지원업무, 저소득전세자금의 업무를 담당하며,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팀을 담당 1명, 직원 2명으로 구성하여 전담하고 있다.

〈표 V-8〉 경기도 안양시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팀	아동보호예산 총계	5,021,510	1,582,073	952,848	2,486,351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90,000	63,000	13,500	13,500
	가정위탁양육지원	68,880	33,539	6,888	28,453
	아동발달지원계좌	100,800	70,560	15,120	15,120
	아동복지시설지원	3,752,900			
	지역아동센터 지원	396,000	184,800	92,400	118,800
	아동복지교사	252,000	176,400	37,800	37,800
	저소득층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86,400		43,200	43,200
	요보호아동그룹홈	37,668	15,067	11,300	11,301
체육 청소년과 청소년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5,819,255	1,170,440	800,000	4,738,0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307,780	153,890		153,890
	청소년공부방운영	477,200			
	자활청소년장학금지원	20,400			
	장학금지원	589,990			
	어려운청소년해외문화탐방	50,000			50,000
	주말버스학교	50,000			50,000
	청소년쉼터지원	240,000	65,100	67,450	107,450
	저소득층청소년영어교육지원	19,200		8,000	11,200
	장애청소년문화체험	10,000		4,000	6,000
	청소년상담지원센터	328,960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1팀장 5명이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청소년수련관건립, 수련관, 문화의집 관리, 청소년 공부방관리 운영,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사회단체관리청소년선도 및 보호, 수련시설 점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 과징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지원업무는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에서 1팀장 4명이 관리한다.

아동보호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기준 50억2천만원으로 아동양육시설 운영 3개소 32억7천만원, 지역아동센터 15개소 7억3천4백만원, 아동상담소 1개소지원 2천1백만원, 입양아동지원 2천3천9백만원, 아동발달계좌 350명 1억원, 가정위탁아동 보호비지원 63세대 91명 1억원 등으로 편성되어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아동 300명 가족 400명을 대상으로 6명이 대상자 가구별 사례관리, 의료기관연계 및 의료지원, 부적응아동 및 부모자존감 향상프로그램 유아대상 정서지원프로그램운영 그리고 학습지원 등의 사업에 3억원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다.

한편 청소년 보호 및 육성예산은 158억2천만원으로 수련관 건립 106억원, 청소년쉼터 운영비지원 2억4천, 수련시설지원 4개소 39억원, 청소년위기지원사업 3천만원, 문화존 사업 8천만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지원사업 1억9천만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3억7백만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지원 2억2천만원, 청소년지원센터 8천만원, 청소년직업센터건립 16억9천만원 등이 있으며 쉼터, 지원센터 인건비 등 4억3천만원과 교육지원사업비 82억4천만원은 별도로 편성되어있다.

청소년인구수는 2007년도 말 기준 9세에서 18세미만 85,636명, 18세이상 25세미만 63,984명으로 전체인구의 23.9%가 된다. 학교현황은 초등 40개 51,707명, 중등 22개 29,898명, 고등학교 22개 30,584명 등이며 전문대학 2개교와 대학교 3개교가 있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지원센터 1개소, 일시쉼터 1개소, 단기쉼터 1개소 청소년공부방 28소 등 31개소와 청소년수련시설로 공공수련관 2개, 문화의집 2개, 민간유스호스텔 1개, 청소년직업체험시설 1개소 등 6개소가 있다.

(3) 주요사업 현황

아동복지에 관한 운영사례를 보면 아동양육시설 3개소, 15개소의 지역아

동센터, 그룹홈 1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상담소가 1개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드림스타트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공무원 팀장 1명, 직원 2명 그리고 수행인력 3명 등 6명이 지역사회 내 50개 기관과 네트워크 조직을 유지하고 사업수행기관을 4개소 지정하여 교부금을 지원하며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저소득층 0세부터 12세미만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 등에 대하여 체계적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책사업으로 08년도 예산은 3억원이다.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사례관리, 의료기관연계 서비스, 부적응아동 및 부모자존감 향상프로그램, 유아대상 정서지원프로그램, 학습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특기적성교육, 가족문화체험, 부모자조모임, 건강개별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동을 위한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안전지대 구축사업은 아동대상 범죄발생사건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교육, 위해지역순찰강화를 위해 70단체 1,200명의 순찰인력확보운영, 1388전화의 용도를 확대하여 긴급시 헬프콜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또한 귀가도우미 운영, 호신용품보급, 청소년지킴이업소지정 운영 등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사업을 살펴보면 7억8,85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지원센터는 10명의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청소년일시쉼터 민들레 트락을 24시간 운영하며, 위기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네트워크(CYS-NET)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1388 청소년지원단은 긴급구조, 법률, 조기발견, 의료, 상담복지, 임시생활, 진로취업, 학업, 수련활동, 봉사활동 등의 지원단을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단기쉼터 For-you는 위기청소년을 일시보호하기 위해 24시간 개방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 및 따돌림 등 교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위기상황을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사업은 관내 64개교와 직간접으로 연계하여 지도자양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상담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교육 보육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주말현장체험 학습지원, 해외문화탐방, 방과후아카데미 2개소 운영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공

부방 28개소를 운영하며, 장학사업으로 자활청소년, 근로청소년, 청소년지도위원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실직자가정자녀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 애향복지장학금, 4H장학생, 체육꿈나무청소년육성지원 등 각종 장학제도를 통해 청소년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복지와 별도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방과후 교실운영지원, 영어테마랜드, 급식환경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등 편안한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내실 있는 학교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16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고 있다.

4) 경기도 부천시

(1) 부천시 개요

부천은 1973년 부천시 탄생과 역사를 같이하여 30년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사실이 그렇지 않음은 여러 지면을 통해 알 수 있다. 비록 행정명으로서 부천의 탄생이 우리 뜻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8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흔히들 한일합방이라고 부르나 적절한 역사적 용어가 아니므로 경술국치라 함)를 당한지 4년 후인 1914년 일제에 의해 인위적으로 전국에 걸쳐 부, 군, 면(府, 郡, 面) 통폐합이 단행되면서 부천이란 행정명이 탄생했다.

일제는 그들의 효율적인 식민지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동족마을화 되어 있던 우리나라 사람의 유대관계와 연계관계를 분산·약화시키기 위해 이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 기준을 군에 대해서는 ‘면적 약 40 방리(160km. 그전에는 최대 503방리에서 최소 3방리) 호수 약 1천호 (그전에는 최대 2만 8천호에서 최소 1천8백호)’를 한도로 해서 여기에 미달한 곳은 인접 군에 병합하는 한편, 면에 대해서는 ‘면적 약 4방 리, 호수 약 800호’를 최저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미달한 곳은 이를 병합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전까지 독자적으로 발전해 오던 부평(富平, 조선시대는 부평도호부로 불리다가 대한제국시기에는 부평군으로 불림, 현재 계수동과 옥길동을 제외한 부천시 지역은 부평의 1/3에 해당됨)과 인천부 관할이던 제물포를 제외한 인천, 경기도 남양군의 영흥면·대부면과 강화도의 시도·모도·신도·장봉도 등 광활한 지역을 하나의 군으로 묶어 한 울타리에 넣으면서 명칭도 전지역이 포함된 부평에서 ‘부(富)’를 따고, 그 다음으로 인천에서 ‘천(川)’을 따서 ‘부천군(富川郡)’이라 하였다.

1924년 발행된 <48호>에는 이를 ‘좋은 부천군’이라 하여 부천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부천군의 행정조직은 이전의 31개 면 160동리에서 15개면 84개동리로 축소 조정되어 여러 해 동안 지속해 왔으며, 출발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이를 토대로 현재의 행정조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계남면은 1931년 4월 1일 소사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41년 10월 1일 소사면이 소사읍이 되었다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사회적 변화가 급격하였던 1973년 65,080명으로 증가하자 소사읍 일원만을 가지고 부천시로 승격되었다. 이때까지 행정명칭에 변동이 없던 오정면은 김포군에 잠시 편입되었다가 2년만인 1975년 10월 부천시에 복귀하였고, 계수동, 옥길동이 속했던 소래면은 시흥군에 속하였다가 1983년 계수동 과 옥길동 일부만이 본래대로 부천에 되돌아와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9년 인구 50만명 이상이면 실시되는 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청사를 중심으로는 중구가 되고, 대체로 경인철도를 경계로 하여 이남은 남구가 되었다. 1993년 중동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해 중구를 원미구(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3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와 오정구(성곡동, 원종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로 나누고 역곡1·2동과 중동·상동을 제외한 남구는 소사구(심곡본1동, 심곡본동, 소사본1동, 소사본2동, 소사본3동,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1동, 송내2동)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8년 1월1일 기준으로 한 부천의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 316,479세대

864,037명 (경기도의 7.9%) 원미구 443,290명, 소사구 227,484명, 오정구 193,263명이고, 인구밀도는 16,150/km²로 서울 17,110명/km²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 면적 : 53.50km² (경기도의 0.5%)
- 행정구역 : 3구 37동 655통 4,759반
- 행정조직 : 7국, 2실, 36과, 3직속1과, 2사업소, 3구 26과, 37동
- 공무원 : 2,100명(현원 2,080명) ※ 1인당 주민수 411명
- 학 교 : 122개교 171천명
- 초등학교 59, 중학교 29, 고등학교 28, 특수학교 2, 대학(교) 4
- 원미구관할동(20개동) :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상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1동, 상2동, 상3동
- 소사구관할동(10개동) :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소사본1동, 소사본2동, 소사본3동,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1동, 송내2동
- 오정구관할동(7개동) : 성곡동, 원종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

(2) 아동·청소년복지 개요

청소년 수는 전체인구 864,037명 중 24.2%인 209,354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약간 높은 상태이다. 학교수는 2007년 말 현재 245개교 203,034명으로 유치원 110개소 9,478명, 초등학교 59개교 37,194명, 중학교 29개교 31,337명, 고등학교 26개교 26,871명,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교 16개교 45,734명이다.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팀으로 1팀장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장은 청소년활동 및 보호업무를 총괄하고 활동시설, 복지, 보호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표 V-9> 경기도 부천시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정복지과 아동복지	아동시설운영	831.808	252.866	124.771	454.171
	꿈나무 아동복지관운영비지원	179.554		87.455	92.102
	개인운영신고시설지원	21.600		10.800	10.800
	아동복지시설급여비	201.823	161.459	20.182	20.182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근수당	49.800		24.900	24.900
	아동복지시설아동지원	79.552		39.776	39.776
	새소망의집 아동생일선물비지원	1.950			1.950
	새소망의집 아동문화생활비지원	15.600			15.600
	경기도아동복지시설 아동체육대회참가 경비지원	3.640			3.640
	새소망의집 아동 어린이날 선물비지원	2.600			2.600
	새소망의집 인조잔디설치 사업비	80.000			80.00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80.000	40.000	20.000	20.000
	아동복지교사 지원	672.000	470.400	100.800	100.800
	그룹홈 지원	113.004	45.203	33.900	33.901
	공동생활가정 아동문화생활비 지원	1.800			1.800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90.000	37.800	8.100	44.100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36.528	19.177	4.110	13.241
	어린이날 행사지원	25.000			25.000
	아동관련 위원회 수당	2.730			2.730
	아동관련 교육 강사수당	750			750
	아동관련 교육 지식비	300			300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06.000		103.000	103.000
	아동인권교육 사업추진	3.600			3.600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700.000			700.000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22.400	85.680	18.360	18.360
	퇴소아동자립정착금	40.000	7.500	10.000	22.500
	다문화 한 이웃 프로그램	24.000		16.800	7.200
	저소득층 기숙학교 이용료지원	16.500		16.500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300.000			300.000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24시 다기능학교 운영비	99.450			99.450
각구 주민생활 지원과 아동복지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	371.864	162.006	69.240	140.618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003.200	501.600	250.800	250.800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지원	187.200		93.600	93.600
	아동급식 지원사업	1.896.931	133.740	627.442	1.135.749
가정복지과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날선물지원	20.000			20.000
	요보호아동자립정착금 지원	40.000			40.000
	시설아동 태권도교실 지원	3.000			3.000
	사랑+희망 프로젝트사업	50.000			50.000
체육 청소년과 청소년복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633.320	316.660		316.660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운영	153.561		25.000	128.561
	청소년 쉼터 운영	143.086	35.600	52.200	55.286

아동복지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에서 아동복지와 장묘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1팀장 4명 중 장묘업무를 담당하는 1명을 제외한 3명이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업, 어린이날 행사 지원 및 관리, 아동목 적 사회복지법인관리, 아동건전 육성사업, 가정보호사업, 지역사회아동보호 사업 등을 하고 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9,742억원으로 2007년도 8,032억원보다 21.3%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6,640억원('07년도 5,601억원보다 18.6%증가), 특별회계 3,101억원('07년도 2,431억원보다 27.62%증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청 34억원, 구청 24억원 등 총 76억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1.12%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26억원으로 0.4%에 불과하다.

(3) 주요사업 현황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설문지에 나타난 주요사업현황을 보면, 사랑+희망 2008프로젝트 사업을 소년소녀 및 위탁아동지원을 위해 관내 복지관 5개를

중심으로 학교생활, 건강, 정서, 일상생활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중식비를 초중학교 88개교에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꿈나무아동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한 이웃프로그램사업, 저소득층기숙학교 이용료지원, 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지원 등을 본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었으며, 각 구에서는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사업으로는 2개의 청소년수련관 및 3개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청소년네트워크지원사업, 청소년신문 발행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영어지원사업,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장애청소년문화체험지원, 위기청소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 중소도시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앞에서 조사한 바를 중심으로 중소도시의 아동·청소년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과 예산의 문제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5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약간 양호한 상태이지만 재정자립도와 정책관심도가 저조한 도시의 경우 불과 1명의 인원이 아동 또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서류행정에 그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산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중앙정부의 사업도 담당인력의 부족이나 무관심으로 인해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담당행정부서의 통일을 유도하는 등의 중앙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사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아동·청소년복지업무는 일차적

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사무로 볼 수 있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의 책무가 막중하다 할 것이다. 특히 국가적으로 공통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부담금을 전제하여 실시하여 재정력이 약한 지방정부는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키며 복지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향후 관계법령정비 및 제도개선과정에서 사무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고유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등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요구된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이후 단체장의 마인드와 관심사항에 따라 주요정책방향이 결정된다. 따라서 단체장의 관심이 지역개발보다 복지 분야에 중심될 수 있도록 지역정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강제하며 설득하는 작업이 지역인사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3. 특별·광역시 자치구

특별·광역시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례조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사례조사를 위한 자치단체 선정 중,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역보다 더 적절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으나 기관사정으로 인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치구를 방문 조사할 때에는 다음 몇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전체 인구 대 아동·청소년의 비율과 예산 배분에서 아동·청소년복지는 어떤 상황인가?

둘째, 2008년 2월에 시작된 새 정부가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통합한 후 아동·청소년활동정책과 아동·청소년복지정책으로 조정되었는데, 기초자치단

체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아동·청소년정책을 통합하여 활동업무와 복지업무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셋째,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사업 중에는 ‘Dream Start’,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아동·청소년사업이 있고, ‘We Start’와 같이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넷째,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라 하여도 재정자립도가 타 자치구에 비해 낮은데도 불구하고, 복지욕구는 높아 열악한 상황에 처한 자치구의 경우 아동·청소년복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특히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통해서 네 곳의 기초자치단체를 방문 조사하였는데, 각 자치단체의 방문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1) 강서구의 개요

강서구는 1914년에 전국 행정개혁에 따라 김포군으로 병합되었다가 196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편입, 1977년 영등포구에서 분리되어 다시 강서구로 탄생하였다. 이후 1988년 15개 행정동을 양천구로 분리시키고 이후 일부 동 편입 및 분리 분동을 거쳐 현지는 22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말 기준 강서구의 인구는 560,424명이고, 그중 9세 미만은 50,313명(8.97%), 9세 이상 18세 미만은 64,162명(11.44%), 18세 이상 25세 미만은 54,820명(9.78%)이다. 아동·청소년은 169,295명으로 전체 인구의 30.29%를 차지한다.

(2) 아동·청소년복지 개요

2007년말 기준 강서구의 전체 예산은 273,293,088천원이고, 그중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은 5,989,239천원으로 전체의 2.19%이다.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의 구성을 보면, 국비가 1,860,840천원으로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의 31.06%이고, 시도비는 2,835,093천원으로 그것의 47.33%이며, 자체예산은 1,293,306천원으로 그것의 21.59%이다. 강서구의 재정자립도는 40%이다.

강서구의 경우 아동·청소년 업무는 가정복지과의 아동·청소년팀이라는 단일조직이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① 팀장 : 아동·청소년팀 업무 총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 주요 시책 추진

② 팀원1 : 강서청소년회관운영업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부과업무, 청소년보호법 관련 이의신청·소송업무, 청소년쉼터업무, 청소년관련 위원회 업무

③ 팀원2 :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지도감독,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증발급, 강서어린이숨씨경연대회, 유스페스티벌대회, 청소년관련사회단체, 아동·청소년 표창, 유스테크 운영,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④ 팀원3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관리지원, 아동복지시설 관리지도 감독, 사회복지법인(아동복지관련) 관리지도감독, 입양아동 관리지원, 요보호 아동 상담 및 지원업무, 아동복지관련 일반업무, 어려운 아동·청소년 결연지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이상과 같이 4명의 공무원이 아동·청소년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중 한 명만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아동·청소년복지팀 종사기간은 평균 2년 이었다.

<표 V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정복지과 아동복지	어린이 안전보호사업	51.686		32.645	19.041
	그룹홈 지원	68.759	27.155	41.604	
	소년소녀가정지원	57.210		57.210	
	가정위탁 지원	77.480		77.480	
	일반입양아동 지원	24.800	9.920	14.880	
	장애입양아동 지원	1.102	440	661	
	아동보호전문기관	120.168		120.168	
	결식아동 지원	921.663	221.403	350.130	350.130
	아동복지교사지원	83.640	25.092	58.548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56.000	31.200	124.800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지원	112.978		112.978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20.000		20.000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7.200	10.880	16.320	
	위 스타트 사업	186.000		186.000	
	지온보육원 지원	797.423		797.423	
	아동 후원 및 결연사업	24.832			24.832
가정복지과 청소년복지	어려운청소년장학금	52.872		52.872	
	하이서울장학금	757.770		757.770	
	청소년어울마당	12.749	4.749		8.000
	청소년쉼터운영	60.000	30.000		30.000
	청소년공부방운영	491.592			491.592
	강서유테크운영	9.600		9.600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10.500			10.500
	청소년수련관 건립	1.500.000	1.500.000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	39.600			39.600
	청소년회관운영	315.100			315.100
	청소년유해환경정비	4.510			4.51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보조금	4.000		4.000	

아동·청소년 사업 중 결식아동지원이 921,663천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국비, 시도비, 자체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비와 시도비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그룹홈, 입양아동지원, 아동복지교사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등이 있고, 시도비 지원사업으로는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복지센터운영, 아동복지센터 운영, 위스타트사업, 어려운청소년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보조금 등이 있다. 지자체 자체예산으로만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청소년공부방운영과 아동후원 및 결연사업이 있다.

강서구의 아동·청소년복지사업은 시도비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수도 많고, 예산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경우 서울광역시 자치구 중 노원구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반면 복지수요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지역특성상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임대단독주택 밀집해 있는 지역이 많아 복지욕구가 매우 높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자체예산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요 사업현황

강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둘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 후원과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서푸른이학교 셋째,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We Start 사업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구립청소년공부방

강서구에서는 자체예산(39,600천원)으로 청소년공부방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설립취지는 첫째,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 둘째, 청소년상담을 통한 비행사전예방 셋째,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지도 넷째, 각종 프로그램운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발달 및 문화적지식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용요금은 일일 300원이며 염창동공부방(144석), 발산동공부방(173석), 화곡1동공부방(120석), 공항동공부방(120석), 방화동공부방(168석) 등 5개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강서푸른이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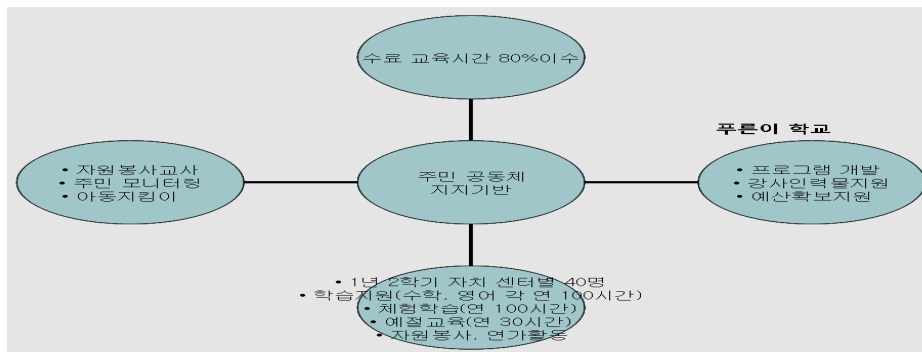
강서푸른이학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2006년 협약을 체결하여 연 5억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 지원과 지역사회 후원 50%로 운영되며 3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내 모금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우려를 하고 있다.

강서푸른이학교는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배움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덕·체(智德體)를 겸비한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푸른이 자치학교」, 「푸른이 Global School」, 「푸른이 평생학습지원센터」로 구성된다. 학교의 운영은 [강서지역아동복지센터], 문화·교육 분야에 [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 [강서청소년회관] 보건·정서 분야에 [강서구정신보건센터],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등 여섯 개 기관이 기본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지역의 다양한 기관, 단체 등과 밀도 높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① 아동·청소년 학습지원활동

■ 푸른이 자치학교

강서푸른이 자치학교는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푸른이 자치학교』를 개강하여, 강서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교육환경 제공을 통한 지역공동체 안전망을 확보한다.



[그림 V-1]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 운영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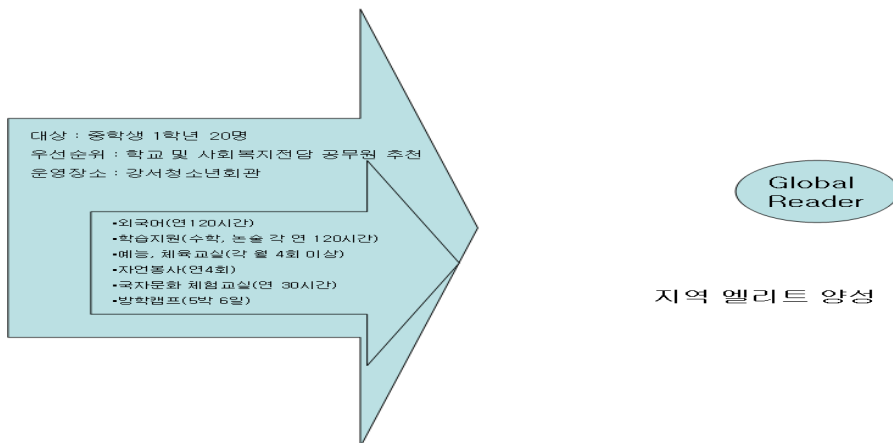
- 주관기관 : 각 동 주민자치센터 및 [강서 푸른이 학교] 컨소시엄
- 연계협력 : 강서구청, 강서교육청
- 연 락 처 : 강서푸른이학교사무국 3665-2454

■ 푸른이 글로벌 스쿨

강서 푸른이 Global School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에게 엘리트교육 및 글로벌 문화체험을 제공하여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특히s 학업능력이 뛰어난 아동·청소년에게 일반적인 교육과 지원이 아닌 지역의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의 자신감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우리사회에 건전한 인격체를 갖춘 글로벌리더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강서 푸른이 Global School의 목표이다.

■ 운영기관

- 주관기관 : 강서청소년회관
- 연계협력 : 강서구청, 강서교육청, 전문외국어학원 및 지역학원 등
[강서 푸른이 학교] 컨소시엄 참여기관
- 연 락 처 :3664-2456



[그림 V-2] 지역 우수학생에 대한 차별화 성장 지원

③ 푸른이 평생학습지원센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특성화 사업 진행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지역 주민교육, 전문가 양성 및 발굴, 솔루션위원회를 통한 위기개입 등의 지역 시설, 자원들 간의 통합적이며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주요사업

■ 솔루션 위원회 및 공동사례관리

학생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위기상황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통합적인 보호,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원활동([행복 지킴이]프로젝트)

아동·청소년에게 현실에 기초한 긍정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자아효능감을 향상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정서적 지원활동을 한다.

■ 아동보호 성장 네트워크 활성화([아이사랑] 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보호환경(지원체제부족, 자원의 부족)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사역량강화, 아동교육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전문아동보호 체계의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아동으로 성장케 한다.

■ 청소년의 진로역량강화([푸른이 진로키움]네트워크)

진로지도 관련 실무자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도자들의 진로지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청소년을 위해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주민인식개선 및 자원활동가 양성([아자자]프로젝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본교육을 통한 관심 유도 및 인식변화와 자발적 참여를 우선으로 하는 자원활동가 및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한다.

■ 권리강화 및 인식교육([어린이지킴이]프로젝트)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여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아동권리를 지킬 수 있는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위기대처능력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한다.

③ We start 사업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복지·교육의 측면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자라는 미래가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기 위해서 가급적 어린 나이에서부터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을 통하여 빈곤층 아동에게 건강·복지·교육면에서 평등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따라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를 진단, 치료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복지·교육의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합동하여 지원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만들기 사업이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보건·복지·교육공동체 구축사업이다.

다음은 We start 사업의 5대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① We start 마을 만들기

이 사업은 빈곤층 아이들이 일정 수준의 교육, 복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입체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마을을 만든다. 마을은 200~300명 정도의 빈곤아동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복지, 교육, 건강 서비스를 3대 축으로 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4개 광역시(경기, 강원, 서울, 전라남도) 20개 지역이 We start 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We start 마을은 센터와 공부방, 아동 보육시설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

의 자치단체, 학교, 복지기관, 의료기관, 자원봉사단체 등과 주민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이들을 돕는다. We start 마을의 운영예산은 기업, 시민의 후원금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한다.

② 교육출발선 만들기

방과후 교실을 활성화하고 무료교육을 실시해 뒤쳐진 공부를 보충하는 한편, 사랑의 책보내기 운동 등을 펼쳐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즉, 빈곤층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동본부에서는 전국 40여개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10만여권의 책과 운선생 영어교실 등의 후원으로 3만여명에게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문화관광부, 롯데관광, 에버랜드 등의 도움으로 문화, 예술 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③ 건강지킴이

보건소, 병원, 약국등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열악한 환경 때문에 건강에 위험을 받고 있는 빈곤층 아이들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하고 치료도 해주는 사업으로 아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아이들의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검진 프로그램의 가동으로 아이들의 정신건강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으로 질병이 발견된 아이들의 지속적인 치료도 하고 있다.

④ 후견인 맺기

빈곤층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후견인을 찾아 맺어주는 사업이며, 이 아이들은 자원봉사 후견인과 교류를 통해 꿈과 희망을 가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게 된다는 신념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1대1 멘토(Mentor)활동이 아이들의 활기를 되찾고 적응력을 갖춰가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어두웠던 아이들에게 활기를 줄 수 있는 멘토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한다.

⑤ 희망의 집 꾸미기

방과 후, 갈 곳이 없거나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쉬거나

배우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학교, 종교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활용한다. 아울러 공부방을 늘리고 기존 아동복지시설의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활동도 펼치며, 넓고 우중충한 공부방을 쾌적한 분위기로 새 단장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2) 인천광역시 서구

(1) 서구의 개요

서구는 1914년 부천군 서곶면으로 관할이 변경, 1940년 4월 1일 인천부 서곶면으로 편입되었다가 1995년 1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로 탄생하였다. 면적이 140.49㎢로 인천의 1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17개동 599통, 2,914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775명으로 1인당 515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 서구의 인구는 399,430명이고, 그중 9세 미만은 44,561명(11.15%), 9세 이상 18세 미만은 58,904명(14.74%), 18세 이상 25세 미만은 35,364명(8.85%)이다. 아동·청소년은 138,829명으로 전체 인구의 34.75%를 차지한다.

(2) 아동·청소년복지 개요

2007년말 기준 서구의 전체 예산은 249,255,000천원이고, 그중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은 39,567,176천원으로 전체의 15.87%이다.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의 구성을 보면, 국비가 15,434,243천원으로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의 39.00%이고, 시도비는 11,264,065천원으로 그것의 28.46%이며, 자체예산은 12,868,868천원으로 그것의 32.52%이다. 서구는 경제자유구역이고 신흥개발지역으로 재정자립도가 34%에 불과하다.

서구의 경우 아동·청소년 업무는 복지서비스과에서 아동업무를 문화체육

과에서 청소년업무를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아동복지사업에는 지역아동센터운영, 한부모가정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국내입양가정 양육비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국비, 시도비, 지자체 자체예산이 고루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청소년복지의 경우, 협의의 청소년복지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이 있었는데 이것들 역시 국비, 시도비, 자체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서구의 경우 아동·청소년복지사업에 관한한 지자체 자체예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청소년복지사업의 경우 청소년활동 관련 복지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예로 청소년복지담당공무원은 서구의 청소년공부방의 성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권역별로 설립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청소년공부방의 기능을 대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며 청소년공부방을 재정비 할 것을 제안했다.

〈표 V-11〉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서비스과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운영	1,235,700	698,400	268,650	268,650
	한부모 가정지원	1,590,154	687,124	558,510	344,520
	결식아동 급식지원	1,971,000	295,650	1,379,700	295,650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228,000	75,600	152,400	
	권역별 어린이 도서관 건립	4,402,000	560,000	1,120,000	2,722,000
문화체육과 청소년복지	연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5,370	6,500	6,500	2,370
	청소년 수련관 운영	162,148	23,200	14,450	124,498
	가정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86,604	15,448	15,448	55,708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2,445,000	500,000	459,000	1,486,0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89,000	35,000	9,500	44,5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77,172	76,945	76,945	23,282

(3) 주요 사업현황

서구에서는 수련관 자원을 활용하여 방과후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첫째, 방과후 학습으로 다양한 예체능, 컴퓨터, 원어민 영어 등의 과외학습을 대체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둘째,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부모 간담회에 설문조사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전문선택과목을 선정하고 예체능,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셋째, 인천시 연합으로 여름 캠프를 1회 실시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과목별 운영 및 계획을 가지고 주요 과목(국어, 수학, 한문) 위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문의 경우 6급 7명, 7급 5명 합격자도 배출하고 있다. 다섯째, 휴교 토요일에는 주로 야외체험활동(도자기체험, 성문화체험, 공연 관람 등)을 실시하고 등교토요일에는 생일잔치와 시설 내 특별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들의 연령과 욕구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운영목표와 내용을 정하고, 프로그램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흥미를 잃지 않도록 프로그램 내용과 질에 신경을 써야 한다.

① 방과후 아카데미 ‘너나두리’

아동·청소년들의 방과후 교육공백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전문화된 교육복지 서비스로 서구청소년수련관의 우수한 교육시설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 소규모 담임제로 운영되는 체계화된 돌봄 시스템을 통해 따뜻하고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모집대상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청소년
(수급자가정 등 어려운 가정의 아동·청소년 우선 선발)

② 교육비

무료 (교재비, 참가비, 재료비 등은 별도 납부)

③ 모집인원

초등학교 4학년(20명), 초등학교 5~6학년(20명)

⑤ 운영시간

월~토 방과후 4~5시간 내외 (석식 및 토요일 중식제공), 귀가차량 운행

⑥ 운영기간

2006년 4월 3일 ~ 12월 31일

⑦ 선발방법

신청 학생 및 보호자 전원 개별 면접 후 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 한부모가정, 취약계층가정으로 선발)

⑧ 신청접수

2006년 3월28일~4월1일

⑨ 교육내용(가안)

■ 힘찬반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5:00~16:00	숙제지도 및 학습지도 : SM전담				
16:00~17:30	댄스	댄스	종이공예	미술, 그리기	마술
17:30~18:10	생활영어	생활영어	미술, 그리기	종이공예	풍선아트
18:10~18:50	저녁식사 및 자유시간 : SM전담				
18:50~20:00	말과글, 논술	원리수학	말과글, 논술	수학	한문
18:50~20:00	정리 및 종례, 귀가지도 : SM전담				

■ 고은반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5:00~16:00	숙제지도 및 학습지도 : SM전담				
16:00~17:30	생활영어	생활영어	미술, 그리기	종이공예	풍성아트
	댄스	댄스	종이공예	미술, 그리기	마술
17:30~18:10	저녁식사 및 자유시간 : SM전담				
18:10~18:50	원리수학	말과글, 논술	한문	말과글	수학
18:50~20:00	정리 및 종례, 귀가지도 : SM전담				

■ 토요일 시간표(등교토요일) 휴무토요일(09:00~14:00)

구분	1주	2주	3주	4주
13:00~13:50	생활지도, 자유시간			
13:50~15:00	점심시간 : SM전담			체험 (현장) 학습
15:00~15:50	영화감상	등산	생일잔치	
16:00~16:50	농구교실		포켓볼,탁구교실	
16:50~18:00	정리 및 종례, 귀가지도			

※ 참가학생 학년별 접수 비율에 따라 반 재편성 가능.
청소년 욕구에 맞는 과목 편성으로 강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1) 동구의 개요

동구는 1977년 9월 1일 대전천을 경계로 동쪽에 동구를 서쪽에 중구를 설치하였다. 1983년 2월에는 대덕군 회덕면 전역을 동구에 편입시키고, 1981년 1월 1일에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동구는 중전의 대덕군 동면일원과 산내면의 낭월, 대별, 이사, 대성, 장척, 소호, 구도, 삼괴, 상소, 하소리를 편입하였고, 동구의 오정, 대화, 읍내, 신대, 와동, 송촌, 법동, 중리, 비래 등을 대덕구에 편입시키면서 행정동 24개동과 법정동 45개동으로 자치구로 승격되었으며 830여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2007년말 기준 동구의 인구는 244,496명이고, 그중 9세 미만은 24,591명(10.05%), 9세 이상 18세 미만은 30,403명(12.43%), 18세 이상 25세 미만은 18,549명(7.58%)이다. 아동·청소년은 73,543명으로 전체 인구의 30.07%를 차지한다.

(2) 아동·청소년복지 개요

2007년말 기준 동구의 전체 예산은 2221,630,000천원이고, 그중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은 5,932,185천원으로 전체의 2.67%이다.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의 구성을 보면, 국비가 826,469천원으로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의 13.93%이고,

시도비는 4,412,021천원으로 그것의 74.37%이며, 자체예산은 693,695천원으로 그것의 11.69%이다.

동구의 경우 아동·청소년 업무는 주민생활복지과, 문화공보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캠페인활동과 청소년공부방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현재 3개의 청소년공부방 중 2개가 폐쇄될 예정이고 한 개의 시설만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캠페인활동의 경우 연간 구비 50만원의 예산으로 범죄예방협의회(검찰소속단체)의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분과위원회에서는 주1회 민간자율감시단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는 월1회 활동을 하고 있다.

<표 V-12> 대전 동구 아동·청소년 사업현황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생활 복지과 아동복지	어린이날 행사	25.000			25.000
	가족사랑 훈련캠프	3.300			3.300
	모.부자 가정자녀 캠프	14.400		7.200	7.200
	희망스타트 문화체험행사	10.000	10.000		
	희망스타트 건강체험행사	6.000	6.000		
	희망스타트 교육프로그램운영	21.000	21.000		
	희망스타트 복지프로그램운영	35.000	35.000		
	희망스타트 건강사업운영	5.000	5.000		
	희망스타트 보육센터운영	10.000	10.000		
	결식아동급식지원	635.522		373.856	261.666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44.000		22.000	22.000
	지역아동센터 운영	13.200		6.600	6.600
문화공보과 청소년복지	한·중·일 청소년홈스테이 축구대회참가	9.000			9.000
	청소년 공부방운영	36.000	21.000		15.000
	청소년수련시설운영	8.000			8.000
주민생활 지원과	동구 청소년 자활센터운영	53.500	37.450	16.050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	22.000		11.000	11.000
전략사업팀	영어 골든벨 대회개최	10.000			10.000
	평생교육국제화센터(영어마을) 운영	1.018.799			1.018.799

(3) 주요 사업현황

대전광역시 동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100% 국비지원으로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① 2008 드림스타트시범사업

이 사업은 취약지역 임산부 및 0~12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공적 전달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및 아동을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

❶ 2008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추진개요

■ 대상지역 : 산내동

■ 사업대상 : 12세 이하 저소득가정 아동 347명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 등

계	기초생활 수급권자 (조손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영유아 2층	차상위	비고
		기초	순수	기초	순수			
347명	137	38	30	9	2	97	34	

■ 사업(서비스) 내용

- 건강 : 건강, 영양 등 방문보건, 보건연계망 구축, 의료개입 등
- 보육 : 보육, 조기교육 프로그램 관리운영, 가정방문 교육 수행
- 복지 : 학대·방임예방 및 안전프로그램, 학교연계, 기초학력증진

■ 추진인력구성 : 드림스타트팀

- 전담공무원 : 4명 / 팀장1(겸직), 간호1, 복지2
- 전문 인력 : 3명 / 간호1, 복지1, 보육1 (기간제근로자)

■ 사 업 비 : 299,975천원 (국비 100%)

■ 통합서비스의 기본방향

- 빈곤아동 개인의 능력 및 기회의 평등 보장
- 맞춤형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서비스 체계 강화
- 빈곤가정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협력, 연계체계 구축
- 체계적이고 욕구에 충족하는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관리

② 영역별 서비스 추진계획

- 서비스 기본 방향(총괄)
-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
- 적극적인 지역자원 개발 및 후원자 발굴
-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수혜가구 편중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서비스 대상 아동 현황

<표 V-13> 연령별 및 보호사유

(2008.7.1현재, 단위:명)

구분	계	기초 조손	모자가정		부자가정		영 유 아	차 상 위	비고
			기초	순수	기초	순수			
계	347	137	38	30	9	2	97	34	
영아(0~2세)	46	9	2	1	0	0	28	6	
유아(3~6세)	118	34	7	8	0	0	57	12	
학령기(7~12세)	183	94	29	21	9	2	12	16	

<표 V-14> 교육기관 등 이용실태

(2008.7.1현재, 단위:명)

구분	계	기초 조손	모자가정		부자가정		영유아	차상위	비고
			기초	순수	기초	순수			
계	347	137	38	30	9	2	97	34	
초등학교	184	94	30	21	9	2	13	15	
보육시설	100	26	6	4	0	0	50	14	
유치원	25	5	0	4	0	0	15	1	
기타보육	1	0	1	0	0	0	0	0	
가정보호	37	12	1	1	0	0	19	4	

※ 당초 364명 중 전출입, 영유아 2층 제외 등으로 17명 감소

기타보육 : 선 교원 이용

가정보호 중 3명은 모가 홈스쿨링

※ 연령별, 교육기관별 세부현황 : 참고자료 1

③ 서비스 총괄

■ 서비스 프로그램 : 3개 영역 22개 분야 52개 사업 121,320천원

- 건강 : 8개 분야 20개 사업 42,920천원, - 복지·지역사회 : 10개 분야 25개 사업 47,400천원, - 보육·교육 : 4개 분야 7개 사업 31,000천원

〈표 V-15〉 건강

프 로 그 램 명		연인원 (명)	추진 기간	소요 예산 (천원)	수행방법	수행 기관
8개 분야 20개 사업		3,400		42,920		
건강 검진	영유아 발달 검사	100	7-12월	1,000	자체 운영	구
	영유아 건강검진	100	7-12월	0	자체 운영	구
건강 교육	모아애착 증진 프로그램	100	7-8월	1,700	자체 운영	구
	안전사고 및 응급대처 교육	150	7-11월	3,000	자체 운영	구
	건강 가족 교육	150	8-12월	800	자체 운영	구
	건강리더 프로그램	120	8-9월	3,000	전문기관위탁	리더십센터
비만 운동	비만 관리 프로그램	160	7-8월	1,000	대전대학 연계	구
	비만 관리 캠프	20	7월	400	보건소 연계	구
정신 건강	정신 건강 프로그램	120	8-12월	1,300	자체 운영	구
	정서 조절 프로그램	200	9-11월	3,000	자체 운영	구
진료 지원	한방진료	100	7-8월	200	함소아한의의원 후원	구
	치과진료	100	8-12월	0	동구치과의사회 후원	구
건강 관리	영유아 건강 관리	150	7-12월	4,500	자체 운영	구
	산전산후 관리	10	7-12월	0	보건소 연계	구
	구강 관리	200	7-12월	2,000	보건소 연계	구
	시력관리	100	7-12월	1,000	안경사 협회 후원	구
	영양 관리	100	7-12월	2,000	보건소 연계	구
	아토피 관리	180	8-10월	3,000	자체 운영	구
방문보건 서비스 및 사례관리		340	7-12월	10,520	자체 운영	구
건강 페스티벌		900	11월	4,500	구, 전문기관위탁	구

<표 V-16> 복지·지역사회

프 로 그 램 명		인원 (명)	추진기간	소요 예산 (천원)	수행방 법	수행기 관	예산과목
총 10개 분야 25개 사업		1,824		47,400			
학 교 사 회 복 지 사 업 운 영	4개 사업	180		7,140	위탁 운영	산내 복지관	307-02
	노는 토요일 프로그램	70	7~12월	3,700			
	아동권리, 학교폭력예방교육	180	9월, 11월	440			
	상담, 정서서비스	180	7~12월	비예산			
	예비중학생 교실	20	12월~1월	3,000			
가 족 기 능 강 화	3개 사업	240		10,350	위탁 운영	산내 복지관	307-02
	초등학교 아동 생일 찾아주기	170	7~12월	2,550			
	한부모, 조손가족 캠프	40	8월	6,000			
	가족 요리교실	30	9월, 12월	1,800			
예체능 교 실 운 영	4개 사업	83		5,410	위탁 운영	산내 복지관	307-02
	오카리나 교실	23	8~11월	1,520			
	pop 예쁜글씨쓰기 교실	20	9~10월	1,060			
	유행방송댄스 교실	20	7~11월	1,600			
	어린이 요가 교실	20	7~9월	1,230			
드림영어교실		25	9~11월	6,000	위탁 운영	국제화 센터	307-02
부적응 아동지 도	3개 사업	60		3,600	위탁 운영	대전대	307-02
	부적응아동 집단상담	20	7~12월	1,600			
	심리상담, 치료지원	5	7~12월	2,000			
	학력 부진아동 멘토링	20	7~12월	비예산			
아 동 안 전 보 호	3개 사업	240		2,500	위탁 운영	산내 복지관	307-02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	180	9월, 11월	1,000			
	한부모가정 아동등 야간보호	30	7~12월	1,500			
	결식우려아동 급식	30	7~12월	비예산			
문 화 체 험	2개 사업	80		10,000	자체 운영	구	201-03
	다양한 축제 참여	40	7~12월	4,000			
	스키캠프	40	12월	6,000			
통 합 사 례 관 리	3개 사업	347		300	자체 운영	구	201-01
	사례관리자 교육	6	7~12월	300			
	대상자 사례 관리	347	7~12월	비예산			
	가족지원서비스	208	7~12월	비예산			
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자 교육		40	9~12월	1,200	자체	구	201-01
자원 봉사		20	7~12월	900	자체	구	201-01

<표 V-17> 보육·교육

프 로 그 램 명			인원	추진 기간	소요 예산	수행 방법	수행 기관	예산 과목
총계(4개분야 7개 사업)			190		31,000			
보육 센터 운영	5개 사업		100		10,000	위탁 운영	산내 복지관	307-02
	영아 가정방문 프로그램	영아오감 발달	15	7~12월	1,750			
		젼젼교실	15	7~12월	비예산			
	유아 기관중재 프로그램	초등학교입학준비프 로그램	30	7~12월	3,000	위탁 운영	보육시설 유치원	307-02
		레고닥터 교실	20	7~12월	3,000			
		재능개발교실	20	7~12월	2,250			
	2개 사업		90		21,000	위탁 운영	산내 복지관	307-02
교육 프로 그램	방과후 공부방 운영		50	7~12월	16,000			
	학원연계 프로그램		40	7~12월	5,000			

4) 특별·광역시 자치구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첫째, 조사 대상 자치구들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서울광역시 강서구가 30.29%, 인천광역시 서구가 34.75%, 대전광역시 동구가 30.07%로 30~3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강서구가 2.19%, 서구가 15.87%, 동구가 2.67%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특히 담당공무원들은 면담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복지수요가 높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비와 광역자치단체의 시도비의 배분에 있어 자치구의 자체예산 규모와 지역의 복지욕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타자치구와의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비슷한 위상의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복지 행정조직이 제각각임을 알 수 있었다. 강서구의 경우, 가정복지과의 아동·청소년팀 4명이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팀장이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 팀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1명 있었고, 3명은 일반행정직이었다. 서구의 경우 복지서비스과의 여성아동팀에서 아동복지시설관리, 소년소녀지원, 한부모가정지원 등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문화체육과의 체육청소년팀에서 청소년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동구의 경우는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공보과 등 세 부서에서 2명의 전담행정직과 3명의 행정직이 다른 업무와 분담하여 아동·청소년 업무를 산발적으로 나누어 관장하고 있었다. 아동복지의 경우는 사회복지자격증을 소지한 담당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비교적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의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최대한 2년 미만을 주기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복지에 비해 청소년복지의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복지의 경우 사회복지자격증을 소지한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과 장기간에 걸친 아동복지정책의 발달로 여러 가지 정책이 안정적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나, 청소년복지의 경우 그 정책의 수도 적고, 전문적인 지식과 사명감을 갖춘 담당인력도 없고, 청소년복지 자체의 역사도 짧아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공부방의 경우, 인프라는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그 성과와 효율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적거나, 관리하는 지도자의 역량 그리고 운영방법 등에서도 역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00석 이상의 좌석을 갖춘 비교적 규모가 큰 공부방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 반해 새마을금고나 마을회관 등을 이용한 50석 정도의 청소년공부방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정책의 대부분이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중고등학생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청소년의 욕구를 조사하여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 지역사회자원을 찾아가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자원을 청소년정책에 십분 활용하고 있었다. 대전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청소년들이 KAIST의 학생들을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습지도를 받음으로써 학습향상은 물론 사회에 대한 안목과 삶에 대한 동기부여도 함께 도모할 수 있었다.

VI.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발전방안

1. 농산어촌
2. 중소도시
3. 특별·광역시 자치구
4. 종합적인 발전방안

VI.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발전방안

연구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였다. 전국의 250여 개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 중소도시와 50만 명 미만 중소도시, 특별·광역시 자치구, 그리고 군 지역에서 표본을 뽑아서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외국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을 살펴보았다.

세 가지 기법을 통한 조사연구의 결과는 본문에 포함되어 있기에 반복을 피하면서, 결론에 해당되는 이 장에서는 2008년 한국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진의 종합적인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은 아동복지정책과 통합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기에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안은 아동복지정책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초점을 두면서도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한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군 단위 농산어촌, 중·소도시,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세 유형별 발전방안과 이를 종합하여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

1) 아동업무와 청소년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고, 담당자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중앙정부는 기존의 보육정책, 아동정책, 청소년정책이 통합되어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통합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분절되어 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이 하나의 팀으로 통합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아동담당과 청소년담당으로 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의 업무분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분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전달체계를 고려할 때, 우선 아동담당과 청소년담당을 하나의 팀으로 묶고, 각 팀에서 업무를 통합하여 조정하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와 같이 사업의 속성이 비슷한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에 대한 표준화작업을 중앙정부에서 먼저 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과 지도감독을 위한 업무를 표준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동·청소년업무는 지난 20여 년간 구분되어 왔고, 아동업무는 복지측면에서 청소년업무는 육성측면에서 다루어졌다. 두 업무가 통합되면, 아동·청소년복지는 복지측면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하고, 아동·청소년활동업무는 사회복지직이나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을 갖춘 행정직이 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청소년복지를 3년 이상 담당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2) 아동·청소년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예산의 분담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농산어촌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아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예산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예산의 분담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전국 어디에 살거나 국민으로서 균등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양육시설의 운영과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국비, 시·도, 시·군·구의 재정분담을 80:10:10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

사업비 이상을 지원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역량과 의지에 맡기더라도 모든 아동·청소년은 전국 어디에서나 표준이상의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3) 아동·청소년복지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민간단체를 키우고, 활동가의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아동·청소년복지사업은 사실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청소년단체, 사회사업을 신고한 개인 등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산어촌에는 도시와 달리 역량 있는 아동·청소년단체가 별로 없다. 따라서 농산어촌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단체를 육성하여 이들이 아동·청소년사업을 수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최근 늘어난 개인 신고기관이 보조금의 사용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관련 법규나 회계교육을 통해서 공익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인접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실습생과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고, 이주여성 중에서 학력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원어민 강사로 활용하는 등 자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산어촌에는 가정위탁을 받는 아동, 조손가족 등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학대를 받거나 방임된 경우가 많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청소년이 문제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별로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군청이 소재한 읍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민간활동가를 양성하여 면단위에서는 자원상담을 해주도록 해야 한다.

4) 아동·청소년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이 절실하다.

농산어촌에 사는 아동과 청소년은 대부분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기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와 교육청, 혹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시설과 각급 학교와의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 사업 대상자가 서로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과 각급 학교간의 협조가 낮은 수준이기에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가정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중복과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운동장, 강당, 도서관, 다양한 문화 활동 공간이 있기에 이러한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한다면 교육문화 인프라를 더욱 활발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소도시

1) 아동·청소년과 및 아동·청소년팀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약간 양호한 상태이지만 재정자립도와 정책관심도가 저조한 도시의 경우 불과 1명의 인원이 아동 또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서류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산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중앙정부의 사업도 담당인력의 부족이나 무관심으로 인해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담당행정부서의 통일을 유도하는 등의 중앙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아동업무와 청소년업무의 통합으로 인한 지방행정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아동복지팀, 청소년팀, 교육지원팀, 보육팀 등을 묶어 아동·청소년과로, 그 이하의 도시에서는 아동·청소년복지팀에서 아동담당, 청소년담당을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농복합시에서의 아동·청소년복지의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대부분 도심지역으로 시설이나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어 면 단위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지 않다. 물론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행정체통을 통해 전달되지만, 성장기의 핵심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는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나 학교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 전달하고 이를 담당할 인력의 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2) 아동·청소년업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간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특화되고 지역중심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의 합의 없이 피상적인 대안으로만 제시되었을 뿐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를 어떤 형태로 구축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조차 빈약하여 문자 그대로 주장에 그쳐왔다. 아동·청소년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지역 적용모형이 연구되고 보급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청소년 정책을 지양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여 지역에서 총체적인 역량이 모아지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복지업무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지방사무로 볼 수 있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의 책무가 막중하다 할 것이다. 특히 국가적으로 공통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부담금 전제하에 실시되어 재정력이 약한 지방정부는 그 사업을 유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키며 복지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향후 관계법령정비 및 제도개선과정에서 사무 및 사업의 성

격에 따라 고유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등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복지의 경우 법적인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는 아동복지와 달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동반자, 위기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청소년공부방 등 국가주도 사업이 뚜렷한 법적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사업의 일관성 및 지역간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제기된다.

3)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개입이 요구된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단체장의 마인드와 관심사항에 따라 주요정책방향이 결정된다. 따라서 단체장의 관심이 지역개발보다 복지 분야에 중심될 수 있도록 지역정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강제하며 설득하는 작업이 지역인사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기존의 아동·청소년정책은 ‘절차적 관료제’ 유형과 유사하게 진행되어 왔다. 합리성의 근원을 ‘법’에서 찾고 이를 축자적으로 해석하여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서비스를 억지로 법에 규정된 서비스의 범주에 넣어 업무범위를 스스로 위축시켰다. 이제 유연성을 기본덕목으로 하는 청소년을 고객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생산하는 ‘네트워크 관료제’ 형태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 구성원과 조직의 마인드가 변화해야 한다. 공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부의 자원은 무한하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유처럼 인식한 상태에서 자원절약과 각종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등을 행하여 불필요한 사업들을 폐지해 나가야 하며, 보다 적은 자원과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업가형 공공관리(Public Entrepreneurial Management)의 개념이 중요하다.⁶¹⁾ 행정은 계속적으로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의 요구에 당면할 것이고 이것은 정

61) 김변웅·김판석 공저(2001), *신한국행정론*, 박영사, 서울, p.101.

부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변모하도록 강요하며 전문인력과 상황분석가가 더 필요해질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인력충원제도, 승진보수체제, 인사교류제도 등의 기본적 제도를 변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여러 가지 수평적 조직화 방법을 많이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행정기술과 과정을 재설계해야 한다. 기술과 과정의 재설계는 성과(비용·질·서비스·속도 등)의 개선이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종래 업무처리방식의 상향조정과 민간우수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지방 정부의 업무처리방식에 민간의 우수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벤치마킹시스템, 총체적 품질관리(TQM), 리엔지니어링, 다운사이징, One Stop & Oon Stop 서비스체계의 구축 등을 통하여, 종래 업무처리 방식에 일대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⁶²⁾

특히 벤치마킹의 도입은 다른 조직의 탁월성이나 혁신을 배우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다. 즉 가능하면 중앙정부의 기능을 분권화하여 지방정부의 조직권과 운영권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또한 이들 간에 경쟁을 유도하여 지방정부운영의 새로운 조직화 방법을 개발하도록 하여 이 과정에서 나타난 우수한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⁶³⁾ 또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확산은 생산과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고객(또는 소비자)중심의 접근을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며 스마트하게”(Cheaper, Faster, and Smarter)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분야에서 ICT는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고 행정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시켰으며, 고객으로서의 시민의 참여를 고무하는 소비자민주주의(Consumer Democracy)를 성취하고 있다.⁶⁴⁾

셋째, 시민사회를 활성화해야 하다. 지방정부와 주민으로서의 시민과의 관

62)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H. G. Frederickson은 “The Repositioning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27, 1999, pp.701~711.에서 행정에 있어서 marketing과 downsizing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networking과 conjunction이 중요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63) P. Keehly, Benchmarking for Best Practices in the Public Sector (San Francisco : Jossey-Bass, 1997), pp.8~10., p.29.

64) 김변웅·김관석 공저, 앞의 책, p. 20.

계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시장적 관계이며, 지방정부는 소비자로서의 시민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선호·불평·보상 또는 시정요구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는 시민현장을 만들어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시장적 관계를 형성하고 행정서비스의 소비자로서의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지역 민간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로컬거버넌스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지방의 경우 인근 대도시 중심으로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이나 단체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특히 로컬거버넌스를 시행할 수 있는 관련 민간단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아동·청소년복지분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로컬거버넌스는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체제의 운영에 관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거버넌스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시험장으로 주목받는다. 그 이유는 지방정부가 대민접촉의 가능성이 높고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종류가 많기 때문이다. 로컬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단위는 크게 세 가지로서 정부부문, 민간기업부문, 시민사회부문이다. 로컬거버넌스는 지방정부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의 각 이해관계자들을 정부의 정책과정 속에 제도적으로 포용하여 이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⁶⁵⁾ 로컬 거버넌스의 실천적, 집행적 메카니즘으로 이해되는 서비스 공급과정에 있어서 국가·시장·시민사회조직간의 참여를 토대로 한 협조적 상호작용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형태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내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위해 신뢰(Trust)와 자발성이 중요한데,

6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정의 로컬 거버넌스 도입방안,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p.28.

우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또한 정부의 역할이란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자원의 형성기반을 촉진함과 아울러 이들 자원의 분포현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함이 네트워크 형성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적절한 재정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기초단체 수준에서의 지원과 자원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시민단체, 자발적 지역조직은 로컬 거버넌스에 있어 핵심적인 행위 주체가 되며, 이들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거버넌스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5) 공교육과의 다양한 연계성 강화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학교와의 연계성에서 학교 내의 방과후 교실 사업지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이지만 학교의 폐쇄성으로 인해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 공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이 있으나 연계된 사업이 학교안과 밖에서 상호 경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그리고 필요시 협력 보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특별 · 광역시 자치구

1)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예산을 늘리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욕구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국비와 시도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사례조사 대상 자치구들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서울광역시 강서구가 30.29%, 인천광역시 서구가 34.75%, 대전광역시 동구가 30.07%로 30~35%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강서구가 2.19%, 서구가 15.87%, 동구가 2.67%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

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복지수요가 높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비와 광역자치단체의 시도비의 배분에 있어 자치구의 자체예산 규모와 지역의 복지욕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타자치구와의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자치구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행정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비슷한 위상의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복지 행정조직이 제각각임을 알 수 있었다. 강서구의 경우, 가정복지과의 아동·청소년팀 4명이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팀장이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 팀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1명 있었고, 3명은 일반행정직이었다. 서구의 경우 복지서비스과의 여성아동팀에서 아동복지시설관리, 소년소녀지원, 한부모가정지원 등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문화체육과의 체육청소년팀에서 청소년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동구의 경우는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공보과 등 세 부서에서 2명의 전담행정직과 3명의 행정직이 다른 업무와 분담하여 아동·청소년 업무를 산발적으로 나누어 관장하고 있었다.

아동복지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한 담당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비교적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의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최대한 2년 미만을 주기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복지에 비해 청소년복지의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정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담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청소년복지의 경우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담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의 경우, 관련 부서에 아동·청소년팀을 구성하여 아동담당 사회복지사와 청소년담당 청소년지도사가 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두세 명의 행정직이 순환보직하면서 업무를 지원하는 체제를

제안해 본다. 독일의 청소년복지정책 행정체계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청소년복지정책 전달체계는 독일 연방과 주정부의 행정체계와 마찬가지로 연방 차원과 주(州) 차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Kommune) 차원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최소의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위에는 중앙정부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로부터 16개 「주(州) 청소년청」, 광역시에 「구(區) 청소년청」(Bezirksjugendamt), 중소도시 「시(市) 청소년청」(Stadtjugendamt), 지방의 작은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단체 청소년청」(Kreisjugendamt)이 수직적인 전달체계를 가지고 형성되어 있다. 각 영역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관과 단체들이 영역에서 수행되는 정부의 공공 청소년정책과 긴밀한 협력관계와 때로는 감독내지는 비판적 관계에서 각기 고유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3) 청소년복지행정에 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동복지의 경우 사회복지자격증을 소지한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과 장기간에 걸친 아동복지정책의 발달로 여러 가지 정책이 안정적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나, 청소년복지의 경우 그 정책의 수도 적고, 전문적인 지식과 사명감을 갖춘 담당인력도 없고, 청소년복지 자체의 역사도 짧아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학과를 졸업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청소년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청소년관련 업무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도 지니고 있어 업무수행 능력과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공무원들은 순환직이 아니라 한 부처에서 한 분야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과 같이 특정 업무에 전담공무원제를 적용함으로써 그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공부방의 경우, 인프라는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그 성과와 효율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적거나, 관리하는 지도자의 역량 그리고 운영방법 등에서도 역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00석 이상의 좌석을 갖춘 비교적 규모가 큰 공부방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 반해 새마을금고나 마을회관 등을 이용한 50석 정도의 청소년공부방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전국의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실태조사와 욕구조사를 통해 지역의 환경과 지자체의 여건, 지역청소년의 특성, 청소년공부방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의 어린이도서관을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성과가 미비한 청소년공부방들을 통합하고, 청소년공부방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에 통합한 예산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지닌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시범사례로 활성화하여 타 지역으로 확산시킨다.

5) 중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취업 정책을 개발한다.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 비해 비교적 풍부한 지역사회자원을 갖추고 있는 특별·광역시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확산시킨다. 아동·청소년정책의 대부분이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중고등학생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청소년의 욕구를 조사하여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고등학교 시기는 장래를 위한 진로와 취업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특히 취약계층청소년들의 경우, 진로 및 취업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과 정책이 매우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Mission locale’이나 ‘CIDJ’, 일본의 ‘Job Cafe’는 이를 위한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정비체제로 지역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서비스센터인 Job Cafe를 운영하고 있다. Job Cafe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조직으로서 지역 실정에 따라 설치되고 관민협동으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학생, 프리터, 청소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직장체험, 개인상담,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厚生労働, 2003:12)⁶⁶⁾

프랑스의 Mission locale은 1982년 취약계층의 청소년이 학업을 일찍 중단하고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과제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 두 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학업을 마친 16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거주 구역에 따라 정해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센터의 주 임무는 학업을 마치거나 중도에서 그만 둔 청소년들의 취업계획, 건강, 직업교육, 거주지 마련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프랑스 전역에서 2005년 이 센터를 이용한 청소년 수는 115만 명으로 96만 명이 전문 관계자와 개별적으로 직접 상담을 하였으며 매해 이용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35만5천 명의 청소년이 취업정보를 원했으며 6만8천 명이 보조직으로 취업했으며 23만 명이 직업교육을 받았다. 파리시에만 5개의 센터가 있다.⁶⁷⁾

6)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청소년복지정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현재 청소년복지정책의 경우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6) 일본의 청소년복지정책 중 job cafe 사례 참조

67) 프랑스의 청소년복지정책 중 Mission locale 사례 참조

이를 충분히 발굴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 지역사회자원을 찾아가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자원을 청소년정책에 십분 활용하고 있었다. 대전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청소년들이 KAIST의 학생들을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습지도를 받음으로써 학습향상은 물론 사회에 대한 안목과 삶에 대한 동기부여도 함께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와 노인과 청소년들을 연계하여 명절과 어버이날 행사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일본의 ‘청소년자립기숙사’ 정책의 경우 지역사회자원을 잘 활용한 좋은 사례로 우리의 정책에 적용할만하다.

① 사업대상

1년 이상 일과 구직활동의 실적이 없고 학교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35세 미만의 미혼자로 소위 니트 상태에 있는 자

② 사업내용

일정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숙형 집단생활을 통하여 훈련, 노동훈련을 함으로써 사회인, 직업인으로 필요한 기초적 능력을 획득하고 노동관을 양성하며 일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체득함으로써 취업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3개월의 합숙을 대상자에게 제공하는데 기숙사생활 전반은 사회에 익숙하도록 협력·협동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기간이며 후반은 일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워가는 기간으로 나누어 서서히 의욕이 생기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합숙생 한명 한명의 상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수정해 가면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립기숙사는 취업에 연결되는 비율의 목표를 90%로 세우고 있다.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생활훈련, 노동체험, 특별프로그램, 자격취득강좌 등이 있다.

① 생활훈련의 내용

② 노동체험 내용

- 공장에서 제조작업 체험(봉제회사, 식품회사, 철공소)
- 서비스업 체험(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 복지시설 체험(개호시설)
- 시설관리 체험(접수·정보, 골프장 운영)
- 이벤트 스텝 체험(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 농업체험(야채·과일의 수분, 수확)
- 어업체험(감·잔멸치 등 가공품, 양식관리)

③ 특별프로그램 내용

- 예술활동 체험(스케치, 수채화, 수묵화, 회화, 도예)
- 스포츠 체험(트레킹, 암벽등산, 축구, 야구, 수영, 낚시, 사이클링)
- 지역축제·이벤트 체험(가을축제, 여름축제, 봄축제)
- 수제 가공식품 체험(수제두부, 수제대나무용품, 훈제 등)
- 자원봉사활동(지역 초등학교 청소활동, 지역자치회 청소작업, 도로청소, 시설내 페인트 도장, 장작패기 작업)
- 정신수양 체험(좌선)

④ 자격취득 강좌 내용

- 컴퓨터기능 취득(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워드)
- 자격취득 선택 코스(소형차양계건설기구특별교육, 소형지게차운전특별교육, 대형특수자동차면허, 대형자동차면허)

③ 사업제공자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청소년자립기숙사·에히메

④ 예산(재정)

자기부담으로 1개월에 10만엔(3개월 30만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후생노동성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저소득

세대는 참가비 면세조치가 있다.

⑤ 전달체계

2003년에 내각부,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의 1府3省 합동으로 책정된 「청소년자립·도전플랜」에 따라 2004년에 발표된 청소년자립기숙사의 계획 개요에 근거하여 2005년에는 20개의 사업주체가 선정되었으며 2007년도에 30단체로 증가하였다. 각 사업자는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종합적인 발전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을 다룰 전달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에서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을 다룰 전달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에서 청소년행정은 소홀히 다루어져온 감이 있다. 1988년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생길 때에는 시·도에 청소년과, 시·군·구에 청소년담당계가 설치되었지만, 이후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처의 변화를 계기로 시·도의 청소년과는 일부 시·도에만 있고, 대부분 축소되었다. 이제 청소년정책이 아동정책과 통합되었으므로 시·도에 ‘아동·청소년정책관’ 혹은 ‘아동·청소년과’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16개 광역자치단체마다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다루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에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기존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 여성가족부의 영유아보육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정책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통합한 모형을 존중하여 시·도에서도 아동·청소년정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담당을 통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전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 활발하게 개발해야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동·청소년복지를 다룰 전달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설문지를 발송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파악하였더니, 청소년만을 담당하는 곳은 전체의 26.9%이고, 아동과 청소년을 함께 다룬 곳이 46.5%이며, 나머지 26.6%는 아동만을 다룬 부서가 있었다. 대체로 과거에는 청소년담당과 아동담당이 구분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을 함께 다룬 자치단체가 늘어난 듯하다. 아동·청소년을 한 팀에서 다룰 경우에 업무분장을 아동담당, 청소년담당으로 나눌 것인지, 혹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과 같이 아동·청소년활동담당, 아동·청소년복지담당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먼저 아동과 청소년을 한 팀에서 다루도록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당분간 아동담당과 청소년담당으로 나누고, 점차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전체 아동·청소년의 육성을 담당하는 활동담당과, 일부 위기아동과 청소년의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담당으로 특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셋째, 오프라인사업과 온라인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동안 청소년정책은 오프라인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는데, 이제 온라인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예컨대 국가는 청소년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앙에 한국청소년상담원(혹은 한국청소년복지상담원), 시·도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혹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구에 청소년지원센터(혹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기존 센터를 활용하고, 없는 시·군·구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을 온라인서비스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공문수발을 우편이나 팩스로 받기보다는 홈페이지에 ‘행정업무’에 공지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을 보편화해야 한다. 행정공무원이 문서를 생산하고 수발하는 업무를 최소화시키고, 가급적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행정서식을 표준화하고 전자화하며,

반복적인 업무는 온라인상으로 보고하여 단순한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을 다룰 인력을 전문화시키고 장기 근속시켜야 한다.

첫째, 청소년복지를 다룰 행정인력의 근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8.8%는 여성이고, 41.2%는 남성이었다. 공무원의 성비에서 남성이 많은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의 비율이 많다는 것은 아동·청소년업무가 여성친화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기획업무와 같은 핵심 업무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아동·청소년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이 45.1%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 33.0%이며, 2년 이상 3년 미만이 11.6%로 전체 응답자의 89.7%가 3년 미만 근속자라는 것이다. 현장조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동담당의 근속연수에 비교하여 청소년담당의 근속연수는 더욱 짧았는데,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속연수를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공무원은 내년도의 사업을 금년에 기획하기 때문에 2년 미만을 근속할 경우에는 계획을 짠 사람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이 달라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행정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속연수를 3년 이상으로 하고 순환보직도 아동, 가족, 사회복지 업무 등 유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복지를 다루는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무교육을 제도화시켜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공무원 233명 중에서 97명인 전체의 41.6%만이 아동·청소년관련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국가자격증을 가진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96.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평생학습사 등이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정업무는 흔히 종합행정이기때문에 특정 분야의 국가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청소년복지에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국가자격증이 있기에 이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직무교육을 시켰지만, 청소년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 이는 청소년정책을 수행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별도의 공무원교육원이 없었기 때문인데, 향후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통해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도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에 청소년행정 혹은 아동·청소년복지와 같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체계화시켜야 한다.

셋째, 청소년복지를 다룰 새로운 인력으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아동·청소년복지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청소년 관련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를 소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1991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제정된 청소년지도사는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이미 수천 명이 배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담당 공무원 중에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배치 의무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는 의무화되었지만, 행정기관에는 권장사항에 그쳤기 때문인 듯하다. 한때 한직으로 여겨졌던 ‘사회(과)업무’를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높였듯이, 청소년복지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중심으로 임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분야에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갖춘 공무원의 진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해당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우대하거나, 해당 분야 전공을 한 공무원에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청소년분야에 근속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복지와 아동복지를 통합하여 다룰 수 있도록 양 분야간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부처의 통합을 계기로 아동분야와 청소년분야는 점차 통합되고, 아동·청소년활동, 아동·청소년복지분야로 전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아동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고, 청소년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이다. 양 분야는 대상 연령층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성인기 이전시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 동안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으로 분절되었기 때문에 교류가 적었다. 이제 양 분야가 통합된 상황에서 기존의 아동전문가는 청소년분야를, 청소년전문가는 아동분야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담당자를 청소년분야로 청소년담당자를 아동분야로 전직시키거나 아동업무와 청소년업무를 통합하여 아동·청소년활동, 아동·청소년복지로 전문화시키면서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개발해야 한다.

첫째, 기존 청소년복지사업을 청소년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자원에 맞게 표준화시켜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에는 지역실정과 문화에 맞으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아동·청소년 복지 특성화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4.5%)와 그렇다(24.8%)고 응답한 사람이 29.3%에 그쳤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지역별로 볼 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61.6%이었지만,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와 군 지역에서는 각각 37.3%, 16.5%에 불과했다. 이는 기존 청소년복지사업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청소년의 욕구와 지역사회 실정에 맞았지만,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는 별로 맞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아동과 청소년의 방과후 지도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교실 등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지원하는 중앙부처는 달랐지만 모두 아동과 청소년에게 학습지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여가지도를 하고, 급식을 선택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이 통합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종류를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사업을 통합하고,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통합을 통해서 중복과 낭비를 줄이고, 누락을 방지시켜야 할 것이다. 표준화작업은 기본 틀을 존중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도시에 비교하여 자원이 적고, 청소년이 분산되어 있는 농산어촌형은 보다 특별하게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활동을 장려하는 사업과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에 초점을 맞추었고,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을 위한 사업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진로개척과 자립역량의 강화는 청소년정책의 최대 이슈이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초고령화사회가 곧 도래하기 때문에 적은 수의 젊은이가 좀 더 많은 수의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적절하게 개척하고 자립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단순히 용돈벌이에 한정시키지 말고, 직장체험 인턴십 등으로 연계시켜 취업과 창업의 계기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청소년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사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청소년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이 소액에 불과했기 때문에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소홀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청소년사업의 표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아동과 청소년의 방과후 학습과 생활지도를 목표로 하는 사업 중에서 청소년공부방은 연간 1천만 원, 지역아동센터는 연간 5천만원(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급식비 지원 포함),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연간 1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 대체로 청소년공부방이 예산이 가장 적게 투입되어 가장 경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효과성은 낮게 평가되고, 방과후아카데미는 효과성은 높지만 예산대비 경제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전체 사업에 대한 설계를 새롭게 하고, 특정 기관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 등을 해야 할 것

이다.

넷째,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자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지도력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하고, 민간 분야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 청소년문화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은 민간 청소년단체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력을 함양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단체는 대도시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중소도시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군지역에는 거의 없거나 있어도 지도력이 낮은 수준이다. 시·도단위에 조직된 청소년단체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군·구단위에도 청소년단체협의회를 조직하며, 전국단위로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한국청소년상담사협회 등을 조직하고 이의 지방조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특정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련 단체, 지도자협회 등과 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이 단체, 협회 등이 전국적으로 지도력을 함양시키는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을 다룰 예산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첫째,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을 감시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높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은 매우 적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자치단체의 경우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은 평균 약 47억원으로 전체 평균 예산 약 2,865억원의 1.6%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예산을 주민등록상 인구로 나눌 때 주민 1인당 예산액은 약 250만원이고, 아동·청소년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은 약 9만원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를 감시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향후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최근 아동·청소년복지분야의 예산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뜻 있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신고에 의해서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청소년복지를 실천할 경우에 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이를 오남용한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 기본적인 회계교육 등을 시켜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게 하고, 청소년문화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지원센터 등으로 분산된 예산을 통합관리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한 과제이다.

둘째,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분담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복지 담당자가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복수응답)은 재원확보가 43.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분산된 책임영역의 통합과 조정(16.9%), 다양한 자원이 활용가능한 여건과 환경조성(15.7%) 등이다. 한편,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복수응답)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55.0%), 중앙정부의 정책실현 및 재원확보(16.9%), 전문인력의 배치와 활용(16.1%) 등의 순이다. 대체로 중앙정부는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연간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의 구성을 보면, 국비가 전체의 30.0%이고, 시·도비가 41.7%이며, 시·군·구비 28.3%로 국비의 비중이 낮고 지방비의 부담이 너무 높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동·청소년복지정책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데, 분권교부세를 포함하여 국가의 책임을 전체의 80%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20%를 지방(시도와 시군구)이 분담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구는 50%: 25%: 25% 수준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을 사업비 지원방식에서 인건비와 운영비의 지원을 겸한 사업비 지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청소년복지정책이 지방정부에

서 열악하게 수행되는 가장 큰 요인은 청소년정책예산이 사업비 단위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시·군·구는 청소년문화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을 청소년수련관 혹은 수련관을 운영하는 청소년단체가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청소년문화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사업비가 배정되기에 사업비에서 사실상 인건비를 충당하여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수행을 위해서 임용한 비정규직의 임금이 청소년수련관 정규직의 임금보다 많아서 권위있는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사업비만을 지원하는 잘못된 구조 때문이다. 아동양육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회관 등 어떤 분야도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사업비만을 지원하는 사업이 없는데, 청소년분야만 유독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복지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존의 사업비 중 일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돌려서 예산의 기본 구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원도(2007). 2007년 강원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강원도.
- 강호성(1996). 한국 지역복지정책의 모형정립에 관한 연구. 대구대 박사학위논문.
- 경상남도(2007). 2007년도 청소년건전육성시행계획. 경상남도.
- 경상북도(2007).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 추진지침.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2007). 2007년도 청소년건전육성시행계획. 광주광역시.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편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 국가청소년위원회(2008).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권일남(2001). 농어촌청소년 복지실태와 정책방향. 농촌사회, 제11권 제2호, pp 243-273.
- 김경준 외(2005).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준(2002). 농어촌청소년 복지시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준 외 (2005), 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기봉·정희섭·김영호·최혜자(2006). 지역별·권역별 문화협력망 구축방안.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정책연구소.
- 김미혜·정진경(2007).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서울: 동인.
- 김변웅·김판석(2001). 신한국행정론, 서울: 박영사
- 김영지 외(2006).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호(2003). 지방정부 청소년예산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희순(2003). 청소년정책과 행정, 그 틈을 위해 필요한 노력. 청소년문화포럼, 2003년 여름호 통권7호, pp. 108-156.
- 남궁근 외(2006).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거버넌스와 개혁. 서울: 한울아카데미.
- 대구광역시(2007). 2007년도 청소년 건전육성 시행계획.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2007). 대전 청소년육성 2007년도 시행계획. 대전광역시.
- 박응격 외(2003). 독일지방정부론. 서울: 도서출판 엠-에드.
- 박응격(2003). 지방행정론. 서울: 신조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1). 서울시정의 로컬 거버넌스 도입방안,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신익현(200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의의와 추진방향. 도시와 빈곤 통권 61호, 한국도시연구소.

안용식·강동식·원구환(2006). 지방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오해섭·이민희·김영호(2007).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우정자 외(2003). 선진 각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울산광역시(2007). 2007년도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윤찬영(2003).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사회복지정책, Vol 16, 2003. 6. pp.27-41.

윤철경(2005). 청소년보호정책 실태와 발전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윤철경(2006).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 복지사업. 지방행정 2006년 5월호.

이광호 외(1992). 지방자치제하 청소년 행정체계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이병렬(1996). 지방정부의 지역복지대안에 대한 경험적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이승중(2005).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이종원(1990). 독일의 청소년정책과 제도. 외국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이주희(2008). 지방자치제도.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장신재(2005).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눔의집.

전라북도(2007). 2007년도 청소년 건전육성·보호를 위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전라북도.

제주도(2006). 청소년 건전 육성·보호 2006년도 시행계획. 제주도.

조흥식(2003). 참여정부의 농어촌복지 발전과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선진 각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

Frederickson H, G, (1999), The Repositioning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27

Keehly, P, (1997) Benchmarking for Best Practices in the Public Sector, San Francisco: Jossey-Bass

Barnes, J., Katz, I., Korbin, J. E., & O'Brien, M. (2006). Children and families in communities: Theory,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Hoboken, NJ: John Wiley & Sons.

Booth, A., & Crouter, A. C. (2001). Does it take a village?: Community effects on children, adolescents, and families.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urt, M. R., Resnick, G., & Novick, E. R. (1998). Building supportive communities for at-risk adolescents: It takes more than servic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iFranza, J.R., & Coleman, M. (2001). Sources of tobacco for youths in communities with strong enforcement of youth access laws. *Tobacco Control*, 10(4), 323-328.
- Ferber, T., Pittman, K. & Marshall, T. (2002). State youth policy: Helping all youth to grow up fully prepared and fully engaged. Takoma Park, Maryland: Forum for Youth Investment.
- Greenwald, H. P., Pearson, D., Beery, W. L., & Cheadle, A. (2006). Youth development, community engagement, and reducing risk behavior.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7(1), 3-25.
- Johnson, L. D., O'Malley, P. M., & Bachman, J. G. (2003). Monitoring the future national survey results on drug use, 1875-2002. Volume I: Secondary school students. Bethesda, MD: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 Kubisch, A. C. (2005). Comprehensive community building initiatives - ten years later: What we have learned about the principles guiding the work.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106. 17-26.
- Levy, D.T., Chaloupka, F., & Gitchell, J. (2004). The effects of tobacco control policies on smoking rates: A tobacco control scorecard, *Journal of Public Health Management Practice*, 10(4), 338-353.
- Markward, M. (1994). Compliance with the McKinney Act: Providing homeless children with educational opportunity. *Social Work in Education*, 16(1), 31-38.
- Martin N. & Halperin, S. (2006). Whatever it takes: How twelve communities are reconnecting out-of-school youth. American Youth Policy Forum.
- Messinger, L. (2004).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A rural perspective. *Social Work*, 49(4). 535-546.
- Niederdeppe, J., Farrelly, M.C., & Haviland, M. L., (2004). Confirming "Truth": More evidence of a successful tobacco counter-marketing campaign in Florid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2), 255-257.
- No Child Left Behind (NCLB). (2001). Education for homeless children and youth program. Title VII-B for the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as amended by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 Nunez, R. (2000). Homeless in America: A children's story. *Journal of Children & Poverty*, 6(1), 51-72.
- Perkins, T. (2002).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CCI): A comparison of community implementation plans. Lincoln, Nebraska: University of Nebraska Public Policy Center.
- Phillips, M., Wodatch, J., & Kelliher, C. (2002). The education for homeless children and youth program: Learning to succeed. Volume 1: Reducing barriers for homeless children and youth for access and achievement. Washington, D.C.
- Pittman, K., Irby, M., & Ferber, T. (2001). Youth Policy in the U.S.: Some observations and options. Takoma Park, Maryland: Forum for Youth Investment.
- Stagner, M. W., Duran, M. A. (1997).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Principles, practice, and lessons learned. *The Future of Children: Children and poverty*. 7(2). 132-140.
- Texas Homeless Education Office (2002). Education rights of homeless children.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harles A. Dana Center.
- Tauras, J. A., Chaloupka, F. J., Farrelly, M. C., Giovino, G.A., Wakefield, M., O'Malley, P.M., Johnston, L.D., Kloska, D.D., Pechacek, T.F. (2005). State tobacco control spending and youth smoking.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5(2). 338-344.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07). Kinder- und Jugendhilfe. Ahtes Buch Sozialgesetzbuch. Berlin: Druck Vogt GmbH
- Gries, J. & Ringler, D.(2005). Jugendamt und Jugendhilf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ltmannsweiler: Schneider Verlag Hohengehren
- Krug, E.(2005). Jahrebericht des Kreisjugendamtes 2004. Aichach: Landratsamt Aichach-Friedberg Kreisjugendamt
- Sachverständigenkommission Zwölfter Kinder- und Jugend- bericht(Hrsg.)(2005). Kooperationen zwischen Jugendhilfe und Schule. München: Verlag Deutsches Jugendinstitut
- 内閣府(2001), 『國民生活白書』
- 内閣府(2007), 『青少年白書』.
- 内田龍史(2005),現代の部落の若者がかかえる困難,『部落解放研究』第549号, 部落解放人権研究所.
- 山田昌弘(2004), 『希望格差社会』, 筑摩書房.

相川康子(2005), 地域政策としてのILM(Intermediate Labour Market)-若年失業者対策を中心に, 『星陵台論集』第39巻 第2号, 兵庫県立大学大学院 学園都市キャンパス研究会.

小杉礼子(2003), 高校生の就職をめぐる現状と課題 `『部落解放研究』第152号, 部落解放人権研究所.

小杉礼子(2005), 社会変化の痛みが若者を直撃, 『部落解放研究』第549号, 部落解放人権研究所.

小杉礼子編(2005), 『フリータとニート』, 勁草書房.

新谷康浩(2006), 若年「無業者」の歴史 社会学的研究, 『社会保障研究』Vol.42 No2,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愛媛地域政策研究センター(2005), 『若年者就労意識調査研究』.

日経聯・東京経営者協会(2000), 『日経聯・東京経営者協会調査』.

日本労働研究機構(2003)「進路決定を巡る高校生の意識と行動」.

穴澤義晴(2006), 若年者の職業的自立支援という取り組み札幌市勤労青少年ホームの可能性 `『社会教育研究』第24号, 北海道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 社会教育研究室.

厚生問題研究会(2003), 若年者の対策, 『厚生労働』8月.

厚生労働省(2003), 『労働経済白書』

Animer un PIJ: la polyvalence au quotidien, N°63 2005/11.

Becquemin Michèle(2007). Pour une critique de la prévention. À travers le prisme des réformes »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 informations sociales 2007/4 n° 140.

Bordet Joëlle, Cattani Marianne, Ignacio Manuela, Champagne Bernard(2004). Etude sur les pratiques territoriales : Quelles marques construire Rapport de synthèse enquêtes sur sites 2004/11.

Bouhouia Tahar(2007). La téci, CEDREA (les cahiers d'étude des dynamiques sociales et de la recherche-action). La prévention spécialisée ; une organisation en crise Mémoire de DEA à l'université paris Dauphine 2004.

Cidj(2006). En Ils de France, en réseau de proximité au service de l'information des jeunes. cidj.

Cidj(2007). Les documents de cidj(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jeunesse). cidj.

- Conference Berlin-web2.0 and youth information. 2008/2.
- Conseil national des missions locales, Assemblée des départements de France.(2005).
Protocole des mission locale 2005 Conseil national des missions locales,
Assemblée des départements de France.
- De la coopération entre les acteurs de l'institution scolaires et de la prévention
spécialisée(2008). Rapport de conseil technique des clubs et équipes de prévention
spécialisée. 2008/3.
- Département de paris(2003). Schéma directeur de prévention, d'aide aux familles et de
protection de l'enfance synthèse.
- Département de paris(2007). Le guide de l'aide sociale.
- Département de paris(2007). Schéma départemental conjoint 2003-2008 de prévention,
d'aide aux familles et de protection de l'enfance Bilan Département de paris.
2007/10.
- Département de paris(2007). Rapport de l'aide sociale à l'enfance 2007. Département de
paris.
- Département de paris. Département de paris(2007). Les actions familiales et éducatives »
Département de paris.(2006). Rapport de l'aide sociale à l'enfance 2006. Département de
paris.
- Dobrovolny Jérôme, Isrusch Nessa, Wittamer Marie. National report France Situation and
debate in France on intersectional approaches in peer-violence prevention among
youngsters in the age of 12 to 21years Ed. EUROCIRCLE Marseilles.
- Injep(2007). Rapport d'activité 2007" injep (institut national de la jeunesse et de
l'éducation populaire).
- La prévention spécialisée enjeux actuels et stratégies d'action(2004). Rapport du groupe
de travail inter-institutionnel sur la prévention spécialisée.
- Le Ministè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et de la Solidarité(2007).
Cinq guides pratiques sur la protection de l'enfance éd. le Ministè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et de la Solidarité.
- Mairie de paris(2004). Un enfant en danger Mairie de paris.
- Ministere de la santé et des solidarités(2007). Temps des familles, temps des enfants: des
espaces de loisirs Conférence de la famille 2007, Ministère de la santé et des
solidarités.

Ministère de la santé,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Reflexions sur l'avenir de l'information jeunesse. Rapport de synthèse de Ministère de la santé,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Ministre de la santé et des solidarités(2007). Temps des familles, temps des enfants: autour de la scolarité Conférence de la famille 2007, Ministre de la santé et des solidarités.

Minist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et de la solidarité(2004). Les établissements accueillant des enfants et des adolescents en difficulté sociale : résultats de l'enquête ES 2004. Publication de minist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et de la solidarité N° 525.

Minist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et de la solidarité(2004). Les établissements pour enfants et adolescents en difficulté sociale activité et personnel au 31 décembre 2004. Publication de minist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et de la solidarité N°113.

Rapport de la coopération entre les acteurs de l'institution scolaires e de la prévention spécialisée conseil technique des clubs et équipes de prévention spécialisée 2008/3.

Rapport du groupe de travail interinstitutionnel sur la prévention spécialisée la prévention spécialisée enjeux actuels et stratégies d'action 2004/15 guides pratique sur la protection de l'enfance éd.

Sauvadet, Thomas(2005). Les Jeunes de la cité – Process us de getthoïsation et mode de socialisation dans le Journal de l'université Paris 8, Passerelles N°8 Le sentiment d'insécurité du 'dealer de cité', Sociétés et jeunesses en difficulté 2006.

Verdier Pierre(2003). Histoire de l'aide sociale à l'enfance et de ses bénéficiaires l'intervention aux journée d'études de l'ANPASE à Hyères 2003/10.

- 관련법 :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

- 웹사이트:

<http://sejed.revues.org/document122.html>

<http://vosdroits.service-public.fr/F859.xhtml>

<http://www.travail-solidarite.gouv.fr/espaces/famille>

www.economie.paris.fr

www.jeunesviolencesecoute.fr
www.lra-aic-fdb.de
www.paris.fr
<http://jjiritsu-juku.esp.ne.jp/modules/tinyd1>.
<http://se-sejed.revues.org/document122.htm>.
<http://se-sejed.revues.org/document122.htm>.
http://ten-navi.com/contents/keyword/alphabet_01.php.
http://www.pref.chime.jp/h15450/1173943_1929.html.
<http://www.pref.chime.jp/ICSFiles/afieldfile/2007/07/23/honnbunn.pdf>.
<http://www.pref.gunma.jp>.
<http://www.pref.ibaraki.jp/bukyoku/kikaku/chikei/sienjigyousyu/syoukou/wakamonosupport.htm>.
<http://www.ys-station.jp/katudou/index.html>.
<http://www8.cao.go.jp/youth/suisin/taikou/wakugumi/wakugumig.html>.
www.bmfsfj.de
www.cidj.com

부 록

1.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설문지
2.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복지정책 현황

[부록1]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설문지

설문지 NO.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관한 조사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설문조사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舊 한국청소년개발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개발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실태를 파악하고 더 나은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입해주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137-715)

공동연구원: 이해연, 서정아

(TEL: 02.2188.8828 E-mail: jaseo@nypi.re.kr)

2008. 8.

한 국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

※ 이 설문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 설문지에서 일컫는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는 복지, 상담·자활, 보호, 매체환경, 성보호 관련사항이 포함되며 보육은 제외됩니다.

※ 다음은 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복지 업무 및 관련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귀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혹은 시·군·구명을 기재하여 주세요.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2. 귀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다음 중 어느 지역을 관할합니까?
 _____ ① 대도시 _____ ② 중소도시 _____ ③ 농산어촌
3. 귀 지방자치단체의 2008년 아동·청소년 복지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있는대로 기
재하여 주세요. 해당부분 사업계획서 혹은 예산서 복사물을 첨부하셔도 무방합니다.
 (※ 세부사업 예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쉼터 활성화, 청소년 공부
 방 운영, 어려운 청소년 지원, 인터넷 중독 치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지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등)

[illegible]

4. 귀 지방자치 단체에서 현재 수행중이거나 기 수행한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중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명과 간략한 개요를 적어주세요.

사업명		수행기간	개요 (※ 지원시설, 지원기준, 지원방법, 추천이유 등을 간략히 기재)
1)			
2)			
3)			

5. 아동·청소년복지업무 수행에 있어 모범이 된다고 생각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 1)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지방자치단체명 _____
- 2)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아동·복지 프로그램명 _____
- 3) 우수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_____

6. 다음의 사항을 읽고 귀 지방자치단체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지자체의 단체장은 아동·청소년복지에 대한 추진의지가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에 예산증가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지역에는 지역실정과 문화에 맞으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아동·청소년 복지 특성화 사업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지역에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아동·청소년 복지 사업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지역은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는 주민참여 기회가 열려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은 '가정'이나 '지역사회'보다 아동·청소년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시설(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7. 다음중 아동·복지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_____ ① 정책과 제도의 시행에 대한 평가, 관리 및 통제 _____ ② 자원 확보
 _____ ③ 부처간 유기적 체계망 구축 _____ ④ 아동·청소년 관련 법체계 정비
 _____ ⑤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_____ ⑥ 분산된 책임 영역의 통합과 조정
 _____ ⑦ 아동·청소년 건전 보호·육성정책의 수립
 _____ ⑧ 법·제도 수정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_____ ⑨ 다양한 자원이 활용가능한 여건과 환경 조성
 _____ ⑩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_____)

8. 다음중 아동·복지정책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_____ 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_____ ②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
 _____ ③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 _____ ④ 중앙 정부의 정책 실현 및 자원 확보
 _____ ⑤ 다양한 전문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여건 조성 _____ ⑥ 전문 인력의 배치와 활용
 _____ ⑦ 아동·청소년복지기관별 특성화사업 선정 및 활용
 _____ ⑧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의 확립
 _____ ⑨ 서비스 전달과 모니터링
 _____ ⑩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
 _____ ⑪ 기타(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_____)

9. 다음 중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민간기관의 역할과 책임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_____ ①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_____ ② 전문인력의 확충
 _____ ③ 다양한 복지서비스 실천과 전달
 _____ ④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이나 개선안의 제시 및 평가
 _____ ⑤ 다양한 아동·청소년복지 관련사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
 _____ ⑥ 국가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복지 담당
 _____ ⑦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_____ ⑧ 민간사업의 적극적인 복지사업비 투자 확대
 _____ ⑨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_____ ⑩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_____ ⑪ 기타(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_____)

※ 다음은 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10. 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상 인구현황을 기재하여 주세요(2007.12.31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인구			아동·청소년인구								
	계	남	여	0세이상-9세미만			9세이상-만18세미만			18세이상-만 25세미만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인구수(명)												

11. 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기재하여 주세요(2007. 12. 31기준, 단위: 천원)

1년예산 (단위: 천원)				
전체예산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계	국비	시도비	자체

12. 현재 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복지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_____ ① 아동복지 업무와 청소년 복지업무가 한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13번으로 가세요.)

_____ ② 아동복지 업무와 청소년 복지업무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14번으로 가세요.)

13. 아동·청소년 복지업무가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담당 인력은 몇 명입니까? _____ 명
(15번으로 가세요.)

14. 아동·청소년 복지업무가 각각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담당 인력은 몇 명입니까?
(다른 부서의 인원을 모를 경우, 현재 담당하고 계신 부서만 기재해주셔도 무방합니다.)

14-1) 아동 복지업무 담당인력 _____ 명

14-2) 청소년 복지업무 담당인력 _____ 명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5. 성명(직위)과 연락처는? (성명/직위) _____ (연락처) _____
16. 나이는? _____ 만으로 _____ 세
17. 성별은? _____ ① 남 _____ ② 여
18. 아동·청소년 업무에 종사한 총 기간은? 총 _____ 년 _____ 개월
19. 귀하께서 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복지관련 국가 자격증은 ?
_____ ① 없음 _____ ① 사회복지사 _____ ② 청소년지도사
_____ ③ 청소년상담사 _____ ④ 기타(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_____)

◆ 긴 시간동안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복지정책 현황⁶⁸⁾

68) 부록2는 설문에 응답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의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프로그램 내용이다. 가능한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응답내용을 모두 수록하였다. 따라서 응답내용의 일부분이 협의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부득이하게 음영을 활용하였다. 음영으로 어둡게 표시된 내용이 협의의 아동·청소년 복지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다.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서울특별시	ID : 3	-	-	-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정 복지과	청소년문화존 운영	68,400	34,200	17,100	17,100
	청소년 문화축제	12,000	12,000		
	서울유스캠퍼언예선대회	8,000		8,000	
	강북청소년수련관 운영	500,000		500,000	
	강북구 인공암벽장 운영	29,600			29,600
	청소년 독서실 운영	158,600			158,600
	모범 청소년 표창	1,400			1,400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1,600			1,600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3,000			3,000
	청소년 관련단체 활동지원	18,620			18,620
	청소년 특별교육 프로그램 지원	12,400			12,400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12,000	2,400	9,600	
	강북구 어린이 동요잔치	7,800			7,800
	지역아동센터 운영	312,000		312,000	
	지역아동센터 강사료 지원	14,400			14,400
	결식아동 급식지원	735,000		367,500	367,500
	자매결연지 청소년 우애교류	13,920			13,920
	부모님께 보내는 사랑의 편지쓰기	2,940			2,940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	13,800		13,800	
	소년, 소녀가장 지원	188,380		188,380	
	청소년 진로탐색 교실 운영	8,000			8,00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38,000	41,400	48,300	48,3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서울특별시	ID : 4	560,424	159,295	4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정 복지과 아동 복지	어린이 안전보호사업	51,686		32,645	19,041
	그룹홈 지원	68,759	27,155	41,604	
	소년소녀가정지원	57,210		57,210	
	가정위탁 지원	77,480		77,480	
	일반입양아동 지원	24,800	9,920	14,880	
	장애입양아동 지원	1,102	440	661	
	아동보호전문기관	120,168		120,168	
	결식아동 지원	921,663	221,403	350,130	350,130
	아동복지교사지원	83,640	25,092	58,548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56,000	31,200	124,800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지원	112,978		112,978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20,000		20,000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7,200	10,880	16,320	
	위 스타트 사업	186,000		186,000	
	지온보육원 지원	797,423		797,423	
	아동 후원 및 결연사업	24,832			24,832
가정 복지과 청소년 복지	어려운청소년장학금	52,872		52,872	
	하이스쿨장학금	757,770		757,770	
	청소년어울마당	12,749	4,749		8,000
	청소년쉼터운영	60,000	30,000		30,000
	청소년공부방운영	491,592			491,592
	강서유�스테크운영	9,600		9,600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10,500			10,500
	청소년수련관 건립	1,500,000	1,500,000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	39,600			39,600
	청소년회관운영	315,100			315,100
	청소년유해환경정비	4,510			4,51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보조금	4,000		4,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서울특별시	ID : 5	53,175	88,590	4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정 복지과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지원	26,400	5,280	21,120	
	서울 미디어 축제	8,000		8,000	
	아동급식비 지원	1,422,462		711,231	711,231
	청소년 그림그리기, 글짓기 대회	8,200			8,200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	7,500	7,500		
	외국어경진대회	1,009			1,009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27,600		13,800	13,8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서울특별시	ID : 6	376,572	111,759	4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정 복지과	청소년 독서실 운영	113,938			113,938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68,400	34,200	17,100	17,100
	청소년 종합 축제	11,000		8,000	3,000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강화	19,860		7,000	12,860
	청소년 폭력 예방 교육	3,150			3,150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아동 인지)	236,876	118,438	59,219	59,219
	청소년 건전한 문화 교육 서비스	12,000			12,000
	결식 아동 지원 사업	976,629	156,977	407,322	412,330
	청소년 한문 예절 교육	8,400		8,400	
	성년의 날 축하 엽서 발송	5,220			5,220
	모범 어린이 표창	3,600			3,600
	바둑 대회 (어린이)	5,375			5,375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18,000			18,000
	지역 아동 센터 운영비 및 아동 복지 교사 지원	349,920	83,856	266,064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서울특별시	ID : 9	616,753	199,654	5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정 복지과 아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쉼터 운영	106,000	32,000		74,0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86,239		3,300	82,939
	아동 위원회 운영	9,674			9,674
	저소득층 자녀 지원(위문)	8,700			8,700
	청소년 문화체험 실시	63,600			63,600
	유소 챔피언 경연 대회 실시	8,000		8,000	
	청소년 한문 예절 교실 운영	10,500		10,500	
	모범 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	2,500			2,500
	결식 아동 급식 지원	1,800,000	12,000	840,000	840,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서울특별시	ID : 10	375,975	115,043	1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정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캠프 및 방과후 취미 교실	34,800			34,800
	도봉 위스 페스티벌 대회	9,410		8,000	1,410
	청소년 교류 사업	7,000			7,000
	청소년 한문 교실 운영 및 독서실 야간 운영	24,300		17,400	6,900
	청소년 지원	961,142			961,142
	인터넷 중독 치료	5,000			5,0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6,000		6,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서울특별시	ID : 11	374,809	91,647	3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복지지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청소년유해환경 외)	78,450	5,000	18,500	54,950
	청소년 시설지원 (청소년 독서실, 야간공부방, 시설개보수 등)	76,952		26,400	50,552
	청소년 독서실운영지원	510,320			510,320
사회 복지과 아동복지	일반아동복지 지원	30,000			30,000
	급식필요아동 지원	320,355		160,178	160,177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서울특별시	ID : 12	-	-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정 복지과	아토피아동을 위한 친환경 보육시설 확충	200,000			200,000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지원	67,000	33,500	16,750	16,750
	청소년 문화행사	9,500			9,500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운영	19,320		13,800	5,520
	구립 청소년 시설 기능보강	70,000			70,000
	결혼이민자지원사업 아동멘토과건 서비스	7,720			7,720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지원	99,600		49,800	49,8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1,112	4,222	16,889	
	구립 청소년 독서실 및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지원	1,164,126			1,164,126
사회 복지과	장애청소년 세상보여주기 체험	5,100			5,100
	저소득 장애가정 청소년 학습지원	12,000			12,000
자치 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청소년강좌 운영	60,000			60,000
교육 지원단	대학생멘토링 사업지원	19,600			19,600
주민 생활 지원과	청소년 교복내리사랑 나눔장터 운영	5,000			5,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서울특별시	ID : 13	390,296	128,752	4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정 복지과	마포유스테크 운영	9,600		9,600	
	청소년 독서실 운영(2개소)	275,147			275,147
	청소년 야간공부방 관리운영	32,900		19,100	13,800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어린이 안전협의회 운영	10,000		10,0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06,400	41,280	165,120	
	마포 청소년 대축제	15,800			15,800
	어려운 청소년 자활지원사업	48,622	24,311	24,311	
	청소년 국제문화체험	14,360			14,360
	결식아동 도시락배달사업	839,880	68,880	385,500	385,500
	아동발달 지원계좌	33,348		33,348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서울특별시	ID : 14	348,575	97,997	4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정 복지과	청소년공부방 운영	85,277		4,300	80,977
	어려운 청소년지원				
	청소년 문화존사업 (문화체험활동지원)	68,400	34,200	17,100	17,1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서울특별시	ID : 15	405,969	218,283	4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여성 가족과 청소년 복지	우면산 독서실 운영	75,000		6,900	68,100
	서초 유스센터 운영	520,000			520,000
	방배 유스센터 운영	488,900			488,900
	청소년 위기 지원 센터	65,000			65,000
	서초 유스 도서 구입	20,000			20,000
	성년의 날 축하 메세지	9,000			9,000
	청소년의 달 행사 영어캠프 등	17,170			17,170
	어려운 청소년 지원 기타 보상금	190,420		90,210	100,21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서울특별시	ID : 16	333,535	106,765	3	1	2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정 복지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53,890		153,890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36,000
	청소년 인성 교육				10,000
	무지개 학습 봉사단 운영				21,000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		4,224	16,896	7,056
	청소년 영어 체험 캠프 운영		17,808	8,904	8,904
	급식 아동 지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21,800		10,900	10,900
	청소년 독서실 운영	98,510			98,510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06,000			106,000
	청소년 체험 활동 지원	12,900			12,900
	유스 페스티벌 운영	12,000		8,000	4,000
	성동 어린이 청소년상 시상	2,547			2,547
	어린이 바둑 대회	5,637			5,637
	빵빵교실 운영(재료비 제외)				19,288
	학안단 운영	53,469			53,469
	가정 위탁 아동 지원	99,490	43,845	43,845	11,800
	입양 아동 양육비 지원	13,106	5,242	7,864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서울특별시	ID : 18	607,005	-	4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여성 가족과	결식 아동 급식 지원	101,325	378,000	317,625	317,625
	청소년 수련관 운영	620,000			620,000
	청소년 독서실 운영	252,330			252,330
	청소년 공부방 운영	62,900		20,500	42,400
	어린이 및 청소년 참여 행사	36,500		5,000	31,500
	소년 소녀 가정 및 가정 위탁 보호 세대 지원	11,000			11,000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274,860	137,430		137,430
	어린이 안전 교육관 운영	342,413		273,931	68,483
	송파 청소년 세상 운영	30,900			30,900
	송파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70,000	35,000		35,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서울특별시	ID : 19	503,650	165,585	5	2	3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여성복 지과	청소년의 달 행사	16,292			16,292
	청소년교육 프로그램	206,945			206,945
	청소년체육 프로그램	32,000			32,000
	청소년 문화 예술사업	160,960	34,200	27,100	99,66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132,050	66,025		66,025
	해외자매결연도시 청소년교류	9,270			9,270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2,900			2,900
	아동 청소년 건진육성사업	51,050			51,05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서울특별시	ID : 20	-	-	3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정복지과	유스 페스티벌			8,000	
	청소년 한문 예절 교실			10,500	
	청소년 문화 유적지 순례				6,600
	청소년 구립 독서실 운영				672,958
	청소년 지원 센터		46,220	46,220	
	방과 후 아카데미		46,500	46,500	
	야간 공부방 운영		49,900	49,9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서울특별시	ID : 21	235,832	64,199	3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정 복지과	용산 청소년 수련관운영	2,070,528			2,070,528
	어린이날 기념행사	650		650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8,000		8,000	
	청소년 교양강좌(리더쉽강좌)	12,500			12,500
	시설 및 일반아동 동요대회	3,000			3,000
	서울 유스페스티벌	8,000		8,0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5개소)	191,957			191,957
	청소년 보호 감시초소 운영	4,000			4,000
	지역아동센터 운영	10,560	2,112	8,448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849			849
	구립장난감 도서관 운영	112,413			112,413
	청소년 자원활동가 활용	400			400
	결식아동 지원	비예산			
	아동발달지원계좌 후원	비예산			
	소년소녀가정 지원(자립정착금등)	비예산			
전산 정보과	어린이 컴퓨터 교육	60			60
주민 생활 지원과	방학중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비예산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서울특별시	ID : 22	-	-	4	2	2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정 복지과	청소년 문화존	38,400	19,200	9,600	9,600
	지역 아동 센터 운영비	264,000	79,200	184,000	
	지역 아동 센터 교사 인건비	165,600		165,600	
	청소년 어울마당	10,000		5,000	5,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서울특별시	ID : 23	-	-	-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정 복지과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160,990			160,990
	청소년독서실 운영	47,200			47,200
	청소년 유해환경 홍보물	900			900
	푸른쉼터 운영비(상담센터)	1,640			1,640
	모범청소년표창	492			492
	청소년과학관체험활동	4,500			4,500
	동요축제	6,000			6,000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지원	38,928			38,928
	소년소녀가정지원	4,750			4,750
	청소년문화존운영	37,000	18,500	9,250	9,250
	청소년동아리지원	30,000	15,000	5,000	5,000
	종로유스페스티벌	16,000		8,000	8,000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6,600		3,300	3,300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10,500		10,500	
	자매도시 청소년교류캠프	10,800			10,8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서울특별시	ID : 24	130,044	33,146	4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정 복지과	청소년예절문화교실운영	40,000			40,000
	시설아동 위문	4,000			4,000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1,000			1,000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지도활동	15,000			15,000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7,000			7,000
	청소년한문예절교실	21,000		10,000	11,000
	중구유스캠프회원선발대회	27,000		5,000	22,000
	결식아동급식지원	449,000	93,000	178,000	178,000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	28,000		14,000	14,0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장려금	14,000		14,000	
	서울유스테크(마루)운영	12,000		12,000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214,000	107,000		107,000
	청소년어울마당	10,000	5,000		5,000
	지역사회서비스혁신	20,000	1,000	1,000	
	중구청소년수련관운영	784,000			784,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부산광역시	ID : 26	51,509	15,408	1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생활 지원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42,000	21,000	21,000	
	성년의날 맞이 축하카드비	1,474			1,474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부산광역시	ID : 27	258,934	85,426	3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지원과	청소년공부방운영	48,000	24,000	24,000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277,200	138,600	138,600	
	아동급식지원	377,197		320,661	56,536
	입양아동양육지원	18,000	12,600	5,400	
	가정위탁아동지원	121,280		121,280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115,200	80,640	34,560	
	청소년증발급	400			400
	청소년보호법 위반관련 업무추진	1,200			1,200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1,820			1,820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무지개 멘토링사업	비예산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부산광역시	ID : 28/29	296,753	218,817	2	-	2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문화 체육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28,000	14,000	14,000	
	청소년어울마당운영	10,520			10,520
	어려운청소년 격려 장학금 지급	1,000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캠페인	960	960		
	성년의날 축하 메세지	2,500			2,500
	청소년증 발급	2,000			2,000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포상금제운영	300			300
주민 복지 서비스과 아동 복지	아동급식협의회 회의참석수당(2회) 아동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4,060			4,060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학여행비	900			900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격려	1,800			1,800
	시설아동 취미교실(하계수련) 간식 등	900			900
	어린이 놀이터 보수	10,000			10,000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4,000		14,000	
	아동시설 교육급여	14,000	12,600	1,400	
	아동시설 의료및 구료비(생계급여)	70,730	63,957	7,073	
	아동시설 운영	487,586		487,586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지원	1,200		1,200	
	시설아동 용돈지원	14,500		14,500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2,000		2,000	
	시설아동 교통비 지원	9,500		9,500	
	영아시설 위생대 지원	100		100	
	아동시설 환경개선비	4,000		4,000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	12,000		12,000	
	소년가정,가정위탁,시설아동 대학등록금	26,476		26,476	
	가정위탁 양육지원	97,800		97,800	
	결식아동 급식지원	503,636		420,052	83,584
	입양아동 장려금	136,000	95,200	40,800	
	장애아동 입양가정 양육보조금 지원	9,132	6,392	2,740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1,600	15,120	6,480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46,800	32,760	14,04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90,400	145,200	145,200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80,000	126,000	54,000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비	37,668	15,067	22,601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부산광역시	ID : 30/31	104,416	25,177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문화 체육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34,000	17,000	17,000	
주민복 지과 아동복 지	아동생활시설 지원	830,718	125,222	705,496	
	지역아동센터 지원	29,400	145,200	145,200	
	아동복지교사 지원	96,000	67,200	28,800	
	지역사회서비스혁신 (보편형)	129,464	90,625	38,484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지역맞춤형)	196,560	137,592	29,484	29,484
	결식아동 급식지원	469,480		394,150	75,330
	가정위탁 아동지원	68,630		68,630	
	어린이 놀이터 지원	10,000			10,000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30,360	19,152	8,208	
	입양(장애)아동 양육비 지원	22,332	15,633	6,699	
	아동(급식)위원회의수당	1,680			1,68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부산광역시	ID : 32	284,901	225,742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공부방운영	42,000	21,000	21,000	
	청소년문화존운영	38,400	19,200	9,600	9,600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25,000	12,500	6,250	6,250
	전통 성년식 개최	1,400			1,400
복지과 아동복 지	지역아동센터운영	316,800	158,400	158,400	
	저소득층 수능공부방운영	24,000	12,000	12,000	
	평일 아동급식	48,000	36,000	12,000	
	방학중 아동급식	170,830	128,120	42,710	
	토,일 공휴일 결식아동급식지원	232,490		232,49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부산광역시	ID : 33	402,359	112,048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사업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보소(홍보물제작, 청소년증발급)	1,300			1,300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1,500			1,500
	청소년선도 보호활동비 지원	15,000			15,000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500			500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74,428			74,428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1,800	900	900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인터넷운영비	60,000	28,000	28,000	4,000
	청소년지도사 배치지도	20,640	10,320	10,320	
	청소년방과후 교실지원	139,870	69,935	69,935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비 지원	13,000	6,500	6,500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2,000			2,000
복지 사업과 아동 복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72,331	66,569	5,762	
	시설수급자 교육급여	18,233	16,410	1,823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459,200	365,600	93,600	
	아동시설 운영	373,898		373,898	
	시설아동 용돈	9,800		9,800	
	시설아동하계수련비	1,000		1,000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1,500		1,500	
	시설아동 교통비 지원	5,700		5,700	
	아동복지시설 위문	2,700			2,700
	장애아동 입양가정 양육보조금	9,132	6,393	2,739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32,400	22,680	9,720	
	아동발달 지원계좌	55,440	38,808	16,632	
	그룹형태의 보호	37,668	15,067	22,601	
	지역아동센터운영	422,400	211,200	211,200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자립지원금	28,500		28,500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시설아동 대학등록금	24,550		24,550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195,360		195,36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부산광역시	ID : 34	325,302	105,851	3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복지과 아동 복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400,000	320,000	80,000	
	한부모 가족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130,000		130,000	
	구유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	1,000			1,000
	아동발달지원계좌	17,640	12,348	5,292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27,396	19,177	8,219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26,400	18,480	7,920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12,000	6,000		6,000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211,200	105,600	105,600	
	아동복지교사	156,000	109,200	46,800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95,040		95,040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대학등록금 지원	15,000		15,000	
	아동급식지원	675,149	568,369	106,780	
	아동시설운영	116,048		116,048	
	아동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4,000		4,000	
주민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2,900			2,90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60,000			60,0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	153,890	76,945		76,945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13,000	6,500	6,500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19,440	9,720	9,720	
	청소년공부방지원	56,000	28,000	28,000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지원	1,800	900	900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지원	50,000			50,000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30,000	12,000	12,000	6,000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요원보상	70,000	28,000	28,000	14,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부산광역시	ID : 35/36	-	-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문화 공보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53,890	76,945	76,94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지원	1,800	900	900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13,000	6,500	6,500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38,160	19,080	19,080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90,000			90,000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54,000	27,000	27,000	
	청소년문화존 운영사업	38,400	19,200	9,600	9,600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25,000	12,500	6,250	6,250
복지 서비스과 아동 복지	위원회 운영	2,520			2,520
	장애 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15,509	10,856	4,653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	26,400	18,480	7,920	
	아동 발달 지원 계좌	27,000	18,900	8,100	
	가정 위탁 아동 양육 지원	147,000		147,000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시설아동 대학등록금지원	13,638		13,630	
	소년 소녀 가정, 가정 위탁 아동 자립 지원금	19,500		19,500	
	평일 아동 급식 지원	200,000		150,000	50,000
	토 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	166,390		166,390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340,240		255,180	85,060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	277,200	138,600	138,600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37,668	15,067	22,601	
	아동 복지 교사	132,000	92,400	39,600	
	어린이 놀이터 보수	4,000			4,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부산광역시	ID : 37	364,693	284,633	8	5	3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서비스과 아동 복지	아동시설운영	1,041,359		1,041,359	
	아동시설 생계급여	213,863	196,707	17,161	
	아동시설 교육급여	36,467	32,820	3,647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3,000		3,000	
	시설아동 용돈지원	32,000		32,000	
	시설아동 수학여행비지원	3,000		3,000	
	시설아동 교통비지원(중,고생)	9,000		9,000	
	아동복지교사	9,000		9,0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32,000	66,000	66,000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	31,500		31,500	
	가정위탁, 소년소녀, 시설아동 대학등록금 지원	24,550		24,550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4,000		14,000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양육지원	155,520		155,520	
	아동발달 지원계좌	64,800	45,360	19,440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2,800	15,960	6,840	
	평일아동 급식지원	399,411		299,558	99,853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140,010		105,010	35,000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55,820		55,820	
	영아시설 위생대 지원	400		40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36,300	68,150	68,150	
	아동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8,000		8,000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	568,015	397,610	170,405	
	어린이 놀이터 관리	3,000			3,000
	아동복지사업운영	5,020			5,020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2,400			2,400
주민 서비스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28,000	14,000	14,000	
	청소년문화존 운영	63,400	31,700	15,850	15,850
	청소년 보호	3,686			3,686
	청소년 지도 업무추진	608			608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부산광역시	ID : 38	130,731	22,481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서비스과 아동 복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46,080		46,080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	4,500		4,500	
	소년소녀, 가정위탁, 시설아동 대학등록금	27,270		27,270	
	아동발달 지원계좌	296,316	207,432	88,884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13,200	9,240	3,960	
	지역사회혁신 아동관리센터 위탁금	217,215	152,050	65,165	
	아동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595,643	1,473,622	122,021	
	아동시설수급자 교육급여	364,661	328,195	36,466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56,000		156,000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20,800		20,800	
	시설아동 용돈지원	160,000		16,000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지원	19,000		19,000	
	시설아동 교통비 지원	10,940		10,940	
	영아시설 위생대 지원	12,200		12,000	
	아동시설 운영비	7,767,902		7,767,902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2,800	26,400	26,400	
	아동복지교사 지원	36,000	25,200	10,80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00,000	50,000	50,000	
	아동급식지원	472,615		420,286	52,329
	어린이 놀이터 정비	15,000			15,000
복지 서비스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관리	1,394			1,394
	청소년 공부방운영	14,000	7,000	7,000	
	청소년지도사 배치	40,557	19,440	19,440	1,677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10,000	5,000	5,000	
	수련활동지원	176,496			176,496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1,800	900	900	
	청소년수련관 유지보수	76,378			76,378
	청소년 수련관 운영지원	36,000			36,0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지원	191,890	76,945	76,945	38,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부산광역시	ID : 39	178,383	47,699	3	1	2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서비스과	불우 아동 지원	7,800			7,800
	가정 위탁 양육 지원	77,640			77,640
	가정 위탁 센터 운영비	133,533			133,533
	평일 아동 급식 지원	80,000		60,000	20,000
	아동 복지 시설 수급자 생계 급여	106,802	98,353	8,499	
	어린이 놀이터 정비 관리	25,000			
	아동 발달 지원 계좌	30,600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4,000		4,000	
	소년 소녀 가정 등 자립지원	6,000		6,000	
	소년 소녀 가정 위탁 시설 아동 대학 등록금	13,630		13,630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89,610		67,210	22,400
	토 공휴일 결식 아동 급식 지원	12,960		12,960	
	아동 복지 시설 교육 급여	12,156	10,940	1,216	
	아동 복지 시설 운영비	570,970		570,970	
	시설 아동 교통비 지원	7,000		7,000	
	시설 아동 수학 여행비	1,300		1,300	
	그룹홈 운영 지원	75,336	30,134	45,202	
	시설 아동 용돈 지원	9,800		9,8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부산광역시	ID : 40	212,615	65,720	-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사업과 아동 복지	가정위탁양육지원	106,560		106,560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지원	9,132	6,392	2,740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14,400	10,080	4,320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43,200	30,240	12,960	
	평일아동급식지원	48,947		36,710	12,237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20,650		20,650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179,547		134,660	44,887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자립지원	25,500		25,500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시설아동 대학등록금	35,518		35,518	
	아동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4,000		4,000	
	아동시설운영비 지원	714,801		714,801	
	지역아동센터 운영	118,800	59,400	59,400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96,000	67,200	28,800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자연학습비 지원	1,500			1,500
	결연기관운영	238,969		238,969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137,726		137,726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1,900		1,900	
	시설아동 용돈지원	15,600		15,600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3,000		3,000	
	시설아동(중,고생) 교통비지원	1,300		1,300	
	영아시설 위생대 지원	300		30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0,000	15,000	15,000	
	아동시설 생계급여	142,440	128,199	14,241	
	아동시설 교육급여	14,000	12,600	1,400	
복지 사업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	38,400	19,200	9,600	9,600
	청소년공무방 운영	48,000	24,000	24,000	
	청소년복지 및 활동지원	3,120			3,12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부산광역시	ID : 41/42	155,273	38,719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문화 관광과 청소년 복지	파아란 청소년가요제	4,500			4,500
	청소년유해업소단속	1,000			1,000
	유해환경감시단지정운영	1,000			1,000
	청소년보호제도 및 홍보	1,280			1,280
	청소년공부방운영	14,000	7,000		7,000
	청소년체련교실	3,600	1,800		1,800
평생 학습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화교육사업	36,464			36,464
문화 체육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26,912			26,912
	청소년 어울마당	5,000			5,000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237,933	166,553	71,380	
발전 전략 추진단	청소년 홈스테이	7,000			7,000
	청소년 필리핀 어학연수	48,600			48,6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부산광역시	ID : 45/46	424,507	121,102	3	1	2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평생 학습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47,791	9,720	9,720	28,351
	청소년 공부방(2곳) 운영	34,000	17,000	17,000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91,377	76,945	76,945	37,487
	청소년 이동(해변)상담실 운영	3,897			3,897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1,800	900	90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120,000	60,000		60,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대구광역시	ID : 48	-	-	3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지원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32,320	66,160	33,080	33,080
	청소년 문화존	38,500	19,250	9,625	9,625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3,000			3,0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21,320	7,000	5,000	9,320
	청소년 영어회화 교실	8,600			8,600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5,800			5,8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대구광역시	ID : 49/50	591,169	214,322	3	-	3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평생 학습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증 발급	1,200			1,200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11,000			11,000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3,000	1,500		1,500
	청소년 쉼터 운영	132,500	66,250		66,250
	학교 급식비 지원	79,200		39,600	39,600
	청소년 문화존 사업	38,500	19,250	9,625	9,625
	영호남 청소년 교류사업	6,000			6,000
	청소년 대축제	18,000			18,0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130,000	60,000	30,000	40,000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원	1,800	900	9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53,890	76,945	38,473	38,472
	청소년 지도사 배치	19,440	9,720	4,860	4,860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	13,000	6,500	6,500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지원	50,000			50,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대구광역시	ID : 51	336,049	96,451	4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지원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3개소)	49,800	21,000	15,000	13,800
	청소년 수련시설운영(문화의집)	76,920	16,220	11,360	49,34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대구광역시	ID : 52/53	463,056	155,775	4	2	2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문화 공보실 청소년 복지	북구 어린이 학교	23,200			23,200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4,000			4,000
	청소년 공부방 지원	37,000	17,000	10,000	10,000
	청소년 문화존 사업	38,500	19,250	9,625	9,625
	청소년 수련관 운영	509,850	103,425	55,413	351,012
	교육경비 보조	167,840			167,840
	학교급식 지원	79,200		39,600	39,600
주민 복지과 아동 복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급	132,000	66,000	33,000	33,000
	아동복지교사 지원	96,000	67,200	14,400	14,400
	요보호 아동 급식 및 양육지원	1,295,730		974,430	321,3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대구광역시	ID : 54	-	45,383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사업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53,890	76,945	38,473	38,472
	청소년 공부방운영	82,000	38,000	25,000	19,000
	학교급식비지원	79,200		39,600	39,600
	아동급식지원	604,860		441,510	163,35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대구광역시	ID : 55	448,695	142,695	3	2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	36,870			36,870
	청소년 격려선도반 운영	4,900		4,900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	32,200			32,200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 활동	2,400		1,000	1,400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	120,000			120,000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지원	153,890	76,945	38,472	38,473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38,880	19,440	9,720	9,720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1,800	900	9,00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593,717	472,000		121,717
	청소년 건전육성	10,930			10,930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0,000	5,000	5,000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17,000	7,000	5,000	5,000
	청소년 문화존 운영	38,500	19,250	9,625	9,625
	성년의 날 전통 성년식	10,000			10,000
	학교급식지원	79,200		39,600	39,6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대구광역시	ID : 58	162,864	50,649	4	1	3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비	122,946		122,946	
	입양아동양육보조금	24,000	16,800	7,2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2,800	26,400	13,200	13,200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28,080	49,656	8,424	
	아동복지교사 자치단체 경상보조	45,000	33,600	7,200	7,200
	아동급식지원(중식)	376,170		268,170	105,000
	아동급식지원(아침, 저녁)	37,800		28,350	9,45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인천광역시	ID : 59	568,905	205,670	-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여성과	아동복지 및 아동건전육성	6,221,238	6,221,238		
	창의적 청소년 활동 여건조성	891,581	891,581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인천광역시	ID : 60	342,564	121,877	6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서비스과	청소년보호시설(인터넷방) 운영	9,374			9,374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19,300		12,300	7,0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53,890		76,945	76,945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40,000		20,000	20,000
	장한청소년 격려금 지원	1,100			1,100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11,000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	745,378	596,303	149,075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학용품비지원	89,600		44,800	44,800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습비 지원	295,200		147,600	147,600
	한부모가족 중고생 교통비 지원	131,200		65,600	65,600
	한부모가족 중고생 교복비 지원	45,600		22,800	22,800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108,000		108,000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94,800	66,360	28,440	
	장애아동입양 양육비 지원	9,133	6,393	2,740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91,006		45,503	45,503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1,500	8,050	1,725	1,725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	19,440	13,608	2,916	2,916
	결식 아동급식 지원	1,100,000		935,000	935,000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 지원	73,920		66,528	7,392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16,800	158,400	79,200	79,200
	공부방 학습교구비 지원	36,000		18,000	18,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인천광역시	ID : 61/62	399,130	138,829	8	4	4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서비스과 아동 복지	지역아동센터운영	1,235,700	698,400	268,650	268,650
	한부모 가정지원	1,590,154	687,124	558,510	344,520
	결식아동 급식지원	1,971,000	295,650	1,379,700	295,650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228,000	75,600	152,400	
	권역별 어린이 도서관 건립	4,402,000	560,000	1,120,000	2,722,000
문화 체육과 청소년 복지	연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5,370	6,500	6,500	2,370
	청소년 수련관 운영	162,148	23,200	14,450	124,498
	가정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86,604	15,448	15,448	55,708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2,445,000	500,000	459,000	1,486,0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89,000	35,000	9,500	44,5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77,172	76,945	76,945	23,282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인천광역시	ID : 64/65	96,687	88,823	1	-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초등 방과후 교실 운영지원	392,968			392,968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11,200	105,600	52,800	52,800
	소년소녀 가정 보호지원	179,428	28,196	103,840	47,392
	공부방 학습 교구비 지원	24,000		12,000	12,000
	소년소녀 및 한부모 가족자녀 문화체험	10,250			10,250
문화 체육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71,760	66,160	66,160	39,440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53,400	21,000	5,700	26,700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40,000		20,000	20,000
	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80,000	40,000	40,000	
	군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50,500		25,000	25,5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인천광역시	ID : 66	425,127	119,819	4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공부방운영	98,000	17,000	32,000	49,000
	어려운 청소년지원(학자금지원)	60,000		30,000	30,000
	청소년이용시설 운영	56,147			56,147
	청소년문화행사 지원	33,200			33,200
	청소년의 권익증진	7,060			7,060
	청소년 체육행사지원	10,960			10,960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캠페인	8,680			8,680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5,000	7,500		7,500
	청소년 참여활동지원	7,000	1,000	1,000	
주민 복지과 아동 복지	가정위탁아동 상해 보험료지원	11,100	7,770	1,665	1,665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67,200	47,040	20,160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8,265	12,785	5,480	
	아동발달지원계좌	26,280	18,396	3,942	3,942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105,146		52,573	52,573
	아동복지사업	105,000		94,500	10,500
	결식아동급식지원	1,600,000		1,360,000	240,000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지원	100,800		100,800	
	아동지원 활성화육	4,880			4,880
	아동복지시설지원	1,395,868	639,067	446,301	310,500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660,000	330,000	165,000	165,000
	아동복지교사지원	420,000	294,000	63,000	63,000
	지역아동복지센터운영지원	165,000		82,500	82,500
	아동복지센터 설치지원	100,000		100,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인천광역시	ID : 67	74,081	26,331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복지과 청소년 복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2,800	1,400	1,400	
	청소년 참여위원회	2,000	1,000	1,000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40,000		20,000	20,000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87,400	37,000	6,700	43,70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	23,000	11,500	11,50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배치지원	59,520	29,760	29,76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58,330	79,165	79,165	
	청소년 문화존 운영	38,000	19,000	9,500	9,500
	청소년 동아리 지원	10,000	5,000		5,000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784,239			784,239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84,908			84,908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인천광역시	ID : 68	89,768	25,792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복지과 아동 복지	소년소녀가정지원	25,566		13,283	13,283
	아동복지사업	334,161	5,022	225,905	103,234
	국내입양가정양육비	15,600		15,600	
	국내입양아동양육수당	21,600	15,120	6,480	
	결식아동확대급식비 지원	120,000		81,600	38,400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3,100	2,170	465	465
	아동발달지원계좌	17,345	9,223	4,061	4,061
	시설보호자간식비	39,960		39,960	
	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	577,277		577,277	
	아동양육시설지원	90,059		64,379	25,680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지원	12,000	6,000	3,000	3,000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48,000	24,000	12,000	12,000
	공부방학습교구비지원	9,000		4,500	4,500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48,045		48,045	
	그룹홈지원	37,030	14,812	22,218	
	초등학교방과후 교실지원	77,440		38,700	38,700
	아동복지교사 지원	21,000	14,700	3,150	3,150
	아동시설기능보강	356	178	178	
주민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어울마당	9,498	4,749		4,749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	16,350		8,175	8,175
	청소년 공부방	31,600	10,000	5,800	15,8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인천광역시	ID : 69	66,466	16,315	3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생활 지원과	청소년공부방운영	71,200	28,000	7,600	35,600
	어려운 청소년학자금지원	20,000		10,000	10,000
	청소년문화체험탐방	5,000			5,000
	청소년취미교양교육	29,400			29,400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2,000	1,000	1,000	
	청소년 열린음악회	7,000			7,000
	스타크래프트게임대회	3,000			3,000
	강화도 어린이축제	7,000			7,000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8,000	4,000		4,000
	학교연계 CA전일제사업, 방과후 취미교육	10,000	5,000	5,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인천광역시	ID : 70	17,226	4,185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생활 지원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	53,000	10,000	11,900	31,1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17,800	7,000	1,900	8,900
	청소년 동아리 지원	6,000	3,000		3,000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20,000		10,000	10,000
	저소득 한부모 가족 사랑의 캠프	14,000			14,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광주광역시	ID : 71	316,101	156,085	3	2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팀 청소년 복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40,000	20,000		20,000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10,000	5,000		5,000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비	15,000	7,500	3,750	3,750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1,800	900	900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지원	30,000			30,000
	공공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19,440	9,720		9,720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수당	1,000			1,000
	모범청소년 표창	500			500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300			300
사회 복지팀 아동 복지	아동복지시설 지원	1,908,430	514,867	1,197,163	196,400
	아동복지교사(사회적 일자리)	324,000	226,800	48,600	48,600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546,000	273,000	136,500	136,500
	시설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지원	40,000		40,000	
	시설아동용돈	18,180		18,180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특별수당	2,400		2,400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아동 자립 정착금	15,000		15,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광주광역시	ID : 73/74	209,024	69,664	7	7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위생과 청소년 담당	청소년 공부방 (5개소)	41,335	10,000		31,335
	청소년문화존 사업 및 동아리 활동지원	47,000	23,500	11,750	11,750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49,960	24,980	900	24,080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08,시범사업)	130,000	90,000	40,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광주광역시	ID : 75	307,072	109,658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사업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공부방	20,000	10,000		10,000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12,000	6,000		6,000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운영	10,000	5,000		5,000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1,800	900		900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3,000	1,500	1,500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5,000	7,500	3,750	3,750
복지 사업과 아동 복지	소년소녀가정 지원	8,400	6,720	1,680	
	가정위탁 세대지원	89,040	71,232	17,808	
	아동발달 지원계좌	37,800	26,460	11,340	
	입양아동 양육수당	36,000	25,200	10,800	
	그룹홈 지원	113,004	45,202	33,901	33,90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520,000	364,000	78,000	78,000
	아동복지교사지원	348,000	243,600	52,200	52,200
	셋째아 양육비 지원	177,742		177,742	
	결식아동 급식지원	753,158		641,819	111,339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광주광역시	ID : 76/77	115,066	33,001	2	2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사업과 아동 복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29,520		29,520	
	결식아동 급식지원	291,958		229,656	62,302
	국내입양 장려금	241,000	168,700	72,300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24,000	16,800	7,200	
	아동발달지원계좌	126,000	88,200	37,800	
	아동복지 행정지원	5,454			5,454
	아동복지 시설운영	3,898,000		3,898,000	
	지역아동센터 운영	240,000	120,000	60,000	60,000
	아동복지교사지원	180,000	126,000	27,000	27,000
	시설아동지원	75,385		75,385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37,030	14,812	11,109	11,109
	입양기관 운영	16,770		16,770	
	기미아 일시보호소 운영	11,000		11,000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지원	1,440		1,440	
	산수 어린이회관 운영	9,619			9,619
	어린이놀이터 관리	1,627			1,627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083,719	541,860	541,86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대전광역시	ID : 78	219,014	77,472	3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복지팀	청소년 시설운영	82,101			82,101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208,800	104,400	13,727	90,673
	청소년건전육성 프로그램	7,118			7,118
	공공청소년 수련시설개선	646,590	437,000	120,000	89,590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56,880	28,440		28,440
	청소년공부방지원	42,000	21,000		21,000
	청소년참여활동사업	3,600	1,800		1,800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지원	23,000	11,500		11,5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대전광역시	ID : 79/80	250,523	91,545	-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관광 공보실 청소년 복지	청소년의 달 서한문 인쇄	1,400			1,400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강사수당	140			140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실비보상	4,380			4,380
	모범청소년 표창	2,000			2,000
	청소년 수련실운영(2개소)	18,000			18,000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40,000			40,00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18,000	9,000		9,000
	청소년 공부방운영	20,000	10,000		10,000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9,498	4,749		4,749
	청소년공부방 운영 도서구입 등	2,000		1,000	1,0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33,534	116,767		116,767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2,876	1,438		1,438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15,600	7,800		7,800
주민 복지 서비스과 아동 복지	어린이날 행사	18,000			18,000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44,280	30,996	6,642	6,642
	아동급식지원	613,497		355,617	257,88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84,800	92,400	46,200	46,200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운영	194,040			194,04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대전광역시	ID : 81/82	244,496	73,543	3	2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생활 복지과 아동 복지	어린이날 행사	25,000			25,000
	가족사랑 훈련캠프	3,300			3,300
	모,부자 가정자녀 캠프	14,400		7,200	7,200
	희망스타트 문화체험행사	10,000	10,000		
	희망스타트 건강체험행사	6,000	6,000		
	희망스타트 교육프로그램운영	21,000	21,000		
	희망스타트 복지프로그램운영	35,000	35,000		
	희망스타트 건강사업운영	5,000	5,000		
	희망스타트 보육센터운영	10,000	10,000		
	결식아동급식지원	635,522		373,856	261,666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44,000		22,000	22,000
	지역아동센터 운영	13,200		6,600	6,600
문화 공보과 청소년 복지	한,중,일 청소년홈스테이 축구대회참가	9,000			9,000
	청소년 공부방운영	36,000	21,000		15,000
	청소년수련시설운영	8,000			8,000
주민 생활 지원과	동구 청소년 자활센터운영	53,500	37,450	16,050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	22,000		11,000	11,000
전략 사업팀	영어 골든벨 대회개최	10,000			10,000
	평생교육국제화센터(영어마을) 운영	1,018,799			1,018,799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대전광역시	ID : 83/84	266,773	82,366	1	1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문화 체육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54,890	76,945	76,945	
	청소년 공부방	28,000	14,000	14,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대전광역시	ID : 85/86	501,935	187,167	10	7	3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문화 홍보·청소년 복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4개소)	258,639			258,639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52,000	26,000		26,000
	청소년 문화의집 지도사 배치	78,240	39,120		39,120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7,200	3,600		3,600
	청소년 공부방 운영(4개소)	74,000	28,000	9,000	37,000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00,000	50,000		50,0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57,610	78,805		78,805
	청소년 종합 레포츠 센터 운영	29,712			29,712
	2007) 퍼스트 서구 청소년 동아리 축제	30,000			30,000
	2000~2005) 청소년 국제교류 (중국 6회)	100,000			100,000
복지 지원과 아동 복지	어린이날 행사지원	12,050			12,050
	아동발달계좌지원	26,640	18,648	3,996	3,996
	입양수수료	10,000	7,000	1,500	1,500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27,398	19,178	4,110	4,110
	입양양육 양육수당	36,000	25,200	5,400	5,400
	퇴소아동자립정착금	10,000		5,000	5,000
	소년소녀가정등 지원	11,520		5,760	5,760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1,225,874		677,046	548,828
	요보호아동 건강성장지원	28,195		7,860	7,860
	가정위탁양육지원	50,400		25,200	25,200
	아동복지시설지원	1,213,887		1,161,628	52,279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12,800	356,400	178,200	178,200
	아동복지교사지원	420,000	294,000	63,000	63,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울산광역시	ID : 87/88	342,675	123,522	6	5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문화 체육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365,763	34,240	17,120	314,403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300,580	143,140	71,570	85,870
	청소년 쉼터 활성화	133,500	66,750	33,375	33,375
	청소년 공부방 운영	40,000	20,000		20,000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	20,000		5,000	15,000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37,800	1,500	18,150	18,15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울산광역시	ID : 89/90	181,844	71,261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복지과 아동 복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중고생 교육비지원	370,080		185,040	185,040
	아동급식지원	969,150		821,625	147,525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139,100		99,878	39,222
	아동복지행사지원	18,923			18,923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237,600	118,800	118,800	
	아동발달지원계좌	12,960	9,072	3,888	
문화 체육과 청소년 복지	Global Junior School 2008(국제교류사업)	4,738			4,738
	청소년의달 행사운영	10,000		5,000	5,000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운영지원	226,000			226,000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100,000			100,000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	26,000	13,000	6,500	6,500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인력지원비	38,160	19,080	9,540	9,540
	청소년문화존 운영	38,000	19,000	9,500	9,500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3,600	1,800	900	90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93,935	146,968	73,483	73,484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	8,000	4,000	2,000	2,000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3,000	1,500	750	750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70,000	35,000	17,500	17,500
	비행청소년 예방선도 활동	10,000		5,000	5,000
	청소년보호등 조사단속활동	2,000		1,000	1,000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4,000			4,000
	기소유예 청소년 재방방지 프로그램	1,877			1,877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울산광역시	ID : 91/92	155,642	60,072	1	1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서비스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800,000	400,000	200,000	200,000
문화 홍보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예술제 개최	19,000			17,000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10,000		5,000	5,000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1,000			1,000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 활동	4,000		2,000	2,000
	청소년 비행 예방선도 활동	8,000		4,000	4,000
	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 사업	3,800			3,800
	지역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	3,000	1,500	750	750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28,000	14,000		14,000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5,000			5,000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	50,000			50,000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지원 사업	70,000	35,000	19,500	19,5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울산광역시	ID : 94/95	93,425	92,625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서비스과 아동 복지	지역아동센터운영	158,400	79,200	79,200	
	지역아동센터 방범처리비 지원	15,000		7,500	7,500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112,330		79,951	32,379
	요보호아동 피복구입비 지원	180			18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73,400	79,200	86,700	7,50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지원	37,668	15,067	22,601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27,600	19,320	8,280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13,320	9,324	3,996	
	아동복지교사지원	180,000	126,000	54,000	
	입양수수료 지원	16,500	11,550	4,950	
	취약계층 아동보호	660,940		550,900	110,040
문화 체육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운영	127,825			127,825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23,112	61,556	30,778	30,778
	청소년 문화존 사업	38,000	19,000	9,500	9,500
	청소년 공부방 지원	20,000	10,000		10,000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10,000	5,000	2,500	2,500
	청소년 지도사 배치	18,720	9,360	4,680	4,680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13,000	6,500	3,250	3,250
	청소년 주간행사	10,000		5,000	5,000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지원	3,000	1,500	750	750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1,800	900	450	450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10,000	5,000	2,500	2,500
	청소년 활동지원	8,770			8,770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16,000		8,000	8,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기도	ID : 96	931,463	325,531	3	3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족 여성팀 아동 복지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90,000	72,000	9,000	9,000
	아동복지시설운영	437,700		65,655	372,045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8,000		1,000	7,000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76,983		38,491	38,49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	28,800		14,400	14,400
	지역아동센터운영	792,000	396,000	198,000	198,000
	아동복지교사 지원	504,000	352,800	75,600	75,600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지원	115,200		57,600	57,600
	그룹홈 지원	37,668	15,067	11,301	11,300
	아동발달지원계좌	39,240	27,468	5,886	5,88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08,516		104,258	104,258
	아동관련 위원회 회의수당	2,730			2,730
	아동복지기금위원회 회의수당	560			560
	어린이날 행사지원	11,000			11,000
	요보호 아동 금강산견학	11,100			11,100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나눔체험 프로그램 운영	4,000			1,000
	아동복지기금 조성	100,000			100,000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6,528	25,570	5,479	5,479
	입양아동 양육수당	118,800	83,160	17,820	17,820
	소년소녀가정지원	5,880		336	5,544
	가정위탁아동지원	105,840		10,584	95,256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38,144		19,072	19,072
교육 체육과 청소년 복지	결식아동지원	164,255		164,255	
	결식아동지원(평일,방학)	2,123,362		608,488	1,514,874
	청소년 보호	53,500			53,500
	청소년 행사지원	178,200			178,200
	청소년 활동지원	116,000			116,200
	청소년 연극제	12,000		12,000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30,000	15,000	7,500	7,500
	청소년 종합예술제	17,500		7,000	10,500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38,500	19,250	9,625	9,625
	장애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10,000		4,000	6,000
	청소년 시설지원	5,138,344	334,630	68,250	4,735,46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07,780	153,890		153,890
	공공청소년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4,000	1,800		2,200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23,000	11,500		11,500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3,000	1,500		1,500
	시군 청소년지원센터운영(상담)	62,500		25,000	37,500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80,000	40,000		40,00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150,000	60,000	15,000	75,000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103,000	46,500	28,250	28,250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	894,109			894,109
	기타단체지원	387,280			387,280
	공공시설 건립	3,084,795			3,084,795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기도	ID : 98/99	62,291	22,107	-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교육 지원과 청소년 팀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	411,113		25,00	386,113
	청소년 공부방 운영	49,280	7,000	13,920	28,36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59,850	66,120		93,730
	청소년 국토대장정	30,000			30,000
	청소년 종합 예술제	20,000		7,000	13,000
	청소년 어울마당	52,000			52,000
	청소년 어학연수	147,600			147,600
	청소년 교원 해외연수	77,000			77,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기도	ID : 100	313,019	100,476	7	3	4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평생 학습 청소년과	방과후 아카데미	153,890	76,945		76,945
	공부방 운영	62,100		18,880	43,220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407,375			407,375
	상담 센터 운영	157,927	111,531	25,000	21,396
	종합 지원실 운영	120,818			120,818
	약물 남용 예방 및 치료	30,000			30,000
	국제교류	50,000			50,000
	방학 프로그램	15,000			15,000
	취미교실	15,000			15,000
	청소년 축제	50,000			50,000
	고3축제	40,000			40,000
	자전거 국토 순례	10,000			10,000
	청소년 종합예술제	17,500		7,000	10,500
	우수 동아리 지원	10,000	5,000	2,500	2,500
가정 복지과	어린이날 행사	25,000			25,000
	입양·가정위탁 장려금	10,000			10,000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9,132	6,392	1,370	1,370
	입양아동 양육수당	36,000	25,200	5,400	5,400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104,970		21,573	83,397
	아동발달계좌 지원	24,120	16,884	3,618	3,618
	결식아동 급식지원	901,102		271,482	629,620
	아동복지시설 위문	6,000			6,000
	아동복지시설 교사인건비	197,796			197,796
	개인운영시설지원	19,800		9,900	9,900
	그룹홈 지원	150,672	60,270	45,201	45,201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237,600	118,800	59,400	59,400
	아동복지교사 지원	156,000	109,200	23,400	23,400
	학습도우미 지원	432,000		21,600	21,600
	위스타트 마을운영	300,000		120,000	180,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기도	ID : 102/103	229,319	71,886	2	-	2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체육 청소년과	청소년공부방 지원	14,000		7,000	7,000
	저소득층 영어교육지원	16,000		8,000	8,000
	제 1회 광주시 청소년 연극제	10,000			10,000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5,000			5,000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0,000	5,000	2,500	2,500
	차세대 위원회 운영지원	3,000	1,500		1,500
	청소년 동아리 축제	7,000			7,000
	청소년 문화축제	10,000			10,000
	청소년 수련, 인성캠프	12,000		6,000	6,000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14,818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기도	ID : 104/105	196,886	65,641	3	-	3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평생 학습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동반자사업	100,000	40,000	10,000	50,000
	CYS-NET	72,000	36,000		36,000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62,500		25,000	37,5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기도	ID : 106	275,351	62,712	-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아동 청소년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20,000			20,000
	청소년 문화존 운영	38,500	19,250	9,625	9,625
	군포시 차세대 위원회 운영	3,000	1,500		1,500
	청소년 종합 예술제	17,500		7,000	10,500
	장애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10,000		4,000	6,000
	청소년 문화 축제	30,000			30,000
	청소년 국내 문화 탐방	20,000			20,000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3,000			3,000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 한마당 축제	10,000			10,000
	수험생을 위한 해피엔드	20,000			20,000
	생활 과학 교실 운영	75,000			75,000
	청소년 미래 과학 캠프	10,000			10,000
	청소년 과학 축제	40,000			40,000
	명품고 육성 지원 사업	700,000			700,000
	청소년 영어 캠프 운영	44,000			44,000
	청소년 영어 카페 운영	8,000			8,000
	원어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영어 교실	248,000	173,600	37,200	37,200
	다문화 한 이웃 프로그램	3,000	2,100		9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기도	ID : 107	20,610	-	3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족 여성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53,890	76,945		76,945
	청소년 공부방(3개소)	48,800	24,400		24,400
	반딧불 배움터(저소득층)	13,728			13,728
	청소년 지원센터	96,614		25,000	71,614
	청소년 문화의 집(2개소)	186,578			186,578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기도	ID : 109	88,780	26,860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예술제 지원	17,500		7,000	10,500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10,000		4,000	6,000
	성년의날 축하카드발송	2,000			2,000
	청소년문화체험전략	21,600			21,600
	감시단 활동비	1,224			1,224
	민간행사보조 (6개사업)	157,000			157,000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10,000	5,000	2,500	2,500
	청소년 문화존	38,500	19,250	9,625	9,625
	청소년공부방운영-국비	14,000	7,000		7,000
	청소년공부방운영-도비 (2개소)	29,800		11,920	17,880
	저소득층영어교육지원	16,000		8,000	8,000
	청소년지원센터운영	71,500		25,000	46,500
	청소년유해환경지도 사업 (8개사업)	14,310			14,310
	차세대운영지원	3,000	1,500		1,5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기도	ID : 110	864,037	303,009	3	3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정 복지과 아동 복지	아동시설운영	831,808	252,866	124,771	454,171
	꿈나무 아동복지관운영비지원	179,554		87,455	92,102
	개인운영신고시설지원	21,600		10,800	10,800
	아동복지시설급여비	201,823	161,459	20,182	20,182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근수당	49,800		24,900	24,900
	아동복지시설아동지원	79,552		39,776	39,776
	새소망의집 아동생일선물비지원	1,950			1,950
	새소망의집 아동문화생활비지원	15,600			15,600
	경기도아동복지시설 아동체육대회참가 경비지원	3,640			3,640
	새소망의집 아동 어린이날 선물비지원	2,600			2,600
	새소망의집 인조잔디설치 사업비	80,000			80,00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80,000	40,000	20,000	20,000
	아동복지교사 지원	672,000	470,400	100,800	100,800
	그룹홈 지원	113,004	45,203	33,900	33,901
	공동생활가정 아동문화생활비 지원	1,800			1,800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90,000	37,800	8,100	44,100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36,528	19,177	4,110	13,241
	어린이날 행사지원	25,000			25,000
	아동관련 위원회 수당	2,730			2,730
	아동관련 교육 강사수당	750			750
	아동관련 교육 지식비	300			300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06,000		103,000	103,000
	아동인권교육 사업추진	3,600			3,600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700,000			700,000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22,400	85,680	18,360	18,360
	퇴소아동자립정착금	40,000	7,500	10,000	22,500
	다문화 한 이웃 프로그램	24,000		16,800	7,200
	저소득층 기숙학교 이용료지원	16,500		16,500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300,000			300,000
	24시 다기능학교 운영비	99,450			99,450
각구 주민생 활 지원과 아동복지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	371,864	162,006	69,240	140,618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003,200	501,600	250,800	250,800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지원	187,200		93,600	93,600
	아동급식 지원사업	1,896,931	133,740	627,442	1,135,749
가정 복지과 아동 복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날선물지원	20,000			20,000
	요보호아동자립정착금 지원	40,000			40,000
	시설아동 태권도교실 지원	3,000			3,000
	시랑+희망 프로젝트사업	50,000			50,000
체육 청소년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633,320	316,660		316,660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운영	153,561		25,000	128,561
	청소년 쉼터 운영	143,086	35,600	52,200	55,286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경기도	ID : 112/113	-	231,935	7	3	4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체육 청소년과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348,000			348,000
	창의적인청소년 육성	216,100			216,100
	경기도 종합예술제	17,500		7,000	10,500
	비정규학교 대안교육 운영지원	20,000	10,000	5,000	5,000
	청소년 상담실 운영	207,247		25,000	182,247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615,560	307,780		307,780
	청소년지원 센터운영	80,000	40,000		40,000
	청소년 비정규학교 지원	36,500			36,500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95,040	47,520		47,520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8,000	3,600		4,400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43,000	21,500		21,500
	청소년문화존 사업	135,000	50,000	25,000	60,000
	대학생 멘토링 사업	28,800			28,800
	중장기 청소년 쉼터운영	90,000			90,000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10,000		4,000	6,00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100,000	40,000	10,000	50,000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80,000	35,600	25,200	192,200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3,000	1,500		1,500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35,000	13,500	6,750	14,750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11,553,038			11,553,038
	청소년문화의집건립	949,000			949,000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	717,820			727,820
	성남 영어마을 운영	3,088,500			3,088,5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경기도	ID : 114	1,067,702	367,292	9	3	6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아동복지시설급여비	410,957	328,765	41,096	41,096
	시설아동 비행예방프로그램운영	36,000			36,000
	아동시설 초·중고생 참고서 지원	7,050			7,05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59,000		79,500	79,500
	아동시설 아동지원	207,660		103,830	103,830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10,800		5,400	5,400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226,008	90,403	67,802	67,803
	아동시설 운영	2,526,305	807,278	378,946	1,340,081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48,000	15,400	12,000	20,600
	시설아동 체육대회 지원	6,000			6,000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하계수련회지원	10,000			10,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4,800			4,800
	아동시설 취업준비생 직업훈련	14,400			14,400
	시설아동 정서향상	24,000			24,00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65,600	382,800	191,400	191,400
	아동복지교사 지원	504,000	352,800	75,600	75,600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133,200		66,600	66,600
	아동유해환경개선을 위한 예방프로그램운영	5,000			5,000
	아동학대 예방 순회교육	8,000			8,000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18,264	6,392	1,370	10,502
	아동발달 계좌지원	99,720	69,804	14,958	14,958
	입양수수료 지원	80,000	56,000	12,000	12,000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143,850	61,320	13,140	69,390
	가정위탁 및 입양 활성화사업	5,000			5,000
	결식아동 급식	3,258,324	323,770	1,038,756	1,895,798
	가정위탁 양육지원	137,390	25,280	7,224	104,886
	소년소녀가정 지원	9,240	1,000	924	7,316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50,240		16,130	34,11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기도	ID : 116/117	390,564	144,449	2	2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아동지원	16,960			16,960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31,680	22,176	4,752	4,752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4,000		1,000	3,000
	아동복지시설아동지원	107,056		53,528	53,52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	28,200		14,100	14,100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90,882	72,706	9,088	9,088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지원	34,632		17,316	17,316
	소년소녀가정지원	12,600	10,862	1,260	478
	아동시설운영	457,414	188,054	68,612	200,748
	결식아동급식	1,523,418	180,147	380,854	962,417
	학기중 토,일,공휴일 결식아동급식지원	239,732		239,732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607,200	303,600	151,800	151,800
	아동복지교사지원	564,000	394,800	84,600	84,600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37,668	15,067	11,300	11,301
	저소득층 아동학습도우미 지원	93,600		46,800	46,800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326,970		163,485	163,485
	입양아동지원	196,344	87,664	24,748	83,932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153,890	76,945		76,945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67,100		26,840	40,260
	저소득층 청소년영어교육	32,000		16,000	16,000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10,000		25,000	85,000
	청소년 컴퓨터운영지원	140,000	35,600	52,200	52,200
	청소년 복지증진	16,000			16,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기도	ID : 118/119	704,394	249,783	7	3	4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족 여성과 아동 복지	아동급식지원 (결식아동 차상위)	150,000			150,000
평생 교육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	1,060,000			1,060,000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280,000			280,000
	청소년 쉼터 운영	280,044	71,244	104,400	104,4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452,010	226,005		226,005
	청소년 공부방	74,000	10,000	19,880	44,120
	어려운 청소년 지원	10,000	50,00	2,500	2,500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200,000		25,000	175,00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200,000	80,000	20,000	100,000
	청소년 위기지원	80,000	40,000		40,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기도	ID : 121/122	265,881	83,335	10	4	6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체육 청소년과	젊음의 축제	70,000			
	청소년 경연대회	10,000			
	청소년 문화제, 축제	6,500			
	청소년 어울마당	20,000			
	문화체험교실, 청소년 문화존	81,67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307,780			
	청소년 공부방운영	477,200			
	자활 청소년 장학금지원	20,400			
	장학금 지원	589,990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해외문화탐방				
	청소년 농촌 자원봉사캠프	1,600			
	팔도자매결연군 교류	32,000			
	과학캠프	6,000			
	주말체험활동 지원프로젝트	3,500			
	우리문화역사특강	3,780			
	주말버스학교 '달려라 뛰뛰빵빵'	50,000			
	어려운청소년 해외문화유적 답사	50,000			
	전국 청소년 캐릭터 공모전	5,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기도	ID : 123	179,923	59,291	-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위스타트 마을운영	676,960		120,000	549,960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상담센터 치료프로그램 운영	22,680			22,680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52,200		20,880	31,320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지원	10,000	5,000		5,000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지원	8,000		4,000	4,000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19,440	9,720	9,720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17,500		7,000	10,500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	26,568		9,707	16,861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14,000	7,000		7,000
	열린아버지학교 운영	5,000			5,000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0,000	5,000	2,500	2,50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2,000	900		1,10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720,000	340,000	44,000	336,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기도	ID : 124	145,825	51,202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청소년 캠프운영	12,000			12,000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20,000	4,749		15,251
	철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	24,400	5,000	1,760	17,640
	원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	24,400		6,960	17,440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10,000		25,000	85,000
	청소년 지원센터 위기지원 사업	70,000	35,000		35,000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5,000			5,000
	비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운영	4,000			4,000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 지원	110,000			110,000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지원	16,000		8,000	8,000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	22,500		7,000	15,500
	놀토 프로그램 운영	21,000			21,000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500			500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선도활동참여 보상금	4,800			4,800
	차세대 및 청소년 운영위원 위탁교육	3,600			3,600
	청소년 지도위원 위탁교육	2,400			2,400
	청소년논술대학	6,000			6,000
	청소년장애체험교실	5,000			5,000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132,800		25,000	107,80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153,890	76,945		76,945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12,000		4,000	8,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자치구	경기도	ID : 126	800,294	264,384	6	3	3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상담센터운영	170,586		170,586	
	청소년쉼터 운영	243,000	82,100	160,9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101,900	7,000	94,9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43,065	66,120	76,945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저소득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72,000		72,0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43,200	171,600	171,600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122,702	98,160	24,542	
	개운운영신고시설 지원	28,800	14,400	14,400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37,668	15,067	22,601	
	아동시설운영	658,106	173,360	484,746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87,492	43,746	43,746	
	결식아동 급식지원	1,264,726	12,669	1,252,057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8,000	360	7,640	
	소년소녀가장 지원	16,800	5,956	10,844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25,036	12,518	12,518	
	아동발달 계좌지원	56,880	39,816	17,064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	400,000		400,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기도	ID : 127	135,058	45,754	3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어울마당	9,498			9,498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	17,500		7,000	10,500
	청소년관련행사	71,400			71,400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75,300		25,000	150,300
	청소년 수련관 운영	783,000			783,0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153,890	76,945		76,945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37,700			37,700
	청소년 컴퓨터운영지원	140,000	35,600	52,200	52,200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19,000			19,000
	최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지원	16,000		8,000	8,000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아동복지시설 급여	101,369	81,095		
	결식아동급식지원	551,303	22,995	142,472	385,836
	아동생활시설 지원	529,853	203,123	79,478	247,25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6,126		3,063	3,063
	가정위탁 양육지원	10,080	1,344	1,008	7,728
	아동발달 지원계좌	24,480	17,136	3,672	3,672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24,000	16,800	3,600	3,6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58,400	79,200	39,600	39,600
	명륜보육원 지원	8,440			8,440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66,598		33,299	33,299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기도	ID : 129	198,790	63,538	3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결식아동급식지원	1,353,975	433,272	460,351	460,352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지원	146,090	37,813	32,725	75,552
	지역아동센터 운영	344,400	172,200	86,100	86,100
	가정위탁보호사업	146,090			146,090
	아동발달지원계좌	25,200			25,200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57,132			57,132
	아동급식지원	1,353,975			1,353,975
	어린이 놀이터 환경개선	200,000			200,000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12,000			12,000
	아동복지교사 및 학습도우미지원	170,400			170,400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	26,000	13,000		13,0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223,170	111,585		111,585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지원(2개소)	229,706			229,706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12,500			12,500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10,000		4,000	6,000
	성년의날 행사	8,000			8,000
	청소년종합 예술제 행사	17,500		7,000	10,500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125,800	6,290	45,288	74,222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3,000	1,500		1,500
	청소년 상담센터지원	74,823			74,823
	청소년지도자 및 지도위원전문교육	7,500			7,500
	장한 청소년 인성훈련 워크숍실시	8,000			8,000
	청소년 문화존사업	38,500	19,250	19,25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기도	ID : 132/133	40,619	13,295	2	2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행정 아동 복지	결식아동현장견학	12,000			12,000
	결식아동급식지원	1,918,000	249,340	1,668,660	
	지역아동센터운영비	369,000	184,800	92,400	92,400
	어린이날 행사	85,000			85,000
	아동복지교육	17,000			17,000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45,000			45,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기도	ID : 135	137,131	43,533	3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관련위원회 개최	8,400			8,400
	청소년지원센터운영	92,300		25,000	67,300
	청소년지원센터 자원상담원 워크숍	5,000			5,000
	청소년 토요일가활동보조	10,000			10,000
	청소년 문화예술기행	10,000			10,000
	청소년 국외문화체험 연수활동(미국,유럽)	100,000			100,000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중국,일본)	25,000			25,000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8,000		4,000	4,000
	비정규학교등 대안교육운영지원	10,000	5,000	2,500	2,500
	청소년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000			2,000
	시군 차세대 위원회 운영지원	3,000	1,500		1,500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배치	16,080	9,720		9,720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000	900		1,10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32,240	66,120		66,120
	청소년 종합예술제	17,500		7,000	10,500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봉사	10,000		4,000	6,000
	공공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3,000	6,500		6,500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0,000	5,000	2,500	2,500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2,000			2,000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보상	1,000			1,000
	청소년증 제작 수수료	1,000			1,000
	청소년 국외 문화체험 책자발간	2,000			2,000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100,000			100,000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소년소녀가정지원	14,280		1,428	12,852
	가정위탁양육지원	5,040		504	4,536
	결식아동급식	398,738		108,347	290,391
	지역아동센터운영	105,600	52,800	26,400	26,400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18,264	6,392	1,370	10,502
	입양아동양육수당	24,000	16,800	3,600	3,600
	아동복지교사	72,000	50,400	10,800	10,800
	아동발달 지원계좌	4,320	3,024	648	648
	공휴일 아동급식	119,700		119,700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지원	16,408		8,204	8,204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14,400		7,200	7,200
	어린이날 행사	9,000			9,000
	어린이날 놀이터 관리	26,400			26,4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기도	ID : 136/137	371,972	69,012	2	-	2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인재 육성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	38,000	19,000	9,500	9,500
	청소년 페스티벌	80,000			80,000
	화성시 청소년 종합예술제	17,500		7,000	10,500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 문화체험	10,000		4,000	6,000
	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8,000			8,000
	성년의날 기념행사	35,000			35,000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30,400			30,400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3,000	1,500	1,500	
	청소년 동아리활동	10,000	5,000	2,500	2,500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29,800		11,920	17,880
	저소득 영어교육	16,000		8,000	8,000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294,200		25,000	269,200
	위기청소년 보호사업지원	80,000	40,000	40,000	
	동반자 프로그램	100,000	40,000	10,000	50,000
	청소년 보호사업지원	56,930			56,930
여성 가족과 아동 복지	문화체험	7,000			7,000
	소년소녀가정 생필품비	15,000			15,000
	소년소녀 가정 학원비 지원	48,000			48,000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32,028		32,028	
	소년소녀가정 지원	4,200		4,200	
	아동복지교사 지원	204,000	142,800	61,200	
	아동발달계좌지원	32,040	22,428	9,612	
	결식아동급식(토,일,공휴일)	482,125		482,125	
	입양아동 수당지원	66,000	46,200	19,800	
	결식아동급식	2,110,473		2,110,473	
	가정위탁아동 지원	137,567		137,565	
	학습도우미 지원	43,200		43,2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기도	ID : 138	55,698	15,197	4	2	2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공부방운영	49,700		19,880	29,820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강사지원	16,000		8,000	8,000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가평군예선	17,500		7,000	10,500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10,000	5,000	2,500	2,500
	가평군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62,500		25,000	37,500
	장애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10,000		4,000	6,000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6,000			6,000
	차세대위원 어울림 문화탐방	6,000			6,000
	고3 수험생을 위한행사	6,000			6,000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6,000			6,000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3,000	1,500		1,5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기도	ID : 139	87,874	22,728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수련활동지원	10,000			10,000
	청소년예술제행사	30,000			30,000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43,700			43,700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지원	31,720	15,860		15,860
	양평군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3,000	1,500		1,500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10,000	5,000	2,500	2,500
	청소년 지원센터운영	130,122		25,000	105,122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예선	17,500		7,000	10,500
	청소년 공부방 인터넷지원	7,920			7,920
	청소년 공부방운영	96,900		38,760	58,140
	청소년공부방운영(균특지원)	14,000	7,000		7,000
	저소득층청소년 영어교육	40,000		20,000	20,000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어린이날 행사지원	20,000			20,000
	아동일반	4,600			4,600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9,132	6,392	1,370	1,370
	입양아동 양육수당	24,000	16,800	3,600	3,600
	아동발달 지원계좌	14,040	9,828	2,106	2,106
	아동복지 교사지원	60,000	42,000	9,000	9,0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2,800	26,400	13,200	13,200
	결식아동 급식지원	209,597	151,357	55,680	2,560
	가정위탁 양육지원	55,440	21,287	5,544	28,609
	소년소녀가정지원	1,764	1,134	252	378
	아동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10,800		5,400	5,400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23,664		11,832	11,832
	저소득 아동 학습도우미지원	14,400		7,200	7,2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기도	ID : 140	-	-	-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생활 지원과	지역 아동 센터 운영비	211,200	105,600	52,800	52,8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기도	ID : 141	45,603	12,246	-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지도 위원 및 청소년 연수	21,000			21,000
	청소년 선도, 보호, 단속 활동 지원	4,200			
	청소년 사이버 상담실 운영	3,000			3,000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상담)	62,500		25,000	37,500
	청소년 자원 봉사 센터 운영	5,000			5,000
	청소년 역사체험 및 안보 순례	10,000			10,000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2,000			2,000
	시군 차세대 위원회 운영 지원	3,000	1,500		1,500
	제16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 예술제(예산)	17,500		7,000	10,500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53,890	76,945		76,945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	1,200	840	180	180
	소년 소녀 가정 및 가정 위탁 아동 지원	9922		4961	4961
	결식 아동 급식 (이양)	272,472		78,749	193,723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	52,800	26,400	13,200	13,200
	어린이 놀이터 관리	160,000			160,000
	소년 소녀 가정 지원	840		84	756
	가정 위탁 양육 지원	28,560		2,856	25,704
	아동 복지 교사 지원	36,000	25,200	5,400	5,400
	아동 급식 위원회 운영	900			9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강원도	ID : 142	220,484	66,474	7	4	3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체육 청소년과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153,890	76,945	76,945	
	청소년공부방운영	20,000	10,000	10,000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CYS)	100,000	40,000	60,000	
	지자체 청소년 문화존 운영	38,400	19,200	19,200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비지원	15,000		15,000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	12,000	6,000	6,000	
	건강 성 가치관 교육시설 설치운영	160,000	80,000	80,000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13,000		13,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강원도	ID : 144/145	96,652	29,397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여성 청소년 복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31,950	65,975		65,975
	청소년 공부방 운영	14,000	7,000		7,000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000			10,000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5,880	2,940		2,940
	청소년 지도자 배치	73,320	36,660		36,660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36,000	18,000		18,000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170,000			170,000
복지 여성 아동 복지	지역 아동 센터 운영	211,200	105,600	105,600	
	아동 급식 기능 보강 사업	9,000		9,000	
	요보호 아동 그룹 형태 보호	37,668	15,067	22,601	
	아동 복지 교사 인건비 지원	120,000	84,000	36,000	
	소년 소녀 가장 지원	8,400	4,200	4,200	
	가정 위탁 양육 수당	67,200	33,600	33,600	
	결식 아동 급식비	146,582	43,800	102,782	
	입양 아동 양육 수당	8,400	5,880	2,520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자치 단체 경상 보조	14,040	9,828	4,212	
	방학 중 학기 중 급식비 지원	122,100		122,100	
	보호 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	12,500		12,500	
	보호 아동 직업 훈련 장려금 지원	1,000		1,000	
	보호 아동 수학 여행비 지원	1,400		1,400	
	보호 아동 해외 역사 문화 탐방 지원	2,000		2,000	
	가정 위탁 상해 보험료	6,533		1,960	
	보호 아동 능력 개발비 지원	1,920		1,92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강원도	ID : 146/147	781,256	20,780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문화 공보실	청소년 보호 및 수련활동 운영	15,750			15,750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	20,000			20,0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42,000	21,000		21,000
	청소년 문화존 운영	46,400	19,200	5,760	21,440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6,000	3,000	1,500	1,500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5,880	2,940		2,94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32,499	63,562		68,937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강원도	ID : 148	301,101	97,751	4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여성 가족과 아동 복지	어린이날 행사지원	50,000			50,000
	유니세프 행사지원	20,000			20,000
	어린이 안전교육	10,000			10,000
	청년회의소 지원(보호아동 문화탐방)	10,000			10,000
여성 가족과 청소년 복지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58,800	29,400		29,40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53,890	76,945		76,945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60,000	30,000		30,000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120,000	40,000	10,000	70,000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274,960	100,000		174,960
	비정규학교 운영비	27,000		21,000	6,000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23,000	11,500		11,500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38,400	19,200	5,760	13,440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161,700			161,700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70,000			70,000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15,000	7,500	2,250	5,250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지원	3,000	1,500		1,500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2,880	1,440		1,440
	청소년 문화행사 운영	68,000			68,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강원도	ID : 149/150	51,490	14,386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76,320	76,320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100,000			100,000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67,738			67,738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300,000			300,000
	청소년활동지원	22,000			22,000
	청소년지도 위원육성	156			156
	청소년수련프로그램운영 및 활성화	36,000	36,000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	2,880	2,880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11,000	11,0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153,890	153,890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3,000	3,000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어린이날 행사	20,753			20,753
	아동 복지 시설 방문	1,200			1,200
	요보호 아동 구호	1,650			1,650
	소년 소녀 가정 가정 위탁 아동 양육 지원	107,500	88,500		19,000
	가정 위탁 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	10,267	7,187	924	2,156
	결식 아동 급식 지원	360,700	150,550	107,415	102,735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	9,600	6,720	864	2,016
	아동 발달 지원 계좌	24,120	16,884	2,171	5,065
	보호 아동 생활 안정 지원	19,540		5,862	13,678
	지역 아동 센터 운영 그룹홈 운영	339,336	162,134	53,161	124,041
	아동 복지 교사 지원	156,000	109,200	14,040	32,760
	아동 급식 기능 보강	9,000		2,700	6,300
	어린이 놀이터 보수	20,000			20,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강원도	ID : 151/152	85,370	25,537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여성 가족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153,890	76,945	76,945	
	청소년 공부방운영	28,000	14,000	14,000	
	청소년지원센터운영	100,000	40,000	60,000	
	청소년 동아리 활동	7,000	3,500	1,050	2,450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	5,880	2,940		2,940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37,440	18,720		18,720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28,000	14,000		14,000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 지원	1,750,000	852,000	74,000	824,000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100,000	40,000	10,000	
여성 가족과 아동 복지	보호 아동 수학 여행비 지원	2,100		630	1,470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	37,668	15,067	6,780	15,821
	가정 위탁 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	14,000	9,800	2,100	2,100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	79,200	39,600	11,880	27,720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	4,800	3,360	432	1,008
	아동 발달 지원 계좌	29,880	20,916	2,689	6,275
	아동 복지 교사	60,000	42,000	5,400	12,600
	아동 급식	141,897	99,327	42,570	
	보호 아동 해외 역사 문화 탐방비 지원	2,000		600	1,4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강원도	ID : 153/154	21,401	8,655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4,800	3,360	432	1,008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6,800	4,760	612	1,428
	아동발달 지원계좌지원	4,860	3,402	437	1,021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5,000		1,500	3,500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1,000		300	700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850		255	595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대 지원	2,400		720	1,680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	40,770		6,116	34,654
	결식아동 급식지원	109,500	50,553		58,947
	가정위탁 양육	26,189	20,950		5,239
	소년소녀가정지원	13,860	11,087		2,773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	1,000		300	700
	어린이날 연합운동회 운영	5,000			5,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강원도	ID : 155	42,048	10,750	4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생활 지원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14,000	7,000		7,000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지원	2,880	1,440		1,440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153,890	76,945		76,945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13,000	6,500		6,5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강원도	ID : 158/159	8,162	8,162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문화 관광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52,000			52,000
	고성 청소년 거리 문화 축제	10,000			10,0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14,000	7,000		7,000
	지역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	3,000	1,500		1,5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55,810	77,905		77,905
	청소년 시설 운영 위원회 운영	2,880	1,440		1,440
	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13,000	6,500		6,500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19,440	9,720		9,720
사회 경제과 아동 복지	임양 아동 양육 수당	6,000	4,200	810	1,890
	가정 위탁 아동 상해 보험	9,000	6,300	810	1,890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15,120	10,584	1,361	3,175
	보호 아동 대학 입학금	5,000		1,500	3,500
	보호 아동 해외 역사 문화 탐방	1,000		300	7,000
	보호 아동 수학 여행비 지원	900		270	630
	결식 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4,800		1,440	3,360
	아동 급식 기능 보강 사업	6,000		1,800	4,200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지원(도서 지원)	2,000			2,000
	소년 소녀 가정 위탁 아동 등 위원회	4,000			4,000
	지역 아동 센터 운영	79,200	39,600	11,880	27,720
	아동 복지 교사 지원	72,000	50,400	6,480	15,12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강원도	ID : 160/161	28,472	7,054	4	2	2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체육 청소년과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5,200			5,200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5,000			5,000
	청소년 홍보물 제작	2,000			2,000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제 운영	500			500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5,000	1,500		3,500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15,000			15,000
주민 생활 지원과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	3,600	2,500	324	756
	가정 위탁 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	7,467	5,226	673	1,568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20,160	14,112	1,814	4,234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	52,800	26,400	7,920	18,480
	아동 복지 교사 지원	12,000	8,400	1,080	2,520
	보호 아동 수학 여행비 지원	1,900		570	1,330
	보호 아동 해외 역사 문화 탐방	1,250		375	895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지원	70,200		10,530	59,670
	결식 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	3,200		960	2,240
	아동 급식 기능 보강	3,000		900	2,100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아동 급식비 지원	74,000		74,000	
	소년 소년 가정 지원	7,667	3,834		3,833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강원도	ID : 162	14,794	14,799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위스타트마을조성운영	200,000		100,000	100,000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15,600	10,920	1,404	3,276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11,680	8,176	1,051	2,453
	보호아동직업훈련장려금지원	1,000		300	700
	학기중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	105,450		105,450	
	방학중 아동급식비지원	103,680		15,552	88,128
	보호아동 수학여행비지원	650		195	455
	소년소녀가정지원	4,320			4,320
	가정위탁양육지원	96,660			96,600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6,588		1,976	4,612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	1,000		300	700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지원	8,900	6,230	1,335	1,335
	지역아동센터 운영	24,000	12,000	3,600	8,400
	아동복지교사 지원	7,000	4,900	630	1,470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지원	1,920		576	1,344
	아동급식지원	54,750			54,750
	보호아동 및 부모건강검진비	8,400			8,400
	학용품비지원	8,000			8,000
	어린이날 행사	8,000			8,000
	보호아동 피복구입	9,600			9,600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회관 관리자	12,332			12,332
	위기청소년 상담원	45,000	22,500	7,500	15,000
	청소년 지원센터	12,000			12,000
	종합문화복지센터 관리근무자	3,346			3,346
	공공청소년 청소년배치	26,180	13,090		13,090
	청소년회관 운영	25,290			25,290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	75,520			75,52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강원도	ID : 164/165	40,290	10,021	3	2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지역아동센터운영	184,800	92,400	27,720	64,680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96,000	67,200	8,640	20,160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144,399			144,399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1,667	8,170	1,050	2,447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4,800	3,360	432	1,008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9,880	20,916	2,689	6,275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100,800			100,800
	결식아동 급식지원 (평일)	51,765			51,765
	결식아동 급식지원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59,850		59,850	
	결식아동급식지원 (방학중)	56,700		8,505	48,195
	어린이날 행사지원	11,350			11,350
	아동급식기관 기능보강 지원	9,000		2,700	6,300
	기,미아 보호	4,560			4,560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75,336	30,135	13,561	31,640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대학입학금, 직업훈련, 장려금,수학여행비 등)	20,000		6,000	14,000
주민 생활 지원과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지원	55,886	44,709	3,353	7,824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강원도	ID : 166	43,176	11,269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취학전 아동양육비 지원	162,000			162,000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7,200	5,040	648	1,512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	9,132	6,392	822	1,918
	아동발달 지원계좌지원	37,800	26,460	3,402	7,938
	지역아동센터 운영	79,200	39,600	11,880	27,720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0,267	7,187	924	2,156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 지원	37,668	15,068	6,780	15,820
	아동복지교사지원	60,000	42,000	5,400	12,600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	9,900		2,970	6,930
	아동급식지원	350,950		202,275	148,675
	요보호아동지원(소년소녀, 가정위탁)	142,800			142,800
	결식아동 도시락용기교체	28,600			28,600
	영어체험마을지원	2,000			2,000
	학교폭력예방지원	10,000			10,000
	21c형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동아리운영	2,000			2,000
	청소년공부방 운영	14,000	7,000		7,000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61,000			61,000
	청소년 문화축제	5,000			5,000
	청소년 문화존 운영	38,400	19,200	5,670	13,440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5,000	2,500	750	1,750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3,000	1,500		1,500
	조손가정 스카프지원	5,000			5,000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2,500			2,500
	어린이날 행사지원	50,000			50,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강원도	ID : 170/171	258,141	81,837	4	-	4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여성 가족과 아동 복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문화 예술과 청소년 복지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지원	13,000	6,500	6,500	
	청소년공부방 운영	40,000	20,000		20,000
	청소년문화존 운영	100,000	50,000	15,000	35,000
	10대 청소년문화축제 문화존 운영	80,000	40,000	20,000	20,000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2,880	1,440		1,440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3,000	1,500		1,500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18,720	9,360		9,360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사업	15,000	7,500	3,750	3,75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충청북도	ID : 174	204,610	65,018	3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22,400	211,200	105,600	105,600
	아동복지시설운영	230,204		29,927	200,277
	아동복지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	384,000	268,800	57,600	57,600
	아동발달지원금 지원	40,680	28,476	6,102	6,102
	요보호 아동지원	281,852	26,552	43,702	211,590
	결식아동급식지원	1,229,713		731,790	497,923
	어린이날 행사지원	22,900			22,900
	유니세프 후원활동지원	15,000			15,000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153,890	76,945		76,945
	청소년지원센터운영	30,000			30,000
	청소년 지원센터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80,000	40,000		40,000
	청소년문화존 사업	38,400	19,200	9,600	9,600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39,360	19,680		19,680
	청소년 시설 운영위원회 지원	1,800	900		900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	10,000	5,000		5,000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0,000	5,000	2,500	2,500
	건전성가치관 시설설치운영	160,000	80,000		80,000
	청소년 수련원 시설유지보수	110,000			110,000
	청소년 한마음 축제 행사지원	20,000			20,000
	범국민 준법운동 2008청소년 한마음대회	30,000			30,000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	10,000			10,000
	청소년 공부방운영	372,000	45,000		327,000
	청소년 공부방 개보수지원	65,000			65,000
	청소년공부방 신규설치 지원	30,000			30,000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	10,000			10,000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	28,000			28,000
	청소년 수련원 생활관 신축	2,350,000	855,000		1,495,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충청북도	ID : 175	-	-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한마음 축제지원	3,000			3,0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28,000		14,000	14,000
	소외 청소년 문화사업 체험	4,000		2,000	2,000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18,000	9,000		9,000
	청소년 보호육성	2,820			2,820
	청소년 해외문화담당	10,000			10,000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	300			3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153,890	76,945		76,945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12,000	600		6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충청북도	ID : 178	50,819	13,205	3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여성 아동 복지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8,400	5,880	1,260	1,260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9,132	6,392	1,370	1,370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5,920	18,144	3,888	3,888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	57,120		17,136	39,984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45,000		22,500	22,500
	아동급식확대지원(방학중)	81,180	40,590	20,295	20,295
	저소득가정아동급식지원	90,886		27,266	63,620
	소년소녀가정지원	8,400	6,720	840	840
	가정위탁양육지원	114,000	91,200	11,400	11,400
	아동급식확대지원(학기중)	94,050		94,050	
	아동건강육성도모	17,100			17,100
	지역아동센터지원	591,432	266,400	162,516	162,516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38,160	19,080		19,080
복지 여성 청소년 복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14,000			14,000
	청소년 지도	14,345			14,345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운영	1,800	900		900
	청소년공부방운영	28,000	14,000		14,000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3,000	1,500		1,500
	청소년 프로그램운영	9,000			9,000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	10,000	5,000		5,000
	소외청소년 문화산업 체험행사	4,000		2,000	2,000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53,890	76,945		76,945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172,070			172,07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충청북도	ID : 180	86,789	25,069	2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요보호아동지원	600			600
	건전아동육성지원	11,290			11,29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	122,958		61,479	61,479
	소년소녀가정지원	1,680	756	168	756
	아동급식지원 (학기중)	105,450		105,450	
	아동급식지원 (방학중)	91,020	46,420	22,755	21,845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	164,250	57,488	49,275	57,487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	58,800		17,640	57,487
	가정위탁양육지원	48,000	21,600	4,800	21,600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16,800	11,760	2,520	2,520
	입양수수료지원	25,900	18,130	3,885	3,885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12,000	1,500	6,000	4,500
	소년소녀가정 시설아동 등 자립지원	34,000		17,000	17,000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58,320	40,824	8,748	8,748
	아동복지시설운영	1,770,603	684,886	230,178	855,539
	입양기관운영	15,049	7,525	3,762	3,762
	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	20,560		10,280	10,28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90,400	145,200	72,600	72,600
	아동복지교사	240,000	168,000	36,000	36,000
	아동복지시설확충	38,000	19,000	9,500	9,500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활동 지원	5,130			5,130
	청소년 한마음 축제	6,000			6,000
	청소년대상 시상식 및 어울마당	8,000			8,000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56,911			56,911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42,000	21,000		21,000
	소외청소년 문화체험사업	4,000		2,000	2,00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8,000	6,500		11,500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	1,800	900		90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18,720	9,360		9,360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5,000	2,500	1,250	1,250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38,400	19,200	9,600	9,6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충청북도	ID : 181	31,145	9,766	1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복지실	청소년 주장 발표대회	1,500			1,500
	청소년 사랑방 강좌 운영	2,000			2,000
	청소년 한마음 축제 지원	5,000			5,0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14,000	7,000		7,000
	소외 청소년 문화산업 체험	4,000		2,000	2,000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32,320	66,160		66,160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0,000	5,000		5,000
	성년의 날 엽서 제작	300			300
	청소년 관련 단체 활동 지원	2,500			2,500
문화 체육과	꿈나무 축구 클럽 육성	12,000			12,000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5,000	2,500		2,500
	청소년 체력 교실 운영	5,000	2,500		2,500
	꿈나무 체육 선수 육성	30,000			30,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충청남도	ID : 185	126,612	36,841	1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사업과 아동 복지	저소득 아동 자립지원	1,500			1,500
	아동복지 행사지원	26,000			26,000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	244,050			244,050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원	24,000	16,800	3,600	3,6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68,000	84,000	42,000	42,000
	아동복지교사 지원	144,000	100,800	21,600	21,600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4,400	10,080	2,160	2,160
	가정위탁아동 지원	37,800	30,240	3,780	3,780
	기존 급식지원	105,120	52,560	26,280	26,280
	방학중 급식지원	361,800	180,900	90,450	90,450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지원	381,900		381,900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16,512		4,954	11,558
	어린이놀이터 현대화	370,000		170,000	20,000
복지 사업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육성지원	8,700			8,700
	청소년 활동지원	148,867			148,867
	청소년 행사지원	22,000			22,000
	공공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 배치지원	18,264	9,132		9,132
	공공청소년시설프로그램 운영지원	5,328	2,664	1,332	1,332
	비정규학교 운영	10,000		3,000	7,000
	시군 문화존 운영	38,400	19,200	5,760	13,440
	시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64,000	32,000	9,600	22,400
	시군 청소년 자치위원회	2,000		600	1,400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3,800		1,520	2,280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	2,000		800	1,2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충청남도	ID : 186/187	129,486	36,758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생활 지원과 아동 복지	어린이날 행사	5,000			5,000
	어린이 놀이터 보수	40,670			40,670
	아동복지교사 지원	180,000	126,000	27,000	27,000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59,400	41,580	8,910	8,910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지원	27,600	19,320	4,140	4,140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36,000	18,000	9,000	9,0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64,000	132,000	66,000	66,000
	아동복지시설운영	1,620,000		243,000	1,377,000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90,240		18,048	72,192
	퇴소아동자립정착금	15,000		3,750	11,250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추가지원	30,000		9,000	21,000
	시설아동사회적응훈련비	36,600		10,980	25,620
	아동복지시설 오피스, 전기안전점검비	15,000		4,500	10,500
	아동급식비 지원	617,460		154,365	463,095
	학기중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	279,300		279,300	
	소년소녀가정지원	12,600		1,260	11,340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	42,000		4,200	37,800
	소년소녀가정 제수비	1,800		540	1,260
	가정위탁 보호세 추가	18,576		5,573	13,003
	참고서 구입	8,800		2,640	6,160
문화 관광과 청소년 복지	학원수강비	44,000		13,200	30,800
	수학여행비	20,500		6,150	14,350
	청소년 보호 및 육성	335,989	85,844	38,203	211,942
	비행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30,000			30,000
	청소년선도 기동순찰대 활동장비 지원	3,000			3,000
	청소년 지원센터운영	91,000			91,000
	청소년 보호 야간순찰지원	4,800			4,800
	청소년 전통문화예절 캠프운영	3,000			3,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충청남도	ID : 188/189	108,056	24,901	4	4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문화 공보 담당실 청소년 복지	청소년이 여는 작은 콘서트	5,000			5,0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53,889	76,944	23,083	53,862
	시군 청소년 자치위원회	2,700	1,500	600	600
	비정규 학교운영	10,000		3,000	7,000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3,000	6,500	3,250	3,250
	청소년 시설운영 위원회	1,800	900	450	450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7,000		3,500	3,500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5,000	2,000	3,000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3,800		1,520	2,280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2,000		800	1,200
행복나 눔과 아동복 지	어려운아동 추가지원	90,080		27,024	63,056
	아동행사 운영 및 지원	4,600			4,600
	아동급식비 지원	334,200		83,550	284,070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30,600	21,420	4,590	4,590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8,800	20,160	4,320	4,320
	퇴소아동 자립비 추가지원	20,000		6,000	14,000
	학기중 휴일 아동급식 지원	149,340		149,340	
	소년소녀 가정지원	3,360		336	3,024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46,200		4,620	41,580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0,000	2,500		7,500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지원	9,000			9,000
	어린이날 행사지원	60,000		30,000	60,000
	아동복지시설 운영	879,130		123,200	755,93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지원	51,840		10,368	41,472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	24,000	12,000	6,000	6,000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 지원	17,640		5,292	12,348
	아동 오페수 및 전기안전점검비 지원	13,000		3,900	9,100
	시설퇴소예정자 자립프로그램 지원	5,880		2,940	2,940
	장애아동 입양보조금 지원	6,010	4,207	902	901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충청남도	ID : 190/191	153,569	48,125	7	4	3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대축제	20,000			20,000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155,000			155,000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80,000			80,00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2,000		800	1,2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수련관 건립	650,000	450,000		200,000
	청소년 문화탐방	2,000			2,000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7,000			7,000
	청소년 공짜 콘서트	2,500			2,500
	청소년 지도위원등 활동비지원	15,000			15,000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	13,000	6,500	3,250	3,250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운영	1,800	900	450	450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4,400		1,760	1,760
	청소년 수련활동지원	5,000		2,000	3,000
복지과 아동 복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64,000	132,000	39,600	92,400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지원	216,000	151,200	19,440	45,360
	그룹홈 운영지원	37,668	15,067	7,534	15,067
	어린이날 행사	40,000			
	아동급식	1,174,275	293,369		880,806
	어린이 놀이터 정비	20,000			20,000
	어린이 영재교육	5,000			5,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충청남도	ID : 192	221,490	70,790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정 복지과 아동 복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294,130	133,988	44,800	115,342
	지역아동센터 운영	355,200	177,600	88,800	88,800
	아동복지교사 지원	288,000	201,600	43,200	43,200
	어린이놀이터 보수	12,000			12,000
	아동시설근무자 처우개선비	18,000		3,600	14,400
	아동시설 오폐수 및 전기안전점검	3,000		900	2,100
가정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컴퓨터운영	40,000			40,000
	청소년 지원(상담)센터운영	85,000			82,000
	민간 청소년 선도사업	20,000			20,000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음악회	12,000			12,000
	청소년 문화교실	4,000			4,000
	청소년 공부방	10,000		3,000	7,000
	청소년동아리 육성	8,000	4,000	1,200	2,8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충청남도	ID : 193/194	540,774	217,792	-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여성 가족과 아동 복지	아동 안전, 권리증진	229,300			229,300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12,000	6,000	3,000	3,000
	입양아동 양육수당	46,800	32,760	7,020	7,020
	아동복지교사지원	150,000	105,000	45,000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지원	44,420			44,420
	어려운 아동지원	114,600	3,680	51,662	59,258
	아동급식비지원	401,120	262,500	137,500	1,12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00,000	247,500	123,750	28,750
	그룹홈형태 아동보호	150,672	60,269	30,134	60,269
	아동복지시설 운영	2,411,262	1,521,952	345,926	543,384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70,000	35,000	17,500	17,500
체육 청소년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	52,400	26,200	7,860	18,340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3,000		6,00	2,4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사업	146,195	76,945	38,472	30,778
	청소년활동 활성화	88,500			88,500
	가출청소년 쉼터운영	362,000	173,000	86,500	102,500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운영지원	60,800	32,000	9,600	19,200
	청소년지원센터운영	25,110			25,110
	청소년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9,200		5,800	3,400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23,000	11,500	5,750	5,750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3,600	1,800	900	9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충청남도	ID : 195/196	37,775	14,569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문화 공보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68,000			68,000
	청소년 어울마당 (4회)	10,000			10,000
	청소년 푸른음악회	2,000			2,000
	청소년 연극제	2,000			2,000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2개동아리)	2,000			2,000
	어려운 청소년 단체 가입비 지원	3,000		440	2,560
	청소년 자치위원회	2,850		600	2,350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5,000		2,000	3,000
	어려운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3,000			3,000
주민 생활 지원과 아동 복지	아동위원회 운영	630			630
	가정위탁아동양육지원	25,200	20,160	2,520	2,520
	소년소녀가정지원	1,680		168	1,512
	가정위탁양육비추가	11,352		3,405	7,947
	어려운 아동지원	1,260		378	882
	아동발달지원계좌	4,680	3,276	702	702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32,400	16,200	8,100	8,100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34,200		34,200	
	결식아동 급식지원	78,840	39,420	19,710	19,710
	입양아동 양육수당지급	9,600	6,720	1,440	1,440
	장애아동입양보조수당	9,586	6,711	1,437	1,438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4,000	12,000	6,000	6,000
	아동복지교사지원	24,000	16,800	3,600	3,6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충청남도	ID : 197	56,791	12,967	1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건강어린이 육성지원- 어린이날 행사	15,000			15,000
복지과	지구촌 웃는얼굴 그리기	15,000			15,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충청남도	ID : 198/199	133,183	37,522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장애인 청소년팀 청소년 복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35,717	66,015	19,805	49,897
	청소년 공부방 운영	20,000		6,000	14,000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50,000			50,000
	청소년 동아리 육성	8,000		4,000	4,000
	청소년의 달 기념 종합문화축제	20,000			20,000
	공공 청소년 프로그램운영	13,000	6,500	3,250	3,250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40,000			40,000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2,000		800	1,200
	청소년 하계 수련활동 지원	5,000			5,000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0,000	21,000	4,500	4,500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6,480	4,536	972	972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254,880		63,720	191,160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	20,296		6,215	14,081
	소년소녀가장 지원	5,040		504	4,536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25,200		2,520	22,680
	어린이날 행사 지원	50,000			50,0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6,400	13,200	6,600	6,600
	어린이 놀이터 보수, 신축	30,000			30,000
	평시급식	175,200		43,800	131,400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269,040		269,040	
	요보호 아동정서개발비	360		108	252
	아동복지교사지원	12,000	8,400	1,800	1,8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충청남도	ID : 200	77,916	19,954	3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장애 입양 아동 양육 보조금	9,132	6,392	1,370	1,370
	입양 아동 양육 보조금	21,600	15,120	3,240	3,240
	아동 복지 시설 기능 보강	48,984	24,492	12,246	12,246
	아동 급식비(지방 이양)	353,940		88,485	265,455
	소년 소녀 가정 지원	5,040		504	4,536
	어린이날 행사	2,000			2,000
	어린 독서 축제	2,000			2,000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18,000			18,000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53,890		15,000	35,000
	청소년 수련 활동 지원	5,000		2,000	3,000
	청소년의 달 행사	1,600			1,600
	청소년 지원 센터	50,000			50,000
	청소년 푸른 음악회	10,000			10,000
	청소년 선도 사업 지원	20,000			20,000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8,000		1,200	2,800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 프로그램	13,000		3,250	3,250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18,264		9,132	9,132
	청소년 수련원 위탁 운영비	350,000			350,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충청남도	ID : 201	60,915	14,733	1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생활 지원과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46,667			46,667
	어려운 청소년 지원	22,256		6,761	15,495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84,800	92,400	27,700	64,68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충청남도	ID : 202	81,450	22,538	1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93,448	145,824	43,748	103,876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5,000			5,000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	10,000			10,000
	청소년 지지역량 강화	5,000	1,500	1,550	1,950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지원	23,600		6,000	17,600
	청소년 문화존 사업	38,400	19,200	5,760	13,440
	청소년 진로박람회 운영	10,000			10,000
	청소년 동아리 지원	9,000	4,500	1,350	3,150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1,800	900	450	450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	2,200		880	1,320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5,000		2,000	3,0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59,500		15,000	44,500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60,000			60,000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10,000			10,000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3,000	6,500	3,250	3,250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18,720	9,360		9,36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충청남도	ID : 204	33,932	8,636	1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생활 지원과	청소년문화존	38,400	19,200	5,760	13,440
	청소년동아리지원	6,000	3,000	900	2,100
	청소년수련활동지원	5,000		2,000	3,000
	충효예교실	15,400		4,620	10,780
	청소년자치위원회운영	2,700	1,500	600	600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2,000		800	1,200
	어려운 청소년단체 가입비 지원	1,100		440	660
	청소년 지원센터운영지원	46,667			46,667
	소년소녀가정지원	2,520		252	2,268
	가정위탁 양육비지원	50,400		5,040	45,360
	아동급식비(학기중)	90,060		90,060	
	아동급식비(방학중)	85,320		21,330	63,990
	어려운아동추가지원	25,578		7,736	17,842
	아동급식비(밀반찬)	87,600		21,900	65,700
	어린이날행사	10,000			10,000
	지역아동센터운영	13,200	13,200	6,600	6,600
	아동복지교사지원	36,000	25,200	5,400	5,4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충청남도	ID : 205/206	63,893	63,893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문화 관광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	4,520,000	3,520,000		1,000,000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47,000			47,000
	여려운 청소년 단체 가입비 지원	1,600		800	800
	청소년 하계 수련대회 지원	5,000		2,000	3,000
	청소년의달 문화축제	30,000			30,000
	청소년 활동 동아리 지원	8,000		3,200	4,800
복지과 아동 복지	아동복지증진사업	157,300			157,300
	아동복지 교사지원	72,000	50,400	10,800	10,800
	아동급식비 지원	258,120	193,590	64,530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18,000	12,600	2,700	2,700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12,000	8,400	1,800	1,800
	어려운아동 추가지원	25,800		7,740	18,060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58,800	52,920	5,880	
	지역아동센터 운영	72,000	24,000	12,000	36,000
	학기중 공휴일 아동급식지원	189,240		189,24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충청남도	ID : 207/208	24,203	24,203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문화 관광과 청소년 복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13,000	6,500	3,250	3,25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65,951	76,944	23,084	65,923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19,440	9,720		9,720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7,000	2,500		4,500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	3,000	1,500	750	750
	어려운 청소년단체 가입비 지원	2,500		1,000	1,500
	청소년수련활동지원	5,000		2,000	3,000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	1,800	900	450	45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2,000		800	1,200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64,000	32,000	9,600	22,400
	청소년유해환경경지도단속	15,000			15,000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385,000			385,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전라북도	ID : 209/210	260,502	-	6	4	2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여성 복지과 아동 복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765,600	382,800	191,400	191,400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사업)	672,000	470,400	100,800	100,800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	75,336	30,135	22,600	22,60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50,350	225,175	112,588	112,587
	아동급식 지원사업	1,610,835		899,678	711,157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보호지원	217,640		34,092	183,548
	입양아동 지원	108,528	67,570	18,079	22,879
	아동발달지원 계좌	118,800	83,160	17,820	17,820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15,000		31,050	83,95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지방이양)	3,161,720		474,258	2,687,462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179,800		53,940	125,860
	아동복지시설지원	168,134		50,440	117,694
	보호아동 1인1자격 지원	15,000		4,500	10,500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20,240			20,240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	2,000			2,000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4,759			4,759
	아동복지 일반운영비 및 여비	16,280			16,280
문화 체육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93,132		93,132	
	청소년 성문화 센터운영	70,000	35,000	35,000	
	청소년 문화존 사업	38,400	19,200	19,200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12,000	6,000	6,0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60,000	80,000	80,000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93,000		93,0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98,000	28,000	70,000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13,000	6,500	6,5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전라북도	ID : 211/212	98,740	24,772	3	-	3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체육 청소년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	93,000		20,000	73,000
	청소년 공부방	14,000	7,000		7,000
	청소년 가요제	15,000			15,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전라북도	ID : 213	91,265	27,001	1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153,890	76,945	38,473	38,472
	청소년공부방운영	28,000	14,000		14,000
	청소년수련실운영	20,000			20,000
	청소년지원센터운영	93,000		20,000	73,000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19,440	9,720	9,720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61,840	17,420	44,420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38,400	19,200	9,600	9,600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12,000	6,000	3,000	3,000
	청소년선도활동 및 보호	5,080			5,080
	청소년보호 단속활동비	3,000		1,500	1,500
복지과 아동 복지	아동발달지원계좌	36,000	25,200	5,400	5,400
	요보호아동 가정, 사회보호시스템강화	287,280	148,608	44,904	93,768
	어린이관련 행사지원	5,000			5,000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15,600	10,920	2,340	2,340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4,800		1,440	3,360
	아동급식비 지원	1,299,210	324,297	758,715	216,198
	지역아동센터운영	502,800	271,200	99,600	132,000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180,000	126,000	27,000	27,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전라북도	ID : 215/216	-	-	8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여성 청소년과 아동 복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12,700			12,700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1,000		51,000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6,600		36,600	
	입양아동 양육수당	132,000	92,400	19,800	19,800
	입양아동 수수료 지원	72,000	50,400	21,600	
	입양기관 운영비 지원	49,808		49,808	
	아동발달지원계좌	106,560	74,592	15,984	15,984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00,000	50,000	25,000	25,00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2,876,593	256,000	449,532	2,171,061
	아동복지교사	660,000	462,000	99,000	99,0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92,000	396,000	198,000	198,000
	요보호 그룹홈 운영지원	150,673	60,269	45,202	45,202
	아동시설 보호비	320,000	256,000	32,000	32,000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297,700		46,590	251,110
	결식아동 급식	2,208,045		1,122,938	1,085,107
여성 청소년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공부방운영	70,000	35,000	35,000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	93,000		93,000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593,990		593,990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	62,000	31,000	31,000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	113,760	56,880	56,880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12,000	6,000	6,000	
	성문화 센터 운영	70,000	35,000	35,000	
	단기청소년 쉼터운영	132,000	66,000	66,000	
	장기청소년 쉼터운영	93,000	46,500	46,500	
	청소년문화시설운영(6개소)	1,116,504			1,116,504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전라북도	ID : 217/218	124,239	35,544	8	4	4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여성 청소년 복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2개소)	294,370	147,185	73,593	73,592
	청소년 공부방운영	10,000			10,000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97,100		20,000	77,100
	청소년 성문화센터	160,000	80,000	40,000	40,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전라북도	ID : 219	60,369	14,797	8	4	4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어린이날 기념식	1,200			1,200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	9,600	6,720	1,440	1,440
	아동 발달 지원 계좌	90,000	63,000	13,500	13,500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	105,600	52,800	26,400	26,400
	아이 신랑 서포터즈	5,000		2,500	2,500
	아동 복지 시설 운영비 지원	190,935	796,892	294,503	859,50
	요보호 아동 가정	238,390	140,160	36,477	61,753
	입양 아동 양육 보조금	3,600		1,080	2,520
	아동 시설 생활 아동 지원	176,820	15,000	51,546	110,274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30,000	15,000	7,500	9,500
	청소년 체련 교실 운영	9,476	4,738		4,738
	유소년 축구 교실 운영	8,400		2,520	5,880
	청소년 수련관 관내 운영	389,914			389,814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전라북도	ID : 221	61,879	-	3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어린이날 행사지원	12,230			12,230
	입양 아동지원	7,200	5,040	1,080	1,080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18,000	12,600	2,700	2,700
	아동급식지원	689,880	191,498	363,332	135,05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63,840	98,400	32,400	33,040
	아동복지행사참가자 실비보상	5,100			5,100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20,740	10,000		10,740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7,000			7,000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300			300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61,172	15,860		45,312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32,090			32,090
	청소년 보호조사 단속활동	2,000		1,000	1,000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93,000		20,000	73,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전라북도	ID : 224	5,114	5,014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복지과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	193,790	40,000	20,000	133,790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53,890	76,945	38,473	38,472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 보호	264,995	25,040		239,955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전라북도	ID : 225	26,687	7,233	1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생활 지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34,320	17,159		17,161
	청소년 상담센터 지원	71,034		15,277	55,757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28,649			28,649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전라북도	ID : 226	30,250	8,523	3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생활 지원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540,680	95,065	76,590	369,025
	어려운 청소년지원	16,400	13,120	1,640	1,640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지원	93,000		20,000	73,000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운영	8,000			8,000
	오뚝이 캠프운영(청소년)	4,400			4,400
	우수 청소년 육성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10,000		5,000	5,000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15,000	5,000	5,000	5,000
	모부자 가정 세대보호	21,590		6,477	15,113
	청소년 1인1자격증 취득반 운영	8,400			8,400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보조	150,000			150,000
	청소년 야영장 운영비보조	60,000			60,000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153,890	76,945	38,473	38,472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전라남도	ID : 228	95,439	23,108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77,845	77,845	
	청소년 공부방 운영	100,000	5,000	5,000	
	청소년 상담실 운영	50,000	25,000	25,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전라남도	ID : 229/230	243,312	83,382	1	1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448,800	224,400	112,200	112,200
	어린이날 행사	7,000			7,000
	소년소녀가정지원	245,240	139,776	52,732	52,732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	36,528	25,570	5,479	5,479
	입양아동양육수당	27,600	19,320	4,140	4,140
	아동급식비 지원	566,443	656,381	331,841	78,191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전라남도	ID : 231	271,828	93,661	6	3	3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문화 체육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60,514	76,945		83,569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0,000	5,000		5,000
	청소년 수련소 시설물 정비	440,000			440,000
	청소년시설 운영 위원회 운영	1,350	675		675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	1,400	700		700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운영	50,000		25,000	25,000
	청소년공부방 운영	40,000	20,000		20,000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7,000	3,500	1,750	1,750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4,000		2,000	2,000
	청소년 문화존 운영	38,400	19,200	9,600	9,600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	20,000	10,000	10,000	
여성 가족과 아동 복지	지역아동센터지원	528,000	264,000	132,000	132,000
	아동복지교사지원	312,000	218,400	46,800	46,800
	소녀,소년가장 가정위탁지원	177,340	101,714	37,913	37,913
	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	475,395	146,900	234,475	94,020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	1,541,677	1,046,447	303,248	186,982
	입양아동 양육수당	38,400	26,880	5,760	5,760
	아동발달 지원 계좌지원	61,560	43,092	9,234	9,234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전라남도	ID : 232	295,453	-	-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정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수련관운영비	296,700	9,720		286,980
	청소년문화의집운영비	90,700	9,720		80,980
	청소년지원센터운영비	182,000	40,000	27,500	114,500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38,400	19,200	9,600	9,6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286,210	143,105		143,105
	청소년예절교육운영	9,700		2,000	7,700
	청소년쉼터운영	93,000	46,500	23,250	23,250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160,000	80,000	40,000	40,000
	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	23,000	11,500		11,500
	청소년현장체험학습운영비	10,000			10,000
가정 복지과 아동 복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12,800	356,400	178,200	178,200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228,542	859,980	184,281	184,281
	그룹홈형태 아동보호운영비	37,668	15,067	11,300	11,301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9,100	13,370	2,865	2,865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97,920	68,544	14,688	14,688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9,132	6,392	1,370	1,370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8,400	26,880	5,760	5,760
	소년소녀가정지원	88,000	14,112	36,944	36,944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전라남도	ID : 233	41,352	-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여성 복지팀 청소년 복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20,000	10,000		10,000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53,890	76,945		76,945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	1,400	700		700
	청소년 예절 교실 운영	4,000	2,000		2,000
	청소년 탐진 백일장 대회 및 어울 마당	5,000			5,000
	청소년 어울 마당	4,000			4,000
	청소년 인성 교육 현장 교실 운영	2,100			2,100
	모범 청소년 표창 및 소년·소년 가장 위안 잔치	3,000			3,000
	청소년 길거리 농구 대회	2,000			2,000
	취약 계층 아동 보호	149,717			
여성 복지팀 아동 복지	아동 복지 건강 교육 통합 서비스 지원	300,000			
	시설 아동 생활 용돈	10,440		5,220	5,220
	시설 아동 생필품 구입	16,800		8,400	8,400
	아동 복지 시설 운영 지원	510,834	357,584	76,625	76,625
	성장 고아 자립 정착금	3,000		1,500	1,500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3,000	1,500	750	750
	아동 복지 교사 지원	136,000	96,402	19,799	19,799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	158,400	79,200	39,600	39,6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전라남도	ID : 234/235	77,500	12,500	4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소년소녀가장 아동상해보험료 지원	2,600			2,600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체험	16,000			16,000
	어린이 행사 지원	12,500			12,5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14개소)	369,600	184,800	92,400	92,400
	요보호 아동 그룹홈 보호(1개소)	37,668	15,067	11,300	11,301
	입양 아동양육보조	18,000	12,600	2,700	2,700
	가정위탁상해보험료 지원	5,800	4,060	870	870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1,600	15,120	3,240	3,240
	아동복지교사	168,000	117,600	25,200	25,200
	소년소녀가정 지원	21,000	2,100	16,800	2,100
	가정위탁 양육지원	41,160	4,116	32,928	4,116
	결식아동급식지원	52,560	13,140	26,280	13,140
	방학중 아동급식	66,688	16,672	33,344	16,672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세대 대학진학자금	3,000	1,500		1,500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세대 위로금	23,760	11,880		11,880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세대 명절제수비	9,900	4,950		4,950
	학기중 아동급식	70,965	70,965		
주민 생활 지원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수련관건립	1,107,000	1,075,000	32,000	
	청소년문화의집건립	354,000			354,000
	청소년공부방 운영	42,000	21,000		21,000
	청소년체련교실	4,816	2,408		2,408
	어린이보호구역개선	706,000	353,000	353,000	
	청소년예절교실운영	6,000		2,000	4,000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1,000	500		500
	청소년 금연 절주교실 운영	3,000	1,500		1,500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1,400	700		7,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전라남도	ID : 236/237	27,926	6,825	5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요보호아동 보호	1,000			1,000
	소년소녀가정 생일위문	1,000			1,000
	소년소녀가장 생활용품 지원	1,000			1,000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2,400	1,680	360	360
	소년소녀가정지원	8,400	6,720	840	840
	소년소녀가정 세대위로금	1,560		780	780
	소년소녀가정세대 명절제수비	650		325	325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	2,000			2,000
	결식아동급식지원	2,584	1,292	646	646
	학기중아동급식비	22,842		22,842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23,817	8,909	4,454	10,454
	아동복지교사지원	6,000	4,200	900	900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구례군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7,500			7,500
	청소년 홍보물 제작	1,500			1,500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300			300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구입	2,000			2,000
	청소년 문화의집 팜플렛 등 각종인쇄물	2,000			2,000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2,400			2,400
	청소년문화의집 자원봉사자 급식비	4,000			4,000
	청소년수련관 시설장비유지비	755			755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850			850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	2,000			2,000
	청소년의달 행사참가	1,250			1,250
	수영구 청소년수련캠프 참가자 간식비	400			400
	청소년유해행위 신고 포상금	1,000			1,000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9,498	9,498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4,000		4,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전라남도	ID : 238/239	51,022	13,025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복지과 아동 담당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수학여행비 지원	17,320			17,320
	소년소녀가정 지원	62,024		16,810	45,214
	아동발달지원계좌	6,840	4,788	1,026	1,026
	가정위탁상해보험료	300	210	45	45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58,400	79,200	39,600	39,600
	입양아동 양육수당	6,000	4,200	900	900
	아동복지교사지원	111,300	78,894	16,203	16,203
	소년소녀가정 사회적응지원	1,450			1,450
	아동급식지원	324,941		166,989	157,952
	어린이날 행사지원 (모범어린이표창)	1,100			1,100
	저소득 아동 중식비 (세자녀이상세대)	63,080			63,080
	그룹홈 형태 아동보호	37,668	15,067	11,301	11,300
사회 지원과	301 일반보상금	600			6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전라남도	ID : 240/241	61,766	16,231	2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499,548	349,684	74,932	74,932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6,000		3,000	3,000
	시설아동 생활용돈	12,600		6,300	6,300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	19,200		9,600	9,600
	시설아동 중사자 특별수당	21,480		21,480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197,818	140,221	28,798	28,799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6,000		3,000	3,000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6,000	3,000	1,500	1,500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36,960	29,568	3,696	3,696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5,300	3,710	795	795
	입양아동 양육지원 보조금	6,000	4,200	900	900
	결식아동 급식지원	3,284	1,642	821	821
	학기중 아동급식비	69,540		69,540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58,860	29,430	14,715	14,715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30,960	21,672	4,644	4,644
	아동시설 운영지원	660			660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2,520	2,016	252	252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	8,000		4,000	4,000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	15,360		7,680	7,680
	소년소녀가정세대 명절제수비	6,400		3,200	3,2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16,800	118,800	59,400	138,6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380			4,380
	어린이날 기념행사지원(어린이꿈나무큰잔치)	40,400			40,400
	저소득층 조부모가정 아동위로금	36,000			36,000
	지역아동센터 차등화 인센티브 지원	3,600			3,600
	지역아동센터 외국어 학습 교재비	6,000			6,000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및 상담센터 운영	9,246			9,246
	청소년 행사	34,850			34,85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53,890	76,945		76,945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운영	1,400	700		700
	청소년 예절교실	4,400		2,200	2,2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전라남도	ID : 242/243	50,921	12,486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예절교실운영	20,000		2,000	18,000
	청소년어울마당	15,000			15,000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1,400	700		700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행사지원	5,000			5,000
	청소년 교류캠프	21,000			21,000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운동지원	2,000			2,000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184,800	92,400	46,200	46,2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전라남도	ID : 245/246	58,837	16,551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생활 지원과	청소년교육	3,440			3,440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운영	1,000			1,000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1,400	700		700
	청소년 예절교실	4,000		2,000	2,000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000			1,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전라남도	ID : 247	-	17,231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청소년 수련활동 보상비	2,150			2,150
	어린이날 큰잔치	6,000			6,000
	청소년 어울마당	15,000			15,000
	청소년 예절교실	4,400		2,200	2,2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전라남도	ID : 248/249	57,689	14,454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74,352	52,046	11,153	11,153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290,400	118,800	59,400	112,200
	아동복지교사지원	197,817	140,221	28,798	28,798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지원	10,500	7,350	1,575	1,575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14,400	10,080	2,160	2,160
	아동발달 지원계좌지원	24,840	17,388	3,726	3,726
	소년소녀가정 대학 진학자금	5,000		2,500	2,500
	소년소녀가정 세대위로금	24,000		12,000	12,000
	소년소녀가정 명절 제수비	10,000		5,000	5,000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여름 청소년 학교 운영 지원	10,500			10,5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7,000	30,000		40,000
	청소년 예절 교실	4,000		2,000	2,000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7,000	3,500	1,750	1,750
	청소년 문화존 운영	38,400	19,200	9,600	9,600
	지역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	1,400	700		700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749,718	251,892		497,826
	청소년 야영장 조성	918,353	858,461		59,892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5,000			5,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전라남도	ID : 250	47,410	11,617	1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생활 지원과	청소년예절교실운영	4,000		2,000	2,000
	어려운 청소년 인재육성 장학금지급	56,900		9,500	51,000
	청소년유해환경 지킴이운영	3,000			3,000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1,400	700		700
	청소년 야영장운영	25,100			25,100
	청소년수련활동	3,000			3,000
	청소년 모범표창	600			600
	어려운 청소년 교육	1,000			1,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전라남도	ID : 251/252	43,468	11,526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생활 지원과 아동 복지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132,000	173,868	33,000	33,000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	111,280	66,000	16,200	16,200
	아동발달지원계좌	11,880	78,880	1,782	1,782
	위스타트 아동행복마을 운영	200,000	83,316	100,000	100,000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	6,000		3,000	3,000
	소년소녀가정 세대 위로금	25,440		12,720	12,720
	소년소녀가정 명절 제수비	10,600		5,300	5,300
	학기중 급식비	163,305		163,305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15,600	10,920	2,340	2,340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9,132	6,392	1,370	1,370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4,800	3,360	720	720
	소년소녀가정지원	11,760		10,584	1,176
	가정위탁양육지원	33,600		30,240	3,360
	결식아동 급식지원	4,380		3,942	438
	방학중아동 급식지원	165,780		124,335	41,445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전라남도	ID : 254/255	82,529	20,510	3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족 복지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53,890	76,945		76,945
	청소년 문화존 운영	38,400	19,200	9,600	9,600
	청소년 예절 교실	4,000		2,000	2,000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7,000	3,500	1,750	1,750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	13,000	6,500	45,000	6,500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50,000			5,0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40,000	20,000		20,000
	지역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지원	80,000	40,000	112,200	40,000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	448,800	224,400	3,000	112,200
	저소득 수능 공부방 지원	12,000	6,000	53,996	3,000
	아동 복지 교사 지원	370,908	262,914	25,000	53,998
	소년 소녀 가정 대학 진학 자금	5,000		5,400	2,500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36,000	25,200	1,500	5,400
	가정 위탁 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	10,000	7,000	11,160	1,500
	소년 소녀 가정 세대 위로금	22,320			11,16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전라남도	ID : 256	71,551	20,385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청소년 체육 대회 지원	5,000			5,000
	청소년 예절 교실 운영	6,800		2,000	4,800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	8,000			8,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상북도	ID : 258	243,575	77,519	4	2	2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56,359			56,359
	청소년종합센터지원	60,630	40,000	12,000	8,630
	청소년문화활동지원	23,145			23,145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	80,000		26,000	54,000
	청소년학습 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3,000		900	2,100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6,700		2,000	4,700
	청소년공부방운영	14,000	7,000		7,000
	수련시설지도사 배치	19,440	9,720	4,860	4,860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13,000	6,500	3,250	3,250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저소득한부모 가족지원	113,007	90,405	11,301	11,301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20,000		6,000	14,000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45,800		13,740	32,060
	한부모 학생 학용품비	22,400		6,720	15,680
	한부모 자녀 대학입학금	20,000		5,982	14,018
	한부모 가족 권익증진	8,850			8,850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18,264	12,784	2,740	2,740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40,320	28,224	6,048	6,048
	입양아동 양육수당	21,600	15,120	3,240	3,240
	소년소녀가정지원	13,440	4,000	1,092	8,348
	가정위탁 양육지원	54,600	45,000	5,460	4,140
	결식아동 급식지원	70,848	26,000	1,863	42,985
	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	351,120		351,120	
	아동급식지원 (방학중)	352,080		105,624	246,456
	지역아동지원센터운영	264,000	132,000	66,000	66,000
	아동복지교사지원	180,000	126,000	27,000	27,000
	아동복지 지원	10,670			10,670
	어린이날 행사	51,545			51,545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상북도	ID : 259/260	272,206	71,494	1	1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행정 지원과 청소년 복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추진사업	150,000		50,000	100,000
	비정규학교 운영비지원	32,380		20,380	12,000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4,450		10,000	4,450
	청소년 전통예절교육 및 한문교실운영	5,960		4,000	1,960
	청소년 전통예절교육	107,400		33,000	74,400
	하계야영대회	33,342		10,000	23,342
	학생집단 상담보고회	3,500		3,000	500
	청소년 자치학교 운영	12,000		12,0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36,600	14,000	14,000	8,600
	시군참여위원회 운영	3,000	1,500	1,500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6,700		6,700	
	명예 경찰소년단 운영	20,315		16,000	4,315
	딩동댕 꾸러기 로스쿨 행사운영	20,000		20,000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급	21,600	15,120	3,240	3,240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75,600	52,920	11,340	11,340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	211,200	104,872	52,436	53,892
	아동 급식 지원 등	100,599		658,606	347,384
	소년 소녀 가정, 가정 위탁 양육 지원	121,800		12,180	53,492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상북도	ID : 261/262	392,825	158,033	3	-	3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체육 진흥과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53,890	76,945	38,472	
	청소년 단기 쉼터 운영	132,000	66,000	66,000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	80,000	40,000	40,000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지원	57,000	28,500	28,500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100,500		100,5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상북도	ID : 263/264	139,019	39,310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위생과 아동 복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2,208,619	1,372,000	144,982	69,637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4,000	10,000	12,000	2,000
	시설아동기능 교육비	4,500		1,350	3,150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6,660		1,998	4,662
	시설아동 교복비	2,850		855	1,995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3,450		1,035	2,415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초,중등)	2,090		627	1,463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고등)	2,100		630	1,470
	시설아동 건강 검진비	4,540		1,362	3,178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21,996		6,599	15,397
	시설아동 춘계부식 및 김장비	6,810		2,043	4,767
	아동복지시설종사자	66,240		33,120	33,12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22,080		11,040	11,040
	아동행사지원	48,378			48,378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80,820	223,200	78,000	79,620
	입양관련 기관지원	76,004	48,434	10,450	17,120
	요보호 아동 보호사업	1,183,840	98,840	691,896	393,098
	한부모 가정 지원	138,691	57,497	25,865	55,329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상북도	ID : 265/266	74,780	19,056	-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35,280	24,696	5,292	5,292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12,000	8,400	1,800	1,800
	아동복지교사지원	96,000	48,000	24,000	24,000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24,000	12,000	6,000	6,0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94,400	97,200	48,600	48,600
	결식아동급식지원	205,793	102,896	20,580	82,317
	아동복지시설운영	622,738	435,917	62,274	124,547
	소년소녀가정지원	4,200	3,360	420	420
	가정위탁양육지원	67,200	49,056	5,040	13,104
	퇴소아동자립정착금	18,000		9,000	9,000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244,890		73,467	171,423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지원	256,500		256,500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2,850		855	1,995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기능교육비	1,800		540	1,26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8,720		9,360	9,360
	시설아동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2,400		720	1,680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8,100		2,430	5,670
	시설아동하계수련비	2,250		675	1,575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1,600		480	1,120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2,000		600	1,400
	시설아동 교복비	1,800		540	1,260
	시설아동기능교육비	1,800		540	1,260
	어린이날 행사지원	6,000			6,000
	불우아동하계수련회 지원	5,500			5,5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상북도	ID : 268/269	169,739	46,920	5	2	3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복지 서비스과 아동 복지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12,000	8,400	1,800	1,800
	가정위탁양육지원	56,280		5,628	50,652
	소년소녀가정 문화교류	3,000			3,000
	소년소녀가정 선진지 견학	5,000			5,000
	어린이날 행사 지원	22,000			22,0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32,000	66,000	33,000	33,000
	아동복지교사지원	96,000	67,200	14,400	14,400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52,920	37,044	7,938	7,938
	소년소녀가정지원	46,200		4,620	41,580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	196,026		52,508	143,518
	소년소녀인성교육비지원	30,000		15,000	15,000
체육 청소년과 청소년 복지	방과후 아카데미	1,456,240	15,620	5,760	1,434,860
	청소년 컴퓨터	20,000	5,000	5,000	10,000
	청소년 공부방	20,000	10,000		10,000
	어려운 청소년 지원	3,600	1,800	1,8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상북도	ID : 270/271	114,309	36,959	4	1	3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인재 양성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53,890	76,945	38,472	38,473
	청소년공부방 운영 (우수)	40,000	20,000		20,000
	청소년공부방 운영 (일반)	7,000		2,100	4,900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0	5,000	2,500	2,500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지원	80,000	40,000	12,000	28,000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	73,000		18,000	55,000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	19,440	9,720	4,860	4,860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470,000	470,000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어린이날 행사지원	13,000			13,000
	어린이놀이터 보수	20,000			20,000
	소년소녀가정 교통비지원	21,600			21,600
	소년소녀가정 수학여행비지원	3,500			3,500
	소년소녀가정 자립정착금	6,000			6,000
	소년소녀가정 기능교육비	2,700		810	1,890
	소년소녀가정 대학입학금지원	9,968		7,455	2,513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24,000	16,800	3,600	3,600
	아동발달 지원계좌	16,920	11,844	2,538	2,538
	아동급식지원	591,234	331,141	77,103	182,990
	소년소녀보호비	49,510	14,818	4,956	29,736
	가정위탁 양육비	10,920	3,276	1,092	6,552
	지역아동센터 지원	104,872	52,436	26,218	26,218
	아동복지교사지원	96,000	67,200	14,400	14,4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상북도	ID : 272/273	105,819	29,987	1	1	4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체육 청소년 사업소 청소년 복지	청소년공부방운영	41,000	10,000	6,300	24,700
	청소년지원센터운영	155,000			
	시군 참여위원회 운영	3,000		1,500	1,500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6,700		600	1,400
	청소년 학습클리닉프로그램운영	3,000		900	2,100
	비정규학교 운영	22,169		6,649	15,520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	3,000		900	2,100
	청소년 어울마당	8,000			8,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상북도	ID : 278/279	35,243	7,497	1	-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기획 감사실	청소년보호육성, 청소년활동지원	23,890			23,890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3,350		1,000	2,350
	청소년 공부방운영- 도비	7,000		2,100	4,900
	청소년 공부방운영- 국비	28,000	14,000		14,000
	청소년 위원회지원	3,000		1,500	1,500
	어려운 청소년 지원	1,112		1,112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상북도	ID : 280	45,680	10,968	1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시군 참여위원회 운영	3,000	1,500		1,5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7,000		2,100	4,900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3,350		1,000	2,350
	어린이날 행사보조	15,000			15,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상북도	ID : 281	43,470	9,293	4	2	2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	14,000	7,000		7,000
	청소년 일반공부방 운영	7,000		2,100	4,900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1,120		1,120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3,350		1,000	2,350
	지역아동센터 운영	79,200	39,600	19,800	19,800
	아동급식지원	474,690	60,250	221,650	192,79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상북도	ID : 282	19,119	3,967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불우아동 지원사업	23,600			23,600
	어린이 행사지원	1,440			1,440
	결식아동 급식지원	201,213	90,000	6,313	104,900
	아동급식지원(방학중)	109,350		32,805	76,545
	아동급식지원(학기중,토일,공휴일)	122,550		122,550	
	아동발달지원계좌	5,040	3,528	756	756
	가정위탁양육지원	23,520	12,000	2,352	9,168
	지역아동센터운영	79,200	26,400	13,200	39,600
	아동복지교사지원	36,000	25,200	5,400	5,400
	입양아동 양육수당	9,600	6,720	1,440	1,440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3,350		1,000	2,350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3,220	1,500		1,720
	청소년 가요제 개최	12,000			12,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상북도	ID : 283	48,866	11,242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200,000	72,800	15,600	111,600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4,000		1,200	2,800
	한부모가족 자녀대학입학금 지원	4,000		1,197	2,803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지원	3,500		1,050	2,450
	요보호 아동지원	2,020			2,020
	아동발달 지원계좌지원	7,920	5,544	1,188	1,188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6,000	4,200	900	900
	아동급식지원(학기중 토,공휴일)	99,750		99,750	
	아동급식지원(방학중)	86,130	17,191	25,839	43,100
	미취학아동 결식비 지원	33,477	14,765	3,912	14,800
	가정위탁 양육지원	5,040	2,236	504	2,300
	소년소녀가정지원	9,240	4,500	924	3,816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14,000	7,000		7,000
	청소년 보호 육성	43,790			43,790
	시군 참여위원회 운영	3,000	1,500		1,500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3,350		1,000	2,350
	청소년 수련관 운영	318,945			318,945
	청소년 교양교실 운영	57,950	5,000	2,500	50,450
	청소년 시설운영위원회 지원	1,800	900	9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상북도	ID : 285	-	-	6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	68,000	18,000		50,000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2개소)	527,780	143,105	71,552	313,123
	청소년 공부방 운영	14,000	7,000		7,000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49,350	11,500	7,650	30,200
	배움터 지킴이 운영	82,000			82,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상북도	ID : 286	61,366	12,102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위생과	청소년공부방운영	14,000	7,000		7,000
	어려운 청소년 지원	1,120		1,120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0	5,000	2,500	2,500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3,350		1,000	2,350
	아동발달계좌 지원	18,000	12,600	2,700	2,700
	결식아동급식지원	140,661	45,065	6,623	88,963
	아동급식지원 (학기중 토,공휴일)	142,500		142,500	
	아동급식지원 (방학중)	154,980		46,494	108,486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상북도	ID : 287	45,515	8,705	1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불우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	4,077		2,000	2,077
	참여위원회 운영	3,000	1,500		1,500
	고3 청소년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2,000		1,000	1,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상북도	ID : 288	27,862	5,811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청소년지원센터운영지원	85,610		18,000	67,610
	청소년학습클리닉 프로그램운영	3,000		900	2,100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3,350		1,000	2,350
	청소년공부방운영	21,000	7,000	2,100	11,900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3,000		1,500	1,500
	청소년 선도위원회운영지원(사회단체)	3,000			3,000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1,000			1,000
	지역청소년선도활동	1,500			1,5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상북도	ID : 289	113,851	35,573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결식아동급식지원	773,544	110,000	348,618	314,926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18,000	12,600	2,700	2,700
	지역아동센터운영	105,600	52,800	26,400	26,400
	가정위탁양육지원	39,480	32,000	3,948	3,948
	소년소녀가정지원	5,880	4,910	588	382
	아동복지교사지원	120,000	84,000	18,000	18,000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12,600	8,820	1,890	1,890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기능교육비	2,100		630	1,470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79,986	76,945	38,472	64,569
	청소년공부방 운영	156,000	50,000	16,800	89,200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3,000	1,500		1,500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3,350		1,000	2,350
	배움터지킴이 운영	15,000			15,000
	청소년 지도(교육)	97,670			97,670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90,896	14,720	7,360	68,816
	청소년 문화증진	25,310			25,31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상남도	ID : 293/294	424,749	125,070	5	3	2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가족 여성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센터포함)				
	학교폭력상담(센터운영포함)				
	학교폭력 아웃리치운영(센터운영포함)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운영(센터운영포함)				
	기타 청소년 선도활동 운영				
예산 총계	-	2,868,887	259,850	2,609,037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상남도	ID : 295/296	111,473	32,718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025,299			1,025,299
	아동발달 지원계좌	31,680	22,176	4,752	4,752
	결식아동 급식지원	575,490		265,314	310,716
	가정위탁 아동지원	84,000			84,000
	소년소녀 가정지원	16,800			16,800
	어린이날 행사	10,000			10,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78,000		39,000	39,000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	33,600		13,440	20,160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지원	37,030	14,812	11,109	11,109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255,167	204,133	25,517	25,517
사회 복지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공부방운영	28,000	14,000		14,000
	청소년상담센터운영지원	90,000		18,000	72,000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50,400	21,000	21,000	8,400
	청소년문화의집운영	85,000			85,000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감시	10,000			10,000
	청소년축제 및 선도활동	25,000			25,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상남도	ID : 297	112,499	31,950	3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사회 복지과	청소년공부방운영	70,000	35,000		35,00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138,650	69,325	34,662	36,663
	경남 성문화센터운영	70,000	35,000	35,000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90,000		18,000	72,000
	청소년 활동 지원팀운영	60,000	30,000	15,000	15,00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58,800	24,500	24,500	9,800
	역사문화순례 실시	12,000			12,000
	행복플러스 가족캠프 실시	9,500			9,500
	문화공동체 체험(도미노)활동 실시	8,600			8,600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실시	37,000			37,000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3,000	1,500		1,500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32,440	16,220		16,220
	청소년 댄스가요 경연대회	7,000			7,000
	어린이날 행사추진	10,000			10,000
	취약계층 아동 체험행사	4,000			4,000
	지역아동센터운영	211,200	105,600	52,800	52,800
	아동복지시설운영 (신애원)	205,438		174,874	30,564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상남도	ID : 301	163,108	31,123	7	5	2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복지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14,000	7,000		7,000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62,770	81,385	40,692	40,693
	청소년 문화존 운영	38,000	19,000	9,500	9,500
	청소년 동아리 지원	13,000	6,500	3,250	3,25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8,800	24,500	24,500	9,800
	청소년 종합 지원 체계 구축	80,000	40,000	20,000	20,000
	청소년 종합 지원 센터 운영	225,000		18,000	207,000
	청소년 유해 사범 단속	3,100		1,000	2,100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사업	18,000		5,400	12,600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3,000		2,000	1,000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26,000	13,000		13,000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10,000	5,000		5,000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위원회 지원	3,000	1,500		1,500
	청소년 수련관 운영 위원회 지원	2,000	1,000		1,000
	청소년 수련관 지도사 배치 사업	40,080	20,040		20,040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4,000			4,000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포상금	3,000			3,000
	청소년 지도 위원 연수 실시	5,000			5,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경상남도	ID : 303/304	134,431	40,064	2	-	2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체육 청소년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상담팀) 운영	109,000		18,000	91,000
	청소년통합지원체계(활동팀) 운영	80,000	40,000	20,000	20,000
	청소년 동반자 사업운영	58,800	24,500	24,500	9,800
	방학중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14,400		4,320	10,080
	청소년보호활동	3,100		1,000	2,100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28,000	14,000		14,000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20,000	5,000	2,500	12,5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53,890	76,945	38,472	38,473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38,000	19,000	9,500	9,500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	3,000	1,500		1,500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운영	13,000	6,500	3,250	3,250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39,360	19,680		19,680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000	1,000		1,00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10,000	5,000		5,000
	충무공 전적지 순례지원	20,000			20,000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000			10,000
	청소년수련시설 개, 보수	40,000			40,000
	사회단체보조금(ABC바다사랑학교, 청소년축제)	12,000			12,000
	청소년 업무관련운영비	16,330			16,330
주민 생활 복지과 아동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12,000	8,400	3,600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6,849	4,794	2,055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54,720	38,304	8,208	
	아동급식지원(학기중)	468,825		468,825	
	아동급식지원(방학중)	844,410		388,428	455,982
	아동급식지원(연중)	65,700		45,990	19,710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9,000		6,500	2,500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지원	19,200		19,200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24,960		24,960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	14,560		14,560	
	요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 지원	1,800		1,800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	25,600		25,600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75,336	30,134	45,202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9,200	39,600	39,600	
	아동복지교사 일자리 지원사업	60,000	42,000	18,000	
	소년소녀가정지원	14,280		2,856	11,424
	가정위탁양육비	138,600		138,600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70,000		470,000	
	아동위원 및 불우아동 행사참석 지원	1,500			1,50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4,600	2,300	2,3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상남도	ID : 309	35,274	8,252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복지과	청소년 동반자	16,800	7,000	7,000	2,800
	청소년 종합 지원센터 운영	34,434		6,887	27,547
	청소년 공부방	20,000	10,000		10,0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상남도	ID : 310/311	31,418	7,151	1	-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문화 체육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122,264		18,000	104,264
	건전 청소년 육성 지원	28,650	7,200	9,160	12,290
	청소년 활동지원	140,660	24,080	5,000	111,580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사업	26,000			26,0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61,090	77,845	38,922	44,323
사회 복지과 아동 복지	요보호아동 어린이날 위문	800			80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2,800	26,400	13,200	13,200
	아동복지교사 지원	48,000	33,600	7,200	7,200
	요보호아동 수학여행 경비지원	1,000			1,000
	요보호아동 보호비 지원	19,320			19,320
	요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3,840		1,536	2,304
	요보호아동 재수비 지원	2,240		672	1,568
	요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 지원	2,400		960	1,440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	6,720		2,688	4,032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600	2,520		1,080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2,960	9,072	1,944	1,944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4,800		1,920	2,880
	결식아동급식지원	298,125		134,208	163,917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상남도	ID : 313	55,526	13,993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복지 위생과 아동 복지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124,800			124,800
	아동위원 활동비	3,500		700	2,800
	아동업무 행사실비보상	6,800			6,800
	가난 대물림 차단지원	60,900		23,170	37,730
	아동급식지원	258,390		25,839	232,551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9,200	39,600	19,800	19,800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18,000	12,600		5,400
	아동발달 지원계좌	32,040	22,428	4,860	4,806
	아동복지교사	60,000	42,000	9,000	9,000
	어린이날 기념행사지원	4,450			4,450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5,000			5,000
	소년소녀가정지원	840			840
	아동급식지원	166,725		166,725	
복지 위생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47,072		9,414	37,658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6,000			6,000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청소년 수련관)	50,000			50,000
	청소년시설확충	500,000	100,000		400,000
	청소년교류행사 지원	41,960			41,960
	청소년 보호 및 단속지원	2,600		860	1,740
	청소년공부방 운영	14,000	7,000		7,0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107,690	53,845	26,922	26,92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26,000	13,000		13,00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3,600	14,000	14,000	5,600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	3,000	1,500		1,500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188	4,749		5,439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상남도	ID : 314	64,885	14,410	2	-	-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복지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지원	103,624		18,000	85,62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50,400	21,000	21,000	8,400
	청소년한마당축제	20,000			20,000
	청소년 부모교육	3,000	1,000	1,000	1,000
	어려운세대 아동청소년 하계수련회	5,000			5,000
	위기청소년 문화탐방	8,000			8,000
	후원자 결연자 만남의 날	5,000			5,000
	어린이날 행사개최	20,000			20,000
문화 관광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운영	90,000		18,000	72,00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25,200	10,500	10,500	4,200
	청소년 지도 부모 교육	3,000	1,500		1,500
	청소년 자치 위원회 운영	3,000	1,500		1,500
	청소년 지도 선도 활동	1,200		360	84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경상남도	ID : 316/317	55,450	12,498	2	1	1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주민 생활 지원과 아동 복지	아동급식지원	271,290		116,904	154,386
	합천애육원 증 개축	198,000	99,000	29,700	69,300
	아동복지시설 운영	331,662			331,662
	아동위원활동비	3,500		700	2,800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1,000		2,100	18,900
	아동가장세대 지원	54,600			54,600
	가난대물림 차단지원	34,300		13,230	21,070
	아동복지교사 지원	84,000	58,800	12,600	12,6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32,000	60,000	30,000	30,000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5,058	3,542		1,516
	아동발달 지원계좌지원	14,400	10,080	2,160	2,160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196,000			196,000
	아동행사지원	18,592			18,592
문화 공보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및 단속 지원	1,400		5,00	9,00
	청소년 종합 지원 센터 지원	44,440		10,288	34,152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3,600		14,000	5,600
	청소년 활동 운영 지원	19,950			19,950
	청소년 자치 위원회 운영	3,000		1,500	1,500

분 류	시·도	시·군·구	인구수(명)		담당인력수(명)		
			전체	아동청소년	계	아동	청소년
중소도시	제주특별자치도	ID : 319/320	408,364	137,126	8	3	5

부서명	정책·세부사업명	예산액(단위: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자체
양성 평등 지원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121,629		121,629	
	가출청소년 쉼터운영	224,000	112,000	112,000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140,000	70,000	70,000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운영위원회참여	11,520,000	5,760,000	5,760,00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88,000	44,000	44,000	
	공공청소년수련활동 인건비(8개소)	126,984	57,720	69,264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교육	2,000		2,000	
	청소년 야영장 위탁관리	15,000		15,000	
	청소년민간행사보조(동아리축제등)	18,400		18,400	
	청소년 수련관운영	130,623		130,623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10,460		10,460	
	청소년선도 교육기관 선도지원P/G 운영	7,200		7,20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사업(4개소)	615,560	307,780		307,780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290,460	255,600		34,860
양성 평등 지원과 아동 복지	지역아동센터운영	475,200	237,600	237,600	
	수능공부방운영	48,000		48,000	
	공동생활가정운영	75,336	30,134	45,202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136,080	95,256	40,824	
	입양아동양육수당	84,000	58,800	25,200	
	국내입양수수료지원	15,400	10,780	4,620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9,132	6,392	2,740	
	아동급식지원	3,068,250	1,227,300	1,840,950	
	아동복지시설운영	1,884,000	753,600	1,130,400	
	아동양육시설아동지원	221,990		221,990	
양성 평등 지원과 아동 복지	저소득아동 양육지원	268,800	109,200	159,600	
	요보호 저소득아동지원	90,100		90,100	
	퇴소아동자립정착금	30,000	4,000	26,000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72,000	36,000	36,000	
	어린이날 행사지원	10,000		1,000	
	아동학대예방	16,000		16,000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가나다. 순)

이민희 평택대학교·교수

이은주 파리 Dauphine 대 사회학과 박사후 과정 연구원

정일교 가톨릭상지대학·교수

천정웅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연구위원

◆ 협력 기관 ◆

(가나다. 순)

경기도 안양시청, 부천시청

경상남도 거창군청

경상남도 밀양시청

대전광역시 동구청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전라남도 해남군청, 무안군청

전라북도 군산시청

충청북도 음성군청

200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8-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KYPS) VI: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 · 임희진 · 안선영
- 08-R01-1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이경상 · 임희진 · 박창남 · 정익중
- 08-R01-2 청소년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 및 결과 / 이경상 · 안선영
- 08-R02 초 · 중 · 고 · 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 세대관 및 교육 · 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이창호 · 김종길 · 이항우
- 08-R03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최인재 · 임지연 · 김형주
- 08-R03-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 임지연 · 최인재 · 김형주
- 08-R03-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청소년종합통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 김형주 · 최인재 · 임지연
- 08-R04 청소년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이용실태와 주체적 참여 방안 모색 연구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조혜영 · 유진이
- 08-R05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연구 :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 윤철경 · 유성렬
- 08-R06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맹영임 · 김민
- 08-R07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양계민 · 정진경
- 08-R08 청소년 성 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 백혜정 · 김은정
- 08-R09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 김영지 · 김희진 · 김진숙 · 김진호 · 안재희 · 이경자
- 08-R09-1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통계표] / 김영지 · 김희진 · 김진숙 · 김진호 · 안재희 · 이경자
- 08-R10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 이혜연 · 서정아 · 김영호 · 이용교
- 08-R11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 강혜규
- 08-R12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이춘화 · 성윤숙 · 조아미
- 08-R12-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성윤숙 · 이춘화 · 유익선
- 08-R1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 김경준 · 오성배 · 강태중 · 정유성 · 이부미 · 조정아
- 08-R13-1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연구 / 이수정 · 김현아 · 원재연 · 윤상석
- 08-R13-2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 정병호 · 김찬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문경숙·김현철·김지연·민경석 (자체번호 08-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문경숙·김현철·김지연 외 5명 (자체번호 08-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교육·가족·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현철·문경숙 외 11명 (자체번호 08-R14-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1**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김지연·소경희·김진화·강영배 (자체번호 0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2**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도구 활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최동선·임언·이수영 (자체번호 0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3**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태준·윤혜경 (자체번호 0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4**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기현·김지연·장근영 (자체번호 08-R15-3)

■ 수시과제

- 08-R16 신정부 청소년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 윤철경·김영지·김기현·오성배
- 08-R19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간 소통방식에 대한 연구 / 배규한·이창호

■ 융역과제

- 08-R17 국립 영덕 청소년 환경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 김영한·서정아
- 08-R18 청소년의 국가관·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 오해섭·김형주
- 08-R20 초등학생용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최인재·백혜정
- 08-R21 2008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08-R22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오성배·김희진
- 08-R2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기금 위탁사업 평가연구 / 김기현
- 08-R24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연구 / 김현철·이경상·조혜영
- 08-R2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 개발연구 : 학교 내 설치를 중심으로 / 조혜영·김호순

- 08-R26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안전지표 개발 / 성운숙
- 08-R27 아동청소년정책통합에 따른 국립수련원의 사업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08-R28 한강특성공원 청소년원드서핑교육사업 평가 / 임지연
- 08-R29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오성배 · 강태중 · 이기범
- 08-R30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변화에 따른 급수별 자격연수 교과과정 개발연구 / 이춘화 · 김영한 · 박철웅 · 이상진
- 08-R31 2008 아동청소년백서 발간 / 김기현 · 이창호
- 08-R3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 · 김지연 · 이경상
- 08-R33 아동청소년권리지수 개발연구 / 이해연 · 김영지 · 김신영
- 08-R34 2008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 · 홍성례
- 08-R35 청소년 유해업소 구분기준 및 지역사회 유해환경 감소방안연구 / 김영한 · 김희진
- 08-R36 2008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 / 김경준
- 08-R37 2008서울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 · 김형주
- 08-R38 2008청소년시설종합평가 / 윤철경 · 김경준 · 김영지 · 최창욱
- 08-R39 청소년글로벌 역량지표개발 및 활용방안연구 / 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소희
- 08-R40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 맹영임 · 임경희
- 08-R4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 성운숙 · 김경준 · 김영지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8-S01-1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 (3.28)
- 08-S01-2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화」 (5.6)
- 08-S02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 (5.27)
- 08-S03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II 자료집」 (7.8)
- 08-S04 「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입법례 국제비교」 (8.22)
- 08-S05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 (9.2)
- 08-S06 「청소년기 사회화에 관한 한일비교」 (9.16)
- 08-S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추진과제」 (9.19)
- 08-S08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9.26)
- 08-S09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9.30)
- 08-S10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III -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 (9.26)
- 08-S11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1차 Workshop」 (9.26)
- 08-S12-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 (10.24)
- 08-S12-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I」 (10.28)
- 08-S13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10.17)
- 08-S14 「청소년 세대특성 및 미래의 교육전망」 (10.17)
- 08-S15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및 방향성 모색」 (10.14)

- 08-S16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 (10.17)
 08-S17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10.17)
 08-S18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10.16)
 08-S19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18)
 08-S20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2차 Workshop」 (11.24)
 08-S21 「아동·청소년 참여권 - 한·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식 실태」 (11.28)
 08-S22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3차 Workshop」 (12.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1호 (통권 제48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2호 (통권 제49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3호 (통권 제50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4호 (통권 제51호) / 학술정보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연구보고(고유과제) 08-R10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인 쇄 2008년 12월 26일

발 행 2008년 12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번지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선명인쇄(주) 전화 (02)2268-4743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46-8 (93330)